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23-01

201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10.

연 구 기 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정 현 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 동 연 구 자 : 장 명 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조 진 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이 기 연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박 숙 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국선전담 변호사)

김 현 아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8
4. 기대효과	9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현황 및 법제도 분석	11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정책 및 피해지원 현황	13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그에 대한 정책	13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현황	18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와 문제점	23
가.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관련 규정	23
나. ‘성매매처벌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26
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26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의 특징과 문제점	27
3.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 입법례	33
가. 성매매 관련 국제 협약	33
나. 미국	36
다. 캐나다	38
라. 스웨덴	40
4. 소결	41

Ⅲ.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43

1. 조사개요	45
가. 조사목적	45
나. 조사개요	45
다. 응답자 특성	45
2. 아동·청소년 조사 결과	48
가. 아동·청소년 생활 관련	48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68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94
라. 아동·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 관련	106
마. 아동·청소년 조사결과 소결	116
3.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	120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식 관련	120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134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정책 관련	147
라.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 소결	167

Ⅳ.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심층면접조사 분석 171

1. 심층면접 개요	173
가. 청소년	173
나. 업무담당자	174
2. 피면접자의 일반적 특성	176
가. 청소년	176
나. 업무담당자	177
3. 심층면접 결과분석	178
가. 청소년	178

나. 업무담당자	198
----------------	-----

V.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정책방안 ... 225

1.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27
가. 아동·청소년 교육문제	227
나. 아동·청소년 노동인권문제	228
다. 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 강화	232
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235
마. 부모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237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정책 제언	239
가. 사이버 성매매 환경 대응방안	239
나. 성구매자와 알선 조직의 엄격한 단속과 처벌	241
다. 업무담당자 인식 제고 및 처리 단계별 개선방안	244
3.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47
가. 기본정책 - 피해 청소년으로 인식 전환	247
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정비	247
다. 전경·검 전담부서	248
라. 관련 지원시설 - 전담 지원시설 확충	248
4. 법제 관련 정책 제언	253
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253
나. 성착취 개념 정의	257
다. 성구매자 처벌	258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259
마. 법률 개정안 제시	259

참고문헌 269

부록 275

1. 아동·청소년용 277

2. 업무담당자용 설문지 289

표 목 차

<표 II-1>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 현황 ('16.1 기준)	20
<표 II-2>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지역별 현황('16.1. 기준)	20
<표 II-3> '청소년성장캠프' 위탁기관('16.1 기준)	21
<표 II-4>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21
<표 II-5>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	21
<표 III-1> 조사개요	45
<표 III-2>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47
<표 III-3>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48
<표 III-4> 응답자의 연령	49
<표 III-5> 학교 재학 여부	50
<표 III-6>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	51
<표 III-7>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력	52
<표 III-8> 함께 살고 있는 사람(복수응답)	55
<표 III-9> 가출 경험	56
<표 III-10> 처음 가출한 나이	57
<표 III-11> 처음 가출한 이유(복수응답)	59
<표 III-12> 가출 후 지금까지 지냈던 장소(복수응답)	60
<표 III-13> 최근 2년간 주로 놀았던 장소(복수응답)	62
<표 III-14> 최근 2년간 폭력/폭행을 당한 경험 정도	64
<표 III-15> 폭행 가해자(복수응답)	65
<표 III-16> 성폭행 가해자(복수응답)	66
<표 III-17>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	68
<표 III-18>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	71
<표 III-19>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73
<표 III-20> 가출에서 성매매까지 걸린 시간	74
<표 III-21>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지 여부	75
<표 III-22> 경험한 성매매 유형(복수응답)	78
<표 III-23>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복수응답)	79
<표 III-24>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복수응답)	80
<표 III-25> 하루 최대 성매매(성행위) 경험횟수	81
<표 III-26> 성매매 1회당 받은 최대 금액	82

<표 III-27> 성매매 1회당 받은 최소 금액	83
<표 III-28>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복수응답, “경험 있다” 응답률)	85
<표 III-29> 성매매 상대방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87
<표 III-30> 성매매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복수응답, “경험 있다” 응답률)	89
<표 III-31> 성매매 알선자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91
<표 III-3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94
<표 III-33>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	95
<표 III-34>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된 경로(복수응답)	96
<표 III-35>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한 경우, 경찰과의 성행위 여부	96
<표 III-36> 조사 받았을 당시의 신분	97
<표 III-37>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98
<표 III-38> 가해자와 같이 조사 받을 때, 분리조사 여부	99
<표 III-39>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사항(복수응답)	100
<표 III-40>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	102
<표 III-41> 성매매 관련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재판을 받은 경험	103
<표 III-42> 법원에서 성매매 관련 재판을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104
<표 III-43>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	104
<표 III-44>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 유형	104
<표 III-45> 보호처분에 대한 생각	105
<표 III-46> 보호처분에 대한 평소생각	105
<표 III-47>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이용경험(“이용 경험있다” 응답률)	107
<표 III-48>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만족도	109
<표 III-49> 쉼터 서비스 이용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예” 응답률)	111
<표 III-50> 언론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구체적인 피해내용(복수응답)	112
<표 III-51> 미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114
<표 III-52> 항목별 도움이 필요한 정도	115
<표 III-53> 아동·청소년 성매매 원인 - 1순위	122
<표 III-54>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종류 - 1순위	124
<표 III-55> 처음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	126
<표 III-56> 가장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	127
<표 III-57>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130
<표 III-58> 아동·청소년 성매매 인권침해의 심각성	133
<표 III-59>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 대한 인식	135

<표 III-60> 법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	138
<표 III-61>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	140
<표 III-62>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140
<표 III-63>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141
<표 III-64>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교육인지 처벌인지 모르겠음/기타라고 생각하는 이유	142
<표 III-65>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한 의견	143
<표 III-66>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144
<표 III-67>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145
<표 III-68>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146
<표 III-69>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사항	149
<표 III-70>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 시 필요사항	154
<표 III-71>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158
<표 III-7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161
<표 III-73> 지원시설 및 사회단체 업무에 필요한 사항	164
<표 III-74>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	167
<표 V-1> 범죄별 검거건수	258
<표 V-2> 범죄별 전과자 수	259

그림 목 차

<그림 Ⅲ-1> 응답자의 연령	49
<그림 Ⅲ-2> 학교 재학 여부	50
<그림 Ⅲ-3>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력	52
<그림 Ⅲ-4> 함께 살고 있는 사람(복수응답)	54
<그림 Ⅲ-5> 가출 경험 유무	56
<그림 Ⅲ-6> 처음 가출한 나이	57
<그림 Ⅲ-7> 처음 가출한 이유(복수응답)	58
<그림 Ⅲ-8> 가출 후 지금까지 지냈던 장소(복수응답)	60
<그림 Ⅲ-9> 최근 2년간 주로 놀았던 장소(복수응답)	61
<그림 Ⅲ-10> 최근 2년간 폭력/폭행을 당한 경험	62
<그림 Ⅲ-11> 폭행 및 성폭력 가해자(복수응답)	67
<그림 Ⅲ-12>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	70
<그림 Ⅲ-13>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72
<그림 Ⅲ-14> 가출에서 성매매까지 걸린 시간	74
<그림 Ⅲ-15>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지 여부	75
<그림 Ⅲ-16> 경험한 성매매 유형(복수응답)	77
<그림 Ⅲ-17> 성매매 방식(복수응답)	79
<그림 Ⅲ-18> 하루 최대 성매매(성행위) 횟수	80
<그림 Ⅲ-19> 성매매 1회당 받은 금액	82
<그림 Ⅲ-20>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	84
<그림 Ⅲ-21> 성매매 상대방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86
<그림 Ⅲ-22> 성매매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	88
<그림 Ⅲ-23> 성매매 알선자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90
<그림 Ⅲ-24>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92
<그림 Ⅲ-25>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복수응답)	95
<그림 Ⅲ-26>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97
<그림 Ⅲ-27> 성매매 가해자와 같이 수사 시 분리조사 여부	98
<그림 Ⅲ-28>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복수응답)	100
<그림 Ⅲ-29>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태도	102
<그림 Ⅲ-30> 법원에서 성매매 관련 재판을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103
<그림 Ⅲ-31>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이용경험	106

<그림 Ⅲ-32> 성매매 도움 관련 서비스 만족도	108
<그림 Ⅲ-33> 쉼터 서비스 이용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110
<그림 Ⅲ-34>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구체적인 피해내용(복수응답) ..	112
<그림 Ⅲ-35> 항목별 도움이 필요한 정도	114
<그림 Ⅲ-36> 아동·청소년 성매매 원인	121
<그림 Ⅲ-37>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종류	123
<그림 Ⅲ-38>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	125
<그림 Ⅲ-39>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인식	128
<그림 Ⅲ-40> 아동·청소년 성매매 인권침해의 심각성	131
<그림 Ⅲ-41>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 대한 인식	135
<그림 Ⅲ-42> 법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	137
<그림 Ⅲ-43>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	139
<그림 Ⅲ-44>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한 의견 ..	142
<그림 Ⅲ-45>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한 사항	147
<그림 Ⅲ-46>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150
<그림 Ⅲ-47> 아동·청소년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155
<그림 Ⅲ-48>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차단을 위한 방안	159
<그림 Ⅲ-49> 지원시설 및 사회단체 업무에 필요한 사항	162
<그림 Ⅲ-50> 아동·청소년 성매매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	164

1. 연구요약

1.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대책을 세워온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비중 있는 성매매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아동·청소년은 유해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가 언론에 의해 1997년 처음으로 소개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관련법을 제·개정하면서 청소년 성매매를 단속하고 성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대응책이 있었지만,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
- 최근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기존 성산업 구조에 끊임없이 공급원을 유입시키는 구조로 형성되고 있음. 스마트폰의 채팅 앱은 성매매 알선의 주요한 형태로 대두되어 성매매 시장을 무한 확장시키고 연령 구별을 무의미하게 하면서 성인과 아동·청소년과의 조건 만남을 통한 성매매 영업의 성행으로 성매매 유입 연령을 계속 낮추고 있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남에도 법제도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성매매가 성폭력에 비해 매우 관대하게 취급받는 것을 아는 성구매 남성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압적 성행위 조차 돈을 주고 성매매로 둔갑시키고 있고, 성매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서로 사랑했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여 범망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대상자로 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보호처분도 처벌의 개념으로 여기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꺼려하여 오히려 성인의 협박대상이 되면서 결국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환경이 다시 되풀이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장

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 생애에 걸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대인 관계 손상, 자기혐오, 정신적 불안, 분열, 자살 시도, 임신과 인공유산, 영아 유기, 영아살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과 연결되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 아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병들게 하므로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입 이후의 사후적 지원과 더불어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구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함.

-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된 경로와 궤적을 조사하고, 성매매 노출 이후 아동·청소년이 접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정도나 역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과정의 단계별로 인권침해상황과 성매매 환경을 조사하고, 관련기관 및 시설,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문제를 인권적·젠더적·사회통합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및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을 각 장별로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내용 연구방법,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 제2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현황과 특징,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외국입법례의 검토를 통해 시사점 도출.
 - 제3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당사자(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자 103명)와 종사자(‘청소년 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종사자 25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 제4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1:1 심층면접조사와 관련 시설종사자, 업무 담당 검·경찰 및 정책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20

명) 결과를 분석.

- 제5장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서비스지원시스템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개선 및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을 분석함. 그리고 현재의 정책 및 법제를 검토하고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외 법제와 비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규제 현황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함.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환경 및 인권상황 조사
 - 설문조사 : 19세 미만의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학교밖 지원센터라 한다), Wee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련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및 경·검찰 업무담당자 등 총 20여명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향, 연구내용 타당성 검토,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학계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위한 회의를 하였음.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십대여성인권센터, 다시함께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중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 10개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국의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안학교, 자활지원 센터 및 인턴십센터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협업연구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하고자 하였음.

- 공개 토론회 개최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3. 선행연구 검토

-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들의 인권과 성매매 유입과정에 대한 연구로 김연주(2011)는 우선 십대여성들의 인권 침해 사례연구에서 십대여성들이 왜 성매매를 하게 되는지, 성매매를 하면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강제가 없으니 곧 자발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우리 사회가 십대여성들을 방기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하는 십대 여성들의 증가 및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으로 십대 여성의 성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십대 여성들은 성인 남성들로부터 다루기 쉬운 대상으로 간주되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행위 요구 및 괴롭힘 문제 등에서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폭언과 폭력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의 위협을 반복 경험하면서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포주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에 대해 논하고 있음.
- 정혜원(2011)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이 장기적이고 상습적이게 되면서 가출 청소년들은 왜곡된 성을 접하게 되고 성폭행을 당하거나 생존을 위해 성관계,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윤숙 외(2014)는 최근에 스마트시대가 열리면서 이것이 청소년의 성매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십대아동의 성상품화 영상물 규제강화,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상호공조강화, 청소년 성적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문제를 공간과 관련하여 연구한 서울시 연구보고서는 여자청소년이 가출 이후 주거지가 변동되고 생활양식 전반이 변화되는 ‘공간이동’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지역 이동 및 생활공간 이용 측면에서 폭력피해 실태를 파악하였고, 가출한 여자청소년 중 성매매 유입율이 18.3%로 낮지 않아 이들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과 더불어 가출 여자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지역 사회 중심의 새로운 공간이 필요함을 제안함(윤혜린

외, 2015).

- 강지명(2013)은 현행 성매매 정책에서 아동·청소년의 특성의 반영유무가 정책평가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출 후 생존을 위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나 가출을 하지 않고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유형도 나타나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성매매가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함.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의 증가,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 그리고 죄의식의 약화, 성매매의 조직화, 가출팸과 또래포주의 등장이 최근 성매매의 변화된 특성이라고 보여짐(이유진 외, 2013).
- 기존의 연구물들에서는 성매매에 이용된 십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특징이나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간문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십대여성들이 처한 환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분석이나 연구를 행한 자료는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십대여성들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환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이러한 업무를 하는 현장조사자, 경·검찰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초점심층면접조사 등을 통해 십대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단계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인권적·젠더적·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고 매우 의미 있을 것임.

4.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조사 및 인권상황 조사를 통해 인권개선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국내·외 관련 법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당사자 등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관련 현행법 개정안 도출 및 향후 관련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행 관련 법제의 체계화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입법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및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아동·청소년 성

매매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II.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황 및 법제도 분석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정책 및 피해지원 현황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그에 대한 정책

- 근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대체적인 특징은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의 급증, 가출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환경 및 가출팸에서 비롯된 성매매의 연결, 생존이 아닌 소비를 위한 성매매의 경향,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저연령화 등으로 기술됨.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사이버 상의 조건만남 같은 형태로 변화되고 다양한 유입경로에 의해 증가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응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은 현실적인 한계임.
-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성인 성매매를 포함한 총괄적 성매매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성매매 예방, 성매매 피해자보호 및 범규정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피해자보호와 범규정 집행 과제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과제가 책정되어 있지만, 성매매 예방과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특별히 다루는 과제는 없음. 전반적인 성매매의 예방정책은 사실상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의 인권침해 및 해악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예방의 비중을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두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음.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예방정책은 어떤 경우여라도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함.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의료적·정신적·경제적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이 이런 법적 보호를 기피하게 만들어 지원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는 독자적·전문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청소년복지와 성매매 피해지원 내에

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 성보호, 성매매방지 등으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현황

-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 지원의 현황을 보면, 전국의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이 92개인데 그 중에서 14개의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2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만이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전담시설임. 청소년쉼터와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지원시설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특별한 지원은 어려운 점이 있음. 증가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전담 성매매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확충과 지원이 시급함.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와 문제점

- 아동·청소년 성매매관련 법제에서 나타난 특징은 성구매 및 알선행위에 대한 무거운 법정형,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의 구별로 설명 되는데, 그러한 특징 속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 첫째,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서의 문제점은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성매매의 단속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단속이 되어 성인 성구매자가 범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형에 비하여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문제가 있음. 둘째, ‘아청법’에서는 피해자와 대상자를 구별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빌미로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협박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함. 셋째, 성매매 정책은 성인 성매매 피해를 중심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아동·청소년성매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독자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3.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 입법례

-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시각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공통임.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삼아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철저히 성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음. 캐나다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음. 스웨덴은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선택적 비범죄주의’ 입법방식을 취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여성과 아동은 남성에 의한 폭력과 억압의 희생자로 간주함. 이렇듯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보는 외국입법례의 경향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에서 정립해야 할 기본적인 시각을 시사하고 있음.

Ⅲ.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현황과 환경, 인권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종합적인 인권개선 법제, 유입예방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조사개요

- 설문조사는 두 종류이며, 그 대상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103명과 관련 업무 담당자 251명으로 각각 2016년 8월 11일부터 9월 9일, 2016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음.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총 139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자 나이 19세 이상인 5부와 응답내용부실 31부를 제외하여 총 103부를 분석하였음. 조사방법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면접조사 및 우편조사, 업무담당자의 경우 팩스, 이메일 혹은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음.

<표> 조사개요

구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조사대상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
조사방법	▪ 면접조사/우편조사	▪ 팩스/이메일/우편조사
조사지역	▪ 전국	▪ 전국
분석사례수	▪ 103명	▪ 251명
조사기간	▪ 2016. 8. 11 ~ 9. 9	▪ 2016. 8. 11 ~ 9. 7

다. 응답자 특성

- 아동·청소년의 대상 설문조사는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관련법의 연령에 따라 19세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응답자 103명의 연령은 만 13에서 14세까지가 11명, 만 15세에서 16세까지 40명, 만 17세에서 18세까지가 52명이었음. 조사대상을 19세미만의 여성 아동·청소년 중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였음.
- 지원시스템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견도 어렵지만 짧은 조사기간 안에 실태조사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사대상자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생활시설), 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협조를 요청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은 서비스시스템 내에서 들어와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위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련 있는 종사자 251명에 대해 실시하였음.

2. 아동·청소년 조사결과

가. 아동·청소년 생활 관련

- 아동·청소년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만 13세~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어 성매매에 이용되는 아동·청소년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응답자 중 60.2%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나, 이번 설문조사 표집단위가 지원체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재학률이 그다지 높다고만은 볼 수 없음.
- 가출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84.5%가 '가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만 13세 이하'에 가출한 경험자가 25.3%나 되었음. 처음 가출

을 한 평균 나이는 14.4세였으며, 가출 후 지냈던 장소에 대해서는 ‘친구, 선후배 집’이 85.1%로 가장 높았고,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 62.1%, ‘짬질방’ 41.4% 순이었음. 반면에 ‘쉼터 등 보호시설’은 39.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시설에 입소를 꺼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일상생활에서 폭력 등 인권침해적 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도, 2명 중 1명 이상이 놀림 등 인격적 침해를 당하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이 인터넷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성폭력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폭행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친구, 선후배’의 응답률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친아빠’ 32.5%, ‘모르는 사람’ 27.5%, ‘친엄마’ 20.0%, ‘애인’과 ‘가출팸’이 각각 12.5% 등의 순서였음. 성폭력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는 ‘모르는 사람’이 57.9%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선후배’ 26.3%, ‘친아빠’, ‘애인’, ‘기타’가 각각 10.5% 등의 순서였고, 기타의 경우는 아빠친구, 동네 할아버지로 나타났음. 가정폭력과 친족성폭력, 그리고 성매매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를 직접 기재하게 한 결과(만 나이가 아님), ‘13세 이하’ 8.7%, ‘14~16세’ 57.3%, ‘17세 이상’ 32.0%로 응답자 중 66%가 중학생 나이인 14~16세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나이인 13세 이하의 경우도 9명이었음. 성매매 시작 연령은 평균 만 14.7세(15.7세)로,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성구매자,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중학생 정도의 나이 아이들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잘 곳이 없어서’(35.0%),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6.2%), ‘배가 고파서’(25.2%)와 같은 응답들은 가출상태의 절박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31.1%)와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30.1%)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십대 아동·청소년들이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성매매가 가출 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61.2%가 ‘그렇

다'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38.8%로 가출 후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가 높게 나타났음. 가출 후 성매매에 이용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가출 다음날~1주일 이내'가 31.7%, '가출 당일' 23.8% 등 절반 이상(55.5%)이 가출 후 1주일 이내에 성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성매매 유형으로는 '1:1 조건만남'이 88.3%로 다른 성매매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음.
- 하루 최대 성매매 횟수로는 '1회' 33.0%, '2회' 32.0%, '3회' 13.6%, '4~9회' 14.6%, '10회 이상' 3.9%의 분포를 보였으며, 하루 평균 성매매 횟수는 2.7회로 조사되었음. 특히 하루 10회 이상이라고 답변한 아동·청소년 중 만 13~14세도 포함되어 있었음. 이렇게 하루 성매매 횟수가 많다는 것은 조건만남의 형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알선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성매매 상대방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험을 한 비율은, 약 20%만이 성구매자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80%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었음. 이에 비해 성매매 알선자와 관련된 부당경험은 "모두 없음"이 54.4%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에서 성구매자의 인권침해가 알선자의 인권침해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성구매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중 "가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83.5%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상황이 좋으면 성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89.3%가 '그렇다' 답변했으며, "성매매를 좋아서 하는 또래친구들은 없다" 항목의 경우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90.3%가 '그렇다'고 응답했음.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관련수사기

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이 51.5%였음.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모 또는 주변의 신고’(39.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단속’ 30.2%, ‘자수’ 24.5%,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 13.2%, ‘구매자신고’ 9.4% 등의 순이었음. 특히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에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응답이 2명(28.6%)으로 나타나 공권력에 의한 성범죄가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알 수 있음.

-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범죄자 취급’이 34.0%,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와 ‘가해자와의 합의유도’가 각각 13.2%, ‘개인정보유포’와 ‘집으로 갑자기 찾아옴’이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5점 척도 평균으로 살펴보면,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하였다”는 3.19점,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다”는 3.08점, “조사를 마친 뒤 앞으로의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는 2.98점, “상담원 또는 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는 2.83점,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는 2.63점이었음. 눈에 띄는 점은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와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가 30%이상이라는 점임.
- 보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3명 중 2명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라고 응답하였고 1명은 ‘모르겠다’였음.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46.6%, ‘모르겠다’가 32%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교육이라기보다 처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의미조차 모르는 경우도 1/3이 되어 보호처분의 성격과 실효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라. 아동·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 관련

- 아동·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 관련과 관련하여서는,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이용 경험 중 ‘진로상담’이 77.7%로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 상

담' 72.8%, '신체건강검진/치료' 67.0%, '정신건강상담/치료' 57.3%, 순이었음.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만족도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학업지원'과 '경찰 조사시 상담원 동석'이 각각 4.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건강상담/치료'와 '장기쉼터/주거지원'이 각각 4.13점 등의 순이었음.

- 쉼터 입소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쉼터 입소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없었다'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치 않는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33.8%, '직원들이 수치심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29.4%로 나타났음.
- 두려워하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응답 결과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4.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 4.06점으로 나타났음.

3.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식 관련

- 업무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대해 1순위 응답률은 '가정불화'가 37.8%, '경제적 이유' 23.9%, '성인들의 유도' 18.7%,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14.7%, '또래 문화' 2%의 순으로 나타났음. 3순위까지의 복수응답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이 '성인들의 유도' 보다 조금 더 응답률이 높은 것 외에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이유'가 1, 2 순위를 차지하는 등 비슷함.
- 소속기관별로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원인 중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보다 '성인들의 유도'에 더 비중을 두는데 반하여, 'Wee센터', '경찰' 및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특히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70%)을 원인으로 꼽는 비율이 매우 높음. 성별로는 남성은 '경제적 이유'가 35%로 여성(20.4%)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여성은 ‘성인들의 유도’가 22%로 남성(8.3%)에 비해 높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사회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으로 더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종류에 대한 응답률은 ‘조건 만남’이 8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에 대해 ‘스마트폰 채팅 앱’을 61.4%로, 위험(폭력/진상)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 역시 ‘스마트폰 채팅 앱’이 49.8%라고 응답하였음.
-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난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2.0%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음. 다만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와 위센터, 경찰의 경우 다른 기관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 “성매매는 필요악이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전혀 아니다’고 답한 남성이 35%, 여성이 60.7%였다. “성매매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음.
-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후에 사랑을 주장해도 성매매는 문제 삼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2.8%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매우 그렇다’의 경우 경찰은 22.9%로 기관별 응답률 중 가장 낮았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도 50%였음. 이 경우 남성은 35.0%, 여성은 79.1%로 성별 인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3.2%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6.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매우 그렇다’의 경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30.4%, Wee센터 28.6%로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찰은 2.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10.0%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경우 남성은 5명, 8.3%만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103명, 53.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아동·청소년의 가출은 성매매로 이어진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1.6%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8%가 그렇다고 응

답하였음.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57.9%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박지원센터 17.4%, 위센터 17.9%, 경찰 18.8%로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경우 남성은 21.7%, 여성의 경우 39.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원하기 때문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7.6%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5.0%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박지원센터 21.7%, Wee센터 25.0%, 경찰 16.7%로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남성은 16.7%, 여성의 경우 47.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심각성 조사 결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매우 많이 심각’ 응답률과 4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위험’ 80.1%(3.69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신적 피해’ 77.3%(3.63점),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할 위험’ 73.7%(3.62점), ‘성 매개 질환에 감염될 위험’ 71.3%(3.55점) 등의 순임. ‘빛을 강요당함’ 41.4%(2.9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찰이 다른 기관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심각성 점수가 현저히 낮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음.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하였다”가 4.19점으로 가장 높으며, “친절하게 도와주려 하였다” 3.61점, “조사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였다” 3.43점,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에 대해서는 3.39점 순서로 나타났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2.28점으로 가장 낮았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이 출석할 때 비공개로 하였다”가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성구매자나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시 차면시설을 갖추어 하였다” 3.39점, “아동·청소년에 대해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3.14점, “성구매자/성매매알선자 혹은 그 변호인이 재판과정 중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하였다” 3.00점, “성구매자/알선자 변호인의 합의를 이유로 한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2.86점,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인적사항 노출”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2.65점,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에 대해서는 2.60점의 순서로 대답하였음.

-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다’는 응답이 51.0%를 차지했으며, ‘처벌이다’ 22.3%, ‘모르겠다’ 20.7% 등으로 조사되었다. ‘처벌이다’라는 응답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42.1%), 성매매 피해 상담소(39.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3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교육이다’는 응답은 Wee센터(64.3%), 경찰(62.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60%)이었음.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처벌이다’는 응답이 24.6%로 남성 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교육이다’라는 응답은 여성 47.1%, 남성 63.3%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음.
-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40.2%로 ‘없다’는 의견 24.3% 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인 33.9%를 차지함.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39.3%)와 성문화센터(34.4%)에서 높게 나타났음.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의 경우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50.0%를 차지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100% 효과가 ‘있다’고 하였지만, 경찰의 경우, 효과가 ‘있다’ 47.9%, ‘없다’ 22.9%, ‘모르겠다’ 29.2%로 나타났음.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정책 관련

-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가 89.6%로 가장 높았고, ‘신속한 초동수사’ 80.5%, ‘조사 전 상담원과 필요적 연계’ 78.1%순이었음.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하

도록 해야 함이 93.2%로 가장 높았고, ‘성희롱, 성추행 등의 주의’가 90.0%,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 구비’ 89.6%순이었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조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폰앱에 대한 규제’가 86.5%로 가장 높았고, ‘사법기관의 성매매 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 85.3%,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 80.5%의 순으로 나타났고, ‘신고 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및 집행’은 49.0%로 가장 낮았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지’가 4.03점으로 가장 높고, ‘취업교육지원’ 4.01점,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각각 4.00점, ‘일자리 지원’ 3.96점, ‘학업지원’ 3.93점,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에 대한 지원은 3.91점,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 3.80점 순으로 답하였음.

IV.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심층면접조사 분석

1. 심층면접 개요

- 양적 연구 결과의 보완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실태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함. 심층면접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심층면접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FGI를 구분하여 실시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접은 조건만남 등 성매매 관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들 중 현장 실무자들의 소개를 통해 총 15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음. 업무담당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시설이나 기관의 기관장, 상담원, 업무담당자, 전문강사 등 현장전문가 13명, 보호관찰소나 법무부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 5명, 아동·청소년성매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2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2. 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심층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참여자의 연령은 생년 기준으로 1998년 6명, 1999년생 6명, 2000년생 3명 등 총 15명이 심층 면접에 참여하였음.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해당 기관에 의뢰된 경로는 내담자나 친구의 소개와 같은 사적 네트워크에 의해 해당 기관을 이용하게 된 경우는 총 3명이었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직접 발굴하여 지속상담으로 연계된 경우가 1명이었음. 또한 1388이나 경찰의 참고인 조사 후 위기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지속상담을 의뢰를 한 경우가 3명이었음. 해바라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성매매와 관련한 이슈를 직접 직원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경우는 2명이었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찰 동석상담 이후 지속상담으로 연결된 경우가 6명이었음.
- FGI 에 참여한 업무담당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 고루 선정되었고,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성매매와 관련한 전달체계내의 모든 유형의 기관이 포함되도록 면접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참여자를 구성하였음.

3. 심층면접 결과분석

가. 청소년

- 심층면접의 결과 분석은 설문문항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하위 주제를 중심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청소년 성매매 관련 경험

가) 성매매 노출 이전의 생활 상황

- 가족경험 :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가족경험은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운 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또한 가족 내 뿌리 깊은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내부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족의 문제’로서의 폐쇄성을 자인함으로써 가족문제로 인한 고통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이러한 가족인식과 경험은 이후 더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외부의 도움 요청을 제한하거나 도움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

- 시설 경험 : 가족경험과 함께 이미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양육시설을 경험하고 있는 면접 참여자도 있었음. 이들은 시설생활 경험에 대해 “(물질적으로)부족함 없는 생활, 그러나 ‘고아원’ 티내는 행사” 등으로 인해 스티그마를 경험하고 있었음. 또한 사회적 지원이나 도움의 손길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는 도덕적,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음.

나) 성매매 노출 및 유입과정

- 가출 관련 경험 : 면접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가출은 흔히 하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특히 사춘기를 “가출을 한창 할 때”라고 규정하는 등 가출에 대해 청소년기 발달과정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가출과 관련하여 가족들의 반응은 가족이 구조적으로 해체되어 있는 경우는 아예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한번 가출한 이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더욱 잡아두려고” 하거나 “더 풀어주는” 방식으로 회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출이후 마음을 다잡고 “조신한 생활”을 하는 경우 부모의 기대가 상승하면서 또다시 가출을 유발하고 있었음.
- 가출 후 생활공간 및 여가활동 : 가출이후 면접 참여자들의 주요 생활공간 및 여가활동은 노숙에서부터 친구의 집, 가출팸 등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존재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후 “노는 방법” 으로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것은 “술 마시며 놀기”였음. 그러나 술 마시기 위한 공간으로 “술집은 안되고 모텔은 되는” 역설적인 생활공간을 경험하고 있었음. 한편 모텔은 성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물리적 공간이었음.

다) 성매매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 알선자

- 면접 참여자들이 경험한 알선자들은 “이는 오빠”인 사적 네트워크에서부터 기업화된 알선업체까지 다양하였음. 특히 사적 네트워크와 결합되어 있는 알선자들은 “험한 조건”에 대한 보호기능과 함께 사적 관계에 의한 감정으로 험한 조건에 ‘의도적’, ‘보복적’으로 노출 시키는 양가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음. 더구나 이들은 ‘사적 관계’를 빌미로 함께 술 마시고 노는 관계이기도 하고, 이를 계기로 성행위와 성폭력, 성매매의 경계에 걸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였음.

- 특히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든 하지 않고 있든, 가장 나쁜 상태는 알선조직 간의 갈등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인질’이나 ‘미끼’가 되기도 하여 범죄의 최전방으로 내몰리고 있었음.
- 알선자와 관련한 심각한 인권침해 경험으로는 기본적으로 병이 났을 때 몸을 돌볼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들은 병원출입을 꺼리고 있었음. 병원치료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귀찮다”거나 자신이 겪는 증상의 심각성에 대해 무심함도 있지만 가장 민감한 사적 정보(일반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특히 산부인과적 건강상태)를 노출해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면접 참여자들은 사적 관계에서 출발한 알선자이든 아니든 간에 이 모두에게 자신들이 “여자가 아닌 걸레”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돈벌이 대상화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인, “ATM기 취급”을 당한다는 자조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음. 한편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보호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알선자들이 지속적으로 친구관계에 대해 갈등을 조장하고 고립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결과 같이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또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쌍한 아이 착취하기”의 일환으로 서로가 감시자가 되기도 하고 유인책, 알선자로서의 “신분 향상시키기”를 시도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더욱 자유롭지 못한 족쇄가 되고 있었음.

○ 10대의 성을 사는 사람들

-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10대의 성을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 즉 면접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10대의 성을 사는 사람들’은 ‘미성년자임에도’ 성을 사는 사람들과 ‘미성년자이기에’ 성을 사는 사람들로 구분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저사람 다 만나 봐도 다 똑같고, 나한테 관심 있는 것은 그냥 성관계. 나는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몸

을 취라”로 귀결되는 사람들이었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나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사람, 몸이 안 좋을 때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용돈을 주는 일부 “단골”이 있지만 이는 아주 예외적인 ‘안전한 관계’일 뿐이었음.

- 또한 면접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Pool 이 형성되어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한 생태를 잘 알고 이를 악용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집단이었음. 따라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개인적인 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가장 위험한 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업소고용 경험

- 본 연구의 면접 참여자들도 키스방과 노래방 등에서 유사성매매 경험을 하고 있었음. 특기할만한 것은 노래방에서의 도우미 역할은 “성매매 보다 더 어려운” 일로 인식하고 있었음. 즉 성매매는 짧은 시간 감정과 성행위를 분리하여 행위를 마치는 것이 가능하나 노래방에서의 노동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감정노동을 넘어서는 “마음과 몸으로 비위를 맞추는” 복합적인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성매매가 ‘탈출구’가 되기도 하였음. 또한 노래방 도우미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손님도 알고 업주도 아는 사실이며, 비교적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으로 모두에게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누가 먼저 터트릴 것인가(신고)가 관건인 ‘시한폭탄’과 같은 시간으로 체험되고 있었음.

○ 경찰

-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줘도” 남자 경찰관은 여전히 “결끄러운” 존재였으며, 부당한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없이 조사과정은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거나 자존심 상하는 “너무 싫은”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또한 면접 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편이었으나 대개의 경우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보다 “동정”으로 해석되는 피해자로 대하는 시선이 훨씬 부담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었음.

- 한편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참고인 혹은 피해자 조사와 관련해서 동의를 구해야 하나 구하지 않았으며, “반 협박성” 조사를 받았고, “말만 피해자”이지 피해자로 대우 받지 못했다고 항변하기도 하였음. 특히 조사관의 “친절하지만 결과적으로 꽃뱀으로 몰아가는” 언사, 합정 수사시 ‘미끼’로 동원되는 경우를 부당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 추후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데 해당 내용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을 부당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진술서 작성시 다른 사람의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데, 그 내용 안에 ‘당사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내용이 노출되는 것’, ‘경찰이 합의를 중용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잘못하고 있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음.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여 참고인이나 피해자 조사에 응했는데 부서별 업무지침의 차이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 가장 큰 배신감과 부당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은 “전반적인 경찰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음.

2) 보호·서비스 경험

○ 보호처분경험

- 성매매와 관련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면접 참여자들은 일차관문인 분류심사원에 대해 아직 추운 계절에 “더운 물이 안 나오고, ‘통방’을 금지하는 것, 화장실에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 분류심사원의 직원들이 욕을 섞어서 지도하는 것” 등을 부당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 한편 시설보호처분을 받은 사회적으로 격리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했으나 이 시간이 삶의 전환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면접 참여자도 있었음. 즉 이 시간은 “휴대폰과 친구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며, “자유는 없으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확장이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필수조건인 가족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를 위한 개입이 부재하여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무효화 혹은 축소되고 있었음.

○ 지역사회서비스

-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특정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에 대해 스스로를 “행운아”로 지칭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설이라는 인프라의 중요성 보다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라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존중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음. 또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 티내지 않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티내는” 서비스로 인해 서비스의 제한성과 낙인을 경험하고 있었음.
- 또한 시설의 서비스에 대해 “감사함이라는 대가를 바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전반적으로 시설경험이나 역기능적 가족구조 안에서의 경험을 동일시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이후의 쉼터 등 단기보호나 중장기보호 시설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음. 이는 시설 운영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강조를 통해 도덕적 ‘교화’의 수단화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위기청소년 캠프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위기청소년 캠프는 보호처분에 의해 혹은 보호처분이 없더라도 경찰의 의뢰로 4박5일 간의 집중적인 숙박 프로그램이 제공됨. 숙식을 같이 함으로써 생활리듬을 회복하는 효과를 경험하기도 하고 ‘동병상련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처음 본 사람들과의 단기간의 강도 높은 교류에 노출된다는 것은 상당한 정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었음.

3) 정책제언

- 면접참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정책적 지원책은 대부분 자립지원으로서의 ‘일자리’로 귀결되고 있었음. 특히 이 일자리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여야 하며, 누군가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자리, 인턴십이나 공동의 작업장처럼 개인의 의사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닌, 일반 시장경제하의 “자유로운” 일자리

이기를 기대하고 있었음. 이는 기존의 자립지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나. 업무담당자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원인에 대해서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였음. 우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남성들의 수요가 있고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문화가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성매매로 빠지게 한다고 보고 있었음. 특히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수요증가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또한 가정폭력,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은 거주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아동·청소년들을 노동인구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위한 건강한 아르바이트가 없고 아르바이트 얻기도 힘든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성매매의 위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성매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함.
-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물질만능주의 즉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어른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에게도 퍼져있어서 당장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그리고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성매매로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성매매 업무담당자들은 최근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연결되는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를 들고 있음. 스마트폰의 이용이 용이한 아동·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더욱 쉽게 성매매로 연결되곤 한다고 보고 있음. 또한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긴급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쉼터는 아동·청소년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어서 쉼터가 이들을 위한 시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가출한 당일날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성매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성매매의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 면접 참여자 대부분은 돈으로 성을 사는 성매매 자체가 인권이 없는,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현장전문가의 경우들은 성매매 자체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아동·청소년에게 벌어지는 경찰에게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등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었음. 또한 업무담당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채팅 등을 통해 1:1 만남을 하는 뒤에는 알선구매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은 누가 시켜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로 인한 착취구조가 심각하다고 진술하고 있었음. 또한 인터넷상으로 성매매 구매자가 아동·청소년들의 연락처 등을 올리는 등 인권침해는 각양각색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었음.

3) 보호처분

- 보호처분을 처벌이라고 보는 면에서는 응답자 모두 대체로 동의하였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현장전문가들은 그 때의 일시적인 효과이고 특히 격리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반면,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처분이 일률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는 논하는 건 의미가 없으며, 보호처분의 다양화 등으로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대한 효과여부 :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보거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었으며, 현장전문가들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음. 한편 경찰서나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의 일부는 보호처분이 성매매예방이나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화가 되기도 하고 보호관찰소에 있는 기간 동안은 성매매를 못하므로 이것 자체가 성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보호처분의 필요성 : 현장전문가들은 보호처분은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분명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반면 보호관찰소나 경찰서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음. 보호처분기간 동안은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보호처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등 보호처분답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음.

- 보호처분의 대안이나 개선방안 : 보호처분의 대안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상담 등 전문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음. 또한 보호관찰소의 업무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며 역량강화 사회보호 및 예방적 목적이 잘 부각되도록 보호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4)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고소하지 않는 이유

- 한편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하여 처벌받을까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크며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인식도 커다랗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찰에 가서 성폭행을 입증하거나 너무 어렵고 경찰에서의 수사과정을 오롯이 아동·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5)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 업무담당자들은 시간과 인력의 부족을 아동·청소년성매매 업무의 어려움으로 꼽았음. 아동·청소년들과 신뢰관계를 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행정일이 많아서 이들과 이야기하고 신뢰관계를 쌓기 힘들다는 것임.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기간도 짧아 업무담당자의 장기근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업무가 힘들다고 하였음.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케어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타까우므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한편 아동·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었음. 단속반이 노출되어 단속이 어렵고 단속에 대한 민원과 항의로 이어져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것임. 또한 보호관찰소 등에서도 시간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럴만한 시간도 경제적인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 교육 업무처리 교육 시행여부와 효과 : 아동·청

소년기관에서는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경찰 등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성매매교육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었음.

- 업무처리 관련 매뉴얼 여부와 개선점 : 현장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업무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경찰이나 보호관찰소 같은 곳에는 특별히 업무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업무매뉴얼이 없는 경우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업무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6) 아동·청소년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개선방안

- 사회적 인식개선 및 자립지원서비스 확충 : 아동·청소년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또한 성매매 아동·청소년들과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거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긍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장시간의 플랜을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립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법 개정 : 현장전문가들은 먼저 법에서 피해자로 규정되어야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들을 대상아동·청소년에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남.
- 최근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대책 :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이어지므로 어플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어플개발자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어플 개발시 가입연령 등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와 어플 개발자들에 대한 인식교육의 필요성 등을 강조함.
-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로 연계방지 방안 마련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은 잠자리 등이 필요해 가출한 후 성매매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우선적으로 가정폭력을 막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성매매 방지 홍보 등 캠페인 등이 대대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음.

-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및 놀이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의 근로환경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재구성해야하며,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함을 강조함. 그리고 청소년의 놀이문화가 노래방 등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하는 사회적 여건이나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함도 지적하고 있었음.

V.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정책방안

1.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아동·청소년 교육문제

- 본 아동·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41명의 아동·청소년 중 중학교 중퇴 또는 고등학교 중퇴가 70.9%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두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중학교 중퇴 통계를 보았을 때 26.8%나 되어,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 제도하에서 교육당국에서 확인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탈성매매 후에도 다시 학교와 사회에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학력취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안학교가 의미가 있으며 본 설문조사에서도 대안학교 재학이 19.4%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가출 및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단기형 자립학교’인 ‘늘푸른 자립학교’를 개교하였음. 이 학교는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에게 기초학습, 경제교육, 성교육, 인턴십 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단기형 대안학교임.
- 이처럼 대안학교가 아동·청소년에게 최소한의 학력의 확보와 함께 중국적으로는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나. 아동·청소년 노동인권문제

1) 아동·청소년 근로실태

- 본 설문조사에서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잘 곳이 없어서’ 35.0%,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31.1%,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 30.1%,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26.2%, ‘배가 고파서’ 25.2% 등의 응답이 있었음.
 - 가출상태의 절박성이 이유이건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이건,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여 성매매를 한 것임.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에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근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이 형성되어야 함.
-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음. 연령별로는 15세~18세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비율이 18.5%로 전체 평균(15.8%)보다 높고, 학교 재학 청소년의 경우(19.8%) 이보다 높으며,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가장 높은 비율(26.3%)을 보여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되었음.
- 본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담당자들의 의견들이 있었음. “아동·청소년들이 가출한 후에 주거비, 생활비의 돈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들이 돈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위한 건강한 아르바이트가 없고 자리 얻기도 힘든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성매매의 위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성매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인간이니까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매매를 제외하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근본적으로는 돈이 필요한 것이니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업무담당자들의 지적이 있었음.

2) 가출청소년의 노동문제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일반 청소년에 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가출청

소년의 환경을 악용한 업주의 부당행위 경험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출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임.

- 또한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임.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많은 경우 가출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출 아동·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가출 아동·청소년의 근로 형태와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별도의 실태 파악과 접근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정책제언

- 아동·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교육'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내실 있는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음.
 - 그러나 그 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현황을 보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5%로 파악되었음.
 - '알바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했지만,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2배 가량 높게 인지하고 있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이 쉽게 노동 인권을 인식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학교 밖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에 상응하는 실태파악과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학교 밖 가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

어져야 함. 그리고 앞서 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출 연령이 낮음을 고려하여, ‘노동 인권 교육’이나 홍보는 중학교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전한 구직 경로 확보

- 근로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구직할 때 활용했던 주된 구직경로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전문 소개사이트로, 2명 중 1명(50.3%)이 이용하였고, 이 경로가 아닐 경우 ‘먼저 일하고 있는 친구 또는 아는 선후배’(23.9%)를 통해 일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대부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동·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인들과 동일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안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다. 아동·청소년 지원 시스템 강화

1) 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 강화

- 청소년지원시설, 일시쉼터, 드롭인센터 등의 다양화 및 청소년지원시설의 필요한 지역에 증설 필요
 - 본 설문조사의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자리’(3.86점)가 가장 필요 정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교육’(3.84점), ‘의료지원’(3.82점), ‘학업’(3.81점), ‘정서적 지지’(3.80점) 등의 순이었음.
 - 그런데 현행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제2호는 취학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중장기 청소년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일시쉼터, 드롭인센터, 노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밤시간 운영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함. 또한 청소년 지원시설은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단위 지역을 포함하여 더 많은 지역에 시설을 설치해야 함.
-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소의 필요
 - 현행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전문상담소가 아니라 성인들과 함께 상담을 받는 상담소만 규정하고 있을 뿐임. 성매매에 이용된 아

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소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원의 빠른 지원과 함께 365일 24시간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원가족 복귀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확립
 - 본 설문조사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후 아동·청소년이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쉼터’가 3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아동복지시설 4명을 합한 38명(36.9%)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원가족 복귀가 가능하지 않아 쉼터나 아동복지시설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외에도 ‘친구들’, ‘혼자’, ‘남자친구’가 각각 3.9%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생활시설 외의 다양한 주거지원의 가능성, 생활시설만이 아닌 이용시설을 통한 지속적 보호, 지원 등 여러 다른 지원체계가 보충되어야 함.
- 쉼터 생활에서의 자유롭고 공식적인 의견개진, 의견수렴의 통로 필요
 - 쉼터 입소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쉼터 입소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없었다’가 36.8%, ‘원치 않는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33.8%, ‘직원들이 수치심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29.4%,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가 각각 25.0% 등의 순으로 조사됨. ‘이유 없이 입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17.6%, ‘입소 후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20.6%, ‘입소생활과 관련한 나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 20.6%,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19.1%, ‘부당한 이유로 퇴소당했다’ 13.2%였음.
 -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 개진 통로나 의견의 수렴, 충분히 공유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지원으로 캠프 등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처벌로써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치유, 치료, 인권, 인식전환,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지원으로써의 교육, 부모교육 및 부모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활성화가 필요할 것임. 또한 부모에게 알리는 문제,

후견인 문제의 해결, 의료, 법률, 정서적지지, 학업지원, 살 곳, 다양한 취업교육과 연계가 종합적으로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인권가이드 마련의 촉구

- 업무담당자들은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난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68.5%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31.5%가(‘조금 아니다’ 23.5%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와 Wee센터, 경찰의 경우 다른 기관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음.
- 업무담당자들은 “성매매는 필요악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54.6%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45.4%가(‘조금 아니다’ 15.5%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도 15.1%, 38명이나 됨.
 -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는 ‘전혀 아니다’ 37.0%를 제외하면 6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Wee센터는 ‘전혀 아니다’ 46.4%를 제외하면 53.6%가 그렇다고 답하였음. 경찰의 경우는 ‘전혀 아니다’ 25.0%를 제외하면 75%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도 ‘전혀 아니다’ 40.0%를 제외하면 60%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음.
- 업무담당자의 경우,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아동·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데 반해, 아동·청소년의 탓이라고 보거나 피해자로 보는 의식이 낮아, 인식의 혼란이나 모순적인 인식이 보이고, 업무담당자에 의한 2차 피해가 예상된다.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성인의 책임임을 명백히 하고 아동·청소년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는 시각 교육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특히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시각차가 큰 그룹들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인권관련 업무 지침 등 전체적 매뉴얼과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임. 또한 기관내부 의견의 편차가 많이 보이는 기관들은 그 내부의견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인권가이드 마련이 필요함.

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1) 가정폭력과 가출

- 아동·청소년에 대한 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처음 가출한 이유 중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 때문에’가 58.6%였음. 그리고 폭행을 당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폭행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 ‘친구, 선후배’가 65.0%로 가장 높았고, ‘친아빠’ 32.5%, ‘모르는 사람’ 27.5%, ‘친엄마’ 20.0% ‘애인’과 ‘가출캠’이 각각 12.5% 등의 순서였음. 이처럼 원가족으로부터 당하는 폭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 응답 중 친아빠에 의한 성폭력도 2명이나 응답하고 있고, 1명이 새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하였음.
- 그런데 성매매가 가출 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절반 이상인 6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자들 중 과반수인 54.0%가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성매매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25.4%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가출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2) 정책제언

- 가정내 폭력에 대한 적극적 처벌
 -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범죄이고 사회폭력으로 연결되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가출을 하고 이것이 바로 성매매로 연결되므로 가정폭력예방이 급선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도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법들은 제정 정비되고 있으나,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2010년의 경우 9,199건, 2011년의 경우 10,146건, 2012년의 경우 10,943건 그리고 2013년의 경우 13,076건, 2014년에는 17,782건까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더불어 가정폭력은 범죄

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체적 폭력 및 언어적 폭력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 내지 전문가의 조기개입이 필요함.

○ 실무자에 대한 통합 교육

- 가정폭력과 (친족)성폭력, 그리고 성매매의 연관성이 확인된 바, 각 피해에 대한 지원기관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매뉴얼 등이 필요함. 따라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하는 업무 담당자들에게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수사기관이 초동수사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게 반드시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이 존재하는지 물어보고 수사하도록 실무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마. 부모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1) 부모교육의 강화

-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발생 후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전적 교육 및 예방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 본 설문조사 결과 가출경험이 전체 103명 중 87명으로 84.5%이고, 처음 가출 나이가 평균 14.4세이며, 만 13세 이하도 22명 있어서 초등학교 때 부터 가출하며 가출이 저연령화 되어가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특히 가출과 가정내 폭력(성폭력)의 연관성이 확인된 결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선책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가정 내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본 면접조사에서 업무담당자들도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사후적으로 부모교육을 시키는데, 부모교육은 사전적으로 필요함. 우리 부모세대들은 오히려 애들보다 교육이 덜 되어 있다”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2)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이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사회구성원 모두에

게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구청, 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예방, 감시, 보호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6기 1,000명을 모집하여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인터넷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와 함께 거리에 살포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신고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음. 서울시는 2012년 9월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물 규제처리를 협조하는 Hot-line을 구축한 바 있음.
-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이 2016년 구별 1개소씩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였음.
 - 2013년에도 전국 최초로 ‘주민 힘으로 지키는 여성안전마을’ 14곳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중랑구는 ‘초록상상’사업을 통해 다가구 주택 등 거주 지역 주변에 게임방, 주점 등 유흥업소가 많아 10대 가출 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구청·복지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하였음.
 - 강동구 ‘소냐의 집’에서는 성매매 집결지와 유흥업소들이 유치원, 도서관 등 아동들의 통학로에 인접해 있어 아동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역적 특색에 맞춰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여성폭력 예방 인형극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였음.
-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에서 자신의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게 아동·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네트워크 구축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임.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사이버 성매매 환경 대응방안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한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다른 성매매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처

음 성매매를 한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 또한 ‘스마트폰 채팅 앱’이 6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음. 업무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폰앱에 대한 규제’를 86.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인터넷 카페/채팅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 수단 조차 전혀 없는 실정임.
-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 첫째,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함. 제정될 법률은 우선 채팅 사이트나 채팅(영상) 어플리케이션, 개인 방송 등의 운영자가 성매매 정보의 알선과 성매매 조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성매매 알선세력이라는 전제가 분명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후 사이트, 어플, 방송 등 사이버 성매매 환경의 폐쇄와 동시에 반드시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 성구매자, 알선업자에 이르기까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 둘째, 사이버 상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IT 기술적 진보와 함께 사이버상에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 영역을 포함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현재 영국의 ‘아동 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
 - 셋째,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 발전시켜야 함.
 - 넷째,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령과 제재수단이 병행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그루밍법’과 네덜란드의 ‘10살 가상소녀 스위트’ 프로젝트는 시사점이 큼. 또한 신고의무자를 채팅 사이트나 앱 운영자까지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

제공이 발견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방송통신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KT나 SK 등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성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나. 성구매자와 알선 조직의 엄격한 단속과 처벌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은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들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와 착취를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었음.
 -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최대 ‘1회’ 34명(33.0%), ‘2회’ 33명(32.0%), ‘3회’ 14명(13.6%), ‘4~9회’ 15명(14.6%), ‘10회 이상’ 4명(3.9%)이 성매매에 이용됐고,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이용은 2.7회로 조사되었음.
 - 연령별로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횟수는 만 13~14세가 3.2회, 만 17~18세 3.0회, 만 15~16세 2.2회의 순이었음. 특히 하루 10회 이상이라고 답변한 아동·청소년은 4명으로, 그 중에 만 13~14세 1명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인 성매매를 위축시키기는 커녕 점점 확장시켜 갈 수 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현행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함.
-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성매매 상대방(성매수자) 부당경험이 알선자 부당경험보다 약 34% 높다는 것임.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알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매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 상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알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이라고 보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리하여 보호처분하고 있어 성구매자에게 흔히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과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형태의 법률로 개정되어야 하며, 처벌 또한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구속이 무서워서라도 범의를 상실시키게 하는 처벌이 되어야 함. 성매매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도 현행 만 13세 이하로 두

지 말고 피해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행해져야함.

- 미국의 경우,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나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음.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성매매범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점점 더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하루 성매매 횟수가 많다는 것은 조건만남의 형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알선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조건만남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으나 사실상 알선조직에 의한 성매매의 방식임을 인식하여야 함.

다. 업무담당자 인식 제고 및 처리 단계별 개선방안

1) 수사단계의 개선방안

- 수사기관의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시스템의 작동 및 홍보
 - 본 설문조사 결과, 아동·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모 또는 주변의 신고’(39.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단속’ 30.2%, ‘자수’ 24.5%,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 13.2%, ‘구매자신고’ 9.4% 등의 순이었음.
 - 여기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하는 구조요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거나 신고하였을 때 보호받을 수 없고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시스템의 작동 및 긴급구조시스템의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함정수사의 금지
 -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 실제 단속시기는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 4명(57.1%),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2명(28.6%), ‘모름/무응답’ 1명(14.3%)로 답변하였으며,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었다’는 응답이 2명(28.6%), ‘없었다’는 응답이 4명(57.1%), ‘모

름/무응답'이 1명(14.3%)으로 조사되었음.

-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단속된 경우에 대해 2명이나 대답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구매자로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될 사안임.
- 수사기관에서 합정수사의 대상을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로 해야 함. 만약 합정수사의 대상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정할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당한 피해에 대해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며, 움츠러든 상황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의 방황의 탓으로 돌리고 성매매알선자나 성구매자의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 없게 하는 근본이유가 되며, 위 실태조사에서 나온대로 경찰관들의 범죄양성을 부추기게 되는 것임.
-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제고 및 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 엄정 처벌을 위한 교육 강화
 -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 중에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취급을 한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13.2%, '조금 그렇다' 28.3% 등 '그렇다'는 응답이 41.5%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20.8%, '조금 아니다' 13.2% 등 '아니다'는 응답은 34.0%로 조사되었음.
 -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시하는 태도'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죄자 취급'이 34.0%,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와 '가해자와의 합의유도'가 각각 13.2%, '개인정보유포'와 '집으로 갑자기 찾아옴'이 5.7% 등의 순으로 조사됨. 35.8%는 '없음'으로 응답하였음. 눈에 띄는 점은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와 '사적 만남 요구'가 각각 1명씩(1.9%) 답변을 한 점임. 기타 답변으로 '감금' 1명(1.9%), '신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1명(1.9%)도 있었음.
 - 위와 같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수사기관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3명당 1명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 제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대상 교육이 필요함.

- 수사기관의 신뢰관계인 동석의 의무화의 현행법 준수 필요성
 - 수사기관에서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2.6%, ‘조금 그렇다’ 9.4%, ‘그렇다’ 34%, ‘조금 아니다’ 11.3%, ‘전혀 아니다’ 30.2%로 조사되었으며 5점 척도 평균은 2.83점이었음.
 - ‘성매매처벌법’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진술의 구체화를 위해 위 규정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함.
-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매뉴얼 제작
 -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초동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 영상녹화 조사, 변호사 선임 고지,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 등 피해자에 합당한 모든 조치를 받게 하는 내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2) 재판단계의 개선방안

-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법원에서 재판과정 중에 범죄자 취급을 한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10.0%, ‘조금 그렇다’ 30.0% 등 ‘그렇다’는 응답이 40.0%로 조사되었고, ‘전혀 아니다’ 20.0%, ‘조금 아니다’ 10.0% 등 ‘아니다’는 응답은 30.0%로 조사되었음. 법원에서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판사를 비롯한 법원관계자들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 모든 법원에 사건판결을 위한 매뉴얼 제작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모두 피해자로 인지, 증인 출석 최소화, 차면시설, 성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증인 보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체 법원에 매뉴얼 제작, 배포, 교육이 필요함.

3.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가. 기본정책 - 피해 청소년으로 인식 전환

- 현재 아동·청소년정책 업무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관련 정책은 청소년보호업무가 아니라 성매매정책업무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음.
-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성매매 피해지원 목적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목적부터 성인성매매 여성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성매매집결지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시작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알맞지 않음.

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정비

-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가출,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등 광범위한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청소년자립지원과와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또한 권익증진국에서도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는 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더 나아가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지원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사실상 청소년성매매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없다고

봐야 함. 다시 말해, 청소년성매매 문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임.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내 독립적인 부서가 설치되어야 함.

다. 전경·검 전담부서

- 경찰도 마찬가지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질서과에서는 업소 단속 중심의 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피해자들은 강력계나 형사과, 지능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성착취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과 실질적인 지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자들의 제대로된 수사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내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함. 전담부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라. 관련 지원시설 - 전담 지원시설 확충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문제임.
 -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은 다른 위기청소년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특수함.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지 못하면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의 성격 상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또다시 배제되고 주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름.
 - 첫째, 십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함.
 - 둘째, 성인 성매매는 주로 업소형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개인형이라는 점.
 - 셋째, 십대들은 성장 시기에 따른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 따라서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각각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리된 영역으로 보

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현실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매매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시설과 단체가 매우 소수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직면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발견, 주거, 교육, 의료, 법률, 상담, 자활’이라는 일련의 과정(continuum of care)을 포괄해야 할 것임.

1) 발견

- 무엇보다 성매매에 유입될 위험에 처해 있는, 또는 유입된 십대 여성들을 발견하는 것이 시급함.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발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매매의 특성을 반영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오프라인에서는 아웃리치를 통해, 온라인에서는 사이버상담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주거

-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는 2014년 현재 전국에 15개소로 서울 5개소, 부산·대구·경남 2개소, 광주·대전·전남·경북 1개소로 매우 적으며 그마저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질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3) 자활(일자리)

- 십대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임. 일자리 자체도 구하기 어렵거니와 일이 힘들고 돈이 적다는 점, 당장 돈이 필요한데 월급을 받으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임. 따라서 이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새날에 오면’에서는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와 같은 다양한 임금 제도, 유연한 노동시간, 일을 배울 수 있는 노동, 인턴십 나아가 직장으로의 연계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4) 교육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지향함
- 현재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10개의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성장캠프는 활동가들과 십대 여성들이 40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양질의 시간을 갖고 있음. ‘대상청소년’ 개념이 삭제되면 강제적인 교육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고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십대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들에게 탈성매매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센터의 명칭도 변경 가능할 것임.

○ 자립학교

-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은 대부분 가출 상태여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학교에서의 낙인 등으로 학교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음.
- 현재 서울에서는 노원과 마포 자립학교가 운영 중임. 검정고시, 인턴십, 경제교육, 진로탐색, 직업체험, 심리 및 정서적 자립 프로그램, 성매매 재유입 방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학업 능력도 천차만별이어서 이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수업이 거의 1:1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함. 따라서 학력 취득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자립학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함.

○ 의료

-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은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하고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하면서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음. 그러나 어리다는 이유로 막연히 건강을 자신하곤 하며, 설사 건강에 이상을 느끼더라도 건강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병원 진료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현재 서울에 있는 ‘나는 봄’이 유일한 십대 여성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임.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을 이해하는 의료진들로 구성된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법률

-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삭제되면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매우 감소할 것임. 그러나 성매매가 다른 범죄 행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또래 포주들이 발견되고 있음. 또한 개인형 성매매가 아닌 업소형 성매매에 유입된 피해 여성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 법률단이 꾸려질 필요가 있음.

○ 상담

-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 채널이 필요함. 상담소를 중심으로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상담이 가능해야 할 것임. 또한 상담소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 단계에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수적임.

○ 긴급 구조

- 성매매 과정 어디에서나 십대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 구조가 가능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를 성착취, 성폭력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 활동가 교육

- 아동·청소년 성매매 전문 활동가들을 양성해야 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함. 또한 자립학교 교사, 의료진, 법률단, 자원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해야 함.

○ 수요 차단

- 성구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병행해야 함. 사실 수요가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에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임.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증가할 수밖에 없음. 법률단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이고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거리, 학교, 직장에서의 성매매 방지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4. 법제 관련 정책 제언

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1)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불합리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대상이 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 경찰이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 의견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검사에게 송치하고(제38조제2항), 검사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법원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9조제1항). 결국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 죄를 범한 소년처럼 취급되어 국선변호사 선임지원에서 배제되며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원래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하려던 것이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의 성격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강함.
- 이 연구의 성매매 아동·청소년대상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보호처분을 ‘처벌’로 생각하는 것이 46.6%였고, ‘교육’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14.4%에 불과하였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위탁 외에 소년원 송치까지 있어서 성인 성매매자에 대한 보호처분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음.
-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 성매매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청법 제38조제1항), 이러한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해당 아동·청소년이 협박을 당하는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성매매처벌법’을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어 있고, 어떤 제제도 받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아청법에 의해 피해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모순이며, “대상” 개념을 삭제함이 타당함.

2)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합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아동·청소년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일반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고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는 판매자가 실무적으로 자발인가 비자발인가에 따라 자발적인 (여성)성판매자는 성매매자로 처벌되지만, 비자발인 (여성)성판매자는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되지 않음.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대상/피해로 구분하면서 대상자가 사실상 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라는 조치가 따른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 연구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정과 학교의 부적응 요소, 환경적인 열악한 요소, 성인 성구매자에 의한 폭행·협박 혹은 소위 ‘진상’들에 의한 시달림과 같은 인권침해적 요소는 심각함. 성인과 달리 일반적으로 제한된 의식주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원하였다고 하여 과연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성매매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대상/피해 혹은 자발/비자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법제도적·사회환경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염두에 두면 적절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함. 그러므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보호·지원에 중점

-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에서 피해자 중심적 대책에 상응하며, 피해자 개념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시설의 입소나 시설에서의 수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결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인권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임.
-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관련 실무자들에게 법적으로 성매매 유입경로 및 발달 민감성 특성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룰 때 절대 “작은 매춘부”로 여성 아동·청소년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여 피해자 중심적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으로 나가야 함.

나. 성착취 개념 정의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서 용어의 전환이 필요함. ‘매매’라는 단어는 아동·청소년이 성인을 성매매로 유인했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내포할 수도 있어 부적절함.
- 캐나다에서는 최근 20여 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새로운 법률 조항들이 만들어지면서, 먼저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매춘”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에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음.

- 우리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문제는 ‘성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다. 성구매자 처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량은 2000년 법제정시보다 매우 강화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특별형법의 엄벌주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낮은 수위의 처벌로 인하여 성인 성구매자들이 성매매의 단속 및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엄격한 처벌 규정 자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음.
 -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한을 상승시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의 관대한 처분으로 끝나지 않게 하자는 방안이 주장됨. 그런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의 의미를 가지므로 입법론적으로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느 나라이든 허용되지 않으며, 주요 범죄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음.
- 현재 우리 사회의 성구매자, 알선업자들은 평균 만 14.7세의 중학생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관련 범죄자 검거인원은 줄어들고 있고 2014년 성매수로 처벌된 건수는 385건에 불과함. 이러한 통계로는 당국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생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임.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 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 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기대효과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온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비중 있는 성매매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아동·청소년은 유해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가 언론에 의해 1997년 처음으로 소개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관련법을 제·개정하면서 청소년 성매매를 단속하고 성매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대응책이 있었지만,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폭력, 상해 및 감금과 같은 범죄와 적지 않게 이어지고 심지어 살해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고, 성매매 자체만 하더라도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는 일생을 거쳐 장기간 재난에 버금가는 인권 침해로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갈수록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방임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통탄할 일이며,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줄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절시켜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기존 성산업 구조에 끊임없이 공급원을 유입시키는 구조로 형성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채팅 앱은 성매매 알선의 주요한 형태로 대두되어 성매매 시장을 무한 확장시키고 연령 구별을 무의미하게 하면서 성인과 아동·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영업의 성행으로 성매매 유입 연령을 계속 낮추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늘어남에도 법제도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성매매가 성폭력에 비해 매우 관대하게 취급받는 것을 아는 성구매 남성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압적 성행위조차 용돈을 주고 성매매로 둔갑시키고 있고, 성매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서로 사랑했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여 범망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대상으로 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보호처분도 처벌의 개념으로 여기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꺼려하여 오히려 성인의 협박대상이 되면서 결국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환경이 다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의료적·정신적·경제적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이 이런 법적 보호를 기피하게 만들어 지원서비스에서 배

제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성인 성매매 방지는 사실 간단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에게까지 성매매의 마수를 뺏치는 것만큼은 아동·청소년의 인 권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 생애에 걸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대인 관계 손상, 자기혐오, 정신적 불안, 분열, 자살 시도, 임신과 인공유산,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과 연결되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 아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병들게 하므로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입 이후의 사후적 지원과 더불어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구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된 경로와 궤적을 조사하고, 성매매 노출 이후 아동·청소년이 접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정도나 역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관련 법제와 국제인권기준의 검토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환경, 인권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종합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와 정책방안 및 서비스지원시스템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과정의 단계별로 인권침해상황과 성매매 환경을 조사하고, 관련기관 및 시설,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문제를 인권적·젠더적·사회통합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및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을 각 장별로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내용 연구방법,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을 한다.

제2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현황과 특징,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외국입법례의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당사자(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자 103명)와 담당 업무 종사자(‘청소년 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종사자 25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1:1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시설종사자, 업무 담당 검·경찰 및 정책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20명) 및 결과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서비스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개선 및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나. 연구방법

1)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문헌연구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정책 및 법제를 검토하고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외 법제와 비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규제 현황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2)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환경 및 인권상황 조사

가) 설문조사

(1)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개인적 특성, 성매매 노출 전 가정 및 학업과 관련한 상황, 성매매 유입과정과 성매매 노출 이후 생활실태, 사회서비스 이용현황, 법률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관련한 인권침해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시설(쉼터) 14개소(총 정원 110명)를 중심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비입소시설인 자립학교, 드롭인센터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19세 미만의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한정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10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2)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유관기관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학교밖지원센터라 한다), Wee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련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 동안 업무담당자 251명에 대해 성매매와 관련된 인식과 인권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는 성매매에 이용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직간접적으로 성매매 노출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관련한 인식과 인권의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나) 면접조사

(1)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제공기관과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진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아동·청소년 전담팀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의 내담자, 아동·청소년성매매 지원시설(쉼터) 이용자 중에서 기관의 추천으로 15명 내외로 선정하여 1:1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성매매에 이용된 경로와 궤적을 중심으로 참여자 선정기준을 수립하였다. 세부 선정기준 결정에는 연령, 성매매 노출 전에 경험한 폭력의 형태, 학교생활 유지여부, 탈학교 기간, 집과 가출을 반복하는 경우와 가출팸 등 대안적 가족 혹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 알선조직과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 임신 출산의 경험 여부, 중장기 쉼터이용경험 여부, 보호처분 여부, 보호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경험 여부를 고려하였다.

심층면접내용으로는 성매매 이전의 생활상황, 성매매로 유입된 과정, 성매매 관련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이후 아동·청소년들이 접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정도나 역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또래와의 관계, 알선자와의 관계, 구매자와의 관계, 다양한 사회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인권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의 실무자 및 업무담당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성매매에 이용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설은 건강지원, 일시지원, 일자리지원, 학업지원, 상담지원, 생활지원의 형태로 구성된다. 이에 각 시설유형별에 따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및 검찰기관에서의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초점집단면접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및 경·검찰 업무담당자 등 총 20여명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면접내용은 서비스 제공방법, 인권의식, 현장에서의 딜레마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단계별 상담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현황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형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방안 등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 연구내용 타당성 검토,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학계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위한 회의를 하였다.

4)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십대여성인권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중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 10개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국의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안학교, 자활지원 센터 및 인턴십센터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협업연구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5) 공개 토론회 개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법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진이 발표하고, 연구내용에 대해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개선방안을 공론화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유입 양상도 개인적인 성매매 형태에서 조직적 알선형, 가출팸 형태의 또래포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분석이 미흡한 상태이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유입 시기가 저연령화되고 있어 특히 조기발견과 구조, 치료, 유입 방지 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환경조사와 인권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조사 및 실태조사(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개진하려고 한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들의 인권과 성매매 유입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십대여성들의 인권 침해 사례연구에서 십대여성들이 왜 성매매를 하게 되는지, 성매매를 하면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강제가 없으니 곧 자발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우리 사회가 십대여성들을 방기하고 있고,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하는 십대 여성들의 증가 및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으로 십대 여성의 성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십대 여성들은 성인 남성들로부터 다루기 쉬운 대상으로 간주되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행위 요구 및 피임 문제 등에서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폭언과 폭력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의 위험을 반복 경험하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포주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에 대해 논하고 있다(김연주, 2011).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가출이 장기적이고 상습적이게 되면서 가출 청소년들은 왜곡된 성을 접하게 되고 성폭행을 당하거나 생존을 위해 성관계,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혜원, 2011), 최근에 스마트시대가 열리면서 이것이 청소년의 성매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십대아동의 성상품화 영상물 규제강화, 사이버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상호공조강화, 청소년 성적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등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성윤숙 외, 2014).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문제를 공간과 관련하여 연구한 서울시 연구보고서는 여자청소년이 가출 이후 주거지가 변동되고 생활양식 전반이 변화되는 ‘공간이동’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지역 이동 및 생활공간 이용 측면에서 폭력피해 실태를 파

악하였고, 가출한 여자청소년 중 성매매 유입율이 18.3%로 낮지 않아 이들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과 더불어 가출 여자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지역 사회 중심의 새로운 공간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윤혜린 외, 2015).

강지명(2013)은 현행 성매매 정책에서 아동·청소년의 특성의 반영유무가 정책평가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출 후 생존을 위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나 가출을 하지 않고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유형도 나타나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성매매가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의 증가,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 그리고 죄의식의 약화, 성매매의 조직화, 가출팸과 또래포주의 등장이 최근 성매매의 변화된 특성이라고 보여진다(이유진 외, 2013).

십대 성매매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보호요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정혜원, 2011). 이와 더불어 탈성매매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그리고 재유입 청소년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을 개인적 요인, 성매매관련 요인, 관계적 요인, 시설요인으로 나누어서 제안한 연구, 여자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홍봉선, 남미애, 2009; 이선희, 2009).

기존의 연구물들에서는 성매매에 이용된 십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특징이나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간문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십대여성들이 처한 환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분석이나 연구를 행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십대여성들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환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이러한 업무를 하는 현장조사자, 경·검찰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초점심층면접조사 등을 통해 십대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단계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인권적·젠더적·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고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4. 기대효과

이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조사 및 인권상황 조사를 통해 인권개선 및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국내·외 관련 법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당사자 등

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관련 현행법 개정안 도출 및 향후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행 관련 법제의 체계화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입법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및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현황 및 법제도 분석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정책 및 피해지원 현황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와 문제점
3.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 입법례
4. 소결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정책 및 피해지원 현황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그에 대한 정책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최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초기 경로의 대부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과거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형태가 업소형이었다면, 현재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형태는 사이버 상의 조건 맞춤을 통한 1:1 거래 형식을 띠고 있는 등 그 형태가 변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범죄 조직에 의한 알선이 조직적으로 개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 단속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3월 성매매에 이용되고 살해된 서울 관악구 14세 소녀 살해사건의 경우에도 성인 남성 알선업자 3인이 사이버 상에서 조직적으로 조건만남을 알선했음을 볼 때, 최근 사이버 상의 조건만남은 알선업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십대 소녀들이 알선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¹⁾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개인 간 거래 형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재 경찰단속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과 업소를 가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변인들과 관련자들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점, 여성과 장소 등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성매매수시 성매매대상자 주변에 아무도 개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성구매자에게 훨씬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성매매가 개인 간 합의된 거래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의 성매매는 성매매수자에게 성매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면서 욕구를 해소할 수 있으며, 업소형 성매매 여성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고 저연령의 여아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일차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조금 더 진화되고 전문적인 유흥업소로 다시 손쉽게 유입되며 그 속에서 극심한 성매매

1) 이들 성매매 알선자 3인은 인터넷사이트에 가출소녀들을 대상으로 구인광고를 내고 면접을 본 후 전국을 돌며 아동·청소년들을 이동시키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갈취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살해된 소녀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고 자신들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였지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해를 입게 된다.

나) 아동·청소년의 가출로 이어지는 성매매

가출한 아동·청소년이 거리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 가출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숙식 제공, 가출팸 모집 등의 글을 접하면서 이들의 취약한 환경은 성매매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2015년 「가출 여자청소년 공간이용 및 폭력 피해 실태」 보고서(윤혜린 외, 2015)에 의하면 경찰에 신고·접수된 가출 청소년(9세~19세 미만)은 2014년에 23,605명이었고, 이 중 여자 청소년은 약 57%였는데, 실제 가출 청소년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언론보도와 연구자료(성윤숙, 2010)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이 20만 명에 달하고 가출한 여자 청소년 7~10명 당 1명꼴로 성매매를 한다고 한다.²⁾

아동·청소년의 가출원인은 매우 복잡적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가족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청소년 가출의 원인 중 가족의 폭력이나 폭언이 63.8%로 가장 많았다.³⁾

가출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 218명 중 18.3%인 40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 연령대인 14~16세가 성매매 경험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어린 나이에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빈곤, 학교부적응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가출하는 아이들은 합법적인 노동이 제한된 현실에서 성매매 제안에 응하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대안적인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⁴⁾

가출팸의 증가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길에서 생존해야 하는 아이들은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집단을 결성하게 되며, 가출팸 등의 형태로 안전과 서로간의 공감, 지지 집단을 형성하지만 이 집단 안에서 다시 성매매 강요 등을 당할 위험이 높다.⁵⁾

2) 헤럴드 경제(2014. 8. 18), “가출청소년 연 20만명 방황... 가출 소녀 50% ‘성경험’” 보도 참고.

3) 윤혜린 외(2015), 「가출 여자청소년 공간이용 및 폭력 피해 실태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참고.

4) 정혜원 외(2011a),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 한국여성인권진흥원 99면; 정혜원 외(2011b),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I)」, 한국여성인권진흥원 77-78면.

5) 윤혜린 외(2015), 위의 보고서(주 3), 131면.

조건만남 성매매 경험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아이 중 일부는 가출팸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자기 세계를 성매매로부터 번 돈으로 구축하려고 하며, 20세 이후 유흥업소로 취업이 가능해지면 유흥업소 성매매를 전업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성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 소비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이 가출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서, ‘생존’이 아니라 ‘소비’를 위한 성매매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었더라도 이후에는 돈을 빨리 벌수 있다는 성매매의 특징 때문에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생존과 무관한 소비를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모에게 받는 용돈으로는 십대들의 놀이, 연애, 외모, 여가 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동시장은 진입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집에 살고 학교를 다니면서 성매매를 통하여 소비활동을 병행하고 싶어 하는 십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⁶⁾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저연령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새로운 현상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저연령화가 두드러진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초기 연령은 더욱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⁷⁾

한국사회에 만연한 십대 여성의 대상화와 상품화는 성구매 남성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을 희석시키고, 일부 성인남성들의 어린 여성과 순결에 대한 집착은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연령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마)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족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검거인원은 3,701명인데 구속율은 1.9%에 그쳤고, 더욱이 청소년성매매사범의 대부분은 존스쿨 이수 등으로 기소유예에 되고 있다.⁸⁾

6) 김연주(2015), “성매매 피해 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 개선방안”, 「청소년 날다시일으키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3면.

7) 서울시의 연구(윤혜린 외, 2015)에 의하면 가출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 중 처음 성매매에 유입된 연령은 평균 14.9세였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이용된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자임에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고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면서 아이들에게는 처벌로 인식되고 성인들은 그것을 협박과 강요의 빌미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아동·청소년들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현행법에 호소하기보다 알선업자의 지배를 보호로 생각하여 이에 더욱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도 성매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나, 또래끼리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으므로 보통 막노동, 절도, 성매매 등으로 생활을 유지한다. 그 중 성매매가 짧은 시간동안 큰돈을 벌 수 있고 신고 당할 위험이 적다고 여겨지고 있다. 결국 가장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환경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책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총괄적인 성매매 정책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특별히 취급하게 된 것은 2000년 2월 3일 행정자치부 소관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성매매는 처벌위주로 규제되었다. 그러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성매매여성의 관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2004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성부에 의해 피해자지원을 포함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이 확정 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여성부의 총괄적인 성매매정책 가운데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구매자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처벌과 성매매 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구매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성매매관련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정책은 관련법의 개정과 더불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성매매를 처음으로 특별히 취급했던 2000년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2009년 6월 9일 전부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2016년까지 16년 동안 31회의 개정을 거쳤다. 그 동안 동법의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바뀌었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의 흐름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8) 김연주(2015), 위의 자료집(주 6), 34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총괄적 성매매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성매매 예방, 성매매 피해자보호 및 법규정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지자체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점검 체계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집행으로 성매매방지 및 관련법령 보완 정비, 성매매방지 홍보와 왜곡된 성문화 개선 및 대상별 성매매 예방교육의 활성화는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행하고 있다. 성매매 예방과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특별히 다루는 과제가 없는 것은 안타깝다. 사실상 전반적인 성매매의 예방정책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의 인권침해 및 해악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예방의 비중을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두는 것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성매매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 인프라 강화, 탈성매매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외국인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이 행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영역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 보호와 지원강화를 위한 과제를 별도로 두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의료·법률자문 지원 강화, ②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③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차단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 법규정의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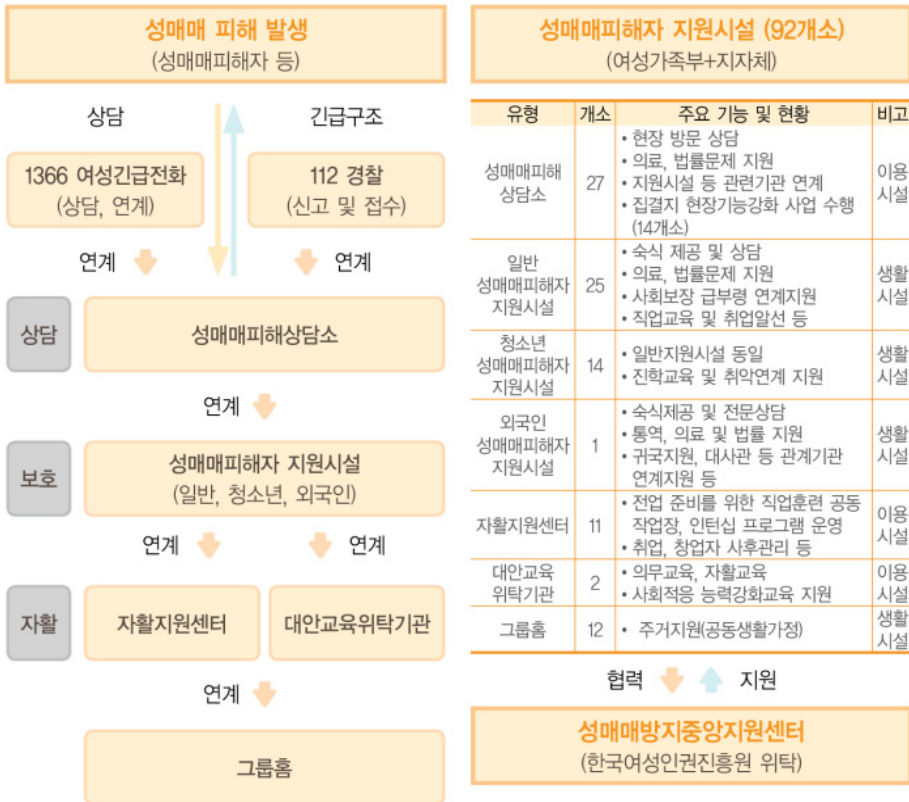
법규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성매매관련 수사역량 강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 추진,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청소년 고용업소 점검 및 청소년성매매, 휴대폰, 인터넷 상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도단속 강화, 해외성매매 방지 강화,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구매자 처벌 강화 등의 과제를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매매 단속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① 청소년 고용업소 성매매 범죄 점검·단속, ② 청소년성매매 알선 근절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단속과정이 여성가족부만의 업무로 되어 있어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경찰청과 법무부와의 협력은 오히려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과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현황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피해지원 체계는 성인에 대한 것의 일부로 운영되는 모습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립·자활 지원, 성매매 재유입의 방지를 위해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이 운영되었고, 그 업무과정 속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 확대되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전달 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전국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92개인데 그 중에서 14개의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2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만이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전담시설에 해당된다.
- 14개의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는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보호·상담 제공하고, 의료·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등을 지원한다. 입소기간은 원칙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이며, 2년의 범위 연장이 가능하다.
- 2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는 기존의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소외된 성매매피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제도권 교육과 연계하여 위탁교육 형식으로 의무교육 제공 및 다양한 학습 기회를 지원한다.

<표 II-1>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 현황 (16.1 기준)

계/구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 센터	상담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일반	청소년	외국인				
92개소	25	14	1	12	11	27	2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표 II-2>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지역별 현황(16.1.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11	5	3	1	2	2	1	3	1	-	1	1	2	2	3	1	39
일반	6	3	2	1	1	1	1	3	1	-	1	1	1	1	1	1	25
청소년	5	2	1	-	1	1	-	-	-	-	-	-	1	1	2	-	14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위험노출 또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유입방지 전문교육을 하는 곳으로 전국 11개소가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는 ‘청소년성장캠프’ 40시간을 통해 심리진단, 자아존중감, 탈성매매,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성장캠프’ 이수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키움과정’ 20시간을 통해 직업, 자활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3> '청소년성장캠프' 위탁기관('16.1 기준)

지역	위탁기관
중앙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인천	인천성산사랑의집
경기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강원	춘천길잡이의 집
대전	대전광역시여자청소년쉼터
대구	대구여성회
광주	광주YWCA
전북	전북여성인권진흥센터
서울(지적장애)	평화의샘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청소년쉼터는 2015년 현재 전국 119개가 있고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지원된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지원시설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특별한 지원이 어려운 점이 있다.

<표 II-4>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시쉼터	10	10	13	21	22	26
단기쉼터	49	48	49	50	50	52
중장기쉼터	24	25	30	32	37	41
계	83	83	92	103	109	119

출처: 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백서

<표 II-5>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백만원)	5,874	6,262	7,287	8,137	8,710
쉼터 수(개소 수)	83	83	92	103	109
이용인원(연 인원)	267,117	400,533	405,204	455,219	584,510

출처: 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백서

- 성매매피해상담소는 2016년 1월 현재 전국 27개가 있지만, 아동·청소년 전담시설은 아니다. 상담소에서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와 상담, 쉼터와 자활지원센터 등의 연결, 의료지원 및 선불금문제 해결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전담상담소로는 전문상담소 기능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유일하며,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청소년성매매 전담실을 두고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청소년성매매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 010-5703-1318, 010-3232-1318
 KakaoTALK ID : cybersatto, seoulcenter1318
 NATE ON ID : cybersatto@nate.com
 이메일상담 : 10up@hanmail.net

다시함께상담센터 ‘청소년성매매 특별전담실 원넷’

 전화상담 : 02-3280-5008
 KakaoTALK ID : 원넷
 사이버상담 : dasihamkke@kakaotalk, dasihamkke@nate.com
 이메일상담 : dasihamkke@hanmail.net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와 문제점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련 법률들은 각각 소관부처가 다르다. 즉 ‘아청법’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성매매 처벌법’은 법무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여성가족부의 권익지원과를 소관으로, 소관부처만 보더라도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관련 규정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성구매자에 대한 높은 법정형과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분리, 대상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함께 다루고 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아청법’ 제2조제4호).

‘아청법’ 제13조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제15조에서는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2)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구별

‘아청법’은 정의규정 제2조제6호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을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7호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을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개념상 구분하고 달리 다루고 있다.

규정의 내용상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제38조제1항)함으로써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부과될 수 있다. 즉 검사는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제39조제1항), 피해아동·청소년과 달리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이는 아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것이다.

*대상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공개

‘아청법’ 제49조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등록정보의 공개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성매매 범죄자관련해서는 동법 제 49조 제1항 3호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정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2004.3.22.제정, 2004.9.23.시행)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그 제정 이유이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보호법’(2004.3.22.제정, 2004.9.23.시행)은 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여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제정이유이다.⁹⁾

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나. '성매매처벌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1) '아청법'의 우선 적용

성매매처벌법 제5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4호 다.항에서는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에 알선·유인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1)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제2호에서는 청소년 지원시설에 대해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2)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지원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담소 관련 규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담소에서 성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해 모두 지원하게 하고 청소년에 특화된 청소년 상담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의 특징과 문제점

성인 성매매정책과 차별되어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으로는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처벌,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 구별이 있으며, 그러한 특징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1) 성구매자처벌의 법정형은 강화, 실제 처벌은 경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량은 2000년 법제정시보다 매우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서 현재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상승되었다(‘아청법’ 제10조제1항).¹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는 법제정시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현재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되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현재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개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특별형법의 엄벌주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아청법’ 제11조 및 제12조).

일부규정의 엄격한 법정형에 대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위헌제청이 있었으나 합헌결정이 있었다.¹¹⁾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서의 문제점은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성매매

10) 그에 반하여 성인 성매매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과료)로 경미하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

11)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1헌가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에서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4.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는 내용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의 단속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단속이 되어 성인 성구매자가 법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형에 비하여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데 있다. 낮은 수위의 처벌로 인하여 성인 성구매자들이 성매매의 단속 및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엄격한 처벌규정 자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아래의 판결 예를 보면 얼마나 실제 선고형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9.2.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

피고인 1은 2008. 10.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4세)에게 사귀자며 접근한 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모텔’ 210호실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장기 투숙하면서 ‘버디버디’라는 채팅사이트에 “안산 만남하실 분, 15녀”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이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조건합니다. 나이 15살, 키 155, 몸무게 45, 1시간 15만 원, 2시간 25만 원, 횟수 제한 없구요, 사진 없구요, 짱 귀여우니까 걱정마셈”이라며 채팅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이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같은 동에 있는 ‘매가박스 12’ 극장 앞에서 만나게 한 뒤 위 ‘중앙모텔’로 함께 가 화대 명목으로 1시간에 15만 원, 2시간에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08. 12. 16. 16:00경 위 ‘중앙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위의 사안에서 실제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내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1은 만 25세의 성인임에도 가출 청소년인 공소외 1을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아니한 만 14세에 불과한 공소외 1로 하여금 속칭 ‘원조교제’를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소외 1이 남성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 1이 관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 1의 행위로 인하여 앞으로 공소외 1이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1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서로 교제를 하고 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강제로 속칭 ‘원조교제’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1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한다. 전문에 피고인 1의 나쁜 죄질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없고 뉘우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낮은 양형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경우 영업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알선의 경우는 7년이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제15조제2항 3호),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판결한 것은 매우 가벼운 처벌이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아청법’(알선영업행위 등)으로 하여 처벌하면서도 집행유예의 판결에 그친 점에서 낮은 형량으로 문제 있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알선된 14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피해자 개념이 아닌 공소외 1로 지칭하였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제1항 4호 다목을 보면,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성매매에 알선·유인된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서도 성매매 피해자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2)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성매매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2009. 6. 9. 개정에서 신설규정을 두었다. 말하자면 성매매를 하기 전 단계에서 유인 혹은 권유한 정도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관련 판례를 보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런데 ‘아청법’ 제2조제6호는 “피해 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¹²⁾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고 하므로, 성매매자가 제13조제2항의 ‘권유’로 처벌될 경우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된다. 그러나 ‘권유’를 넘어서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 성매수자는 제13조제1항을 범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니라 ‘대상자’가 된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 :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갑(여, 16세)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갑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

12) 피해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 치사’,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매매유인권유’,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죄의 피해자가 될 때이다.

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례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권유를 받으면 피해자이고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권유를 넘어서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사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사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제13조 제1항 성매수자의 상대방을 굳이 ‘대상자’로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와 ‘대상자’로 구분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모순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성매매의사가 있는 자발적 아동·청소년을 대상자로 구분지우고 그들에 대해 보호처분 하고자 한 정책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연관된 모든 경우를 미성숙한 발달단계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으로서의 피보호자가 아니라 ‘피해지원의 대상’으로서 보호받아야 피해자로 본다면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자발성’ 여부를 떠나서 ‘성착취’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대상 아동·청소년 문제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분류하는 용어로,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에서부터 소년원 수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명칭상의 ‘보호’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중첩될 수 없는 용어이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¹³⁾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라는 구금까지 포함하고 있는 보안처분이다. 또한 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시설의 입소나 시설에서의 수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인권피해자가 될 수 있다.¹⁴⁾

따라서 현행법상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4) 성매매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문제

‘아청법’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가할 수 있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그것은 처벌로 다가오므로 아동·청소년들은 성구매자를 신고하지 못한다. 남성 성구매자들은 너도 처벌(보호처분)될 수 있다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고리에서 놓아주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삼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동·청소년들은 성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모두 피해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다고 보인다. 아래의 판결은 성매매된 아동·청소년의 보호처분 예이다.¹⁵⁾

범죄사실 : 피의자 000(1996년생). 피의자는 2013. 8. 중순경 인터넷 약녀알바라는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업주 황00와 남자 손님 1명당 1시간에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었다. 피의자는 2013. 8. 22. 경부터 단속시점인 2013. 8. 29. 경까지 위 성매매장소인 00000텔 00호에 상주하면서 업주 황00에게 현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13) 의안번호 14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참조.
 14) 강지명(2013),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7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168면.
 15) 00가정법원 2013푸000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4.1.8. 결정.

성매매를 하는 등 하루에 1~3명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주문

-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OO, 모OO의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8개월 안에 OOOOO에서 4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 부OO 모OO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OOOOO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2조의 2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성매매 알선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 ‘피의자’개념을 쓰는 등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 다목에 규정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으로 현행 법률상 명백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범죄자로 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5)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아닌 성폭력으로 규명해야 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법 2009.2.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

피고인 2는 2008. 12. 1. 19: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버디 버디’라는 채팅 사이트의 “안산 만남하실 분, 15녀”라는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주겠다고 피해자 공소외 1(14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뒤늦게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화대를 먼저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막 으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병신아, 좆 까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강제로 손을 잡아끈 뒤 “나는 경찰이다. 너 같은 가출 청소년을 잡는 경찰이다. 교도소에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하고 가라.”라고 위협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위의 사안에서 실제 판결은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결문을 보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2는 만 23세의 성인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과 속칭 ‘일

조교제'를 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2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해자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2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하였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간간 등으로 처벌하면서도 집행유예의 판결에 그친 점에서 낮은 형량으로 문제가 있다. 피고인 2에 대한 형량은 너무나 낮으며, 성매매로 시작된 경우라고 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 의문이며,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여 성폭력에 이른 사례로 성매매와 성폭력이 아동·청소년의 경우 더욱 구분되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이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와 성폭력을 성착취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 입법례

가. 성매매 관련 국제 협약¹⁶⁾

1)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 정서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nd Final Protocol”은 매춘행위와 매음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치 않으며 또한 개인과 가정 및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며, 부녀자매매 금지 등을 규정한 협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국회비준동의를 거쳐 1962년 5월 14일부터 협약이 국내에 발효 중이다.

16) 정현미(2013), “성매매방지정책의 검토와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12면.

2)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은 1979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성차별에 대한 대표적 국제협약으로 1981년 9월 3일에 발효되었으며, 여성인신매매와 성매매 억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이다. 협약 당사국은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최소 4년에 한 번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3)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의정서

유엔에서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의 폐해와 각국 정부의 공동 대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제노동, 노예제, 준노예적 관습에서 비롯된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일체의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최초로 형성됐다. 이 의정서는 각국 정부의 대응이 예방(Prevention), 범죄자 기소(Criminal Prosecution), 피해자 보호(Victim Protection) 등 이른바 '3P'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인권 NAP 권고 내용 및 평가

제 1기 인권 NAP 권고의 핵심 추진과제 중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안 마련'과 관련된 내용은,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여성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근거법령을 마련하며,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유사성매매업소 등 현행 법령으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신종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성차별·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보호·치료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매매자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살펴보면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보호 부분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에 관한 국민의식 개선,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등은 성실히 추진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성매매산업의 규모가 확대

되고 성매매의 비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목표와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¹⁷⁾

그 후 제 2기 인권 NAP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추진과제로 유사 성매매 처벌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재권고 하였다.¹⁸⁾

5)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b) 아동을 성매매나 기타 위법한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의 제2선택의정서 제2조는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을 금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아동성매매는 보수나 다른 댓가를 받고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 아동음란물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 아동에 대한 표현이나 주로 성적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의미한다.

제3조 제1항 (b) 아동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 획득, 조달 또는 공급하는 행위, (c) 제2조의 아동음란물을 생산, 배포,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및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소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택의정서에서 아동성매매는 보수와 다른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대가는 돈 뿐만 아니라 상품, 서비스 또는 기호품을 의미하고 음식이나 숙소 또는 약 등 필수품을 교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선택의정서에는 아동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만 18세 이하로 해석한다. 성매매가 불법이 아닌 국가에서는 종종 16,17세 아동들의 성착취가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불법인 국가에서는 범법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동 선택의정서 제8조 제1항에서는 당사국이 모든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동 의정서에서

17) 국가인권위원회,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45-47면.

18) 국가인권위원회,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50면.

금지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a) 피해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특히 증인인 아동에게 필요한 특별한 요청에 따른 적절한 절차 수정, (b) 피해아동에게 권리 및 역할과 절차의 범위, 시기, 진행상황 및 사건처리고지, (c) 아동의 개인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있어 피해아동의 견해, 요구 및 관심사를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청취하고 고려할 것, (d) 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지원 서비스 제공, (e)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신원보호와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방지를 위한 국내법적 조치, (f) 협박과 보복으로부터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증인의 안전보장, (g) 사건의 처리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상 제공명령 또는 판결집행의 불필요한 지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제도상 대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일하는 사람이 특히 법적·심리적 훈련과 같은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에게 사회복지 및 신체, 심리적 회복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 아동이 법적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차별 없이 적절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9조제3항, 제4항).

나. 미국

1) 18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2011년에 발간된 미국의 『아동 거래에 대한 복지적 대응책 수립(Building Child Welfare Response to Child Trafficking)』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 수는 한 해 약 29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간주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1년 3월 16일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법(Domestic Sex Trafficking Deterrence and Victims Support Act of 2011)”을 발의하였다. 2000년에 이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청소년 성보호 대책을 강화하고자 최근 보다 강력한 새로운 법안을 2011년에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 새로운 법안(S.596)은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철저하게 성 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경미한 수준의 형사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각 주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시각과 연방의 입장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다. 즉, 두 입장 모두 미성년자 성매매 대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성매매 행위는 성인 여성의 성매매와는 완전히 다르게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적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의 2011년 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 그 아동·청소년을 일반 비행청소년이나 성인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특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온전한 범죄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어떤 전통적인 형사처분도 내리지 않게 하는데 2011년 새 법안의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성 착취 피해경험에 대해 개별 상담치료 및 지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사례관리(case management)방식으로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⁹⁾

2)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 방향

미국에서는 2000년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제정한 이후,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UN이 TVPA를 근간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성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프로토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을 개발해 오면서 미국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일명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로 불리는 이 정책은 미국 정부의 성매매 정책을 크게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 3P 전략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첫째, 아동·청소년 성 착취 행위 예방(Prevention), 둘째, 성 착취자 기소(Prosecution), 셋째,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Protection)로 요약된다. 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3P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아동·청소년성매매 대책이 주로 피해자에 대한 개별화된 욕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성매매 여자 청소년이 인구사회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빈곤 가정 출신인 경우가 많고, 비자발적 가출을

19) 이유진 외(20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6-97면.

한 경우가 많아 성매매 이전의 복잡한 문제 환경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²⁰⁾

3) 지원기관: 실종 및 착취아동신고센터(NCMEC)

아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가운데 하나인 ‘실종 및 착취 아동신고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는 1984년에 미국 버지니아의 알렉산드리아의 외곽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기구이다. NCMEC의 임무는 아동 유괴와 성적 착취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이 실종 아동 찾기, 유괴 아동 피해자와 성적 착취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는다. NCMEC는 지금까지 670,500개의 아동 성착취 보고서를 처리하면서 256,386명의 법무성 직원과 관련 전문가들을 훈련시켰다. NCMEC는 미국 내 유일 무이한 기관으로, FBI의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국가법집행통신시스템(NLETS), 연방아동지원서비스(FPLS)19)에서 제공하는 실종 명단, 수배명단과 미확인 명단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아동보호 비영리 기구이다.²¹⁾

다. 캐나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캐나다에서는 최근 20여 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새로운 법률 조항들과 성매매 피해자지원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매춘”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에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²²⁾

캐나다 연방형법의 18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조항은 18세 미만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 혹은 전부에 의존하여 사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제 212조 (2)항), 이를 지원, 교사, 강요하거나 폭행, 협박한 경우 5년 이상 14년 이하 징역에 처함(제212조 (2.1)항), 성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보수를 얻거나, 보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18세 미만자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

20) 이유진 외(2013), 위의 글(주 19), 108면.

21) 성운숙(2010),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여성과 인권』 제3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6-47면.

22) 이유진 외(2013), 위의 글(주 19), 136면.

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제212조 (4)항).²³⁾

또한, 캐나다 형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 그 연령이 너무 어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동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나이에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5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성 행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성매매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그리고 착취적 관계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보여준 성 관계에 대한 동의도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²⁴⁾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정책 및 관련 활동²⁵⁾

가) 성매매 예방 활동

캐나다의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정책은 일반 시민과 학교 선생님, 부모 및 보호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초기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해 캐나다 아동보호 센터(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를 통한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왜곡된 성 인식 변화 캠페인과 미디어에 의한 과장된 성산업 변화 활동 등을 강조한다.

나) 성별근거 분석 시스템

캐나다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의 개인 욕구에 적합한 개별화된 처우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정책적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성별 근거분석(Gender-Based Analysis: GBA)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때 피해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사례관리 방식을 강조한다.

다) 국가 아동착취조정센터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아동착취조정센터(National Child Exploitation Coordination Center)”를 설치하

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2),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매매 관련 법정책 및 실태, 2012.12, 75면.

24) 이유진외, 위의 글, 138면.

25) 이유진외, 위의 글, 150-151면.

여 이 기구를 통해 형사사법기관에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보다 원활히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라. 스웨덴

스웨덴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판매 여성을 남성의 욕구와 사회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성매매 관련 법률제정을 시도하여 1998년에 “성적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특징은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사려고 시도하는 행위(미수)를 금지하는 것이며, 이른바 ‘선택적 비범죄주의’ 입법형식으로 세계적으로 스웨덴에서 처음 시도된 특이한 케이스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호객행위에 대한 벌금 등의 각종 처벌을 삭제하는 대신 구매행위를 한 남성에게 대해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성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타인의 성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으며, 성을 파는 사람은 매매를 통해 의존관계(종속관계)에 처해지게 되므로, 성 구매자와 판매자를 동일한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에서 나온 정책이었다. 당시 사회적인 반감이 극심했지만, 법안 통과 후 스웨덴은 대대적인 교육 캠페인을 통하여 성을 구매하는 것은 곧 불법적 범죄행위임을 각인시키는데 주력하여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이 법은 일반적인 성매매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노상이나 마사지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매매에 적용되고 있다.²⁶⁾

이처럼 스웨덴은 유럽에서 일관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사회에 해악을 주는 것으로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이며 여성과 아동의 인간존엄을 해치는 것으로서 양성평등에 반하며 남성들이 여성과 아동을 성매매의 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한 양성평등은 도달될 수 없다고 한다. 스웨덴 금지주의의 특징은 성매수자와 성매매알선자는 처벌하나 성매수의 상대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인데, 성매수의 상대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들 여성 혹은 미성년 여성(아동·청소년)을 남성 매수자에 의한 폭력과 억압의 희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성판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성매수자에 대한 낙인으로 변환시키고 있다.²⁷⁾

26) 김학태(2008),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2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98-99면.

27) 신옥주(2013), “성매매 규율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 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38면.

4. 소결

-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대체적인 특징은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의 급증, 가출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환경 및 가출팸에서 비롯된 성매매의 연결, 생존이 아닌 소비를 위한 성매매의 경향,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저연령화 등으로 기술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사이버 상의 조건만남 같은 형태로 변화되고 다양한 유입경로에 의해 증가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응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은 현실적인 한계이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성인 성매매를 포함한 총괄적 성매매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성매매 예방, 성매매 피해자보호 및 법규정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보호와 법규정 집행 과제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과제가 책정되어 있지만, 성매매 예방과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특별히 다루는 과제가 없는 것은 안타깝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의 인권침해 및 해악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예방의 비중을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두는 것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예방정책은 어떤 경우여라도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의료적·정신적·경제적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이 이런 법적 보호를 기피하게 만들어 지원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는 독자적·전문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청소년복지와 성매매 피해지원 내에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 성보호, 성매매방지 등으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 지원의 현황을 보면, 전국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92개인데 그 중에서 14개의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2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만이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전담시설이다. 청소년쉼터와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지원시설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특별한 지원은 어려운 점이 있다. 증가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전담 성매매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확충과 지원이 시급하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관련 법제에서 나타난 특징은 성구매 및 알선행위에 대한 무거운 법정형,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

년의 구별로 설명되는데, 그러한 특징 속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서의 문제점은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성매매의 단속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단속이 되어 성인 성구매자가 범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형에 비하여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문제가 있다. 둘째, ‘아청법’에서는 피해자와 대상자를 구별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빌미로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협박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한다. 셋째, 성매매 정책은 성인 성매매 피해를 중심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아동·청소년성매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독자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시각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삼아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철저히 성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스웨덴은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선택적 비범죄주의’ 입법 방식을 취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여성과 아동은 남성에 의한 폭력과 억압의 희생자로 간주한다. 이렇듯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보는 외국입법례의 경향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에서 정립해야 할 기본적인 시각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2. 아동·청소년 조사 결과
3.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현황과 환경, 인권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종합적인 인권개선 법제, 유입예방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조사개요

설문조사는 두 종류이며, 그 대상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103명과 관련 업무 담당자 251명으로 각각 2016년 8월 11일부터 9월 9일, 2016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총 139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자 나이 19세 이상인 5부와 응답내용부실 31부를 제외하여 총 103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면접조사 및 우편조사, 업무담당자의 경우 팩스, 이메일 혹은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III-1> 조사개요

구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조사대상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
조사방법	■ 면접조사/우편조사	■ 팩스/이메일/우편조사
조사지역	■ 전국	■ 전국
분석사례수	■ 103명	■ 251명
조사기간	■ 2016. 8. 11 ~ 9. 9	■ 2016. 8. 11 ~ 9. 7

다. 응답자 특성

아동·청소년의 대상 설문조사는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관련법의 연령에 따라 19세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 103명의 연령은 만 13에서 14세까지가 11명, 만 15세에서 16세까지 40명, 만 17세에서 18세까지가 52명이었다. 조사대상을 19세미만의 여성 아동·청소년 중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였다.

지원시스템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견도 어렵지만 짧은 조사기간 안에 실태조사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사대상자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생활시설), 상

답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은 서비스시스템 내에서 들어와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학교밖 지원센터, Wee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련 있는 종사자 251명에 대해 행하였다.

<표 III-2>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N	%
[전 체]		103	100.0
연령	만 13~14세	11	10.7
	만 15~16세	40	38.8
	만 17~18세	52	50.5
학교 재학 여부	학교다님	62	60.2
	학교다니지않음	41	39.8
기관명	서울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씨튼해바라기의 집	2	1.9
	서울 위기청소년지원시설 우리들 쉽자리	3	2.9
	서울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새날에 오면 인턴십센터	2	1.9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 나는 봄	3	2.9
	대구 위기청소년지원시설 수지의 집	3	2.9
	부산 청소년지원시설 웨슬리마을 신나는 디딤터	7	6.8
	전남 여자청소년생활 시설 헤아림	9	8.7
	경남 여자청소년 지원시설 범숙의 집	10	9.7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4	3.9
	울산 성매매피해 상담소	6	5.8
	춘천 길잡이의 집	4	3.9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2	1.9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5	4.9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십대여성인권센터)	7	6.8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	19.4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사)대구여성회)	2	1.9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사)인천여성의전화	6	5.8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광주YWCA)	3	2.9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5	4.9

<표 III-3>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N	%
[전 체]		251	100.0
소속기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40	15.9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11.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7.6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18.3
	Wee센터	28	11.2
	성문화 센터	32	12.7
	경찰	48	19.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	4.0
성별	남성	60	23.9
	여성	191	76.1

2. 아동·청소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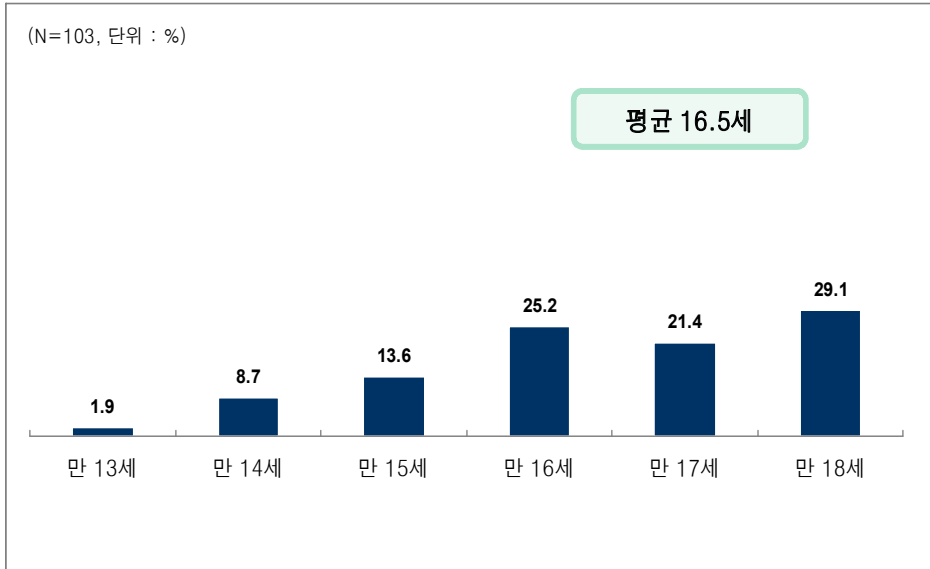
가. 아동·청소년 생활 관련

1) 응답자 연령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 응답자 103명의 연령은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걸쳐있고 만 18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각 연령별 인원은 만 13세 2명, 만 14세 9명, 만 15세 14명, 만 16세 26명, 만 17세 22명, 만 18세 3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만 16.5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 2학년 또래인 만 13, 14세는 11명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이 피해 즉시 지원체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원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만 13세 이전(초등학교 또래)에 성매매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 13세와 만 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에 이용되는 아동·청소년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실태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림 III-1> 응답자의 연령



<표 III-4> 응답자의 연령

(단위 : 명, %)

	사례수	만 13세	만 14세	만 15세	만 16세	만 17세	만 18세	평균(세)
전 체	103	2 (1.9)	9 (8.7)	14 (13.6)	26 (25.2)	22 (21.4)	30 (29.1)	16.5
연령	만 13~14세	11	2 (18.2)	9 (81.8)	0 (0.0)	0 (0.0)	0 (0.0)	13.8
	만 15~16세	40	0 (0.0)	0 (0.0)	14 (35.0)	26 (65.0)	0 (0.0)	15.7
	만 17~18세	52	0 (0.0)	0 (0.0)	0 (0.0)	0 (0.0)	22 (42.3)	17.6

2) 학교 재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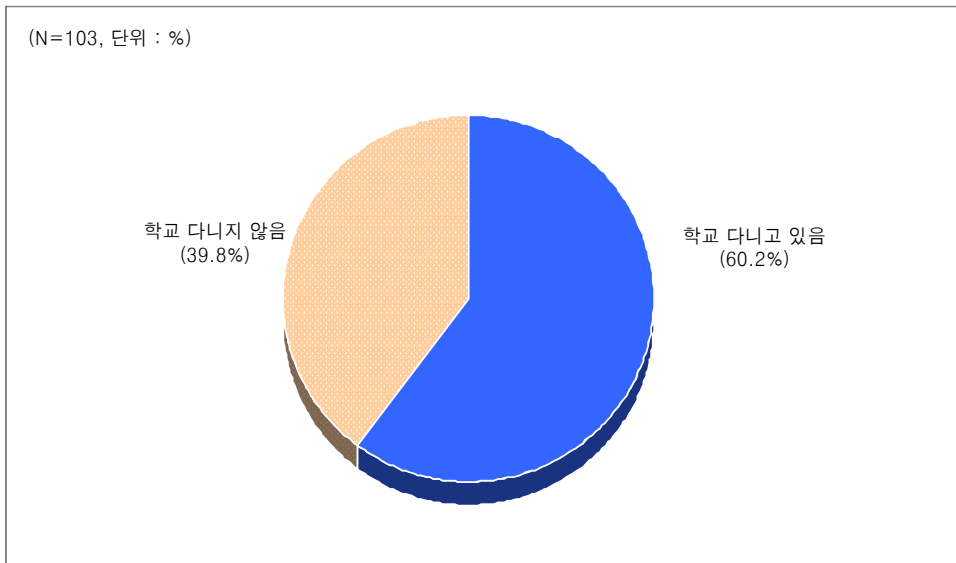
이 항목은 현재 재학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 당시 재학 여부를 보면 103명 중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62명(60.2%)이었으며, 나머지 41명(39.8%)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표집단위가 지원체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생활시설은 아동·청소년의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입소자에 대한 학업 지원을 필수사업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원체계 밖의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한 학교재학여부를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39.8%인 41명이 학교에

서 이탈되어 있다고 나타난 것은 표집단의 특성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학교재학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한번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하면 다시 복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중3~고3 또래들인, 만 15~16세 40명 중 18명(45%)과 만 17~18세 52명 중 23명(44.2%)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교에서 학업이 단절된 경우에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점,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비용이 든다는 점과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 학교 재학 여부



<표 III-5> 학교 재학 여부

(단위 :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03	62(60.2)	41(39.8)
연령	만 13~14세	11	11(100.0)	0(0.0)
	만 15~16세	40	22(55.0)	18(45.0)
	만 17~18세	52	29(55.8)	23(44.2)

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62명의 경우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는 ‘고등학교’ 38명 (61.3%), ‘중학교’ 와 ‘대안학교’ 각각 12명(19.4%) 이었다.

만 13~14세의 경우, 중학교 재학 6명, 대안학교 재학이 5명으로 이미 중학교 1-2학년 또래부터 45.5%가 정규 학교 체계에서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학교 1-2학년 또래의 45.5%가 정규 학교 체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중등교육분야에서 심도 깊게 연구, 해결,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만 15세~16세의 경우 중학교 재학 6명, 고등학교 재학 11명, 대안학교 5명 (22.7%)이고, 만17세~18세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27명, 대안학교 2명(6.9%)으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또래에 대안학교 비율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의 정규학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기보다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대안학교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안학교를 가더라도 다시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되는 현실에서 대안학교 진학률조차 낮아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전향 2)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III-6>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

(단위 : 명, %)

		사례수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전 체		62	12(19.4)	38(61.3)	12(19.4)
연령	만 13~14세	11	6(54.5)	0(0.0)	5(45.5)
	만 15~16세	22	6(27.3)	11(50.0)	5(22.7)
	만 17~18세	29	0(0.0)	27(93.1)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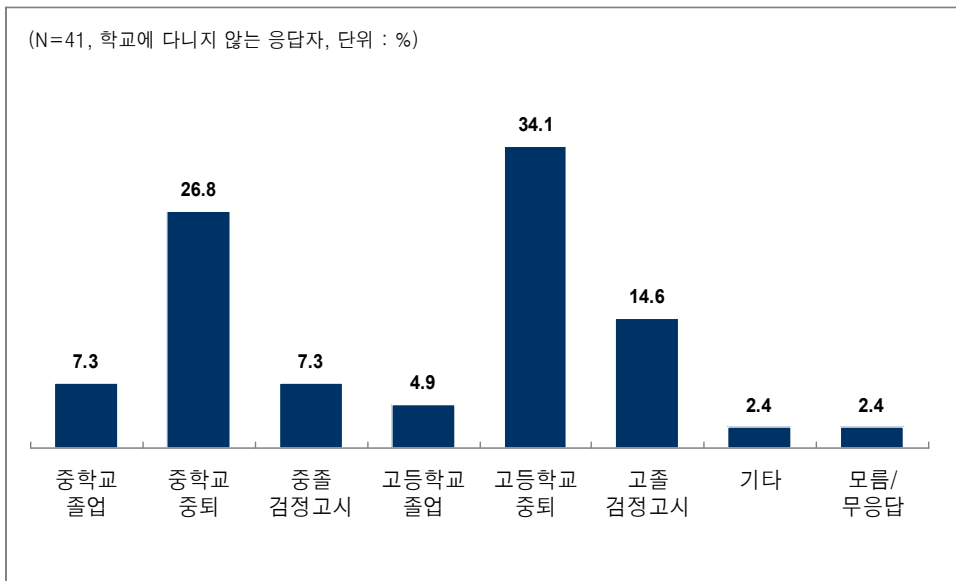
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력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력 사항은 ‘고등학교 중퇴’의 비율이 14명 3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중퇴’ 11명 26.8%, ‘고졸 검정고시’ 6명 14.6%, ‘중졸 검정고시’와 ‘중학교 졸업’이 각각 3명 7.3%, ‘고등학교 졸업’ 2명 4.9% 등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41명 중 중학교 중퇴 또는 고등학교 중퇴로 70.9%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두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 중퇴가 41명 중 11명이나 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의무교육 제도하에서 학생이 학교를 불출석할 경우, 학교에서는 가정방문 등으로 사유를 확인하여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중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른 학교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3>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력



<표 III-7>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력

(단위 : 명, %)

		사례 수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중졸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졸 검정고시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41	3(7.3)	11(26.8)	3(7.3)	2(4.9)	14(34.1)	6(14.6)	2(2.4)	1(2.4)
연령	만 15~16세	18	1(5.6)	7(38.9)	2(11.1)	0(0.0)	6(33.3)	0(0.0)	1(5.6)	1(5.6)
	만 17~18세	23	2(8.7)	4(17.4)	1(4.3)	2(8.7)	8(34.8)	6(26.1)	1(0.0)	0(0.0)

3) 함께 살고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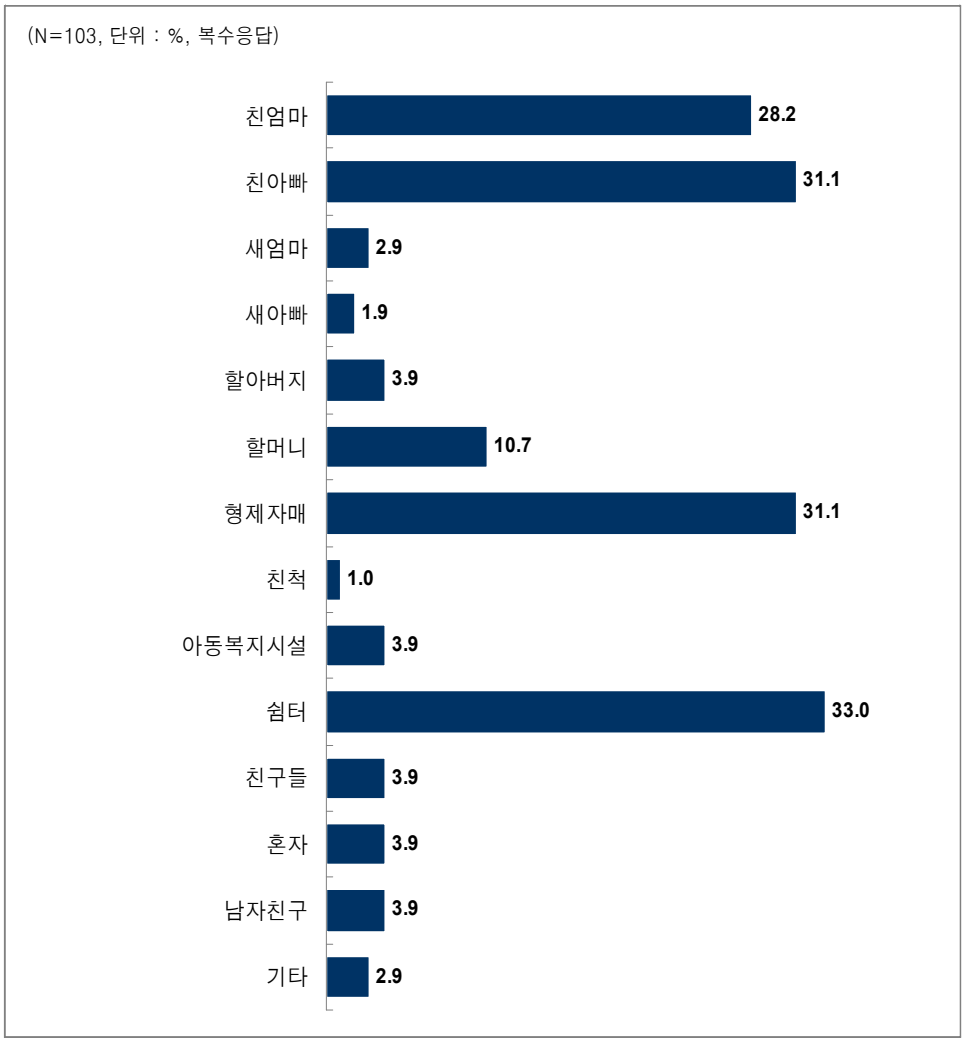
이 항목은 성매매에 이용된 후 아동·청소년이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다양한 답변이 예상되어 복수응답을 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쉽터'가 3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친아빠'와 '형제, 자매'가 각각 31.1%, '친엄마' 28.2%, '할머니' 10.7%, '할아버지'와 '아동복지시설', '친구들', '혼자', '남자친구'가 각각 3.9% 등의 순이었다.

이 표본집단은 성매매에 이용된 후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체계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현재 부모(친엄마, 친아빠, 새엄마, 새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원가족으로 돌아간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쉽터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쉽터 34명과 아동복지시설 4명을 합한 38명(36.9%)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원가족 복귀가 가능하지 않아 쉽터나 아동복지시설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에서 쉽터 등 생활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혼자 혹은 남자친구나 친구들과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생활시설 외의 여러 다른 지원체계가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친구들, 혼자, 남자친구, 기타(아는 언니, 친구 부모님, 아는 오빠)를 합하면 총 15명인데, 그 중 혼자인 3명을 제외하고는 12명(80%)이 재학 중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특이한 경우는 혼자 살고 있는 경우 4명 중 3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원가족이나 다른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아 재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외 친구들, 남자친구, 아는 오빠와 살고 있다고 답하고 재학 중이지도 않는 상태라면 현재 성구매자와 알선업자 등에게 성매매에 여전히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III-4> 함께 살고 있는 사람(복수응답)



<표 III-8> 함께 살고 있는 사람(복수응답)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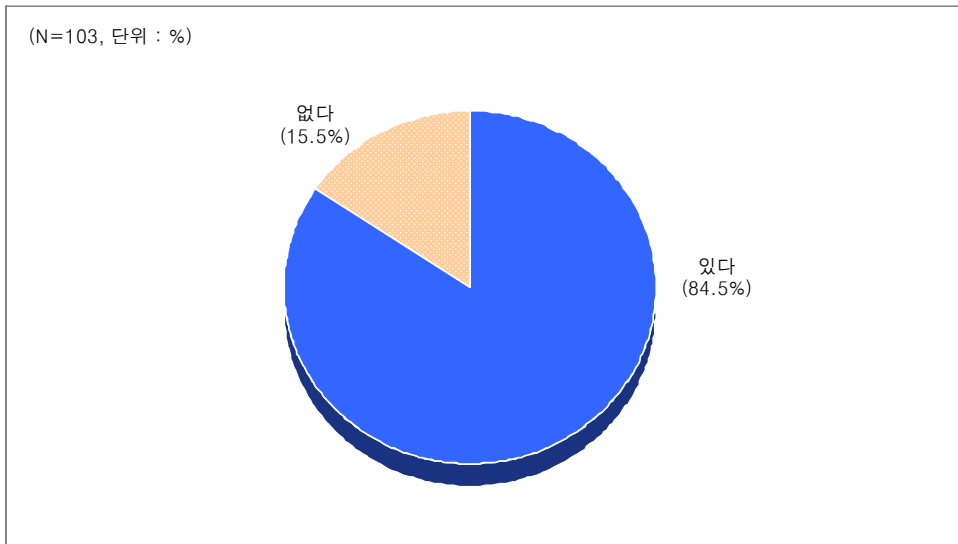
	전 체 (N=103)	연령			학교재학 여부	
		만 13~14세 (N=11)	만 15~16세 (N=40)	만 17~18세 (N=52)	학교다님 (N=62)	학교 다니지 않음 (N=41)
친엄마	29(28.2)	5(45.5)	11(27.5)	13(25.0)	22(35.5)	7(17.1)
친아빠	32(31.1)	3(27.3)	17(42.5)	12(23.1)	22(35.5)	10(24.4)
새엄마	3(2.9)	0(0.0)	1(2.5)	2(3.8)	1(1.6)	2(4.9)
새아빠	2(1.9)	1(9.1)	0(0.0)	1(1.9)	2(3.2)	0(0.0)
할아버지	4(3.9)	0(0.0)	3(7.5)	1(1.9)	1(1.6)	3(7.3)
할머니	11(10.7)	0(0.0)	6(15.0)	5(9.6)	6(9.7)	5(12.2)
형제자매	32(31.1)	4(36.4)	13(32.5)	15(28.8)	21(33.9)	11(26.8)
친척	1(1.0)	0(0.0)	1(2.5)	0(0.0)	1(1.6)	0(0.0)
아동복지시설	4(3.9)	0(0.0)	2(5.0)	2(3.8)	2(3.2)	2(4.9)
شط터	34(33.0)	6(54.5)	11(27.5)	17(32.7)	25(40.3)	9(22.0)
친구들	4(3.9)	0(0.0)	1(2.5)	3(5.8)	0(0.0)	4(9.8)
혼자	4(3.9)	0(0.0)	2(5.0)	2(3.8)	3(4.8)	1(2.4)
남자친구	4(3.9)	0(0.0)	0(0.0)	4(7.7)	0(0.0)	4(9.8)
기타	3(2.9)	0(0.0)	0(0.0)	3(5.8)	0(0.0)	3(7.3)

4) 가출 경험

전체 응답자 103명 중 87명(84.5%)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출 경험은 만 15~16세의 경우 40명 중 36명으로 90.0%, 만 13~14세의 경우 11명 중 9명으로 81.8%, 만 17~18세의 경우 52명 중 42명으로 80.8%의 순서로 높았다.

<그림 III-5> 가출 경험 유무



<표 III-9> 가출 경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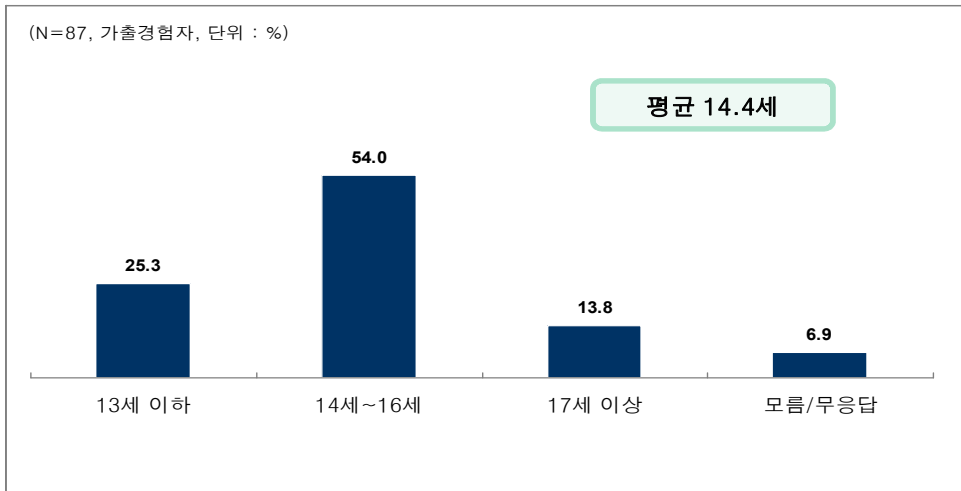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03	87(84.5)	16(15.5)
연령	만 13~14세	11	9(81.8)	2(18.2)
	만 15~16세	40	36(90.0)	4(10.0)
	만 17~18세	52	42(80.8)	10(19.2)
학교 재학	학교다님	62	49(79.0)	13(21.0)
	학교다니지않음	41	38(92.7)	3(7.3)

가) 처음 가출한 나이

가출 경험자 87명을 대상으로 처음 가출한 나이를 조사한 결과, 처음 가출한 나이가 '만14세부터 만16세'까지는 47명(54.0%), '만 13세 이하'에 가출한 경험자가 22명(25.3%), '17세 이상'이 12명(13.8%)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처음 가출을 한 평균 나이는 14.4세였다.

특히 만 13세 이하의 가출경험자가 22명이나 되는 것은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6> 처음 가출한 나이



<표 III-10> 처음 가출한 나이

(단위 : 명, %)

		사례수	13세 이하	14세 이상 ~ 16세 이하	17세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세)
전 체		87	22(25.3)	47(54.0)	12(13.8)	6(6.9)	14.4
연령	만 13~14세	9	6(66.7)	3(33.3)	0(0.0)	0(0.0)	12.3
	만 15~16세	36	8(22.2)	23(63.9)	4(11.1)	1(2.8)	14.3
	만 17~18세	42	8(19.0)	21(50.0)	8(19.0)	5(11.9)	15.0

나) 처음 가출한 이유

이 항목은 처음 가출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으로 가출을 경험한 당사자들에게 물어서 선택 항목을 설정하였다. 답변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63.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 때문에' 58.6%, '친구나 선후배와 놀고 싶어서' 46.0%, '공부하기 싫어서' 21.8%,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11.5%, '학교에서 따돌림 때문에' 10.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출을 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출의 원인을 질문했을 때 흔히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변을 한다. 그러나 이들 아동·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였을 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표면적인 답변 이면에는 가족간의 불화와 폭력, 경제적 빈곤, 학교에서의 따돌림, 성폭력 등 수많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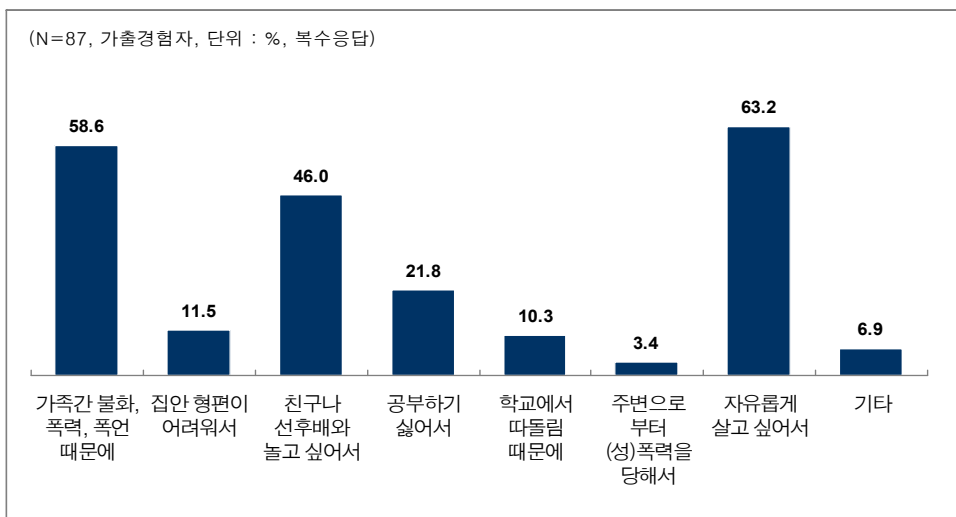
이번 설문 결과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가족간 불화, 폭력, 폭언 때문인가

51명(58.6%),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10명(11.5%),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서 9명(10.3%), 성폭력을 당해서가 3명(3.4%), 기타로는 소문 3명(3.4%), 쫓겨남 1명(1.1%), 친엄마를 찾고 싶어서 1명(1.1%), 혼날까봐 1명(1.1%)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 아동·청소년들은 잘 보호받고 지지받아 가며 성인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가족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지받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은 가출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들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며, 가볍게 짧은 이유로 가출의 원인을 답한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변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과도한 입시중심의 경쟁주의, 성적지상주의 등의 문화와 평가방식, 학교와 가정 외의 다른 곳은 모두 일탈로 간주하는 집단 문화의 빈곤 등 탈출구가 없는 집단문화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다른 측면으로도 분석이 가능한데, 가출 및 성매매로의 유입은 가족 내 위험요인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적 욕구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출과 성매매가 특수한 청소년, 소위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7> 처음 가출한 이유(복수응답)



<표 III-11> 처음 가출한 이유(복수응답)

(단위 : 명, %)

	사례 수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친구나 선후배와 놀고 싶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서	주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기타	
전 체	87	51 (58.6)	10(11.5)	40(46.0)	19(21.8)	9 (10.3)	3 (3.4)	55(63.2)	6 (6.9)	
연 령	만 13~14세	9	6 (66.7)	3 (33.3)	6 (66.7)	4 (44.4)	2 (22.2)	0 (0.0)	4 (44.4)	2 (22.2)
	만 15~16세	36	23 (63.9)	5 (13.9)	16(44.4)	9 (25.0)	4 (11.1)	1 (2.8)	25(69.4)	1 (2.8)
	만 17~18세	42	22 (52.4)	2 (4.8)	18(42.9)	6 (14.3)	3 (7.1)	2 (4.8)	26(61.9)	3 (7.1)

다) 가출 후 지냈던 장소

가출 후 지냈던 장소에 대해서는 ‘친구, 선후배 집’의 응답률이 8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 62.1%, ‘찜질방’ 41.4%, ‘애인 집’ 40.2%, ‘쉼터 등 보호시설’ 39.1%, ‘노숙’ 31.0%, ‘월세방’ 18.4%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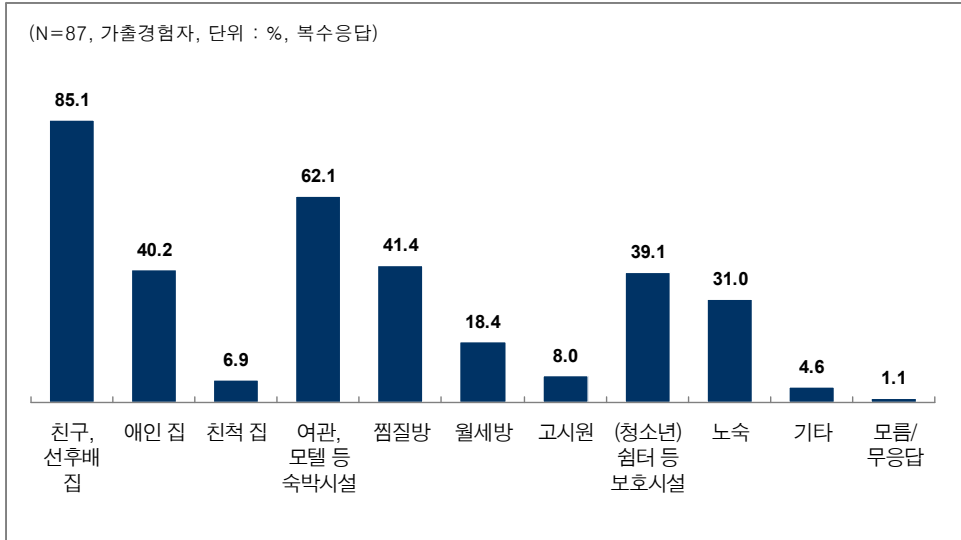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의 이용이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아동·청소년에게 이용되며, 찜질방이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가출 후 지냈던 장소로 ‘노숙’도 전체 27명(31.0%)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3~14세(44.4%), 만15~16세(30.6%), 만17~18세(28.6%)로 노숙의 경우, 성폭력, 인신매매, 문지마 살인 등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가장 열악한 노숙환경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다.

반면에 가출 이후 쉼터 등 보호시설을 경험한 비율이 39%에 지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쉼터 입소 충원율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쉼터의 운영방식이나 홍보 등 많은 과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보호시설에 입소를 꺼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여관, 모텔, 여인숙 등 숙박시설, 찜질방, 월세방, 고시원 이용 경험이 각각 62.1%, 41.4%, 18.4%, 8%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들 장소가 금전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가출 후 아동·청소년들은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였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III-8> 가출 후 지금까지 지냈던 장소(복수응답)



<표 III-12> 가출 후 지금까지 지냈던 장소(복수응답)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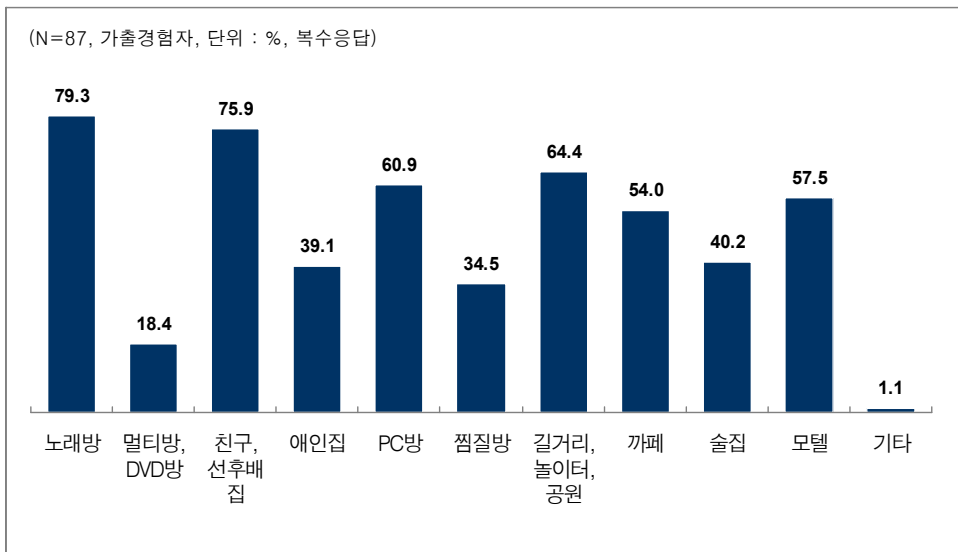
	전 체 (N=87)	연령			학교재학 여부	
		만 13~14세 (N=9)	만 15~16세 (N=36)	만 17~18세 (N=42)	학교다님 (N=49)	학교 다니지 않음 (N=38)
친구, 선후배 집	74(85.1)	8(88.9)	33(91.7)	33(78.6)	43(87.8)	31(81.6)
애인 집	35(40.2)	4(44.4)	17(47.2)	14(33.3)	19(38.8)	16(42.1)
친척 집	6(6.9)	0(0.0)	1(2.8)	5(11.9)	0(0.0)	6(15.8)
여관, 모텔, 여인숙 등 숙박시설	54(62.1)	3(33.3)	27(75.0)	24(57.1)	26(53.1)	28(73.7)
찜질방	36(41.4)	4(44.4)	15(41.7)	17(40.5)	20(40.8)	16(42.1)
월세방	16(18.4)	1(11.1)	8(22.2)	7(16.7)	6(12.2)	10(26.3)
고시원	7(8.0)	0(0.0)	3(8.3)	4(9.5)	2(4.1)	5(13.2)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	34(39.1)	2(22.2)	18(50.0)	14(33.3)	18(36.7)	16(42.1)
노숙	27(31.0)	4(44.4)	11(30.6)	12(28.6)	16(32.7)	11(28.9)
기타	4(4.6)	1(11.1)	2(5.6)	1(2.4)	3(6.1)	1(2.6)
모름/무응답	1(1.1)	0(0.0)	1(2.8)	0(0.0)	0(0.0)	1(2.6)

5) 최근 2년간 주로 놀았던 장소

최근 2년간 주로 놀았던 장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노래방(79.3%)과 ‘친구, 선후배 집’(75.9%)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길거리, 놀이터, 공원’(64.4%), ‘PC방’(60.9%), ‘모텔’(57.5%), ‘카페’(54.0%), ‘술집’(40.2%), ‘애인 집’(39.1%), ‘찜질방’(34.5%) 등의 순이었다.

노래방이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며 PC방 외에 모텔, 카페, 술집도 적지 않게 이용되고 있다. 이 설문 결과를 통해 가출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웃리치 등 홍보와 정보제공이 어디서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림 III-9> 최근 2년간 주로 놀았던 장소(복수응답)



<표 III-13> 최근 2년간 주로 놀았던 장소(복수응답)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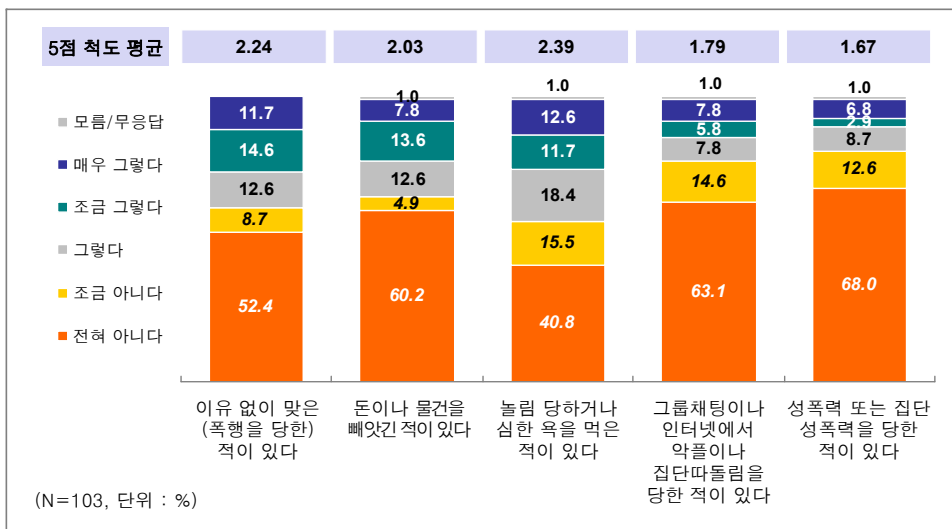
	전 체 (N=87)	연령			학교재학 여부	
		만 13~14세 (N=9)	만 15~16세 (N=36)	만 17~18세 (N=42)	학교다님 (N=49)	학교 다니지 않음 (N=38)
노래방	69(79.3)	8(88.9)	27(75.0)	34(81.0)	42(85.7)	27(71.1)
멀티방/DVD방	16(18.4)	2(22.2)	9(25.0)	5(11.9)	10(20.4)	6(15.8)
친구,선후배집	66(75.9)	8(88.9)	32(88.9)	26(61.9)	38(77.6)	28(73.7)
애인집	34(39.1)	5(55.6)	16(44.4)	13(31.0)	18(36.7)	16(42.1)
PC방	53(60.9)	7(77.8)	26(72.2)	20(47.6)	30(61.2)	23(60.5)
찜질방	30(34.5)	4(44.4)	15(41.7)	11(26.2)	17(34.7)	13(34.2)
길거리,놀이터, 공원	56(64.4)	5(55.6)	29(80.6)	22(52.4)	32(65.3)	24(63.2)
카페	47(54.0)	5(55.6)	22(61.1)	20(47.6)	27(55.1)	20(52.6)
술집	35(40.2)	2(22.2)	18(50.0)	15(35.7)	18(36.7)	17(44.7)
모텔	50(57.5)	5(55.6)	25(69.4)	20(47.6)	27(55.1)	23(60.5)
기타	1(1.1)	0(0.0)	1(2.8)	0(0.0)	0(0.0)	1(2.6)

6) 일상생활에서 폭력 등 인권침해적 환경

가) 최근 2년간 폭력, 따돌림 등의 경험

아동·청소년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폭력 등 어떤 인권침해적 환경에 처해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적 폭력이나 놀림과 같은 인격적 폭력, 돈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물질적 침해, 폭력 중에서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범죄피해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III-10> 최근 2년간 폭력/폭행을 당한 경험



최근 2년간 다섯 가지 폭력/폭행 유형 중 가장 경험 정도가 높은 것이 “놀림 당하거나 심한 욕을 먹은 적이 있다”이며, 5점 척도 평균 점수로는 2.39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5점 척도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이 “이유 없이 맞은(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로 2.24점,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2.03점, “그룹채팅이나 인터넷에서 악플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의 경우는 1.79점, “성폭력 또는 집단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1.67점의 순서였다.

다섯 가지 폭력/폭행 유형 중 가장 경험 정도가 높은 것인, “놀림 당하거나 심한 욕을 먹은 적이 있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 40.8%, ‘조금 아니다’ 15.5%, ‘그렇다’ 18.4%, ‘조금 그렇다’ 11.7%, ‘매우 그렇다’ 12.6% ‘모름/무응답’ 1.0%으로 조사되었다.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58.2%로 과반수 이상이 인격적 침해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으며, ‘매우 그렇다’의 경우도 12.6%에 달하고 있고, 특히 만 13세~14세의 경우 11명중 3명(27.3%)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폭력/폭행 유형으로 “이유 없이 맞은(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의 경우는 ‘전혀 아니다’를 제외하면 47.6%로 2명 중 1명꼴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도 11.7%에 달하고 있으며, 만 15세~16세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40명 중 9명(22.5%)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 1.0%를 포함하여 61.2%를 제외하고 38.8%가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룹채팅이나 인터넷에서 악플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의 경우는 ‘전혀 아니다’ 63.1%, ‘조금 아니다’ 14.6%, ‘그렇다’ 7.8%, ‘조금 그렇다’ 5.8%, ‘매우 그렇다’ 7.8% 등의 응답 비율을 보여,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약 36%가 인터넷상 악플이나 따돌림을 당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7.8%는 매우 심하게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만 13~14세의 경우는 27.3%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 상 악플이나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인터넷/사이버 환경이 저연령대에서 훨씬 심각하게 악플이나 따돌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또는 집단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68.0%, ‘조금 아니다’ 12.6%, ‘그렇다’ 8.7%, ‘조금 그렇다’ 2.9%, ‘매우 그렇다’ 6.8% 등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성폭력의 경우 다섯 가지 폭력/폭행 유형 중 가장 경험 정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31%이며, '매우 그렇다'도 6.8%(만 15~16세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15%이다)로 아동·청소년기에 이미 성폭력 정도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적 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2명 중 1명이상이 놀림 등 인격적 침해를 당하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이 인터넷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성폭력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다.

<표 III-14> 최근 2년간 폭력/폭행을 당한 경험 정도

(단위 : 명, 점)

	전 체 (N=103)	연령			학교재학 여부	
		만 13~14세 (N=11)	만 15~16세 (N=40)	만 17~18세 (N=52)	학교다님 (N=62)	학교 다니지 않음 (N=41)
이유 없이 맞은(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2.24	2.27	2.65	1.92	2.05	2.54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2.03	1.91	2.26	1.88	2.05	2.00
놀림 당하거나 심한 욕을 먹은 적이 있다	2.39	2.55	2.64	2.17	2.39	2.40
그룹채팅이나 인터넷에서 악플이나 집단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1.79	2.45	1.85	1.62	1.84	1.73
성폭력 또는 집단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1.67	1.73	1.85	1.52	1.81	1.45

나) 폭행 가해자

폭행을 당한 경험자(N=40)를 대상으로 폭행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친구, 선후배'의 응답률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아빠' 32.5%, '모르는 사람' 27.5%, '친엄마' 20.0% '애인'과 '가출팸'이 각각 12.5% 등의 순서였다.

가출 후 지금까지 지냈던 장소 중 '친구, 선후배 집'이 85.1%로 가장 높았던 점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는 궁박한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 의존대상에 의해 폭력상태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친아빠', '친엄마', '새엄마', '새아빠', '형제자매', '친척', 기타 3명 중 2명

이 ‘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 응답으로 보아 원가족으로부터 당하는 폭행이 심각하다는 점과 현재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우가 실제 부모나 직접 양육자라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응답은 ‘모르는 사람’에게서의 폭행이 27.5%에 이르는데 이것은 가출 후 노숙,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했다는 응답이 높았던 점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불안정한 주거상황이 폭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폭행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구매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전체 응답자 103명 중 지난 2년간 폭행/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40명(38.83%)에 달하며, 그 중 만 13~14세의 아동·청소년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폭행/폭력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경험했다는 것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표 III-15> 폭행 가해자(복수응답)

(단위 : 명, %)

	전 체 (N=40)	연령		
		만 13~14세 (N=5)	만 15~16세 (N=19)	만 17~18세 (N=16)
친엄마	8(20.0)	0(0.0)	5(26.3)	3(18.8)
친아빠	13(32.5)	1(20.0)	9(47.4)	3(18.8)
새엄마	2(5.0)	1(20.0)	0(0.0)	1(6.3)
새아빠	3(7.5)	1(20.0)	1(5.3)	1(6.3)
형제자매	3(7.5)	0(0.0)	1(5.3)	2(12.5)
친구, 선후배	26(65.0)	3(60.0)	13(68.4)	10(62.5)
애인	5(12.5)	0(0.0)	2(10.5)	3(18.8)
친척	2(5.0)	0(0.0)	1(5.3)	1(6.3)
조폭, 깡패	2(5.0)	0(0.0)	1(5.3)	1(6.3)
가출팸	5(12.5)	1(20.0)	3(15.8)	1(6.3)
모르는 사람	11(27.5)	2(40.0)	5(26.3)	4(25.0)
기타	3(7.5)	0(0.0)	2(10.5)	1(6.3)

다) 성폭행 가해자

성폭력을 당한 경험자(N=19)를 대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는 ‘모르는 사람’의 응답률이 5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선후배’ 26.3%, ‘친아빠’, ‘애인’, ‘기타’가 각각 10.5% 등의 순서였고, 기타의 경우 아빠친구, 동네 할아버지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역시 위 나) 폭행 가해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중대범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103명 중 19명에게 일어났으며, 특히 만 13세, 14세 연령에서 4명이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경우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같은 중대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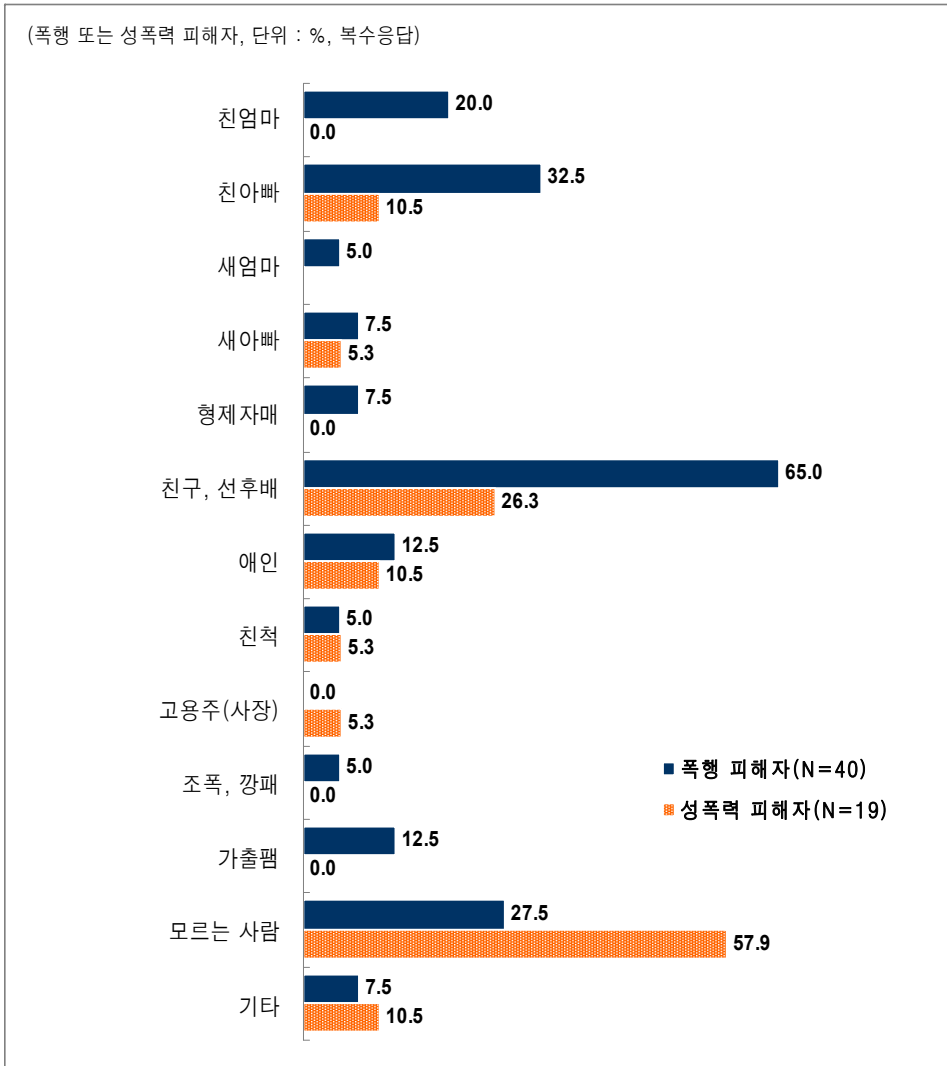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친아빠에 의한 성폭력에도 2명이나 응답하고 있고, 새아빠의 경우도 1명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III-16> 성폭행 가해자(복수응답)

(단위 : 명, %)

	전 체 (N=19)	연령		
		만 13~14세 (N=4)	만 15~16세 (N=7)	만 17~18세 (N=8)
친아빠	2(10.5)	1(25.0)	1(14.3)	0(0.0)
새아빠	1(5.3)	1(25.0)	0(0.0)	0(0.0)
친구, 선후배	5(26.3)	2(50.0)	1(14.3)	2(25.0)
애인	2(10.5)	1(25.0)	1(14.3)	0(0.0)
친척	1(5.3)	0(0.0)	0(0.0)	1(12.5)
고용주(사장)	1(5.3)	0(0.0)	1(14.3)	0(0.0)
모르는 사람	11(57.9)	1(25.0)	5(71.4)	5(62.5)
기타	2(10.5)	0(0.0)	1(14.3)	1(12.5)

<그림 III-11> 폭행 및 성폭력 가해자(복수응답)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1)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 및 이유

가)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

설문조사에서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기록하게 해서, 이번 항목에서는 만 나이가 아니다.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13세 이하' 9명(8.7%), '14~16세' 59명(57.3%), '17세 이상' 33명(32.0%) 등 응답자 103명 중 68명(66%)이 중학생 나이인 14~16세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나이인 13세 이하의 경우도 9명이나 응답하였다.

성매매 시작 연령은 평균 만 14.7세(15.7세) 정도로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성구매자, 성매매알선업자들은 중학생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I-17>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

(단위 : 명, %)

처음 성매매 경험 나이 (만 나이 추정)		13세 이하 (만 12세 이하)	14세~16세 (만 13~15세)	17세 이상 (만 16세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나이 (만 나이)
조사 대상 전체 103명		9(8.7)	59(57.3)	33(32.0)	2(1.9)	15.7 (만 14.7세)
만 13~14세	11명	2(18.2)	9(81.8)	0(0.0)	0(0.0)	14.1
만 15~16세	40명	2(5.0)	26(65.0)	11(27.5)	1(2.5)	15.4
만 17~18세	52명	5(9.6)	24(46.2)	22(42.3)	1(1.9)	16.2

나)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이 항목 역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으로 특별한 방향성을 유도하지 않기 위해 성매매에 이용된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물어서 선택 항목을 설정하였다. 답변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잘 곳이 없어서' 35.0%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 32.0%,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31.1%,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 30.1%, '친구의 권유' 29.1%, '호기심에' 27.2%,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26.2%, '배가 고파서' 25.2%, '강요에 의해서'와 '유혹비가 필요해서' 15.5%,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서' 11.7%,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술에 취해서', '성폭행 후 자포자기해서' 6.8%, '모름/무응답' 3.9%, '성형비 마련' 2.9%, '빚이 있어서', '기타'가 2.9%의 순이었다.

'잘 곳이 없어서'(35.0%)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가출상태의 절박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6.2%)와 '배가 고파서'(25.2%)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31.1%)와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30.1%)는 가출상태의 절박성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십대 아동·청소년들이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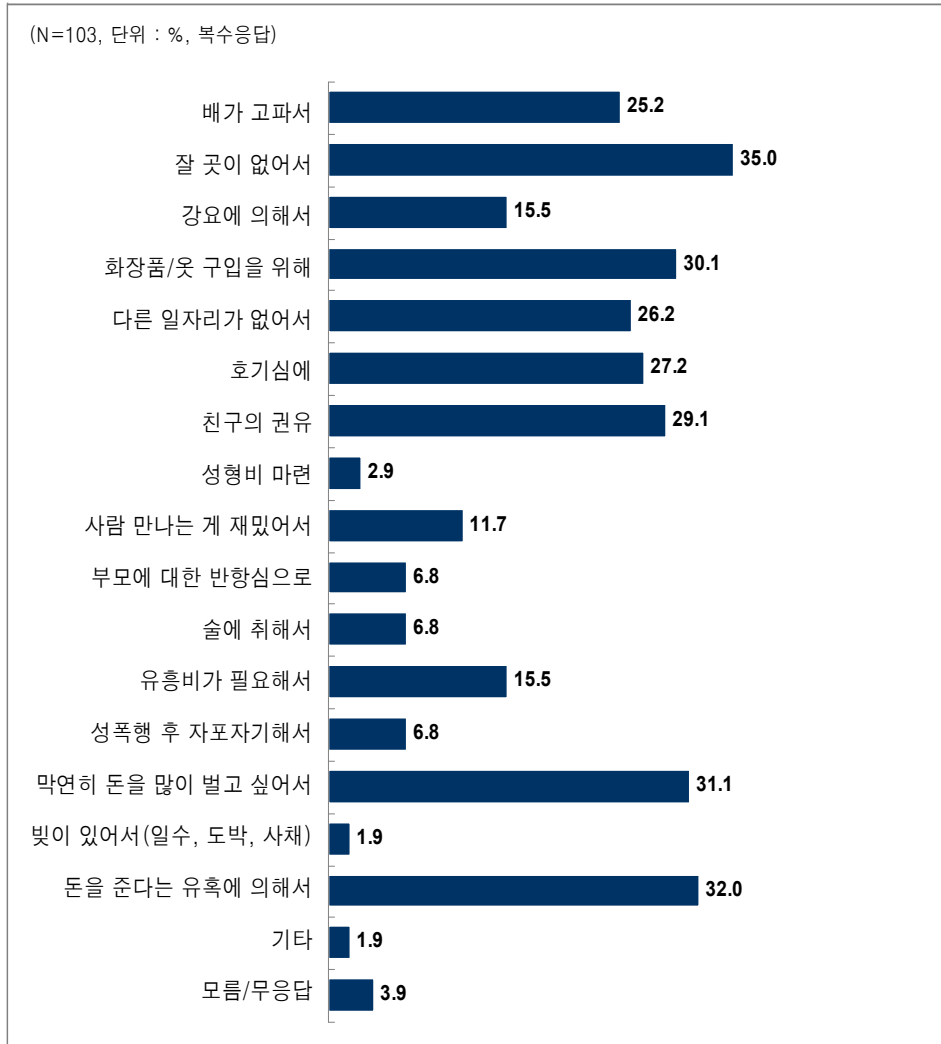
그것은 앞의 가출 원인 중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이유와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도한 입시중심의 경쟁사회인 한국사회에서 탈출구가 전혀 없는 십대문화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극대화시키고 있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나 직접 양육자에게 완전히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십대들의 상황에서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심각하게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십대 아동·청소년들 특히, 여성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대상화하여 섹시한 '걸 그룹'에 열광하는 왜곡된 성인문화의 범람은 십대 아동·청소년들에게 섹시가 바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허상을 만들고 있고, 선호되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 남보다 섹시하기 위해 화장품/옷, 성형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의 십대 아동·청소년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넘쳐나는 성구매자들의 수요와 자신들의 몸이 재화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출상태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돈을 준다는 유혹을 쉽게 떨쳐낼 수 없다. 또한 성인 성구매자들 역시, 현재 한국사회의 십대 아동·청소년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조건만남 시 만남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지속적으로 액수를 올려가며 집요하게 만남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 '가출과 성매매 유입'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가출과 상관없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38.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더 분명해지며,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32.0%)가 두 번째로 높은 이유라는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친구의 권유'(29.1%)와 '강요에 의해서'(15.5%) 이 두 응답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위

‘포래포주’로 친구이기도 하고, 애인이기도 하지만, 알선자이기도 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림 III-12>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



각각의 항목에 대한 경험율은 의미 있게 높아서 이러한 다양한 이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8>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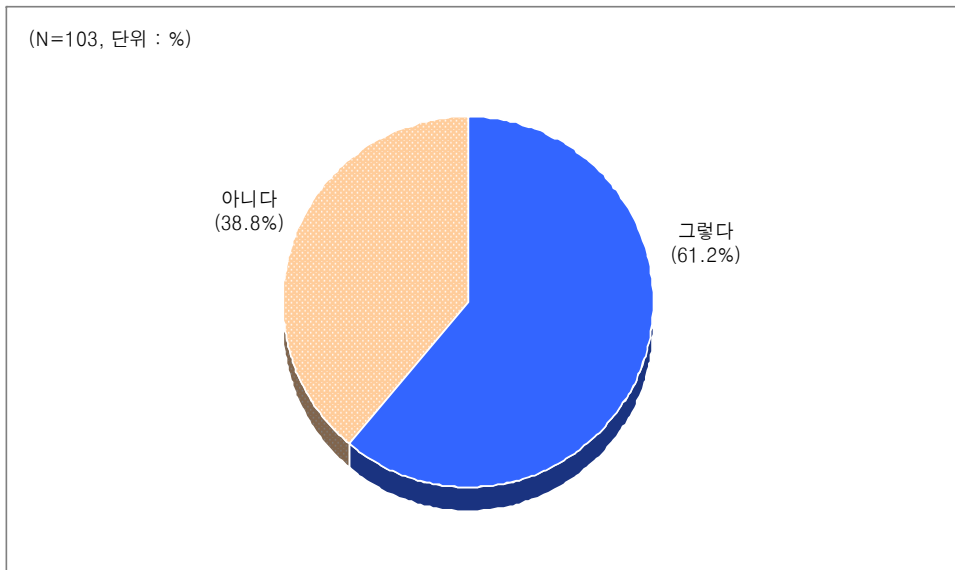
(단위 : 명, %)

	전 체 (N=103)	연령			학교재학 여부	
		만 13~14세 (N=11)	만 15~16세 (N=40)	만 17~18세 (N=52)	학교다님 (N=62)	학교 다니지 않음 (N=41)
배가 고파서	26(25.2)	1(9.1)	11(27.5)	14(26.9)	10(16.1)	16(39.0)
잘 곳이 없어서	36(35.0)	2(18.2)	16(40.0)	18(34.6)	16(25.8)	20(48.8)
강요에 의해서	16(15.5)	4(36.4)	7(17.5)	5(9.6)	10(16.1)	6(14.6)
화장품/웃구입을 위해	31(30.1)	6(54.5)	12(30.0)	13(25.0)	20(32.3)	11(26.8)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27(26.2)	3(27.3)	9(22.5)	15(28.8)	14(22.6)	13(31.7)
호기심에	28(27.2)	4(36.4)	13(32.5)	11(21.2)	18(29.0)	10(24.4)
친구의 권유	30(29.1)	4(36.4)	10(25.0)	16(30.8)	17(27.4)	13(31.7)
성형비 마련	3(2.9)	1(9.1)	0(0.0)	2(3.8)	2(3.2)	1(2.4)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서	12(11.7)	3(27.3)	3(7.5)	6(11.5)	9(14.5)	3(7.3)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7(6.8)	3(27.3)	3(7.5)	1(1.9)	4(6.5)	3(7.3)
술에 취해서	7(6.8)	3(27.3)	1(2.5)	3(5.8)	6(9.7)	1(2.4)
유혹비가 필요해서	16(15.5)	4(36.4)	8(20.0)	4(7.7)	9(14.5)	7(17.1)
성폭행 후 자포자기해서	7(6.8)	3(27.3)	1(2.5)	3(5.8)	5(8.1)	2(4.9)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 어서	32(31.1)	2(18.2)	14(35.0)	16(30.8)	19(30.6)	13(31.7)
빛이 있어서(일수, 도박, 사채)	2(1.9)	0(0.0)	1(2.5)	1(1.9)	2(3.2)	0(0.0)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	33(32.0)	4(36.4)	10(25.0)	19(36.5)	23(37.1)	10(24.4)
기타	2(1.9)	0(0.0)	2(5.0)	0(0.0)	0(0.0)	2(4.9)
모름/무응답	4(3.9)	0(0.0)	0(0.0)	4(7.7)	2(3.2)	2(4.9)

2) 가출과 성매매 유입

성매매가 가출 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절반 이상인 61.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38.8%로 가출 후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가 높게 나타난다.

<그림 III-13>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주목할 점은 만 13~14세 연령에서는 가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5%로 가출 후 성매매로 이용됐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광범위한 사용은 가정안과 밖, 학교 안과 밖의 경계 또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유인의 장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가정과 학교 안의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다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조장, 알선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²⁸⁾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조치의 시급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현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가출로만 연결된 ‘특별한 집단’의 ‘특별한 행동’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대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I-19>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단위 :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03	63(61.2)	40(38.8)
연령	만 13~14세	11	5(45.5)	6(54.5)
	만 15~16세	40	27(67.5)	13(32.5)
	만 17~18세	52	31(59.6)	21(40.4)

가) 가출에서 성매매까지 걸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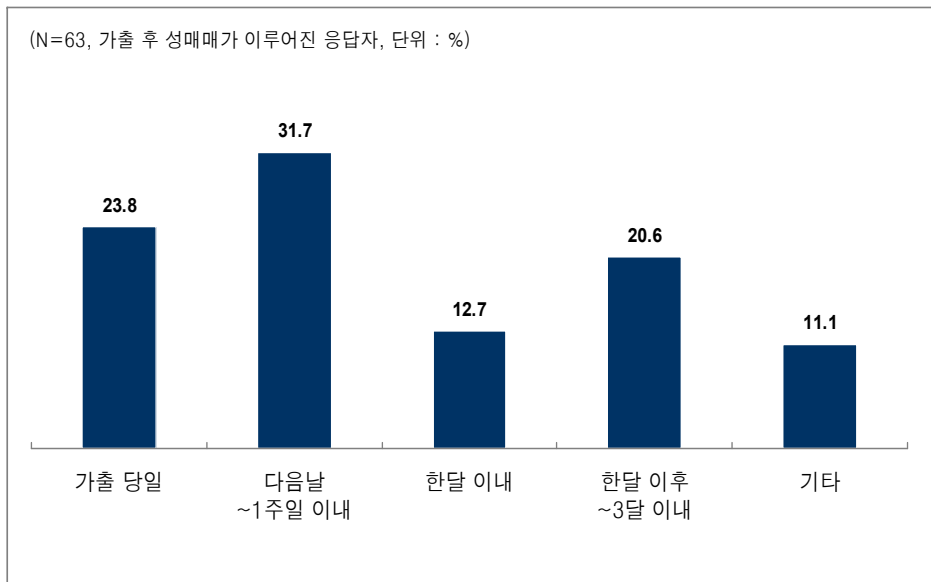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자(N=63)의 경우, 가출 후 성매매에 이용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가출 다음날~1주일 이내’ 31.7%, ‘가출 당일’ 23.8% 등 절반 이상(55.5%)이 가출 후 1주일 이내에 성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 후 1주일 이내(가출 당일 + 다음날~1주일 이내)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만 13~14세 80.0%, 만 15~16세 59.2%, 만 17~18세 48.4%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서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가출 후 더 빨리 성매매에 이용되는 심각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가출당일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미 성매매와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휴대가 용이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사용하여 성매매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가출하기 전에 이미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통해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었거나 가출 후에도 충분히 성매매를 통해 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집을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가출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의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28) 2016년 10월 11일(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과 255개 관련기관들과 함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7개 운영자를 성매매 알선, 유인 행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하였다.

성매매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출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번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다. 원가족이나 학교 등에서 필요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가출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성매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출하지 않아도 필요한 재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가출과 성매매 유입의 상관관계는 계속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전항 가출과 상관없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38.8%에 이른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III-14> 가출에서 성매매까지 걸린 시간



<표 III-20> 가출에서 성매매까지 걸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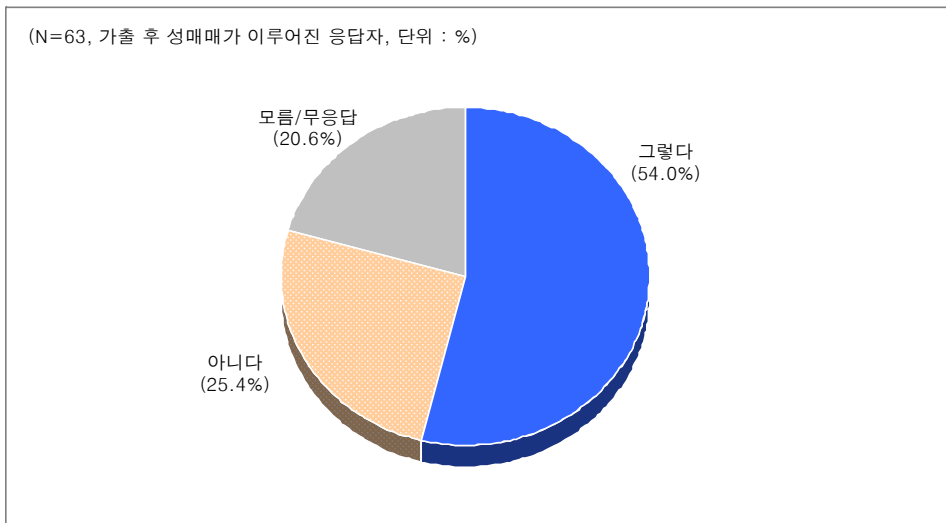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가출 당일	다음날 ~ 1주일 이내	한 달 이내	한 달 이후 ~ 3달 이내	기타
전 체		63	15(23.8)	20(31.7)	8(12.7)	13(20.6)	7(11.1)
연령	만 13~14세	5	1(20.0)	3(60.0)	0(0.0)	1(20.0)	0(0.0)
	만 15~16세	27	8(29.6)	8(29.6)	5(18.5)	5(18.5)	1(3.7)
	만 17~18세	31	6(19.4)	9(29.0)	3(9.7)	7(22.6)	6(19.4)

나)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지 여부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자들 중 과반수인 54.0%가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성매매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25.4%, 모름/무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그림 III-15>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지 여부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만 17~18세가 58.1%로 16세 이하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 항도 전항과 같은 분석을 할 수 있다. 가출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의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성매매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출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만 17~18세가 그 이하 연령들보다 가출과 성매매와의 연관성이 더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표 III-21>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지 여부

(단위 :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무응답
전 체		63	34(54.0)	16(25.4)	13(20.6)
연령	만 13~14세	5	2(40.0)	2(40.0)	1(20.0)
	만 15~16세	27	14(51.9)	7(25.9)	6(22.2)
	만 17~18세	31	18(58.1)	7(22.6)	6(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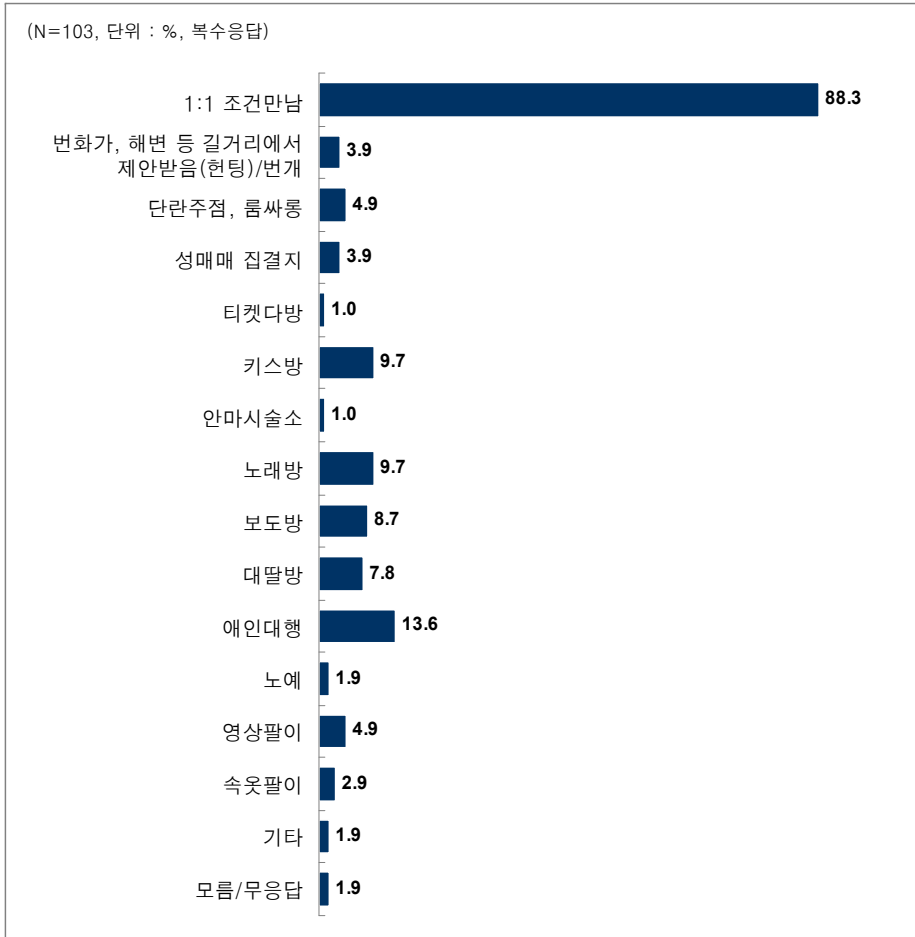
3) 경험한 성매매 유형 및 방식

가) 경험한 성매매 유형

지금까지 경험한 성매매 유형(복수응답)으로는 '1:1 조건만남'이 88.3%로 다른 성매매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애인대행' 13.6%, '키스방'과 '노래방' 각각 9.7%, '보도방' 8.7%, '대딸방' 7.8% 등의 순이었고, 단란주점, 룸살롱 4.9%, 성매매 집결지도 3.9%, 티켓다방과 안마시술소도 1.0% 있었다.

미성년자 업소 고용이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의 방식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1:1 조건만남 형식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업소형인 키스방, 노래방, 보도방, 대딸방, 단란주점/룸살롱, 티켓다방, 안마시술소의 형태도 많게는 10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이 얼마나 허술한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집결지의 경우다. 4명이 집결지 유형의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만 13~14세 사이의 어린 아이가 성매매집결지 유형에 체크를 하고 있다. 집결지는 가장 눈에 띄는 성매매 업소 형태로 성매매방지법 이후 경찰에 의한 집중적인 단속을 경험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경찰의 중점적인 관리 대상인데 만 13세~14세의 어린아이를 포함한 아동·청소년들이 집결지 형태의 성매매업소에 어떻게 고용이 가능했는지 성매매 알선자나 그들의 성을 구매하는 성구매자들의 행태가 놀라울 뿐이다. 이들 업소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고용이 예측되는 바, 역으로 추적하여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16> 경험한 성매매 유형(복수응답)



<표 III-22> 경험한 성매매 유형(복수응답)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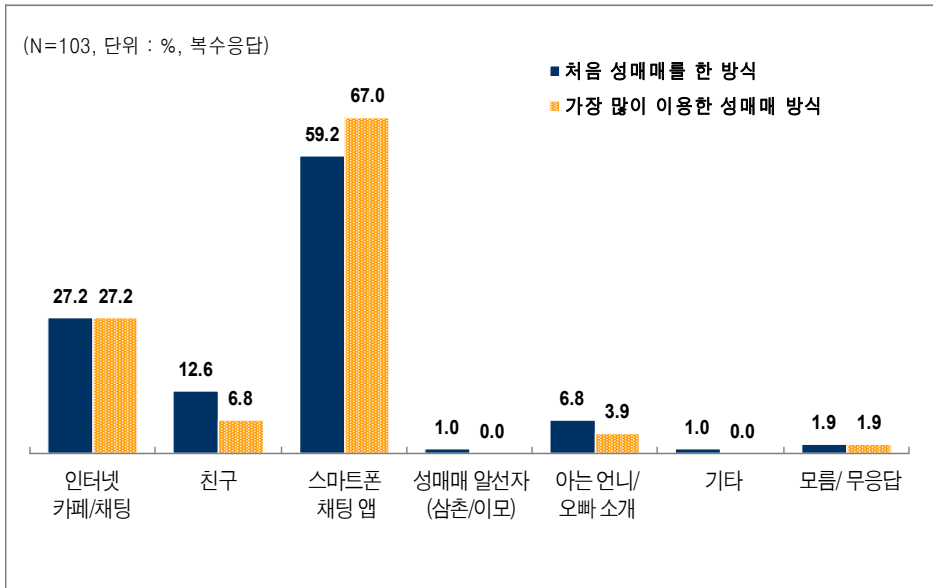
	전 체 (N=103)	연령			학교재학 여부	
		만 13~14세 (N=11)	만 15~16세 (N=40)	만 17~18세 (N=52)	학교다님 (N=62)	학교 다니지 않음 (N=41)
1:1 조건만남	91(88.3)	8(72.7)	35(87.5)	48(92.3)	52(83.9)	39(95.1)
번화가, 해변 등 거리 에서 제안 받음 (현 팅)/번개	4(3.9)	1(9.1)	1(2.5)	2(3.8)	2(3.2)	2(4.9)
단란주점, 룸싸롱	5(4.9)	0(0.0)	1(2.5)	4(7.7)	3(4.8)	2(4.9)
성매매집결지	4(3.9)	1(9.1)	1(2.5)	2(3.8)	3(4.8)	1(2.4)
티켓다방	1(1.0)	0(0.0)	0(0.0)	1(1.9)	1(1.6)	0(0.0)
키스방	10(9.7)	3(27.3)	1(2.5)	6(11.5)	6(9.7)	4(9.8)
안마시술소	1(1.0)	0(0.0)	0(0.0)	1(1.9)	1(1.6)	0(0.0)
노래방	10(9.7)	2(18.2)	5(12.5)	3(5.8)	5(8.1)	5(12.2)
보도방	9(8.7)	0(0.0)	3(7.5)	6(11.5)	3(4.8)	6(14.6)
대딸방	8(7.8)	2(18.2)	3(7.5)	3(5.8)	6(9.7)	2(4.9)
애인대행	14(13.6)	1(9.1)	4(10.0)	9(17.3)	7(11.3)	7(17.1)
노예	2(1.9)	0(0.0)	0(0.0)	2(3.8)	1(1.6)	1(2.4)
영상팔이	5(4.9)	2(18.2)	0(0.0)	3(5.8)	5(8.1)	0(0.0)
속옷팔이	3(2.9)	0(0.0)	1(2.5)	2(3.8)	2(3.2)	1(2.4)
기타	2(1.9)	1(9.1)	1(2.5)	0(0.0)	2(3.2)	0(0.0)
모름/무응답	2(1.9)	0(0.0)	1(2.5)	1(1.9)	2(3.2)	0(0.0)

나) 성매매 방식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복수응답)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 27.2%, ‘친구’ 12.6%, ‘아는 언니/오빠 소개’ 6.8%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복수응답) 또한 ‘스마트폰 채팅 앱’이 6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인터넷 카페/채팅’ 27.2%, ‘친구’ 6.8%, ‘아는 언니/오빠 소개’ 3.9% 등의 순으로 처음 시작방식과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처음 성매매 시작 방식에 비해 ‘스마트폰 채팅 앱’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그림 III-17> 성매매 방식(복수응답)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인터넷 채팅/카페’의 응답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3>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복수응답)

(단위 : 명, %)

	사례 수	인터넷 채팅/카페	친구	스마트폰 채팅 앱	성매매 알선자 (삼촌/이모)	아는 언니, 오빠 소개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103	28 (27.2)	13 (12.6)	61 (59.2)	1 (1.0)	7 (6.8)	1 (1.0)	2 (1.9)
연령	만 13~14세	0 (0.0)	2 (18.2)	8 (72.7)	0 (0.0)	1 (9.1)	0 (0.0)	0 (0.0)
	만 15~16세	12 (30.0)	5 (12.5)	25 (62.5)	0 (0.0)	4 (10.0)	1 (2.5)	0 (0.0)
	만 17~18세	16 (30.8)	6 (11.5)	28 (53.8)	1 (1.9)	2 (3.8)	0 (0.0)	2 (3.8)

이는 성매매 이용환경의 변천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터넷 채팅을 처음 성매매에 이용했다고 응답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채팅은 2~3년전 유행 하던 방식이며 성인인증절차와 유료화가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성

인인증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이며, 대화 상대방은 무료라는 점에서 성인인증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유료화된 인터넷 채팅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이동을 하여 현재는 대다수 성매매 유인, 알선, 제공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24>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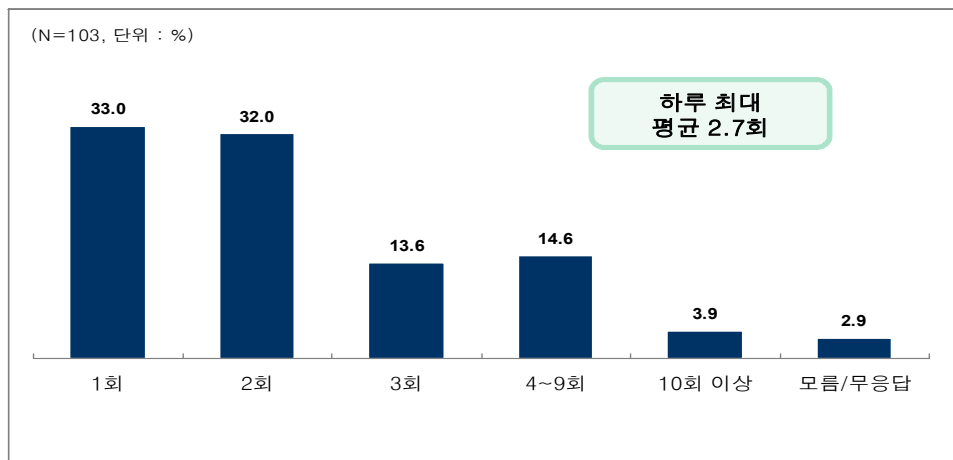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인터넷 채팅/카페	친구	스마트폰 채팅 앱	아는 언니, 오빠 소개	모름/무응답
전 체		103	28(27.2)	7(6.8)	69(67.0)	4(3.9)	2(1.9)
연령	만 13~14세	11	1(9.1)	1(9.1)	8(72.7)	1(9.1)	0(0.0)
	만 15~16세	40	9(22.5)	2(5.0)	31(77.5)	1(2.5)	0(0.0)
	만 17~18세	52	18(34.6)	4(7.7)	30(57.7)	2(3.8)	2(3.8)

다) 하루 최대 성매매(성행위) 횟수

하루 최대 성매매(성행위) 횟수로는 '1회' 34명(33.0%), '2회' 33명(32.0%), '3회' 14명(13.6%), '4~9회' 15명(14.6%), '10회 이상' 4명(3.9%)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횟수는 2.7회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18> 하루 최대 성매매(성행위) 횟수



연령별로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횟수는 만 13~14세가 3.2회, 만 17~18세 3.0회, 만 15~16세 2.2회의 순이었다. 안전한 가정에서 따뜻하고 충분한 지지와 배려를 받고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 최대 3명의 성구매자와 성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며, 역으로 하루 평균 최대 3명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이라고 답변한 아동·청소년은 4명으로, 그 중에 만 13~14세 1명도 포함되어 있다. 10회 이상의 내용은 각 10회 2명, 12회, 15회라고 답변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구매자들은 흔히들 화장을 하고 옷을 성인처럼 입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들 한다. 그러나 만 13-14세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성인 흉내를 낸다고 하여도 그 연령대를 성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3~14세 밖에 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1명에 대해 하루 최대 10명 이상의 성구매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 이상이다.

한편 하루 성매매 횟수가 많다는 것은 조건만남의 형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알선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건만남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으나 사실상 알선조직에 의한 성매매의 방식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표 III-25> 하루 최대 성매매(성행위) 경험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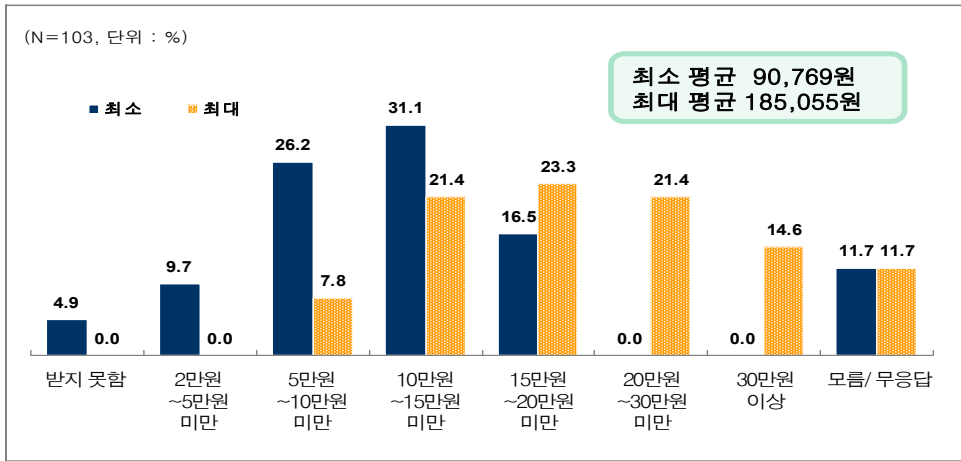
(단위 : 명, %, 회)

	사례 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 9회 이하	10회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회)	
전 체	103	34(33.0)	33(32.0)	14(13.6)	15(14.6)	4(3.9)	3(2.9)	2.7	
연령	만 13~14세	11	3(27.3)	4(36.4)	1(9.1)	2(18.2)	1(9.1)	0(0.0)	3.2
	만 15~16세	40	16(40.0)	14(35.0)	4(10.0)	6(15.0)	0(0.0)	0(0.0)	2.2
	만 17~18세	52	15(28.8)	15(28.8)	9(17.3)	7(13.5)	3(5.8)	3(5.8)	3.0

라) 성매매 1회당 받은 금액

성매매 1회당 받은 금액은 최소 평균 91,000원에서 최대 평균 185,000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5명, 4.9%로 나타났다.

<그림 III-19> 성매매 1회당 받은 금액



성매매 1회당 받은 최대금액은 연령별로는 만13~14세가 242,000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최소금액은 만 15~16세가 77,027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적으로는 최대 500,000만원이라 응답한 금액이 최고가였으며, 20,000원이 받지 못함을 제외하고 최저가였다.

<표 III-26> 성매매 1회당 받은 최대 금액

(단위 : 명, %, 원)

	사례수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원)	
전 체	103	8(7.8)	22(21.4)	24(23.3)	22(21.4)	15(14.6)	12(11.7)	185,055	
연령	만 13~14세	11	0(0.0)	2(18.2)	2(18.2)	1(9.1)	3(27.3)	3(27.3)	242,500
	만 15~16세	40	3(7.5)	15(37.5)	8(20.0)	6(15.0)	5(12.5)	3(7.5)	160,811
	만 17~18세	52	5(9.6)	5(9.6)	14(26.9)	15(28.8)	7(13.5)	6(11.5)	194,565
학교 재학	학교다님	62	5(8.1)	9(14.5)	15(24.2)	14(22.6)	10(16.1)	9(14.5)	195,283
	학교다니지 않음	41	3(7.3)	13(31.7)	9(22.0)	8(19.5)	5(12.2)	3(7.3)	170,789

최소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받지 못했거나 5만원 미만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약 1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성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는 이유 중 미성년자의 협상능력이 떨어져 성매매의 대가를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 의도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사실상 알선자가 있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실

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7> 성매매 1회당 받은 최소 금액

(단위 : 명, %, 원)

		사례 수	받지못함 (0원)	2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원)
전 체		103	5(4.9)	10(9.7)	27(26.2)	32(31.1)	17(16.5)	12(11.7)	90,769
연령	만 13~14세	11	0(0.0)	0(0.0)	2(18.2)	2(18.2)	4(36.4)	3(27.3)	125,000
	만 15~16세	40	5(12.5)	5(12.5)	8(20.0)	16(40.0)	3(7.5)	3(7.5)	77,027
	만 17~18세	52	0(0.0)	5(9.6)	17(32.7)	14(26.9)	10(19.2)	6(11.5)	95,870
학교 재학	학교다님	62	3(4.8)	7(11.3)	13(21.0)	19(30.6)	11(17.7)	9(14.5)	90,377
	학교다니 지않음	41	2(4.9)	3(7.3)	14(34.1)	13(31.7)	6(14.6)	3(7.3)	91,316

4)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와 인권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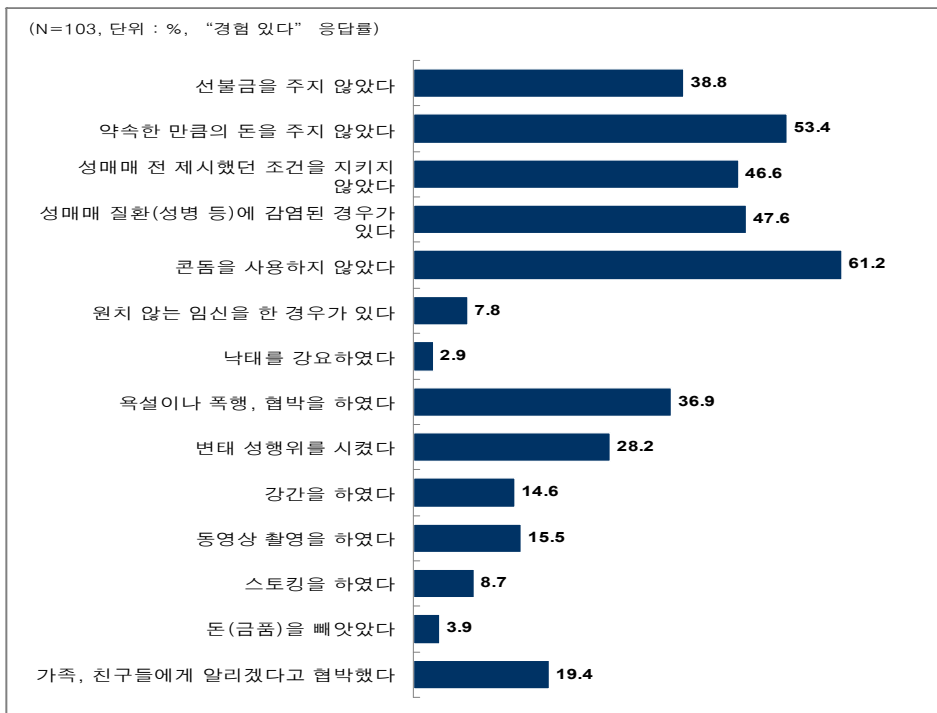
가)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관련하여 부당한 경험을 한 비율을 살펴보면, 약 20%만이 성구매자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80%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 중,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6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약속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았다’ 53.4%, ‘성 매개 질환(성병 등)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 47.6%, ‘성매매 전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46.6%, ‘선불금을 주지 않았다’ 38.8%,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 36.9%,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 28.2%,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15.5%), ‘강간을 하였다’(14.6%),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가 있다’(7.8%), ‘돈을 빼앗겼다’(3.9%), ‘낙태를 강요하였다’(2.9%) 등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연령별로 만13~14세의 경우 ‘선불금을 주지 않았다’와 ‘성 매개 질환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각각 54.5%),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45.5%), ‘강간을 하였다’와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각각 27.3%) 등의 부당경험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과 영상촬영, 주변에 알려졌다는 협박 등은 성매매 당시에만 작용하는 ‘부당한 경험’이 아니라 성범죄에 노출되는 등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병에 걸리거나 낙태를 강요하는 것 등은 가장 극단적인 성착취의 방법이다. 즉 성매매의 경험 안에 성구매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강도 높은 성착취의 경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0>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



<표 III-28>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복수응답, “경험 있다” 응답률)

(단위 : 명, %)

	전 체 (N=103)	연령		
		만 13~14세 (N=11)	만 15~16세 (N=40)	만 17~18세 (N=52)
선불금을 주지 않았다	40 (38.8)	6 (54.5)	19 (47.5)	15 (28.8)
약속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았다	55 (53.4)	5 (45.5)	23 (57.5)	27 (51.9)
성매매 전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48 (46.6)	4 (36.4)	19 (47.5)	25 (48.1)
성 매개 질환(성병 등)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	49 (47.6)	6 (54.5)	18 (45.0)	25 (48.1)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63 (61.2)	5 (45.5)	25 (62.5)	33 (63.5)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가 있다	8 (7.8)	0 (0.0)	2 (5.0)	6 (11.5)
낙태를 강요하였다	3 (2.9)	0 (0.0)	1 (2.5)	2 (3.8)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	38 (36.9)	5 (45.5)	13 (32.5)	20 (38.5)
번태 성행위를 시켰다	29 (28.2)	3 (27.3)	10 (25.0)	16 (30.8)
강간을 하였다	15 (14.6)	3 (27.3)	3 (7.5)	9 (17.3)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16 (15.5)	2 (18.2)	5 (12.5)	9 (17.3)
스토킹을 하였다	9 (8.7)	1 (9.1)	5 (12.5)	3 (5.8)
돈(금품)을 빼앗았다	4 (3.9)	0 (0.0)	2 (5.0)	2 (3.8)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0 (19.4)	3 (27.3)	7 (17.5)	10 (19.2)
모두 없음	21 (20.4)	2 (18.2)	9 (22.5)	10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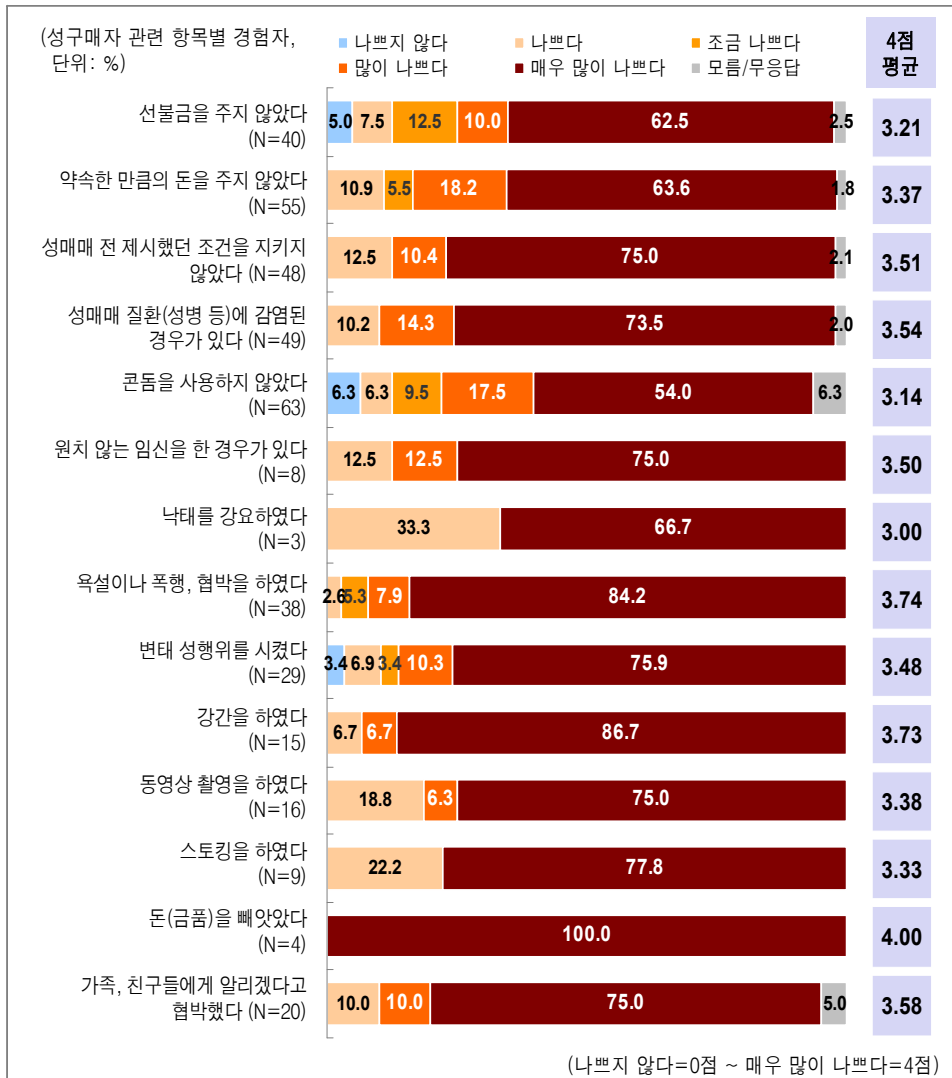
나) 성매매 상대방 관련 인권침해의 심각성 정도

성매매 상대방 관련 부당경험을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일이 얼마나 나쁜가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0~4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4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함),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평가한 항목은 ‘돈(금품)을 빼앗겼다’(4.00점)였으며, 그 다음으로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 3.74점, ‘강간을 하였다’ 3.73점,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3.58점, ‘성 매개 질환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 3.54점, ‘성매매 전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3.51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가 있다’ 3.5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성매매 전 선불을 주지 않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생각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 2명이었으며, 모름/무응답도 1명이 있었다. 콘돔

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이 4명이었고, 모름/무응답도 4명이었다.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는 데 대해서도 인권침해로 생각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은 1명이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을 인권침해라 생각하지 않을 경우, 훨씬 높은 인권침해 상황에 놓일 여지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III-21> 성매매 상대방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표 III-29> 성매매 상대방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 명, %, 점)

	사례 수	나쁘지 않다	나쁘다	조금 나쁘다	많이 나쁘다	매우 많이 나쁘다	모름/무응답	5점 척도 평균
선불금을 주지 않았다	40	2(5.0)	3(7.5)	5(12.5)	4(10.0)	25(62.5)	1(2.5)	3.21
약속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았다	55	0(0.0)	6(10.9)	3(5.5)	10(18.2)	35(63.6)	1(1.8)	3.37
성매매 전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48	0(0.0)	6(12.5)	0(0.0)	5(10.4)	36(75.0)	1(2.1)	3.51
성매매 전환(성병 등)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	49	0(0.0)	5(10.2)	0(0.0)	7(14.3)	36(73.5)	1(2.0)	3.54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63	4(6.3)	4(6.3)	6(9.5)	11(17.5)	34(54.0)	4(6.3)	3.14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가 있다	8	0(0.0)	1(12.5)	0(0.0)	1(12.5)	6(75.0)	0(0.0)	3.50
낙태를 강요하였다	3	0(0.0)	1(33.3)	0(0.0)	0(0.0)	2(66.7)	0(0.0)	3.00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	38	0(0.0)	1(2.6)	2(5.3)	3(7.9)	32(84.2)	0(0.0)	3.74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	29	1(3.4)	2(6.9)	1(3.4)	3(10.3)	22(75.9)	0(0.0)	3.48
강간을 하였다	15	0(0.0)	1(6.7)	0(0.0)	1(6.7)	13(86.7)	0(0.0)	3.73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16	0(0.0)	3(18.8)	0(0.0)	1(6.3)	12(75.0)	0(0.0)	3.38
스토킹을 하였다	9	0(0.0)	2(22.2)	0(0.0)	0(0.0)	7(77.8)	0(0.0)	3.33
돈(금품)을 빼앗았다	4	0(0.0)	0(0.0)	0(0.0)	0(0.0)	4(100.0)	0(0.0)	4.00
가족, 친구들에게 알려졌다고 협박하였다	20	0(0.0)	2(10.0)	0(0.0)	2(10.0)	15(75.0)	1(5.0)	3.58

다) 성매매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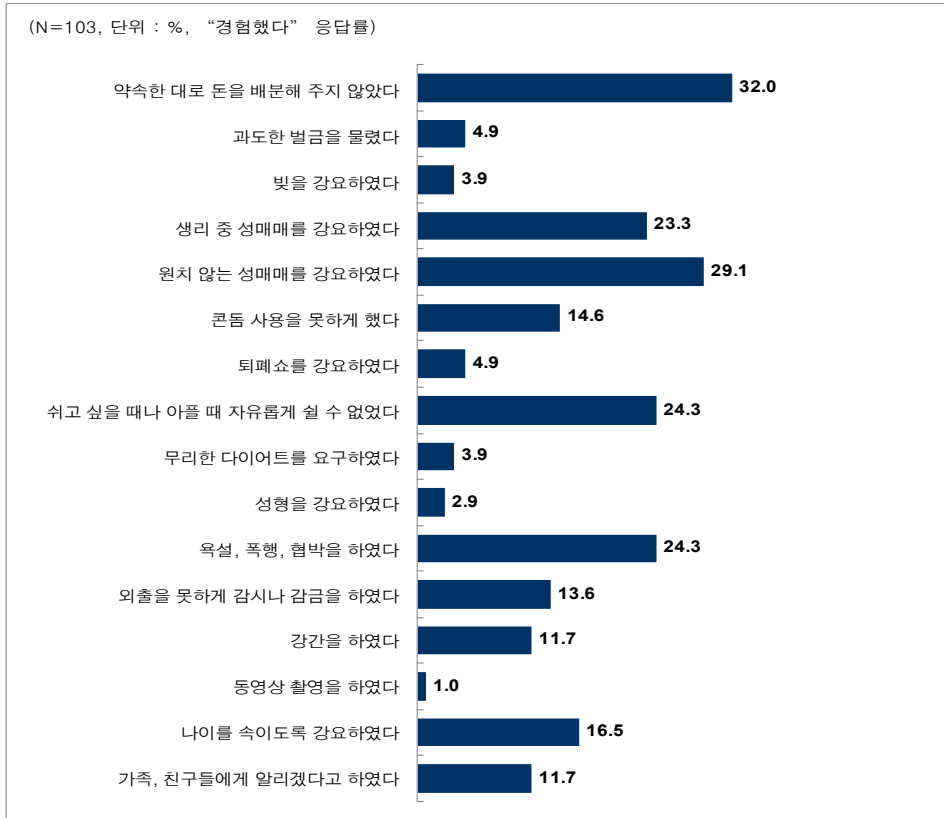
성매매 알선자와 관련된 부당한 경험들을 살펴보면, ‘약속한 대로 돈을 배분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9.1%, ‘쉬고 싶을 때나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 ‘욕설, 폭행, 협박을 하였다’ 각각 24.3%, ‘생리 중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3.3% 등의 순서였다.

이 항목에서는 조건만남을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으나 사실상 알선조직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성인 업소형태의 성매매 방식의 알선자의 인권침해 방식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형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알선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답변한 응답도 12명(11.7%)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Ⅲ-22> 성매매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



연령별로 만13~14세의 경우 ‘생리 중 성매매를 강요하였다’(36.4%), ‘욕설, 폭행, 협박을 하였다’(45.5%), ‘강간을 하였다’(36.4%),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18.2%) 등은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표 Ⅲ-28>의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관련 부당경험이 “모두 없음”이 20.4%인 반면 <표 Ⅲ-30>의 성매매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은 “모두 없음”이 54.4%로 나타나 성매매 상대방 관련 부당경험이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보다 약 34%p 높다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에서 성구매자의 인권침해가 알선자의 인권침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알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구매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30> 성매매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복수응답, “경험 있다” 응답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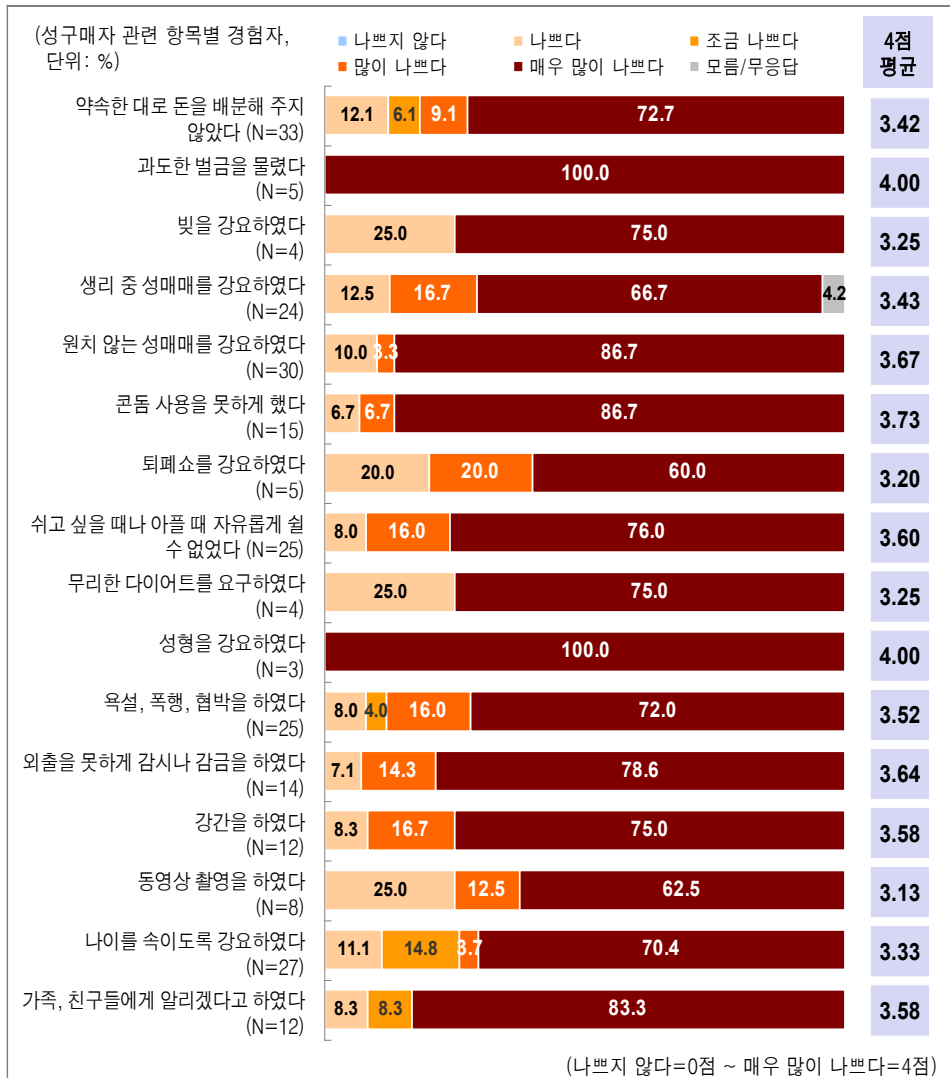
	전 체 (N=103)	연령		
		만 13~14세 (N=11)	만 15~16세 (N=40)	만 17~18세 (N=52)
약속한 대로 돈을 배분해주지 않았다	33(32.0)	3(27.3)	15(37.5)	15(28.8)
과도한 벌금을 물렸다	5(4.9)	0(0.0)	3(7.5)	2(3.8)
빚을 강요하였다	4(3.9)	0(0.0)	1(2.5)	3(5.8)
생리 중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4(23.3)	4(36.4)	9(22.5)	11(21.2)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30(29.1)	3(27.3)	15(37.5)	12(23.1)
콘돔 사용을 못하게 하였다	15(14.6)	2(18.2)	5(12.5)	8(15.4)
퇴폐쇼를 강요하였다	5(4.9)	1(9.1)	1(2.5)	3(5.8)
쉬고 싶을 때나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	25(24.3)	3(27.3)	9(22.5)	13(25.0)
무리한 다이어트를 요구하였다	4(3.9)	1(9.1)	1(2.5)	2(3.8)
성형을 강요하였다	3(2.9)	1(9.1)	1(2.5)	1(1.9)
욕설, 폭행, 협박을 하였다	25(24.3)	5(45.5)	11(27.5)	9(17.3)
외출을 못하게 감시나 감금을 하였다	14(13.6)	2(18.2)	8(20.0)	4(7.7)
강간을 하였다	12(11.7)	4(36.4)	3(7.5)	5(9.6)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1(1.0)	0(0.0)	1(2.5)	0(0.0)
나이를 속이도록 강요하였다	17(16.5)	2(18.2)	8(20.0)	7(13.5)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	12(11.7)	2(18.2)	4(10.0)	6(11.5)
모두 없음	56(54.4)	5(45.5)	22(55.0)	29(55.8)

라) 성매매 알선자 관련 인권침해의 심각성 정도

성매매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자를 대상으로 그 일이 얼마나 나쁜가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0~4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4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함),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한 항목은 ‘과도한 벌금을 물렸다’와 ‘성형을 강요하였다’(각각 4.00점)였으며, 그 다음으로 ‘콘돔 사용을 못하게 했다’(3.73점),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했다’(3.67점), ‘외출을 못하게 감시나 감금을 하였다’(3.64점), ‘쉬고 싶을 때나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3.60점)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림 III-23> 성매매 알선자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표 III-31> 성매매 알선자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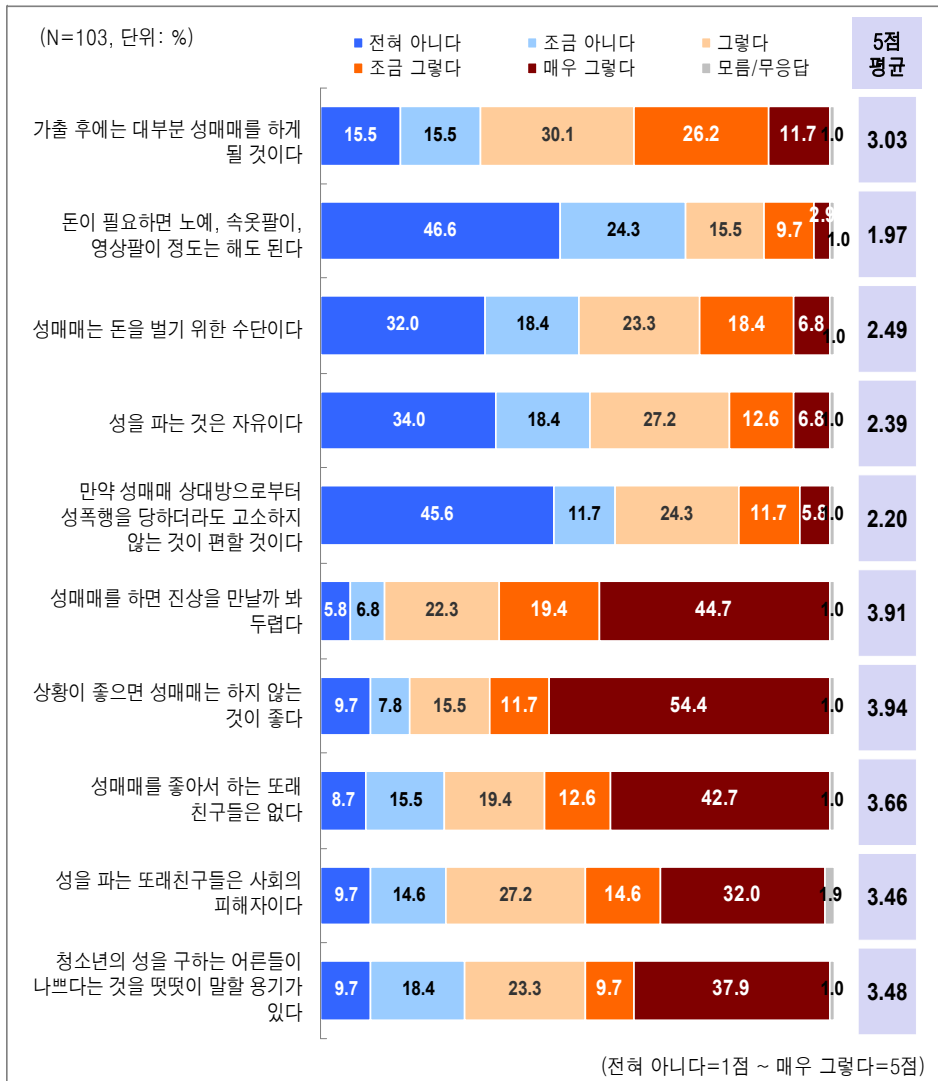
	사례 수	나쁘지 않다	나쁘다	조금 나쁘다	많이 나쁘다	매우 많이 나쁘다	모름/무응답	5점 척도 평균
약속한 대로 돈을 배분해주지 않았다	33	0(0.0)	4(12.1)	2(6.1)	3(9.1)	24(72.7)	0(0.0)	3.42
과도한 벌금을 물렸다	5	0(0.0)	0(0.0)	0(0.0)	0(0.0)	5(100.0)	0(0.0)	4.00
빛을 강요하였다	4	0(0.0)	1(25.0)	0(0.0)	0(0.0)	3(75.0)	0(0.0)	3.25
생리 중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4	0(0.0)	3(12.5)	0(0.0)	4(16.7)	16(66.7)	1(4.2)	3.43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30	0(0.0)	3(10.0)	0(0.0)	1(3.3)	26(86.7)	0(0.0)	3.67
콘돔 사용을 못하게 하였다	15	0(0.0)	1(6.7)	0(0.0)	1(6.7)	13(86.7)	0(0.0)	3.73
퇴폐쇼를 강요하였다	5	0(0.0)	1(20.0)	0(0.0)	1(20.0)	3(60.0)	0(0.0)	3.20
쉬고 싶을 때나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	25	0(0.0)	2(8.0)	0(0.0)	4(16.0)	19(76.0)	0(0.0)	3.60
무리한 다이어트를 요구하였다	4	0(0.0)	1(25.0)	0(0.0)	0(0.0)	3(75.0)	0(0.0)	3.25
성형을 강요하였다	3	0(0.0)	0(0.0)	0(0.0)	0(0.0)	3(100.0)	0(0.0)	4.00
욕설, 폭행, 협박을 하였다	25	0(0.0)	2(8.0)	1(4.0)	4(16.0)	18(72.0)	0(0.0)	3.52
외출을 못하게 감시나 감금을 하였다	14	0(0.0)	1(7.1)	0(0.0)	2(14.3)	11(78.6)	0(0.0)	3.64
강간을 하였다	12	0(0.0)	1(8.3)	0(0.0)	2(16.7)	9(75.0)	0(0.0)	3.58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8	0(0.0)	2(25.0)	0(0.0)	1(12.5)	5(62.5)	0(0.0)	3.13
나이를 속이도록 강요하였다	27	0(0.0)	3(11.1)	4(14.8)	1(3.7)	19(70.4)	0(0.0)	3.33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	12	0(0.0)	1(8.3)	0(0.0)	1(8.3)	10(83.3)	0(0.0)	3.58

5)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중 “가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와 ‘조금 아니다’ 각각 15.5%, ‘그렇다’ 30.1%, ‘조금 그렇다’ 26.2%, ‘매우 그렇다’ 11.7%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83.5%가 가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5점 척도 평균점수로는 3.03점이었다.

“돈이 필요하면 노예, 속옷팔이, 영상팔이 정도는 해도 된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46.6%, ‘조금 아니다’ 24.3%, ‘그렇다’ 15.5%, ‘조금 그렇다’ 9.7%, ‘매우 그렇다’ 2.9%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52.4%가 돈이 필요하면 노예, 속옷팔이, 영상팔이 등은 해도 된다고 답변했으며, 5점 척도 평균점수로는 1.97점이었다.

<그림 III-24>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성매매는 돈을 벌기 위한 편한 수단이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 32.0%, ‘조금 아니다’ 18.4%, ‘그렇다’ 23.3%, ‘조금 그렇다’ 18.4%, ‘매우 그렇다’ 6.8%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67%가 성매매를 돈을 벌기 위한 편한 수단이라고 답변하였고, 5점 척도 평균점수는 2.49점으로 나타났다.

“성을 파는 것은 자유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34.0%, ‘조금 아니다’ 18.4%, ‘그렇다’ 27.2%, ‘조금 그렇다’ 12.6%, ‘매우 그렇다’ 6.8% 등으로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성을 파는 것은 자유라는 답변이 65%이며, 5점 척도 평균점수는 2.39점이었다.

“만약 성매매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고소하지 않는 것이 편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45.6%, ‘조금 아니다’ 11.7%, ‘그렇다’ 24.3%, ‘조금 그렇다’ 11.7%, ‘매우 그렇다’ 5.8%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53.4%가 고소하지 않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5점 척도 평균점수는 2.20점이었다.

“성매매를 하면 진상을 만날까 봐 두렵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 5.8%, ‘조금 아니다’ 6.8%, ‘그렇다’ 22.3%, ‘조금 그렇다’ 19.4%, ‘매우 그렇다’ 44.7%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93.2%로 대부분이 두려움을 나타냈으며, 5점 척도 평균점수는 3.91점이었다.

“상황이 좋으면 성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9.7%, ‘조금 아니다’ 7.8%, ‘그렇다’ 15.5%, ‘조금 그렇다’ 11.7%, ‘매우 그렇다’ 54.4%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89.3%가 상황이 좋으면 성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으며, 5점 척도 평균점수는 3.94점이었다.

“성매매를 좋아서 하는 또래친구들은 없다” 항목의 경우 ‘전혀 아니다’ 8.7%, ‘조금 아니다’ 15.5%, ‘그렇다’ 19.4%, ‘조금 그렇다’ 12.6%, ‘매우 그렇다’ 42.7%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90.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5점 척도 평균점수로 3.66점이었다.

“성을 파는 또래친구들은 사회의 피해자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9.7%, ‘조금 아니다’ 14.6%, ‘그렇다’ 27.2%, ‘조금 그렇다’ 14.6%, ‘매우 그렇다’ 32.0%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 2명(1.9)을 제외하면 88.4%가 동의의사를 표했으며, 5점 척도 평균점수는 3.46점이었다.

“청소년의 성을 구하는 어른들이 나쁘다는 것을 떳떳이 말할 용기가 있다” 항목의 경우, ‘전혀 아니다’ 9.7%, ‘조금 아니다’ 18.4%, ‘그렇다’ 22.3%, ‘조금 그렇다’ 9.7%, ‘매우 그렇다’ 37.9%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89.3%가

용기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5점 척도 평균점수는 3.48점이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역량강화가 되어 있는 설문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표집대상자들이 이미 성매매 관련한 지원기관의 서비스를 경험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3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단위 : 명, 점)

	전 체 (N=103)	연령		
		만 13~14세 (N=11)	만 15~16세 (N=40)	만 17~18세 (N=52)
가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	3.03	3.27	2.98	3.02
돈이 필요하면 노예, 속옷팔이, 영상팔이 정도는 해도 된다	1.97	2.64	2.00	1.80
성매매는 돈을 벌기 위한 편한 수단이다	2.49	2.36	2.53	2.49
성을 파는 것은 자유이다	2.39	2.45	2.43	2.35
만약 성매매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고소하지 않는 것이 편할 것이다	2.20	2.18	2.20	2.20
성매매를 하면 진상을 만날까봐 두렵다	3.91	3.64	3.80	4.06
상황이 좋으면 성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94	3.45	3.90	4.08
성매매를 좋아서 하는 또래친구들은 없다	3.66	3.91	3.40	3.80
성을 파는 또래친구들은 사회의 피해자이다	3.46	3.50	3.33	3.55
청소년의 성을 구하는 어른들이 나쁘다는 것을 떳떳이 말할 용기가 있다	3.48	3.18	3.38	3.63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1) 성매매관련 수사기관에서의 경험

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이 51.5%, 받은 경험이 없다가 48.5%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3세~14세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만15세~16세 55.0%, 만17세~18세가 46.2%로 연령이 낮을수록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표본집단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표본집단은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 피해 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집단이다.

<표 III-33>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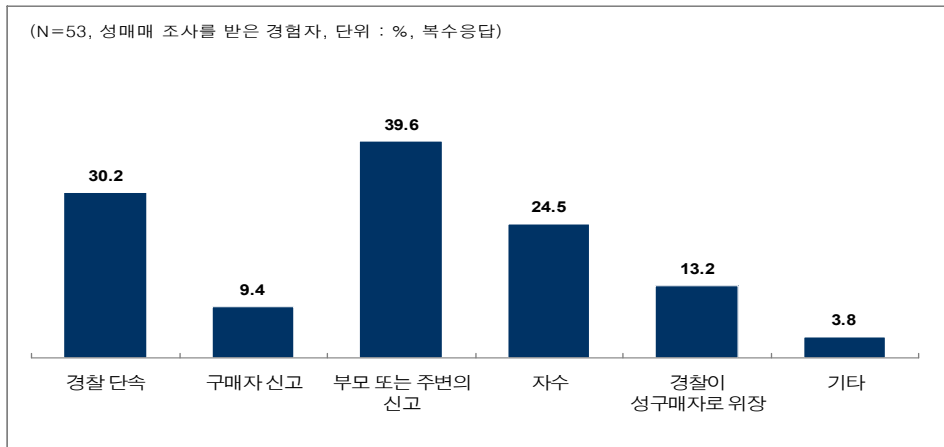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03	53(51.5)	50(48.5)
연령	만 13~14세	11	7(63.6)	4(36.4)
	만 15~16세	40	22(55.0)	18(45.0)
	만 17~18세	52	24(46.2)	28(53.8)

나)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모 또는 주변의 신고'(39.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단속' 30.2%, '자수' 24.5%,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 13.2%, '구매자신고' 9.4% 등의 순이었다.

<그림 III-25>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복수응답)



<표 III-34>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된 경로(복수응답)

(단위 : 명, %)

		사례수	경찰 단속	구매자 신고	부모 또는 주변의 신고	자수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	기타
전 체		53	16(30.2)	5(9.4)	21(39.6)	13(24.5)	7(13.2)	2(3.8)
연령	만 13~14세	7	3(42.9)	1(14.3)	4(57.1)	3(42.9)	0(0.0)	0(0.0)
	만 15~16세	22	8(36.4)	3(13.6)	10(45.5)	3(13.6)	3(13.6)	0(0.0)
	만 17~18세	24	5(20.8)	1(4.2)	7(29.2)	7(29.2)	4(16.7)	2(8.3)

다)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한 경우 단속시기 및 실제 성행위 경험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N=7), 실제 단속시기는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 4명(57.1%),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2명(28.6%), 모름/무응답 1명(14.3%)이 답변하였으며,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었다는 응답이 2명(28.6%), 없었다는 응답이 4명(57.1%), 모름/무응답이 1명(14.3%)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단속을 빌미로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성범죄가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고, 경찰 내부에 함정수사를 포함하여 단속 방법의 획기적인 전환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35>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한 경우, 경찰과의 성행위 여부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7	2(28.6)	4(57.1)	1(14.3)
연령	만 15~16세	3	2(66.7)	1(33.3)	0(0.0)
	만 17~18세	4	0(0.0)	3(75.0)	1(25.0)

라)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의 신분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의 신분은 ‘피해자’가 6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피의자’ 11.3%, ‘참고인’ 9.4%, ‘모른다’ 1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조사 받았을 당시의 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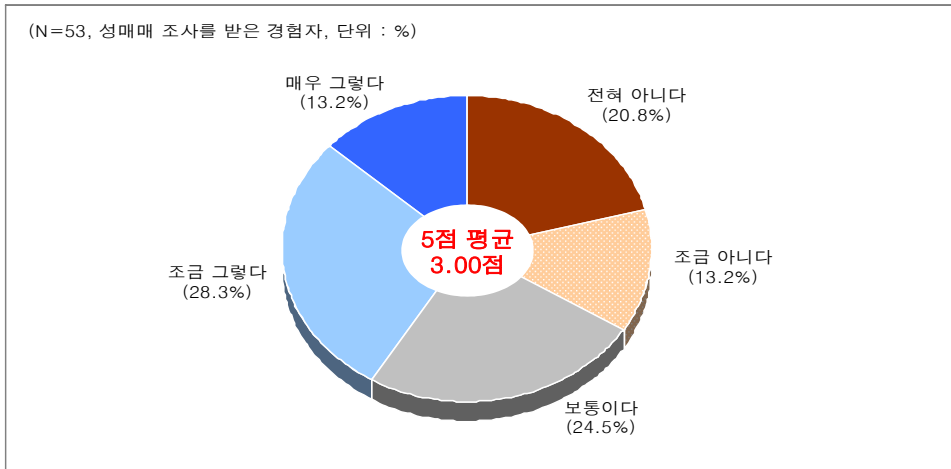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모른다
전 체		53	34(64.2)	5(9.4)	6(11.3)	8(15.1)
연령	만 13~14세	7	4(57.1)	1(14.3)	0(0.0)	2(28.6)
	만 15~16세	22	13(59.1)	2(9.1)	4(18.2)	3(13.6)
	만 17~18세	24	17(70.8)	2(8.3)	2(8.3)	3(12.5)

마)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 중에 범죄자 취급을 한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13.2%, ‘조금 그렇다’ 28.3% 등 ‘그렇다’는 응답이 41.5%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20.8%, ‘조금 아니다’ 13.2% 등 ‘아니다’는 응답은 34.0%로 조사되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4.5%였으며 5점 척도 평균 점수로는 3.00점이었다.

<그림 III-26>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연령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의 비율이 만13~14세의 28.6%, 만15~16세의 45.5%, 만17~18세의 41.7%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하였다.

<표 III-37>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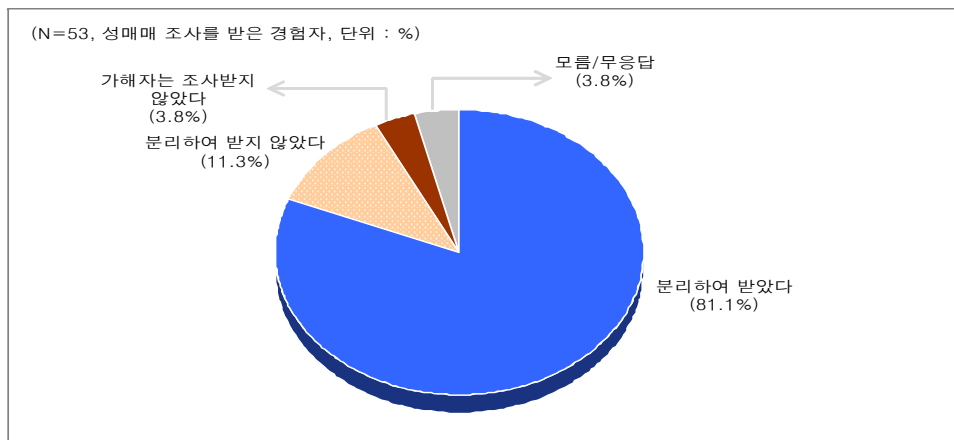
(단위 : 명, %, 점)

		사례수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전 체		53	11 (20.8)	7 (13.2)	13 (24.5)	15 (28.3)	7 (13.2)	3.00
연령	만 13~14세	7	0 (0.0)	2 (28.6)	3 (42.9)	2 (28.6)	0 (0.0)	3.00
	만 15~16세	22	5 (22.7)	3 (13.6)	4 (18.2)	5 (22.7)	5 (22.7)	3.09
	만 17~18세	24	6 (25.0)	2 (8.3)	6 (25.0)	8 (33.3)	2 (8.3)	2.92
학교 재학	학교다님	30	4 (13.3)	6 (20.0)	8 (26.7)	9 (30.0)	3 (10.0)	3.03
	학교다니지 않음	23	7 (30.4)	1 (4.3)	5 (21.7)	6 (26.1)	4 (17.4)	2.96

바) 성매매 가해자와 같이 수사 시 분리조사 여부

성매매 가해자(성매매알선업자, 성구매자)와 같이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분리하여 받았다’가 81.1%로 대다수였다.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로 인한 압박 등을 방지하여 피해자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리하여 받지 않았다’ 11.3%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기타 답변으로 ‘가해자는 조사받지 않았다’가 2명 3.8% 있었다. 이는 답변한 아동·청소년이 수사진행과정에서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그런 답변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III-27> 성매매 가해자와 같이 수사 시 분리조사 여부



<표 III-38> 가해자와 같이 조사 받을 때, 분리조사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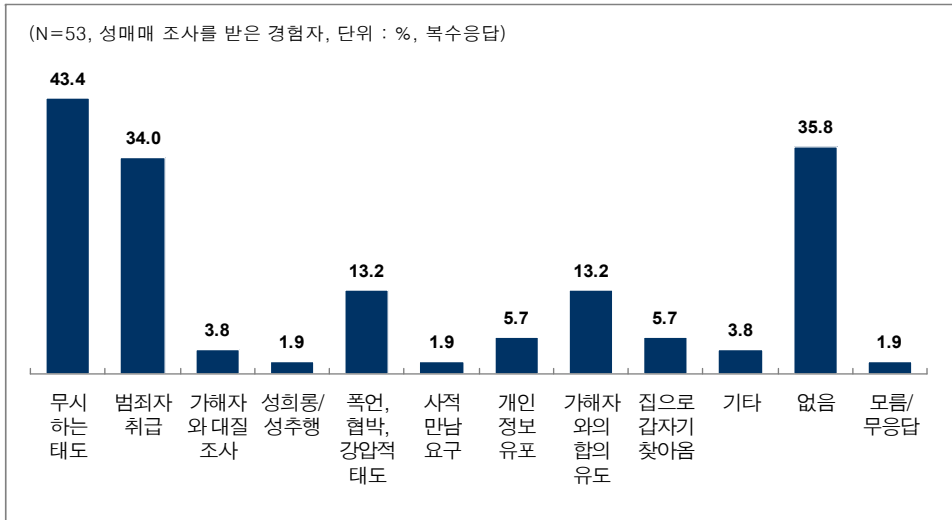
		사례수	분리하여 받았다	분리하여 받지 않았다	가해자는 조사받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전 체		53	43(81.1)	6(11.3)	2(3.8)	2(3.8)
연령	만 13~14세	7	6(85.7)	0(0.0)	1(14.3)	0(0.0)
	만 15~16세	22	18(81.8)	2(9.1)	1(4.5)	1(4.5)
	만 17~18세	24	19(79.2)	4(16.7)	0(0.0)	1(4.2)
학교 재학	학교다님	30	25(83.3)	2(6.7)	2(6.7)	1(3.3)
	학교다니지 않음	23	18(78.3)	4(17.4)	0(0.0)	1(4.3)

사)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시하는 태도’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죄자 취급’이 34.0%,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와 ‘가해자와의 합의유도’가 각각 13.2%, ‘개인정보유포’와 ‘집으로 갑자기 찾아옴’이 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5.8%는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와 ‘사적 만남 요구’가 각각 1명씩(1.9%) 답변을 한 점이다. 기타 답변으로 ‘감금’ 1명(1.9%), ‘신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1명(1.9%)도 있었다.

특히 ‘가해자와의 합의 유도’가 있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7명(13.2%)이 있었는데,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장 중요한 직무인 수사관이 합의를 유도한다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태도라 보인다. 앞의 항목에서 64.2%가 피해자로 조사받았다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림 III-28>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복수응답)



<표 III-39>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사항(복수응답)

(단위 : 명, %)

	전 체 (N=53)	연령		
		만 13~14세 (N=7)	만 15~16세 (N=22)	만 17~18세 (N=24)
무시하는 태도	23(43.4)	4(57.1)	10(45.5)	9(37.5)
범죄자 취급	18(34.0)	3(42.9)	9(40.9)	6(25.0)
가해자와 대질조사	2(3.8)	0(0.0)	1(4.5)	1(4.2)
성희롱/성추행	1(1.9)	0(0.0)	0(0.0)	1(4.2)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	7(13.2)	1(14.3)	3(13.6)	3(12.5)
사적 만남 요구	1(1.9)	0(0.0)	1(4.5)	0(0.0)
개인정보 유포	3(5.7)	0(0.0)	2(9.1)	1(4.2)
가해자와의 합의유도	7(13.2)	1(14.3)	3(13.6)	3(12.5)
집으로 갑자기 찾아옴	3(5.7)	1(14.3)	1(4.5)	1(4.2)
기타	2(3.8)	0(0.0)	0(0.0)	2(8.3)
없다	19(35.8)	2(28.6)	7(31.8)	10(41.7)
모름/무응답	1(1.9)	0(0.0)	1(4.5)	0(0.0)

아)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태도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친절하게 도와 주려고 하였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8.9%, ‘조금 그렇다’ 13.2%, ‘그렇다’ 35.8%, ‘조금 아니다’ 17.0%, ‘전혀 아니다’ 13.2%, ‘모름/무응답’ 1.9%로 조사되었으며 5점 척도 평균은 3.08점이었다.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하였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0.8%, ‘조금 그렇다’ 15.1%, ‘그렇다’ 34.0%, ‘조금 아니다’ 18.9%, ‘전혀 아니다’ 9.4%, ‘모름/무응답’ 1.9%로 조사되었으며 5점 척도 평균은 3.19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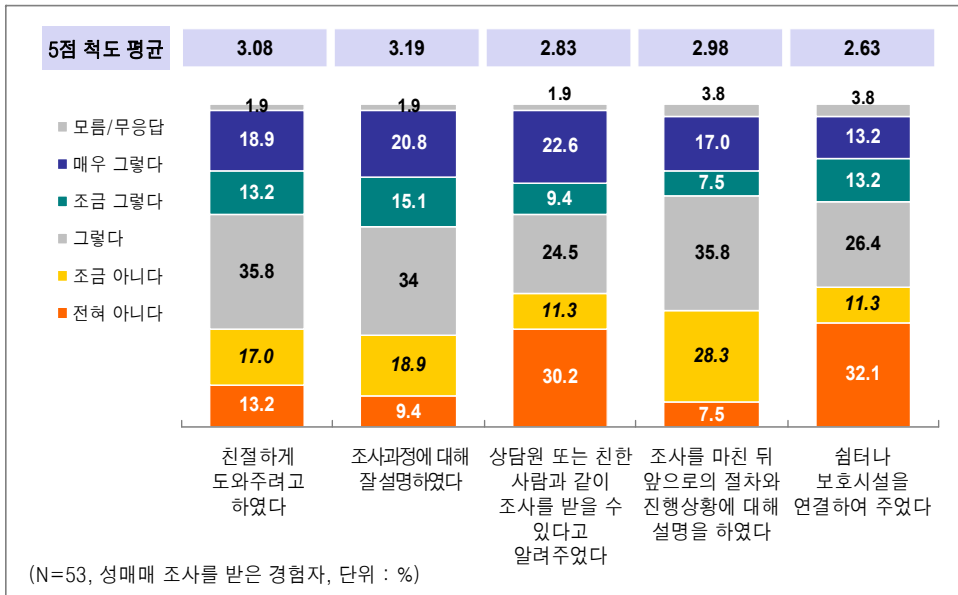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2.6%, ‘조금 그렇다’ 9.4%, ‘그렇다’ 34%, ‘조금 아니다’ 11.3%, ‘전혀 아니다’ 30.2%로 조사되었으며 5점 척도 평균은 2.83점이었다.

“조사를 마친 뒤 앞으로의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7.0%, ‘조금 그렇다’ 7.5%, ‘그렇다’ 35.8%, ‘조금 아니다’ 28.3%, ‘전혀 아니다’ 7.5%, ‘모름/무응답’ 3.8%로 조사되었으며 5점 척도 평균은 2.98점이었다.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3.2%, ‘조금 그렇다’ 13.2%, ‘그렇다’ 26.4%, ‘조금 아니다’ 11.3%, ‘전혀 아니다’ 32.1%로 조사되었으며 5점 척도 평균은 2.63점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와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가 30%이상이라는 점이다.

<그림 III-29>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태도



<표 III-40>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

(단위 : 명, 점)

	전 체 (N=53)	연령		
		만 13~14세 (N=7)	만 15~16세 (N=22)	만 17~18세 (N=24)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다	3.08	2.86	3.23	3.00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하였다	3.19	2.86	3.27	3.22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2.83	2.29	2.82	3.00
조사를 마친 뒤 앞으로의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2.98	2.86	3.14	2.86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	2.63	2.00	2.68	2.77

2) 성매매 관련 법원에서의 경험

가) 법원에서 성매매 관련 재판/출석요구를 받은 경험

성매매 관련하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재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90.3%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인 9.7%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41> 성매매 관련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재판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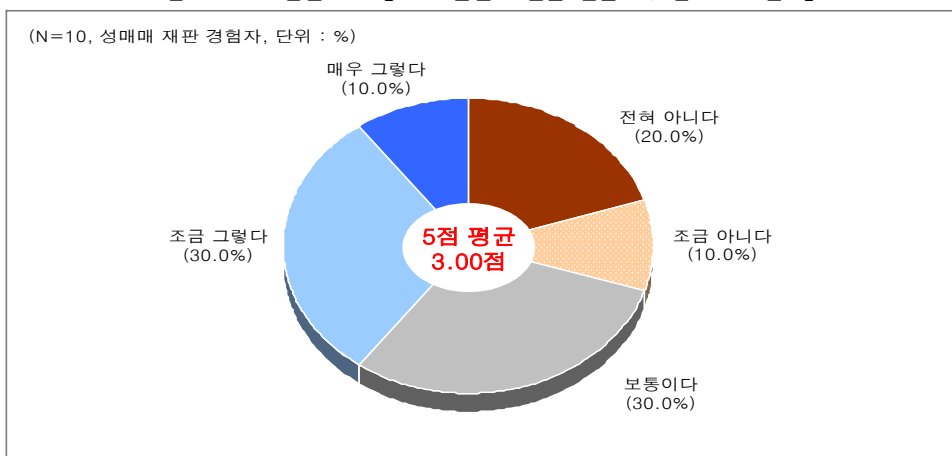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03	10(9.7)	93(90.3)
연령	만 13~14세	11	0(0.0)	11(100.0)
	만 15~16세	40	5(12.5)	35(87.5)
	만 17~18세	52	5(9.6)	47(90.4)

나) 법원에서 성매매 관련 재판을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법원에서 재판과정 중에 범죄자 취급을 한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10.0%, '조금 그렇다' 30.0% 등 '그렇다'는 응답이 40.0%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20.0%, '조금 아니다' 10.0% 등 '아니다'는 응답은 30.0%로 조사됨. '보통이다'는 응답은 30.0%였으며 5점 척도 평균 점수로는 3.00점이었다.

<그림 III-30> 법원에서 성매매 관련 재판을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표 III-42> 법원에서 성매매 관련 재판을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단위 : 명, %, 점)

		사례수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전 체		10	2(20.0)	1(10.0)	3(30.0)	3(30.0)	1(10.0)	3.00
연령	만 15~16세	5	2(40.0)	0(0.0)	2(40.0)	1(20.0)	0(0.0)	2.40
	만 17~18세	5	0(0.0)	1(20.0)	1(20.0)	2(40.0)	1(20.0)	3.60

다)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10명 중 3명만 경험이 있었다.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의 유형으로는 '감호위탁', '소년원 입소', '수강명령' 각각 1명이었다.

<표 III-43>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0	3(30.0)	7(70.0)
연령	만 15~16세	5	1(20.0)	4(80.0)
	만 17~18세	5	2(40.0)	3(60.0)

<표 III-44>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 유형

(단위 : 명, %)

		사례수	감호위탁	수강명령	소년원 입소
전 체		3	1(33.3)	1(33.3)	1(33.3)
연령	만 15~16세	1	0(0.0)	1(100.0)	0(0.0)
	만 17~18세	2	1(50.0)	0(0.0)	1(50.0)

라) 보호처분에 대한 생각

성매매 관련 보호처분을 받은 응답자 3명 중 2명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고, 1명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전체 응답자에게 보호처분에 대한 평소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모르겠다’가 32%,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18.4%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처벌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다’, ‘실적 올리려고 한다’, ‘처벌이 아니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가 각각 1명씩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교육이라기보다 처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의미조차 모르는 경우도 1/3이 되어 보호처분의 목적과 달리 실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인다.

<표 III-45> 보호처분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사례수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모르겠다
전 체		3	2(66.7)	1(33.3)
연령	만 15~16세	1	0(0.0)	1(100.0)
	만 17~18세	2	2(100.0)	0(0.0)

<표 III-46> 보호처분에 대한 평소생각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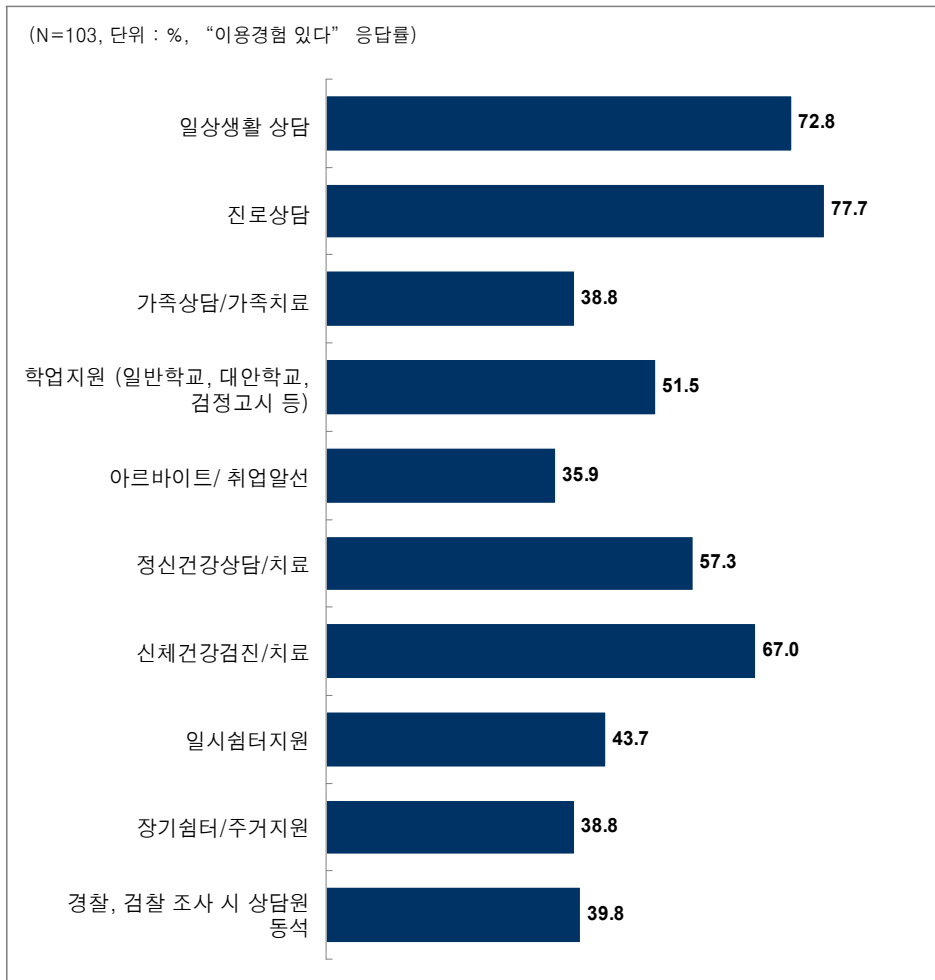
		사례수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모르겠다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103	19(18.4)	48(46.6)	32(31.1)	3(2.9)	1(1.0)
연령	만 13~14세	11	2(18.2)	4(36.4)	5(45.5)	0(0.0)	0(0.0)
	만 15~16세	40	9(22.5)	22(55.0)	8(20.0)	1(2.5)	0(0.0)
	만 17~18세	52	8(15.4)	22(42.3)	19(36.5)	2(3.8)	1(1.9)

라. 아동·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관련

1)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이용 경험

성매매와 관련한 지원/도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로상담’이 7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상담’ 72.8%, ‘신체건강 검진/치료’ 67.0%, ‘정신건강상담/치료’ 57.3%, ‘학업지원(일반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51.5%, ‘일시쉼터지원’ 43.7%, ‘경찰, 검찰 조사 시 상담원 동석’ 39.8%, ‘가족상담/가족치료’와 ‘장기쉼터/주거지원’ 각각 38.8%, ‘아르바이트/취업알선’ 35.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1>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이용경험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7세~18세가 ‘아르바이트/취업알선’(46.2%)에서 타 연령층에 비해 다소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재학 여부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일시쉼터지원’이 56.1%로 학교를 다니는 응답자(35.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47>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이용경험(“이용 경험있다”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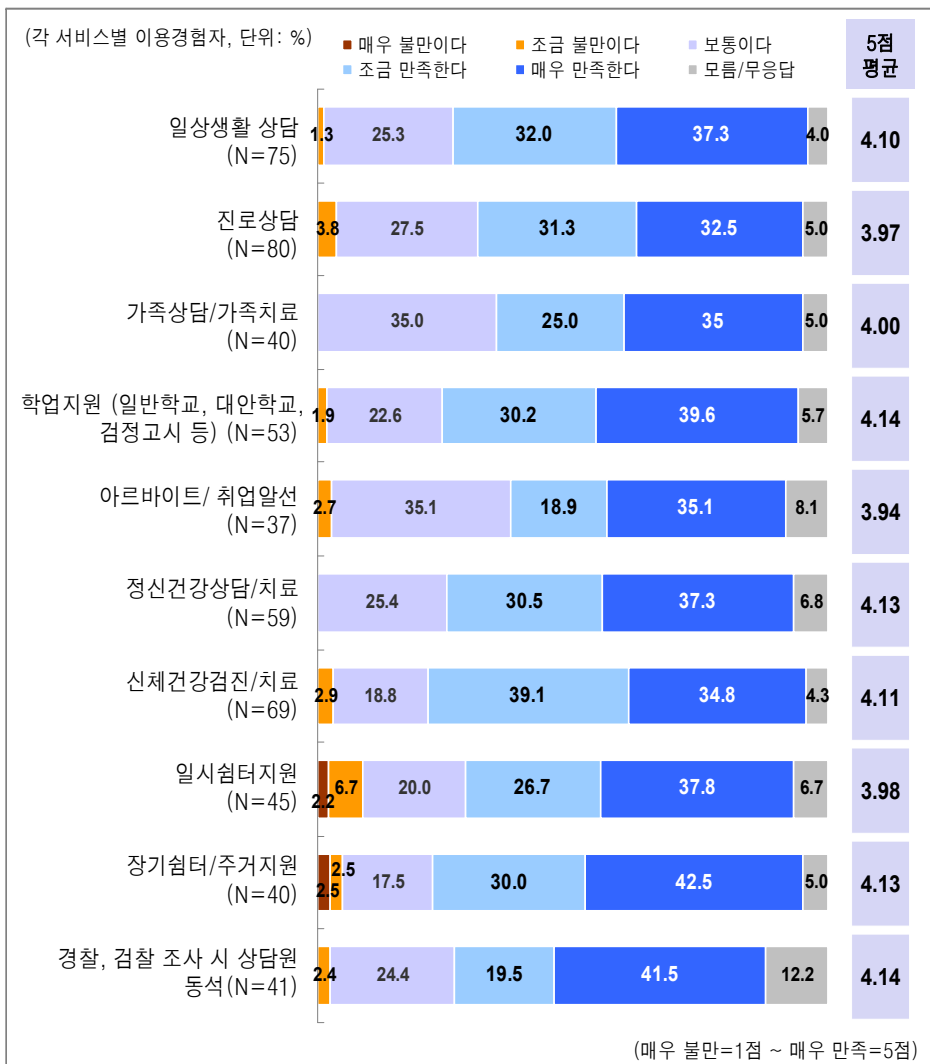
(단위 : 명, %)

	전 체 (N=103)	연령		
		만 13~14세 (N=11)	만 15~16세 (N=40)	만 17~18세 (N=52)
일상생활상담	75(72.8)	8(72.7)	28(70.0)	39(75.0)
진로상담	80(77.7)	7(63.6)	31(77.5)	42(80.8)
가족상담/가족치료	40(38.8)	2(18.2)	18(45.0)	20(38.5)
학업지원(일반학교,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	53(51.5)	4(36.4)	22(55.0)	27(51.9)
아르바이트/취업알선	37(35.9)	1(9.1)	12(30.0)	24(46.2)
정신건강상담/치료	59(57.3)	3(27.3)	23(57.5)	33(63.5)
신체건강검진/치료	69(67.0)	6(54.5)	25(62.5)	38(73.1)
일시쉼터지원	45(43.7)	3(27.3)	21(52.5)	21(40.4)
장기쉼터/주거지원	40(38.8)	3(27.3)	15(37.5)	22(42.3)
경찰, 검찰 조사 시 상담원 동석	41(39.8)	4(36.4)	18(45.0)	19(36.5)
모두 없음	6(5.8)	2(18.2)	3(7.5)	1(1.9)

2)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만족도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만족도의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학업 지원’과 ‘경찰, 검찰 조사시 상담원 동석’이 각각 4.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신건강상담/치료’와 ‘장기쉼터/주거지원’이 각각 4.13점 등의 순이었다. ‘아르바이트/취업알선’은 3.9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2> 성매매 도움 관련 서비스 만족도



<표 III-48>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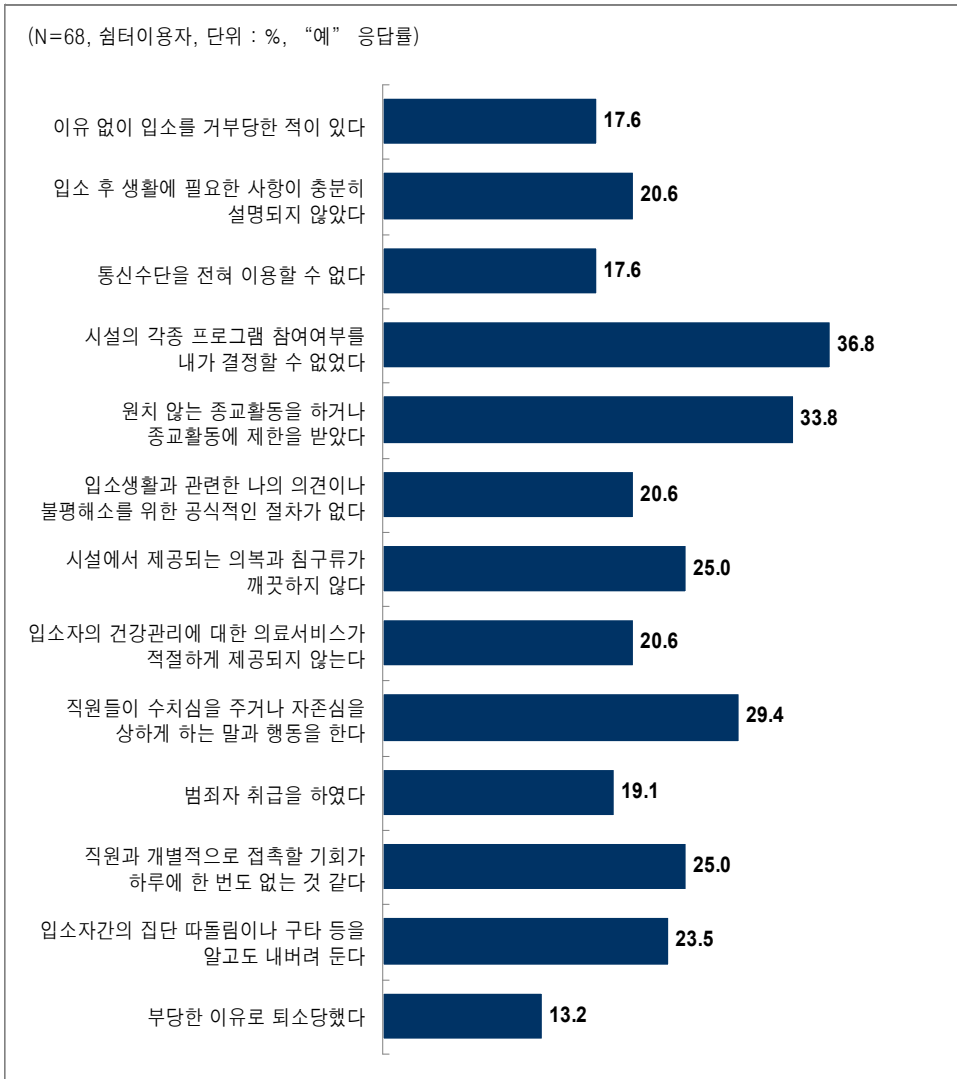
	사례 수	매우 불만이다	조금 불만이다	보통이다	조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모름/무응답	5점 척도 평균
일상생활상담	75	0(0.0)	1(1.3)	19(25.3)	24(32.0)	28(37.3)	3(4.0)	4.10
진로상담	80	0(0.0)	3(3.8)	22(27.5)	25(31.3)	26(32.5)	4(5.0)	3.97
가족상담/가족치료	40	0(0.0)	0(0.0)	14(35.0)	10(25.0)	14(35.0)	2(5.0)	4.00
학업지원(일반학교,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	53	0(0.0)	1(1.9)	12(22.6)	16(30.2)	21(39.6)	3(5.7)	4.14
아르바이트/취업알선	37	0(0.0)	1(2.7)	13(35.1)	7(18.9)	13(35.1)	3(8.1)	3.94
정신건강상담/치료	59	0(0.0)	0(0.0)	15(25.4)	18(30.5)	22(37.3)	4(6.8)	4.13
신체건강검진/치료	69	0(0.0)	2(2.9)	13(18.8)	27(39.1)	24(34.8)	3(4.3)	4.11
일시쉼터지원	45	1(2.2)	3(6.7)	9(20.0)	12(26.7)	17(37.8)	3(6.7)	3.98
장기쉼터/주거지원	40	1(2.5)	1(2.5)	7(17.5)	12(30.0)	17(42.5)	2(5.0)	4.13
경찰,검찰 조사 시 상담원 동석	41	0(0.0)	1(2.4)	10(24.4)	8(19.5)	17(41.5)	5(12.2)	4.14

3) 쉼터 서비스 이용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쉼터 입소 경험이 있는 응답자(N=68)에게 쉼터 입소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없었다'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치 않는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33.8%, '직원들이 수치심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29.4%, '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다'와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가 각각 2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모두 없음'이 47.1%이다.

'이유 없이 입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17.6%, '입소 후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20.6%, '입소생활과 관련한 나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 20.6%,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20.6%,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19.1%, '부당한 이유로 퇴소당했다' 13.2%로 쉼터 서비스 이용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 개선 통로나 충분히 공유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II-33> 쉼터 서비스 이용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표 III-49> 심터 서비스 이용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예”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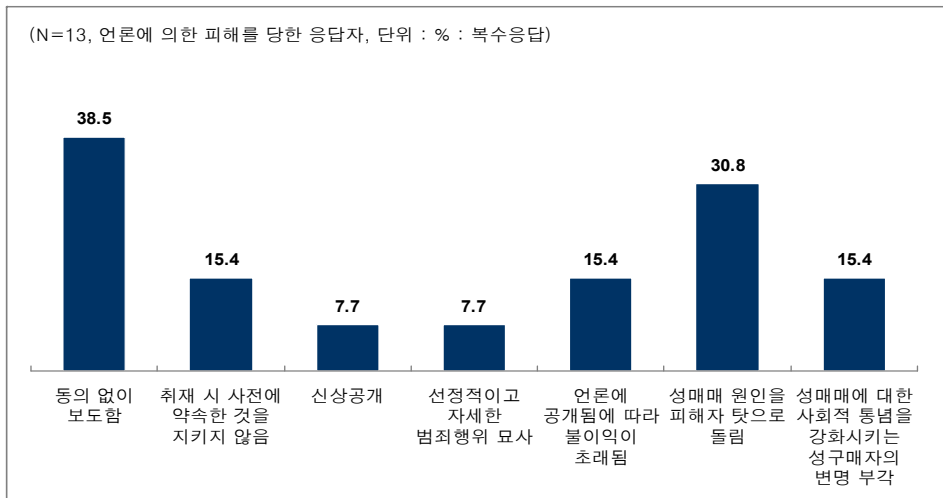
(단위 : 명, %)

	전 체 (N=68)	연령		
		만 13~14세 (N=6)	만 15~16세 (N=31)	만 17~18세 (N=31)
이유 없이 입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12(17.6)	1(16.7)	6(19.4)	5(16.1)
입소 후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14(20.6)	1(16.7)	8(25.8)	5(16.1)
통신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	12(17.6)	1(16.7)	4(12.9)	7(22.6)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없었다	25(36.8)	2(33.3)	12(38.7)	11(35.5)
원치 않는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23(33.8)	2(33.3)	11(35.5)	10(32.3)
입소생활과 관련한 나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	14(20.6)	1(16.7)	5(16.1)	8(25.8)
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다	17(25.0)	1(16.7)	7(22.6)	9(29.0)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14(20.6)	2(33.3)	4(12.9)	8(25.8)
직원들이 수치심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20(29.4)	1(16.7)	10(32.3)	9(29.0)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13(19.1)	0(0.0)	8(25.8)	5(16.1)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다	17(25.0)	1(16.7)	9(29.0)	7(22.6)
입소자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을 알고도 내버려 둔다	16(23.5)	1(16.7)	7(22.6)	8(25.8)
부당한 이유로 퇴소 당했다	9(13.2)	0(0.0)	4(12.9)	5(16.1)
모두 없음	32(47.1)	2(33.3)	11(35.5)	19(61.3)

4) 언론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구체적인 피해내용

언론에 의한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피해내용으로 ‘동의 없이 보도함’이 38.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성매매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림’ 30.8%, ‘취재 시 사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음’,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불이익이 초래됨’,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강화시키는 성구매자의 변명 부각’이 각각 15.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신상이 공개되었다’ 고 답변한 1명(7.7%)도 있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됨으로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는 답변이 2명(15.4%)이 있어 언론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

<그림 III-34>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구체적인 피해내용(복수응답)



<표 III-50> 언론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구체적인 피해내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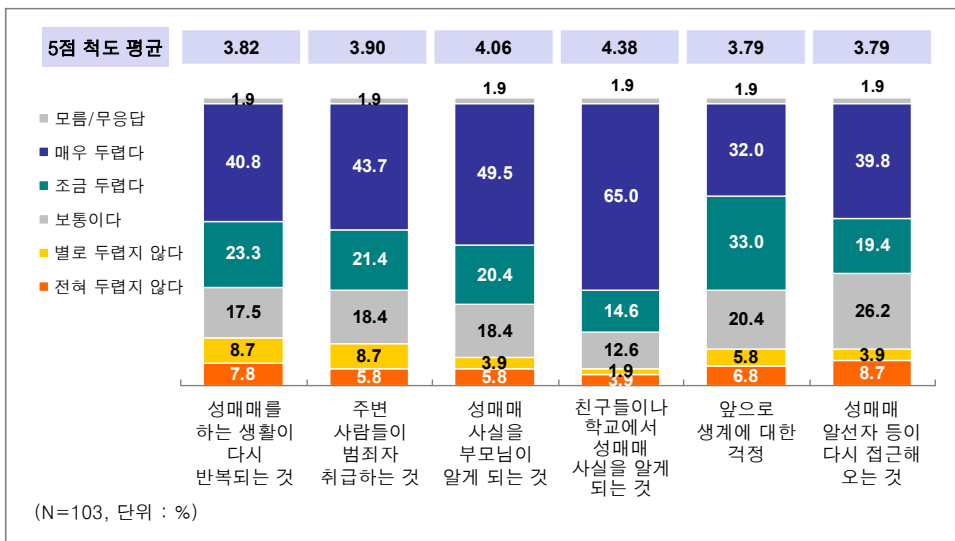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 수	동의 없이 보도함	취재 시 사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음	신상공개	선정적이고 자세한 범죄행위 묘사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불이익이 초래됨	성매매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강화시키는 성구매자의 변명 부각
전 체	13	5(38.5)	2(15.4)	1 (7.7)	1 (7.7)	2(15.4)	4(30.8)	2(15.4)
연령	만 13~14세	2	1(50.0)	0 (0.0)	0 (0.0)	1(50.0)	0 (0.0)	0 (0.0)
	만 15~16세	5	1(20.0)	0 (0.0)	0 (0.0)	1(20.0)	2(40.0)	2(40.0)
	만 17~18세	6	3(50.0)	2(33.3)	1(16.7)	1(16.7)	0 (0.0)	2(33.3)

5) 미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두려워하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응답 결과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4.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 4.06점, ‘주변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하는 것’ 3.90점, ‘성매매 알선자 등이 다시 접근해 오는 것’ 3.82점, ‘성매매를 하는 생활이 다시 반복되는 것’과 ‘앞으로 생계에 대한 걱정’이 각각 3.79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34> 미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만 13~14세의 경우 ‘성매매 알선자 등이 다시 접근해 오는 것’(4.27점)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는 응답자의 각 항목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알선자 등이 다시 접근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III-51> 미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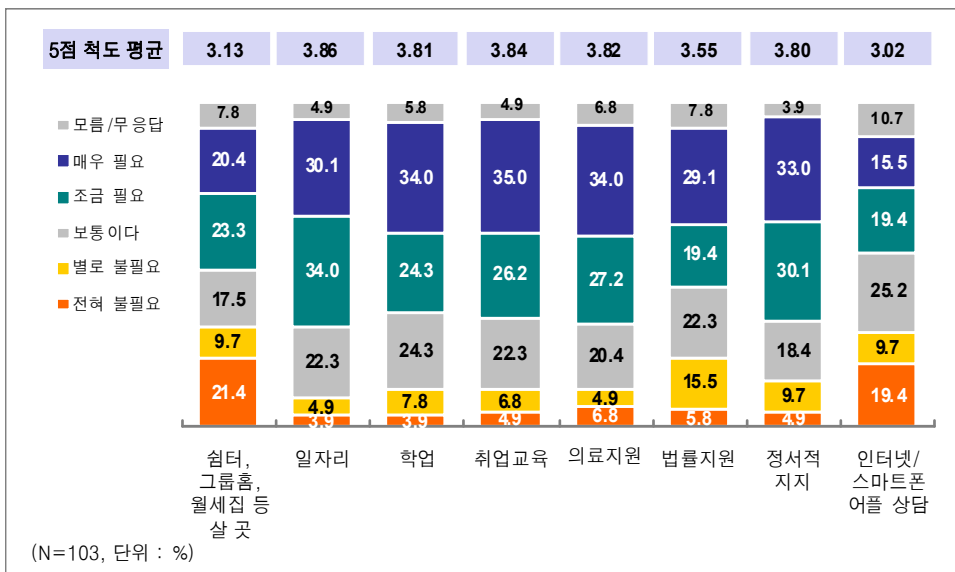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전 체 (N=103)	연령			학교재학 여부	
		만13세~ 14세 (N=11)	만15세~ 16세 (N=40)	만17세 18세 (N=52)	학교 다님 (N=62)	학교 다니지 않음 (N=41)
성매매를 하는 생활이 다시 반복되는 것	3.82	3.91	3.87	3.76	3.92	3.68
주변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하는 것	3.90	4.09	3.97	3.80	4.03	3.71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	4.06	4.45	4.03	4.00	4.25	3.78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는 것	4.38	4.64	4.54	4.20	4.58	4.07
앞으로 생계에 대한 걱정	3.79	4.00	3.64	3.86	3.83	3.73
성매매 알선자 등이 다시 접근해오는 것	3.79	4.27	3.67	3.78	4.03	3.44

6) 항목별 도움이 필요한 정도

필요로 하는 도움에 대한 응답 결과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자리'(3.86점)가 가장 필요 정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교육'(3.84점), '의료지원'(3.82점), '학업'(3.81점), '정서적 지지'(3.80점)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법률지원'(3.55점), '쉼터, 그룹홈, 월세집 등 살 곳'(3.13점),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3.02점) 등은 상대적으로 필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5> 항목별 도움이 필요한 정도



만 13~14세의 경우 '정서적지지'(4.09점)와 '일자리'와 '의료지원'(각각 3.90점)의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만15~16세의 경우는 '학업'(3.86점), '의료지원'(3.82 점)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았다. 만 17~18세의 경우는 '일자리'(4.04점), '취업교육'(4.00점)등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취업교육',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학교에 다니는 응답자에 비해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쉼터, 그룹홈, 월세집 등 살 곳'에 대한 필요정도가 학교를 다니는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교를 다니는 응답자의 경우는 '법률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III-52> 항목별 도움이 필요한 정도

(단위 : 명, 점)

	전 체 (N=103)	연령			학교재학 여부	
		만 13~14 세 (N=11)	만 15~16 세 (N=40)	만 17~18 세 (N=52)	학교 다님 (N=62)	학교 다니지 않음 (N=41)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	3.13	3.10	3.38	2.94	3.00	3.32
일자리	3.86	3.90	3.61	4.04	3.83	3.90
학업	3.81	3.55	3.86	3.84	3.73	3.95
취업교육	3.84	3.70	3.66	4.00	3.87	3.79
의료지원	3.82	3.90	3.82	3.81	3.84	3.79
법률지원	3.55	3.60	3.59	3.50	3.67	3.35
정서적 지지	3.80	4.09	3.68	3.82	3.79	3.81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	3.02	3.20	2.92	3.07	2.95	3.14

마. 아동·청소년 조사결과 소결

1) 아동·청소년 생활 관련

- 아동·청소년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만 13세-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어 성매매에 이용되는 아동·청소년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중 60.2%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나, 이번 설문의 표집단위가 지원체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재학률이 그다지 높다고만은 볼 수 없다.
- 가출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84.5%가 ‘가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만 13세 이하’에 가출한 경험자가 25.3%나 되었다. 처음 가출을 한 평균 나이는 14.4세였으며, 가출 후 지냈던 장소에 대해서는 ‘친구, 선후배 집’이 85.1%로 가장 높았고,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 62.1%, ‘찜질방’ 41.4%, 순이었다. 반면에 ‘쉼터 등 보호시설’은 39.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시설에 입소를 꺼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일상생활에서 폭력 등 인권침해적 환경에 대한 조사에서도, 2명 중 1명 이상이 놀림 등 인격적 침해를 당하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이 인터넷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성폭력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폭행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친구, 선후배’의 응답률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친아빠’ 32.5%, ‘모르는 사람’ 27.5%, ‘친엄마’ 20.0%, ‘애인’과 ‘가출팸’이 각각 12.5% 등의 순서였다. 성폭력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는 ‘모르는 사람’이 57.9%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선후배’ 26.3%, ‘친아빠’, ‘애인’, ‘기타’가 각각 10.5% 등의 순서였고, 기타의 경우는 아빠친구, 동네 할아버지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과 친족성폭력, 그리고 성매매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를 직접 기재하게 한 결과(만 나이가 아님), ‘13세 이하’ 8.7%, ‘14~16세’ 57.3%, ‘17세 이상’ 32.0% 로 응답자 중 66%가 중학생 나이인 14~16세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나이인 13세 이하의 경우도 9명이었다. 성매매 시작 연령은 평균 만 14.7세(15.7세)로,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성구매자,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중학생 정도의 나이 아이들을 성

매매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잘 곳이 없어서’(35.0%),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6.2%), ‘배가 고파서’(25.2%)와 같은 응답들은 가출상태의 절박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31.1%)와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30.1%)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십대 아동·청소년들이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성매매가 가출 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61.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38.8%로 가출 후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가출 후 성매매에 이용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가출 다음날~1주일 이내’가 31.7%, ‘가출 당일’ 23.8% 등 절반 이상(55.5%)이 가출 후 1주일 이내에 성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성매매 유형으로는 ‘1:1 조건만남’이 88.3%로 다른 성매매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다.
- 하루 최대 성매매 횟수로는 ‘1회’ 33.0%, ‘2회’ 32.0%, ‘3회’ 13.6%, ‘4~9회’ 15명 14.6%, ‘10회 이상’ 3.9%의 분포를 보였으며, 하루 평균 성매매 횟수는 2.7회로 조사되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이라고 답변한 아동·청소년 중 만 13-14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루 성매매 횟수가 많다는 것은 조건만남의 형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알선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성매매 상대방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험을 한 비율은, 약 20%만이 성구매자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80%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성매매 알선자와 관련된 부당경험은 “모두 없음”이 54.4%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에서 성구매자의 인권침해가 알선자의 인권침해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성구매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중 “가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83.5%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상황이 좋으면 성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89.3%가 ‘그렇다’ 답변했으며, “성매매를 좋아서 하는 또래친구들은 없다” 항목의 경우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90.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관련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이 51.5%였다.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모 또는 주변의 신고’(39.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단속’ 30.2%, ‘자수’ 24.5%,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 13.2%, ‘구매자신고’ 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에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응답이 2명(28.6%)으로 나타나 공권력에 의한 성범죄가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범죄자 취급’이 34.0%,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와 ‘가해자와의 합의 유도’가 각각 13.2%, ‘개인정보유포’와 ‘집으로 갑자기 찾아옴’이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5점 척도 평균으로 살펴보면,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하였다”는 3.19점,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다”는 3.08점, “조사를 마친 뒤 앞으로의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는 2.98점, “상담원 또는 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는 2.83점, “쉽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는 2.63점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와 “쉽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가 30%이상이라는 점이다.
- 보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3명 중 2명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라고 응답하였고 1명은 ‘모르겠다’였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46.6%, ‘모르겠다’가 32%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교육이라기보다 처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의미조차 모르는 경우도 1/3이 되어 보호처분의 성격과 실효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4) 아동·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 관련

- 아동·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 관련과 관련하여서는,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이용 경험 중 ‘진로상담’이 77.7%로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 상담’ 72.8%,

‘신체건강검진/치료’ 67.0%, ‘정신건강상담/치료’ 57.3%, 순이었다.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만족도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학업지원’과 ‘경찰 조사시 상담원 동석’이 각각 4.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건강상담/치료’와 ‘장기 쉼터/주거지원’이 각각 4.13점 등의 순이었다.

- 쉼터 입소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쉼터 입소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없었다’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치 않는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33.8%, ‘직원들이 수치심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29.4%로 나타났다.
- 두려워하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응답 결과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4.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 4.06점으로 나타났다.

3.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식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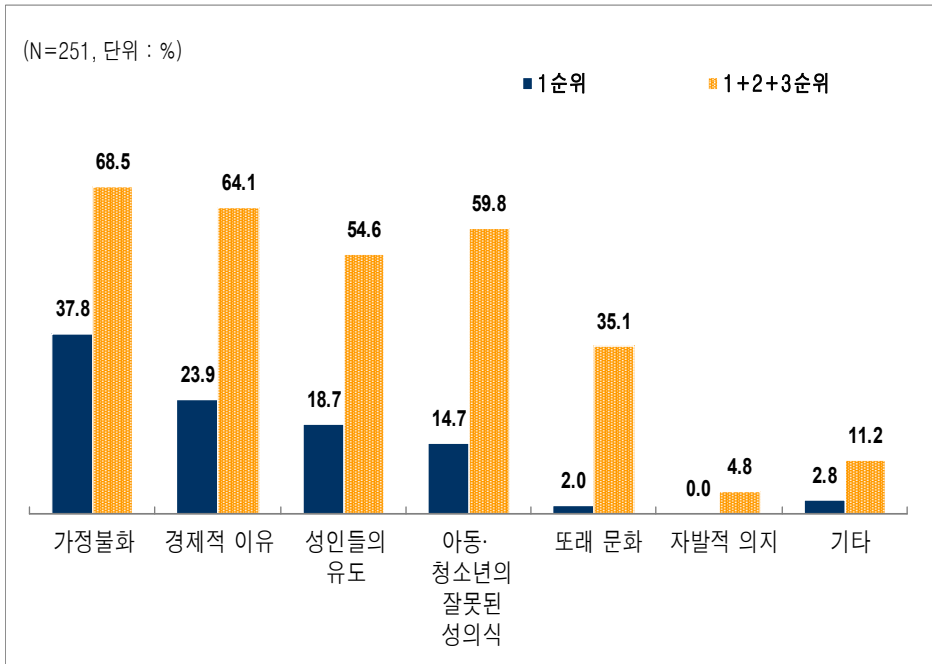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원인

업무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대한 1순위 응답률은 ‘가정불화’가 37.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 23.9%, ‘성인들의 유도’ 18.7%,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14.7%, ‘또래 문화’ 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순위까지의 복수응답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이 ‘성인들의 유도’ 보다 조금 더 응답률이 높은 것 외에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이유’가 1, 2 순위를 차지하는 등 비슷하다.

업무담당자들이 아동·청소년성매매의 원인으로 가정불화와 경제적 이유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은 앞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실태와 유사하다. ‘기타’ 의견으로 ‘소비조장 광고와 드라마 방송’, ‘국가의 책임’, ‘아동학대’, ‘청소년 이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성인들의 잘못된 성의식’, ‘가출’, ‘방송매체의 성적문란 조성’, ‘성매매 예방교육의 부재’, ‘인터넷, 앱 개발자의 청소년 보호의식 미흡’, ‘성산업 시장의 확대’, ‘머물 곳이 필요한 청소년’, ‘스마트폰의 보급’,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아르바이트 부족’ 등이 있었다.

주목할 점은 3순위까지의 복수응답 결과에는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또래문화’, ‘자발적 의지’ 등 아동·청소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하는 응답률이 1순위 응답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36> 아동·청소년 성매매 원인



소속기관별로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가정불화’를 60%, 경찰이 ‘경제적 이유’를 37.5%로 타 기관들에 비해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원인 중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보다 ‘성인들의 유도’에 더 비중을 두는데 반하여, ‘Wee센터’, ‘경찰’ 및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70%)을 원인으로 꼽는 비율은 매우 높다.

성별로는 남성은 ‘경제적 이유’가 35%로 여성(20.4%)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여성은 ‘성인들의 유도’가 22%로 남성(8.3%)에 비해 높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사회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으로 더 접근하고 있다.

<표 III-53> 아동·청소년 성매매 원인 - 1순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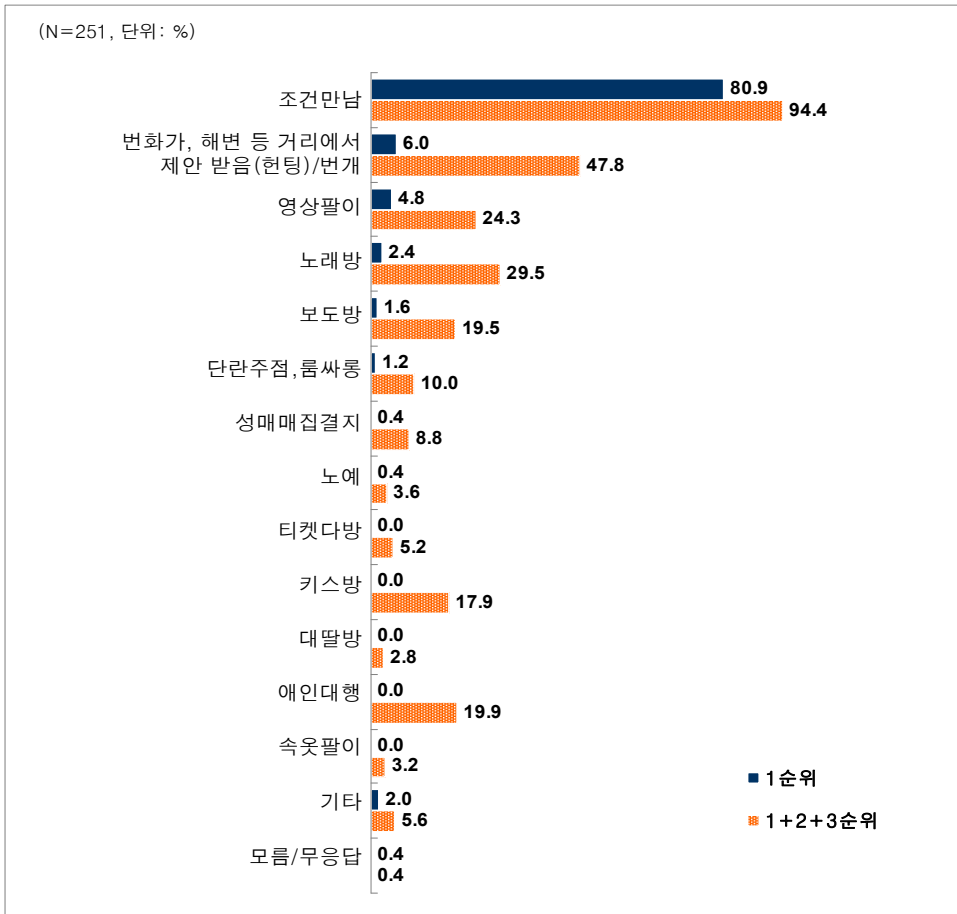
		사례수	경제적 이유	가정불화	성인들의 유도	아동·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또래 문화	기타
전 체		251	60(23.9)	95(37.8)	47(18.7)	37(14.7)	5(2.0)	7(2.8)
소 속 기 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40	8(20.0)	24(60.0)	4(10.0)	3(7.5)	0(0.0)	1(2.5)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5(17.9)	10(35.7)	10(35.7)	3(10.7)	0(0.0)	0(0.0)
	위기청소년교육 센터	19	4(21.1)	7(36.8)	6(31.6)	2(10.5)	0(0.0)	0(0.0)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12(26.1)	17(37.0)	10(21.7)	5(10.9)	1(2.2)	1(2.2)
	Wee센터	28	6(21.4)	10(35.7)	3(10.7)	6(21.4)	1(3.6)	2(7.1)
	성문화 센터	32	6(18.8)	5(15.6)	11(34.4)	5(15.6)	2(6.3)	3(9.4)
	경찰	48	18(37.5)	21(43.8)	3(6.3)	6(12.5)	0(0.0)	0(0.0)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	1(10.0)	1(10.0)	0(0.0)	7(70.0)	1(10.0)	0(0.0)
성 별	남성	60	21(35.0)	24(40.0)	5(8.3)	10(16.7)	0(0.0)	0(0.0)
	여성	191	39(20.4)	71(37.2)	42(22.0)	27(14.1)	5(2.6)	7(3.7)

2)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종류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종류에 대한 1순위 응답률은 ‘조건 만남’이 80.9%를 차지하고 있다. 3순위까지의 복수응답 결과로는 ‘조건만남’ 94.4%, ‘번화가, 해변 등 거리에서 제안 받음(헌팅)/번개’ 47.8%, ‘노래방’ 29.5%, ‘영상팔이’ 24.3%, ‘애인대행’ 19.9%, ‘키스방’ 17.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만남 어플/채팅 어플’과 ‘PC방’, ‘숙식제공’ 등이 있었다.

단란주점, 룸싸롱, 성매매집결지, 보도방, 노래방, 키스방 등은 아동·청소년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업무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일어나는 곳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림 III-37>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종류



<표 III-54>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종류 - 1순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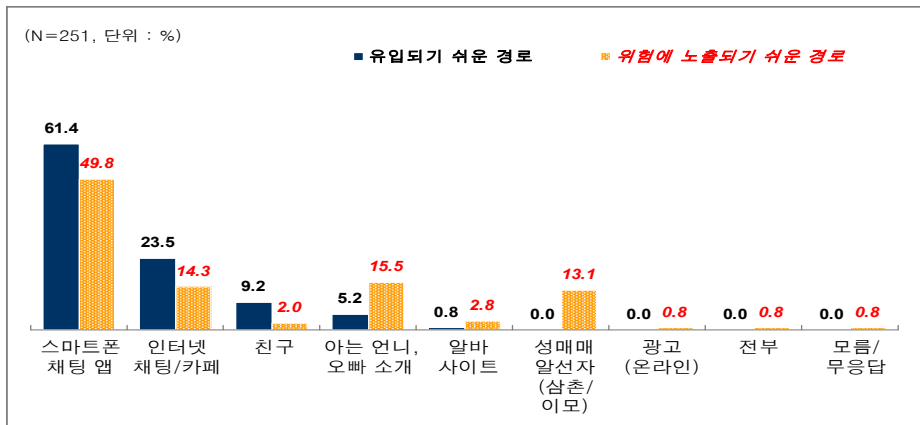
	사례 수	조건 만남	(헌팅) /번개	단란 주점, 룸싸롱	성매매 집결지	노래방	보도방	노예	영상 팔이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251	203 (80.9)	15	3	1	6	4	1	12	5	1
소 속 기 관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40	37 (92.5)	0	0	0	1	1	0	1	0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26 (92.9)	2	0	0	0	0	0	0	0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19	19 (100)	0	0	0	0	0	0	0	0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26 (56.5)	8	2	1	2	1	1	4	0
	Wee센터	28	19 (67.9)	1	0	0	2	2	0	2	2
	성문화 센터	32	25 (78.1)	2	0	0	0	0	0	3	2
	경찰	48	42 (87.5)	2	1	0	0	0	0	2	1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	10	9 (90.0)	0	0	0	1	0	0	0	0
성 별	남성	60	49 (81.7)	3	1	0	0	1	0	5	1
	여성	191	154 (80.6)	12	2	1	6	3	1	7	4

3)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 및 위험에 이용되기 쉬운 경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에 대해서 업무담당자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61.4%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채팅/카페’ 23.5%, ‘친구’ 9.2%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가장 위험(폭력/진상)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아는 언니, 오빠 소개’ 15.5%, ‘인터넷 채팅/카페’ 14.3%, ‘성매매 알선자’ 13.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의견으로 ‘전부’라고 응답한 경우도 2명 있었다.

<그림 III-38>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



소속기관별로 처음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의 경우 ‘친구’를 꼽은 경우가 21.1%로 타 기관에 비해 다소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스마트폰 채팅 앱’ 경로라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 응답자(63.4%)가 남성 응답자(55.0%)보다 응답률이 높았고, ‘친구’ 경로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 응답자(15.0%)가 여성 응답자(7.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55> 처음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

(단위 : 명, %)

		사례수	인터넷 채팅/카페	친구	스마트폰 채팅 앱	알바사이트	아는 언니, 오빠 소개
전 체		251	59 (23.5)	23 (9.2)	154 (61.4)	2 (0.8)	13 (5.2)
소속 기관	성매매 피해 여성 센터	40	11 (27.5)	2 (5.0)	25 (62.5)	0 (0.0)	2 (5.0)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2 (7.1)	2 (7.1)	22 (78.6)	0 (0.0)	2 (7.1)
	위기청소년교 육센터	19	2 (10.5)	4 (21.1)	13 (68.4)	0 (0.0)	0 (0.0)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18 (39.1)	4 (8.7)	21 (45.7)	1 (2.2)	2 (4.3)
	Wee센터	28	5 (17.9)	2 (7.1)	18 (64.3)	0 (0.0)	3 (10.7)
	성문화 센터	32	6 (18.8)	2 (6.3)	23 (71.9)	0 (0.0)	1 (3.1)
	경찰	48	11 (22.9)	6 (12.5)	29 (60.4)	1 (2.1)	1 (2.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 원	10	4 (40.0)	1 (10.0)	3 (30.0)	0 (0.0)	2 (20.0)
성별	남성	60	14 (23.3)	9 (15.0)	33 (55.0)	1 (1.7)	3 (5.0)
	여성	191	45 (23.6)	14 (7.3)	121 (63.4)	1 (0.5)	10 (5.2)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에 대해,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성매매알선자(삼촌/이모)’(31.6%),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인터넷 채팅/카페’(30.0%)를 타 기관에 비해 높게 인식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인터넷 채팅/카페’(남성 20.0%, 여성 12.6%), ‘스마트폰 채팅 앱’(남성 53.3%, 여성 48.7%)에서 응답률이 다소 높았으며, 여성 응답자는 ‘성매매알선자(삼촌/이모)’(여성 15.7%, 남성 5.0%), ‘아는 언니, 오빠 소개’(여성 16.2%, 남성 13.3%)를 남성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III-56> 가장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

(단위 : 명, %)

		사례 수	인터넷 채팅/카페	친구	스마트폰 채팅 앱	성매매 알선자 (삼촌/이모)	알바사이트	아는 언니, 오빠 소개	광고(온라인)	전부	모름/무응답
전 체		251	36(14.3)	5(2.0)	125(49.8)	33(13.1)	7(2.8)	39(15.5)	1(0.8)	2(0.8)	2(0.8)
소속 기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40	9(22.5)	0(0.0)	18(45.0)	7(17.5)	0(0.0)	5(12.5)	0(0.0)	0(0.0)	1(2.5)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1(3.6)	0(0.0)	16(57.1)	3(10.7)	1(3.6)	6(21.4)	0(0.0)	1(3.6)	0(0.0)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19	2(10.5)	1(5.3)	7(36.8)	6(31.6)	0(0.0)	2(10.5)	0(0.0)	1(5.3)	0(0.0)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지원센터	46	9(19.6)	0(0.0)	21(45.7)	7(15.2)	0(0.0)	9(19.6)	0(0.0)	0(0.0)	0(0.0)
	Wee센터	28	5(17.9)	2(7.1)	12(42.9)	2(7.1)	1(3.6)	5(17.9)	3(6.3)	0(0.0)	0(0.0)
	성문화 센터	32	1(3.1)	1(3.1)	16(50.0)	5(15.6)	2(6.3)	5(15.6)	3(3.1)	0(0.0)	1(3.1)
	경찰	48	6(12.5)	1(2.1)	30(62.5)	3(6.3)	3(6.3)	5(10.4)	0(0.0)	0(0.0)	0(0.0)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	3(30.0)	0(0.0)	5(50.0)	0(0.0)	0(0.0)	2(20.0)	0(0.0)	0(0.0)	0(0.0)
성별	남성	60	12(20.0)	1(1.7)	32(53.3)	3(5.0)	3(5.0)	8(13.3)	1(1.7)	0(0.0)	0(0.0)
	여성	191	24(12.6)	4(2.1)	93(48.7)	30(15.7)	4(2.1)	31(16.2)	0(0.5)	2(1.0)	2(1.0)

4)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난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68.5%, ‘조금 아니다’ 23.5%, ‘그렇다’ 5.6%, ‘조금 그렇다’ 2.4%, ‘매우 그렇다’ 0%로 ‘전혀 아니다’ 68.5%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31.5%(‘조금 아니다’ 23.5%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와 Wee센터, 경찰의 경우 다른 기관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54.6%, ‘조금 아니다’ 15.5%, ‘그렇다’ 7.2%, ‘조금 그렇다’ 7.6%, ‘매우 그렇다’ 15.1%로, ‘전혀 아니다’ 54.6%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45.4%(‘조금 아니다’ 15.5%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도 15.1%, 38명이나 된다.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는 ‘전혀 아니다’ 37.0%를 제외하면 6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Wee센터는 ‘전혀 아니다’ 46.4%를 제외하면 53.6%가 그렇다고 답하였

다. 경찰의 경우는 ‘전혀 아니다’ 25.0%를 제외하면 75%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도 ‘전혀 아니다’ 40.0%를 제외하면 60%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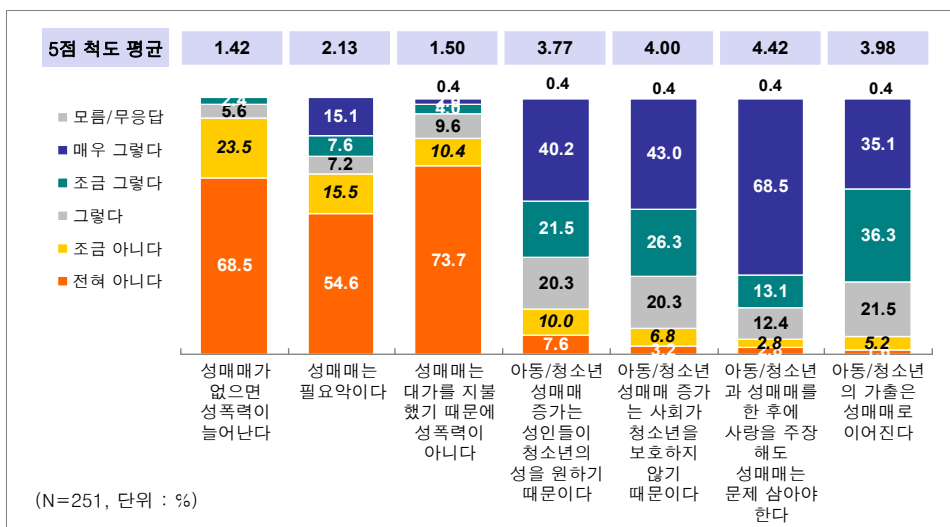
특이한 것은 70% ‘전혀 아니다’고 답한 성매매피해여성쉼터에서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률이 17.5% 였다는 점, 73.3% ‘전혀 아니다’고 답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률이 21.1%로 기관별 응답중 ‘매우 그렇다’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81.3% ‘전혀 아니다’고 답한 성문화센터도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률이 15.6%였다.

이 응답결과를 볼 때 업무 담당자들의 인식이 기관별 편차도 있지만 기관 내부에서도 상당히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매매는 필요악이다’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답한 남성이 35%, 여성이 60.7%인데 반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성이 11.7%, 여성이 16.2% 응답한 것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

“성매매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73.7%, ‘조금 아니다’ 10.4%, ‘그렇다’ 9.6%, ‘조금 그렇다’ 4.0%, ‘매우 그렇다’ 2.0%로, ‘모름/무응답’ 0.4%였다. ‘전혀 아니다’ 73.7%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26.3%가(‘조금 아니다’ 10.4%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박지원센터 1명, 경찰 2명,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고, 남성 1명, 여성 4명이었다.

<그림 III-39>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후에 사랑을 주장해도 성매매는 문제 삼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5점 척도 평균 점수 4.42점이었고, ‘전혀 아니다’ 2.8%, ‘조금 아니다’ 2.8%, ‘그렇다’ 12.4%, ‘조금 그렇다’ 13.1%, ‘매우 그렇다’ 68.5%, ‘모름/무응답’ 0.4%였다. ‘전혀 아니다’ 2.8%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6.8%가(‘조금 아니다’ 2.8%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2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2명, Wee센터 1명, 경찰 2명이었고, 남성은 4명, 여성은 3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경찰은 22.9%로 기관별 응답률 중 가장 낮았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도 50%였다. 이 경우 남성은 35.0%, 여성은 79.1%로 성별 인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에 대해서는 4.00점이었고, ‘전혀 아니다’ 3.2%, ‘조금 아니다’ 6.8%, ‘그렇다’ 20.3%, ‘조금 그렇다’ 26.3%, ‘매우 그렇다’ 43.0%, ‘모름/무응답’ 0.4%였다. ‘전혀 아니다’ 3.2%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6.4%가(‘조금 아니다’ 6.8%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2명, 성매매피해상담소 1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명, Wee센터 1명, 경찰 3명이었고, 남성은 5명, 여성은 3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30.4%, Wee센터 28.6%로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찰은 2.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10.0%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경우 남성은 5명, 8.3%만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53.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가출은 성매매로 이어진다”에 대해서는 3.98점이었고, ‘전혀 아니다’ 1.6%, ‘조금 아니다’ 5.2%, ‘그렇다’ 21.5%, ‘조금 그렇다’ 36.3%, ‘매우 그렇다’ 35.1%, ‘모름/무응답’ 0.4%였다. ‘전혀 아니다’ 1.6%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8%가(‘조금 아니다’ 5.2%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명, Wee센터 1명, 경찰 1명이었고, 남성은 3명, 여성은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57.9%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7.4%, Wee센터 17.9%, 경찰 18.8%로 다른 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경우 남성은 21.7%, 여성의 경우 39.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원하기 때문이다”에 대해서는 3.77점의 인식수준을 보였다. ‘전혀 아니다’ 7.6%, ‘조금 아니다’ 10.0%, ‘그렇

다’ 20.3%, ‘조금 그렇다’ 21.5%, ‘매우 그렇다’ 40.2%, ‘모름/무응답’ 0.4%였다. ‘전혀 아니다’ 7.6%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2%가(‘조금 아니다’ 10.0%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5명,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5명, Wee센터 1명, 성문화센터 4명, 경찰 2명,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고, 남성은 5명, 여성은 14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5.0%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21.7%, Wee센터 25.0%, 경찰 16.7%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경우 남성은 16.7%, 여성의 경우 47.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4.30점)가 남성 응답자(3.00점)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성매매를 한 후에 사랑을 주장해도 성매매는 문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 4.65점, 남성 3.69점으로 여성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57>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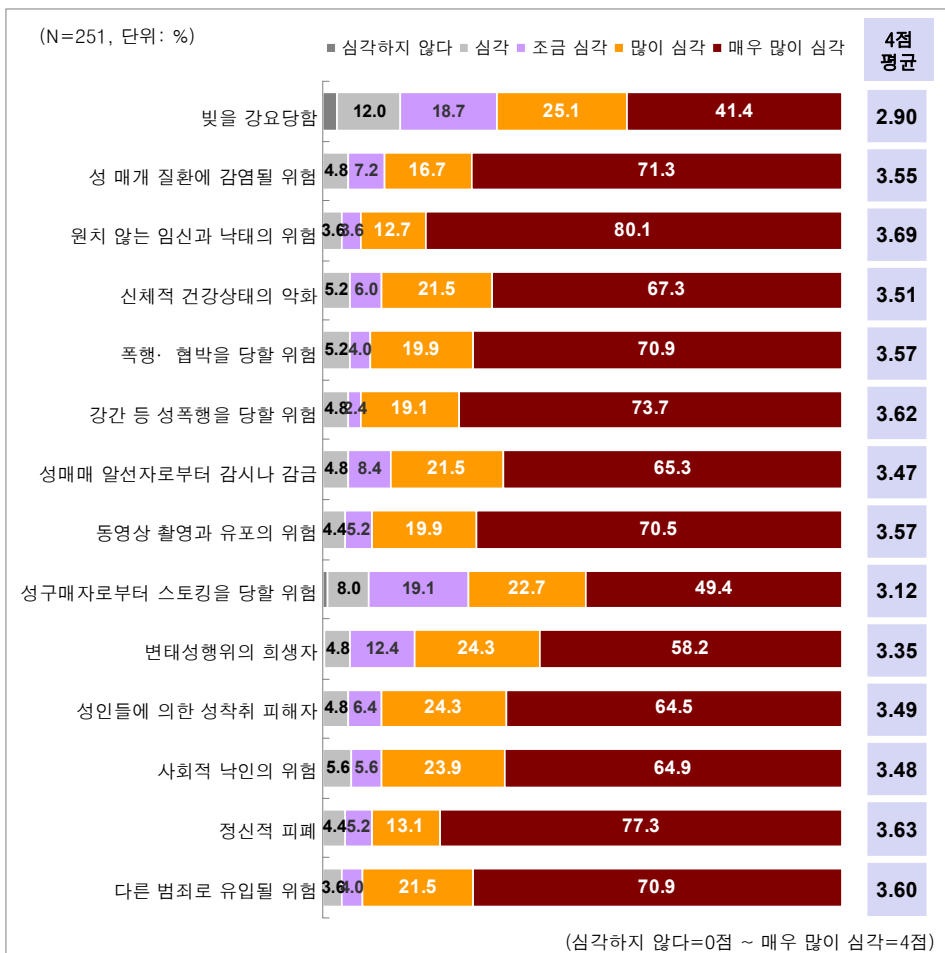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Wee센 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1.42	1.20	1.04	1.11	1.72	1.46	1.13	1.81	1.50	1.78	1.30
성매매는 필요악이라고 생 각한다	2.13	1.93	1.46	1.89	2.54	2.29	1.72	2.56	2.20	2.27	2.09
성매매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다	1.50	1.10	1.11	1.21	1.48	1.86	1.06	2.13	2.20	2.00	1.34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증가 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원하기 때문이다	3.77	4.00	4.61	4.53	3.37	3.64	3.91	3.15	3.80	3.14	3.97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증가 는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 지 않기 때문이다	4.00	4.30	4.46	4.89	4.02	3.86	4.66	2.83	3.40	3.00	4.30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후에 사랑을 주장해도 성매 매는 문제 삼아야 한다	4.42	4.55	4.89	4.95	4.52	4.46	4.75	3.57	4.00	3.69	4.65
아동·청소년의 가출은 성매 매로 이어진다	3.98	4.25	4.46	4.42	3.67	3.79	4.06	3.60	4.30	3.54	4.12

5)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심각성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매우 많이 심각’ 응답률과 4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위험’ 80.1%(3.69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신적 피해’ 77.3%(3.63점),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할 위험’ 73.7%(3.62점), ‘성 매개 질환에 감염될 위험’ 71.3%(3.55점) 등의 순이다. ‘빛을 강요당함’은 41.4%(2.9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40> 아동·청소년 성매매 인권침해의 심각성



각 항목별로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보면, ‘빛을 강요당함’의 항목의 경우,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명으로 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 성매매피해상담소 2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명, Wee센터 1명, 경찰 2명이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41.4%), 성문화센터가 75%로 가장 높고, 경찰이 18.8%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성매개 질환에 감염될 위험'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71.3%)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97.5%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29.2%로 가장 낮았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위험'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80.1%) 성매매피해상담소가 96.4%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50%로 가장 낮았다.

'신체적 건강상태의 악화'의 경우,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67.3%)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5.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5.4%로 가장 낮았다.

'폭행, 협박을 당할 위험'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70.9%) 성문화센터가 96.9%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1.3%로 가장 낮았다.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할 위험'의 경우,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73.7%)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7.5%로 가장 낮았다.

'성매매 알선자로부터 감시나 감금'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65.3%) 성문화센터가 87.5%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5.4%로 가장 낮았다.

'동영상 촬영과 유포의 위험'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70.5%) 성문화센터가 90.6%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5.4%로 가장 낮았다.

'성구매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할 위험'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명으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경찰 1명이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49.4%), 성문화센터가 81.3%로 가장 높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37.0%, Wee센터 42.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30.0%로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경찰이 22.9%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변태행위의 희생자'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명으로 경찰이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58.2%),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5.7%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30.0%, 경찰이 25.0%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성인들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64.5%)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1.3%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낙인의 위험’의 경우,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64.9%)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9.6%,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30%로 가장 낮았다.

‘정신적 피폐’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77.3%)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3.8%로 가장 낮았다.

‘다른 범죄로 유입될 위험’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70.9%) 성문화센터가 90.6%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9.6%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모든 사항에 대해 남성 응답자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다.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찰이 다른 기관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심각성 점수가 현저히 낮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

<표 III-58> 아동·청소년 성매매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소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Wee 센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빛을 강요당함	2.90	3.13	2.93	3.00	2.89	2.93	3.59	2.21	2.90	2.30	3.09
성 매개 질환에 감염될 위험	3.55	3.98	3.86	3.95	3.50	3.57	3.78	2.73	3.50	2.95	3.73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위험	3.69	3.88	3.96	3.95	3.74	3.75	3.84	3.15	3.50	3.27	3.83
신체적 건강상태의 악화	3.51	3.80	3.75	3.79	3.48	3.50	3.72	2.94	3.40	3.05	3.65
폭행·협박을 당할 위험	3.57	3.85	3.89	3.79	3.63	3.46	3.91	2.85	3.40	3.02	3.74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할 위험	3.62	3.85	3.93	3.95	3.65	3.50	3.84	3.00	3.60	3.08	3.79
성매매 알선자로부터 감시 나 감금	3.47	3.68	3.71	3.63	3.57	3.43	3.78	2.85	3.40	2.97	3.63
동영상 촬영과 유포의 위험	3.57	3.70	3.86	3.74	3.70	3.68	3.84	2.88	3.40	3.02	3.74
성구매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할 위험	3.12	3.43	3.64	3.26	2.93	3.04	3.66	2.46	2.70	2.53	3.30
변태성행위의 희생자	3.35	3.63	3.79	3.63	3.30	3.43	3.63	2.65	3.00	2.78	3.53
성인들에 의한 성착취 피 해자	3.49	3.63	3.75	4.00	3.46	3.57	3.75	2.88	3.20	2.93	3.66
사회적 낙인의 위험	3.48	3.70	3.68	4.00	3.48	3.43	3.78	2.92	3.00	2.93	3.65
정신적 피폐	3.63	3.88	3.82	4.00	3.76	3.61	3.75	3.04	3.40	3.18	3.77
다른 범죄로 유입될 위험	3.60	3.78	3.79	3.89	3.72	3.36	3.84	3.10	3.50	3.22	3.72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1) 수사기관(검,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 대한 인식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을 경험한 응답자(N=102, 그 중 경찰이 28사례(27%)를 차지했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사례가 없었다)를 대상으로 수사과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하였다”에 대해서는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4.19점으로 가장 높으며, “친절하게 도와주려 하였다”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61점, “조사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였다”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43점,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39점 순서로 나타났다.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2.28점으로 가장 낮았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고 답변한 경우는 9명(8.8%)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20%로 가장 높았고, 성문화센터와 경찰이 0%로 가장 낮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32.4%), 경찰이 67.9%로 가장 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Wee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하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고 답변한 경우는 10명(9.8%)로 Wee센터가 33.3%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0%로 가장 낮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25.5%), 경찰이 57.1%로 가장 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Wee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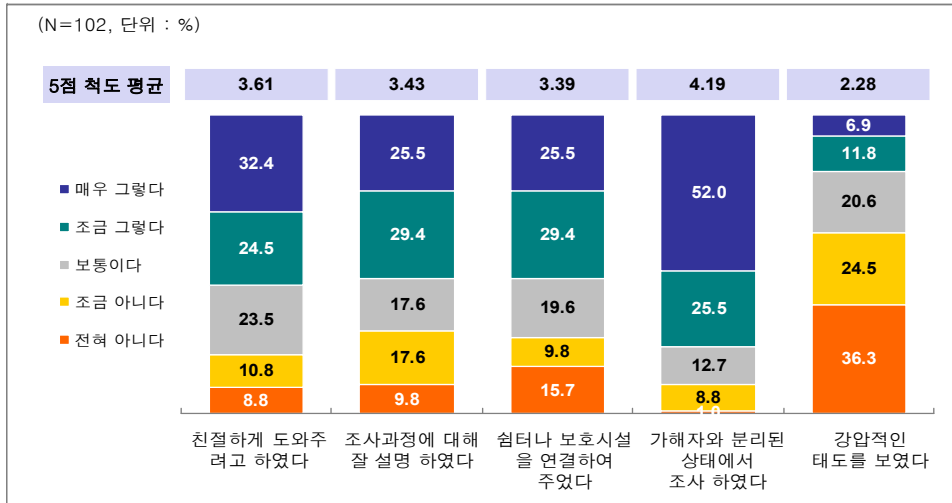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고 답변한 경우는 16명(15.7%)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36.4%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경찰이 0%로 가장 낮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25.5%), 경찰이 53.6%로 가장 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성문화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하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고 답변한 경우는 1명(1.0%)로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52.0%), 경찰이 85.7%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가 20%로 가장 낮았다.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고 답변한 경우는 37명(36.3%)으로 경찰이 64.3%로 가장 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Wee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7명(6.9%)인데, 특이한 점은 경찰이 10.7%로 가장 높았다. 성매매피해상담소가 9.1%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에서 ‘매우 그렇다’ 남(10.7%), 여(5.4%)를 제외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간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었으며,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조사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연히 높았다.

<그림 III-41>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 대한 인식



<표 III-59>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전체 (N=102)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17)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2)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5)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10)	Wee센터 (N=6)	성문화 센터 (N=4)	경찰 (N=2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0)	남성 (N=28)	여성 (N=74)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다	3.61	3.82	3.18	2.87	3.30	2.83	3.00	4.57	-	4.43	3.30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 하였다	3.43	3.35	3.23	2.67	3.10	2.33	2.50	4.54	-	4.32	3.09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	3.39	3.47	2.59	2.53	3.80	3.17	3.25	4.36	-	4.36	3.03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 하였다	4.19	4.00	4.32	3.80	3.90	3.67	3.00	4.79	-	4.75	3.97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2.28	2.12	2.23	3.33	2.40	2.50	2.50	1.75	-	1.89	2.43

2) 법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을 경험한 응답자(N=43, 그 중 경찰이 7사례(16%)를 차지했고, Wee센터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사례가 없었다)를 대상으로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이 출석할 때 비공개로 하였다”에 대해서는 5점 척도 평균 점수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구매자나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시 차면시설을 갖추어 하였다”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39점, “아동·청소년에 대해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3.14점, “성구매자/성매매알선자 혹은 그 변호인이 재판과정 중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하였다”에 대해서는 3.00점, “성구매자/알선자 변호인의 합의를 이유로 한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2.86점,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인적사항 노출”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2.65점,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에 대해서는 2.60점의 순서로 대답하였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 출석할 때 비공개로 하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4명(9.3%)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 3명(27.3%),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명(11.1%)이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0%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39.5%)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72.7%로 가장 높았고, 성문화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성구매자나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시 차면시설을 갖추어 하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4명(9.3%)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 4명(36.4%)이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0%로 나타났다. ‘조금 아니다’에 경찰 1명이 있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25.6%)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45.5%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와 성문화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찰은 1명이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6명(14.0%)으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3명(33.3%)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경찰이 0%로 나타났다. ‘조금 아니다’에 경찰 1명이 있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20.9%)는 경찰이 42.9%로 가장 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성구매자/성매매알선자 혹은 그 변호인이 재판과정 중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하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10명(23.3%)이었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가 5명(45.5%)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문화센터가 0%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재판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찰 7명 중 1명(14.3%)만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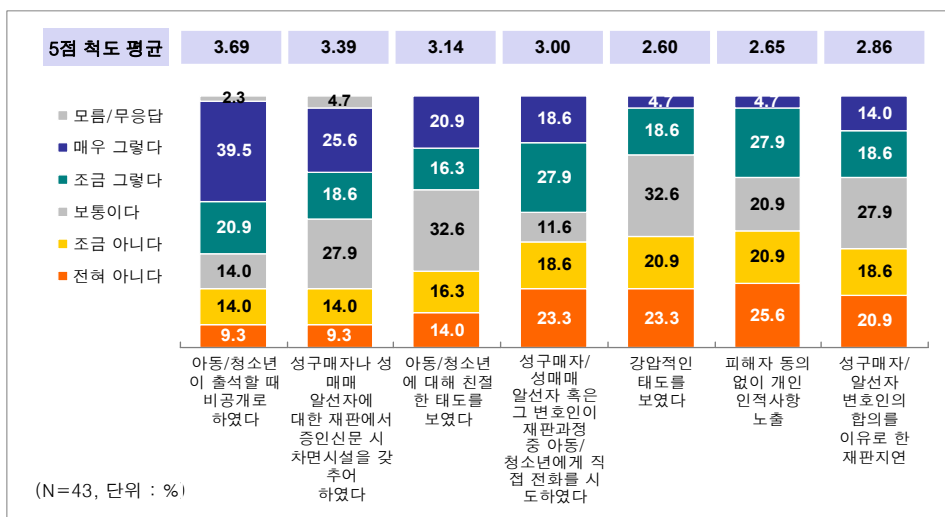
혀 아니다'로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18.6%)는 성매매 피해여성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가 각각 27.3%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경찰이 각각 0%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조금 그렇다'에 성문화센터가 100%라고 응답한 점이다.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10명(23.3%)으로 경찰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성문화센터가 0%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4.7%)는 2명으로 성매매피해여성쉼터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각각 1명씩이었다. 특이한 점은 '조금 그렇다'에 경찰 1명이 있었다.

'피해자 동의없이 개인 인적사항 노출'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11명(25.6%)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5명(45.5%)으로 경찰 42.9%보다 더 높아 가장 높았으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가 0%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4.7%)는 2명으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였으며, 나머지 기관은 모두 0%였다.

'성구매자/알선업자 변호인의 합의를 이유로 한 재판지연'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9명(20.9%)으로, 42.9%로 경찰이 가장 높았으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가 0%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14.6%)는 6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4명,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성문화센터 1명이었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0%였으며, '조금 그렇다'에 경찰이 1명 있었다.

<그림 III-42> 법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



<표 III-60> 법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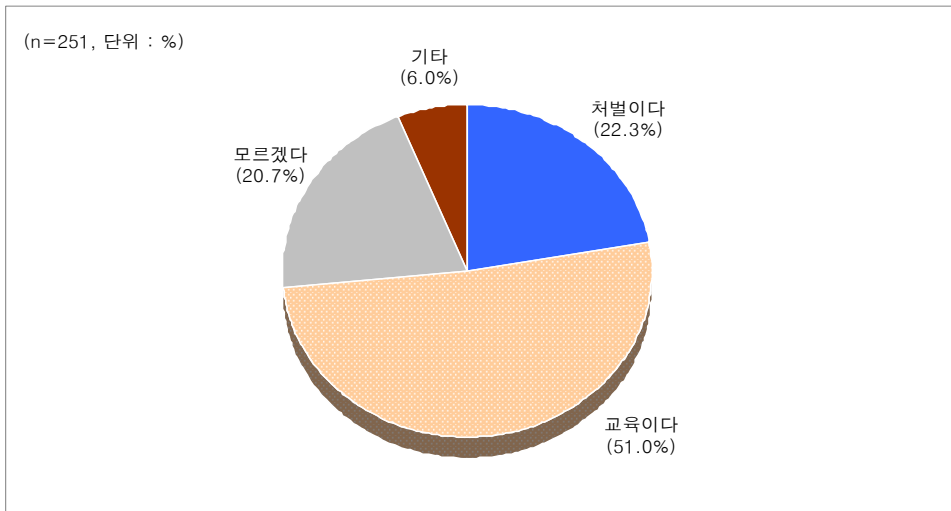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43)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11)	성매매 피해 상담소 (N=11)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3)	Wee 센터 (N=0)	성문화 센터 (N=2)	경찰 (N=7)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0)	남성 (N=8)	여성 (N=35)
아동·청소년이 출석할 때 비공개로 하였다	3.69	4.50	3.36	3.22	3.00	-	3.50	4.00	-	4.13	3.59
성구매자나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시차면시설을 갖추어 하였다	3.39	4.11	3.09	2.89	3.67	-	3.50	3.43	-	3.50	3.36
아동·청소년에 대해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3.14	3.64	3.09	2.11	2.67	-	3.00	4.00	-	4.00	2.94
성구매자/성매매알선자 혹은 그 변호인이 재판과정 중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하였다	3.00	3.27	2.91	3.22	3.00	-	4.00	2.14	-	2.38	3.14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2.60	2.45	2.55	3.44	2.00	-	3.50	1.86	-	1.88	2.77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인적 사항 노출	2.65	2.45	2.64	3.00	3.67	-	3.50	1.86	-	2.00	2.80
성구매자/알선자 변호인의 합의를 이유로 한 재판지연	2.86	2.36	3.36	2.89	3.33	-	4.50	2.14	-	2.25	3.00

3)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1.0%를 차지했으며, ‘처벌이다’ 22.3%, ‘모르겠다’ 20.7%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견으로, ‘처벌과 교육의 중간정도’, ‘보호이다’, ‘의미없다’가 있었다.

<그림 III-43>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



‘처벌이다’라는 응답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42.1%), 성매매 피해 상담소(39.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3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교육이다’라는 응답은 Wee센터(64.3%), 경찰(62.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60%)이었다. 20%가 넘는 ‘모르겠다’는 응답 중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가 28.3%로 가장 높았지만, 경찰도 22.9%, 11명이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처벌이다’라는 응답이 24.6%로 남성 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교육이다’라는 응답은 여성 47.1%, 남성 63.3%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61>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사례수	처벌이다	교육이다	모르겠다	기타	합계
전 체		251	56(22.3)	128(51.0)	52(20.7)	15(6.0)	251(100.0)
소속 기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40	7(17.5)	19(47.5)	10(25.0)	4(10.0)	40(100.0)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11(39.3)	12(42.9)	3(10.7)	2(7.1)	28(100.0)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8(42.1)	7(36.8)	2(10.5)	2(10.5)	19(100.0)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9(19.6)	22(47.8)	13(28.3)	2(4.3)	46(100.0)
	Wee센터	28	3(10.7)	18(64.3)	6(21.4)	1(3.6)	28(100.0)
	성문화 센터	32	9(28.1)	14(43.8)	7(21.9)	2(6.3)	32(100.0)
	경찰	48	6(12.5)	30(62.5)	11(22.9)	1(2.1)	48(100.0)
	소년원 및 소년부 류심사원	10	3(30.0)	6(60.0)	0(0.0)	1(10.0)	10(100.0)
성별	남성	60	9(15.0)	38(63.3)	12(20.0)	1(1.7)	60(100.0)
	여성	191	47(24.6)	90(47.1)	40(20.9)	14(7.3)	191(100.0)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지만 처벌과 같기 때문에’, ‘대상 청소년들이 절대 보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아서’, ‘보호처분 자체가 성매매를 했다는 낙인이 되기 쉬워서’,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쉼터 입소의 강제성’ 등이 주로 응답되었다.

<표 III-62>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N	%
[전 체]	56	(100.0)
보호처분이지만 처벌과 같기 때문에	9	(16.1)
대상 청소년들이 절대 보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아서	7	(12.5)
보호처분 자체가 성매매를 했다는 낙인이 되기 쉬워서	7	(12.5)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교육이라 말할 수 없어서	5	(8.9)
쉼터입소의 강제성	5	(8.9)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법원이 명령한 것이어서	4	(7.1)
피해를 입고도 자발적 성매매일 경우 성매매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점 자체가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3	(5.4)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	(5.4)
법적 책임이 생겨서	2	(3.6)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개선에 영향을 주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올바른 교육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해서’, ‘처벌보다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해서’ 등이 주요 응답 내용이다.

<표 III-63>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N	%
[전 체]	128	(100.0)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개선에 영향을 주어서	36	(28.1)
올바른 교육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12	(9.4)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서	11	(8.6)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해서	8	(6.3)
처벌보다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해서	7	(5.5)
보호해야할 대상이라서	5	(3.9)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4	(3.1)
교육이 선행된 보호처분이 되어야 예방할 수 있어서	4	(3.1)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야 하므로	4	(3.1)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이기 때문에	3	(2.3)
교육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해서	3	(2.3)
청소년 스스로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해서	3	(2.3)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3	(2.3)
성매매에 대한 위험성과 대처방법이 교육으로 인해 인식되어서	2	(1.6)
올바른 가치관 미확립으로 교육으로 되돌릴 수 있는 나이라서	2	(1.6)
죄의식이 없어 처벌보다는 교육이 중요해서	2	(1.6)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교육인지 처벌인지 모르겠음/기타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도 교육과 처벌이 함께 필요해서’, ‘채팅 내용 캡처 돈을 요구하는 청소년도 있어 처벌도 고려해야 해서’, ‘처벌했을 때의 효과와 교육했을 때의 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등이 주요 응답내용이다.

<표 III-64>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교육인지 처벌인지 모르겠음/기타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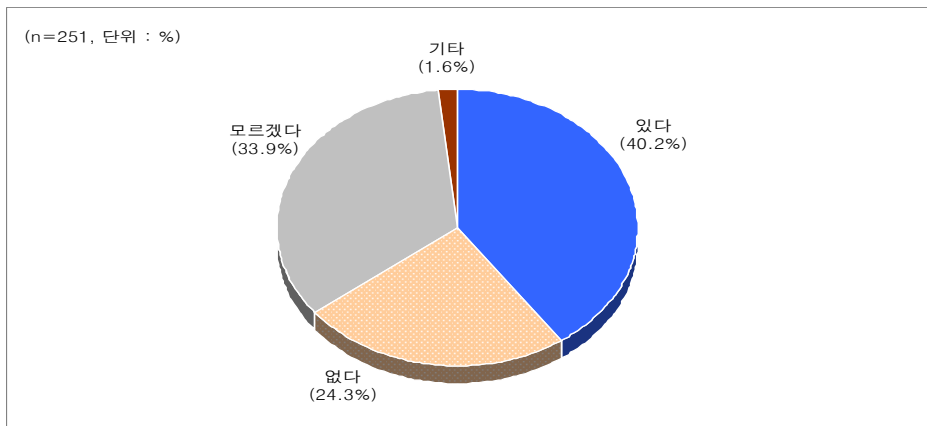
	N	%
[전 체]	67	(100.0)
청소년에게도 교육과 처벌이 함께 필요해서	3	(4.5)
채팅 내용 캡처 돈을 요구하는 청소년도 있어 처벌도 고려해야 해서	2	(3.0)
처벌했을 때의 효과와 교육했을 때의 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2	(3.0)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2	(3.0)
스스로는 처벌이라 생각하겠지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2	(3.0)
성매매 피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	(3.0)
90% 이상 어른들의 잘못이므로 처벌하면 안 되어서	2	(3.0)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4)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한 의견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40.2%로 ‘없다’는 의견 24.3% 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인 33.9%를 차지한다. 결국 현재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처벌이라고 여기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II-44>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한 의견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성매매피해상담소(39.3%)와 성문화센터(34.4%)에서 높게 나타났다.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의 경우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50.0%를 차지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100% 효과가 '있다'고 하였지만, 경찰의 경우, 효과가 '있다' 47.9%, '없다' 22.9%, '모르겠다' 29.2% 로 나타났다.

<표 III-65>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기타
전 체		251	101(40.2)	61(24.3)	85(33.9)	4(1.6)
소속 기관	성매매피해여성쉼터	40	17(42.5)	11(27.5)	11(27.5)	1(2.5)
	성매매피해상담소	28	7(25.0)	11(39.3)	9(32.1)	1(3.6)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9(47.4)	4(21.1)	5(26.3)	1(5.3)
	상담복지 센터 및 학 교 밖 지원센터	46	12(26.1)	11(23.9)	23(50.0)	0(0.0)
	Wee센터	28	15(53.6)	2(7.1)	11(39.3)	0(0.0)
	성문화센터	32	8(25.0)	11(34.4)	12(37.5)	1(3.1)
	경찰	48	23(47.9)	11(22.9)	14(29.2)	0(0.0)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	10	10(100.0)	0(0.0)	0(0.0)	0(0.0)
성별	남성	60	29(48.3)	13(21.7)	18(30.0)	0(0.0)
	여성	191	72(37.7)	48(25.1)	67(35.1)	4(2.1)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개선에 영향을 주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죄 인식이 없는 경우 재범방지교육이 효과가 있어서’, ‘성매매 상황에서 차단되어 보호 처분을 받기 때문에’ 등이 주요 응답 내용이다.

<표 III-66>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N	%
[전 체]	101	(100.0)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개선에 영향을 주어서	20	(19.8)
범죄인식이 없는 경우 재범방지 교육이 효과가 있어서	9	(8.9)
성매매 상황에서 차단되어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8	(7.9)
아동·청소년은 보호해야할 대상이라서	6	(5.9)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고 억제하는 마음이 생겨서	6	(5.9)
보호처분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6	(5.9)
아동·청소년들에게 반성의 시간이 될 수 있어서	5	(5.0)
아직 교육으로 되돌릴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4	(4.0)
청소년 스스로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해서	4	(4.0)
신체적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어서	3	(3.0)
어떤 방향이든 효과는 있으니까	3	(3.0)
시설 입소 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3	(3.0)
보호처분이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서	3	(3.0)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성매매로 유입된 환경적인 요인이 제거되지 않아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성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매매를 한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보호처분 이후에도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표 III-67>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N	%
[전 체]	61	(100.0)
성매매로 유입된 환경적인 요인이 제거되지 않아서	10	(16.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성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6	(9.8)
성매매 피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5	(8.2)
성매매를 한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4	(6.6)
보호처분 이후에도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4	(6.6)
처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3	(4.9)
특화된 교육 및 상담의 부재	3	(4.9)
성인들의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하여 계속되기 때문에	3	(4.9)
보호처분이 두려워 성매매를 하지 않을 청소년이 없을 것이라서	2	(3.3)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분하고 보호처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2	(3.3)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2	(3.3)
미성년자임을 이용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있어서	2	(3.3)
보호처분만으로 예방억제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2	(3.3)
청소년 스스로가 보호처분이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2	(3.3)
보호처분은 성매매청소년들을 숨게 하는 것이지 억제를 위한 일은 아니므로	2	(3.3)
성매매의 분류가 아닌 성 착취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개선해야 해서	2	(3.3)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2	(3.3)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이 될 수 있을지 효과성에 의문이 들어서’, ‘학생에게 가정환경 및 또래관계에서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서’, ‘효과에 대해 추적 연구된 바를 들은 적인 없어서’라고 대답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추측하게 한다.

<표 III-68>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N	%
[전 체]	89	(100.0)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이 될 수 있을지 효과성에 의문이 들어서	4	(4.5)
학생에게 가정환경 및 또래관계에서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3	(3.4)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서	3	(3.4)
효과에 대해 추적 연구된 바를 들은 적인 없어서	3	(3.4)
사례마다 효과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2	(2.2)
본인 의지가 중요 하므로	2	(2.2)
아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2	(2.2)
교육도 처벌도 아닌 내용도 실효성도 불분명해서	2	(2.2)
탈성매매 비율이 높지 않아서	2	(2.2)
성매매의 경우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서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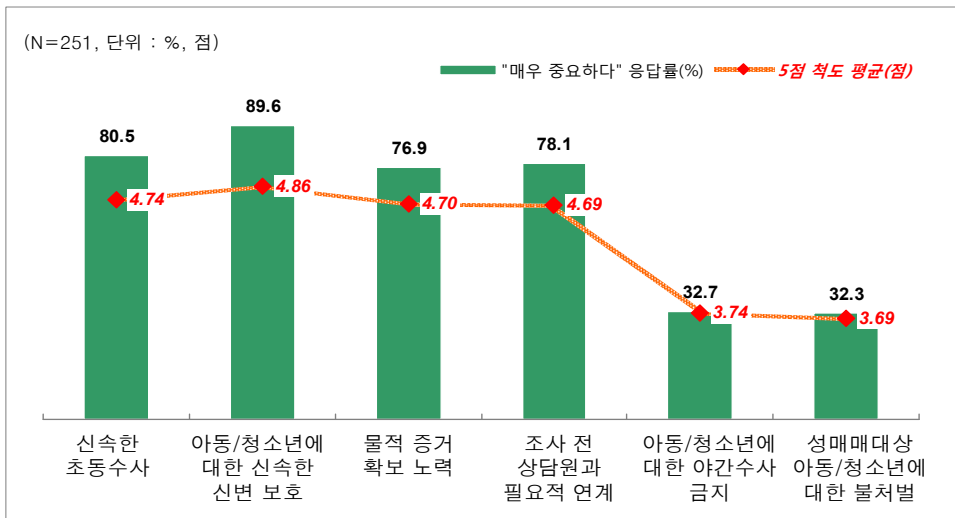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정책 관련

1)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사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사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응답률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가 89.6%(4.8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속한 초동수사’ 80.5%(4.74점), ‘조사 전 상담원과 필요적 연계’ 78.1%(4.69점), ‘물적 증거확보 노력’ 76.9%(4.70점) 순으로 높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야간수사 금지’ 32.7%(3.74점)와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 32.3%(3.69점)은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45>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한 사항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속한 초동수사’의 경우, ‘조금 중요하다’(14.3%)와 ‘매우 중요하다’(80.5%)를 합하여 94.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3명(1.2%)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 1명(3.6%), 경찰 2명(4.2%)이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0%로 나타났다.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80.5%)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60.0%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의 경우, ‘조금 중요하다’(7.2%)와 ‘매우 중요하다’(89.6%)를 합하여 96.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1명(0.4%)으로 경찰 1명(2.1%)이었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

한 경우(89.6%)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성문화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75.0%로 가장 낮았다.

‘물적 증거확보 노력’의 경우, ‘조금 중요하다’(16.3%)와 ‘매우 중요하다’(76.9%)를 합하여 93.2%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경우가 없다.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76.9%)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9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60.0%로 가장 낮았다.

‘조사 전 상담원과 필요적 연계’의 경우, ‘조금 중요하다’(14.3%)와 ‘매우 중요하다’(78.1%)를 합하여 92.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항목의 경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가 1사례 있는데, 경찰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경우도 3명(1.2%)있었는데, 경찰 2명(4.2%)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명(10.0%)이었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78.1%)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50.0%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야간수사 금지’의 경우, ‘조금 중요하다’(25.5%)와 ‘매우 중요하다’(32.7%)를 합하여 58.2%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는 12명(4.8%)이었다.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4명(10%)으로 가장 높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와 Wee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그런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32.7%)도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20명(50%)으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10.0%로 가장 낮았다.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의 경우, ‘조금 중요하다’(21.1%)와 ‘매우 중요하다’(32.3%)를 합하여 53.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시 중요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성이 낮게 나타난 항목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는 11명(4.4%)이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3명(15.8%)으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명(8.3%)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를 남녀 성별로 보면 남성 5명, 여성 6명이었다.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32.3%)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67.9%로 가장 높았고,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각 5명(10.4%), 1명(10.0%)로 가장 낮았다. 이 항목에는 모름/무응답이 2명(0.8%) 있었는데 성매매피해여성쉼터와 Wee센터였다.

그런데 전 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의 경우, 전체 96.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를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무엇을 의미했는지 응답자들에게 분명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여성 응답자가 모든 사항을 남성 응답자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69>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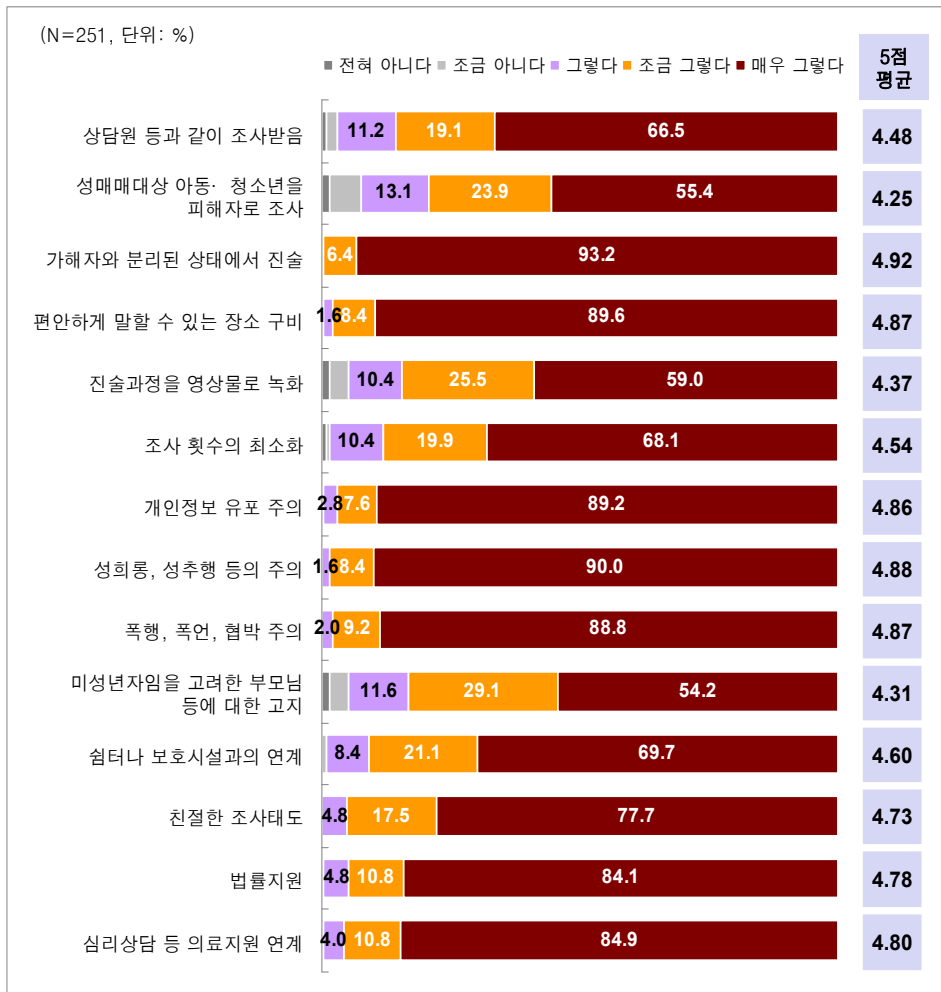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Wee센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신속한 초동수사	4.74	4.85	4.64	4.95	4.80	4.75	4.94	4.48	4.50	4.53	4.81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	4.86	4.98	4.96	5.00	4.87	4.79	5.00	4.63	4.70	4.63	4.93
물적 증거확보 노력	4.70	4.85	4.82	4.79	4.72	4.64	4.75	4.54	4.30	4.52	4.76
조사 전 상담원과 필요적 연계	4.69	4.88	4.96	5.00	4.78	4.54	4.94	4.15	4.30	4.18	4.84
아동·청소년에 대한 야간수사 금지	3.74	3.83	4.07	4.16	3.78	3.48	3.84	3.48	3.20	3.38	3.86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	3.69	4.05	4.46	4.05	3.63	3.33	3.97	3.04	3.00	3.10	3.88

2)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응답률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해야 함이 93.2%(4.92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등의 주의’가 90.0%(4.88점),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 구비’ 89.6%(4.87점), ‘개인정보 유포 주의’ 89.2%(4.86점)등의 순서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조사’ 79.3%(4.25)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6>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원 등과 같이 조사받음’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9.1%)와 ‘매우 그렇다’(66.5%)를 합하여 8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2명 있었고, 소속기관은 경찰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66.5%)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29.2%로 가장 낮았다. 경찰을 제외한 모든 업무 담당자들의 ‘매우 그렇다’ 응답률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과 타 기관 업무 담당자 간 시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항목이었다.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조사’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

에, ‘조금 그렇다’(23.9%)와 ‘매우 그렇다’(55.4%)를 합하여 7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4명 있었고, 소속기관은 경찰 2명, 성매매피해여성쉼터와 Wee센터에서 각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3명, 여성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55.4%)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18.8%로 가장 낮았다.

주목할 점은 이 질문에 대한 ‘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기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매매피해여성쉼터(77.5%), 성매매피해상담소(85.7%), 위기청소년교육센터(94.7%), 성문화센터(81.3%)가 50%를 상회하는 응답률을 보인 반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30.4%), Wee센터(46.4%), 경찰(18.8%),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40%)이 50%를 밑도는 응답률을 보여, 설문에 참여한 각 기관들이 서로 유사한 시각을 가진 두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업무담당자에 대한 모든 질문들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유사한 인식의 패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6.4%)와 ‘매우 그렇다’(93.2%)를 합하여 99.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으며, ‘조금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1명 있었고, 경찰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99.6%)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문화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87.5% ‘매우 그렇다’고 한 경찰보다 Wee센터가 85.7%로 가장 낮았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 구비’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8.4%)와 ‘매우 그렇다’(89.6%)를 합하여 9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으며, ‘조금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1명 있었고, 경찰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98.0%)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70%로 가장 낮았으며, 경찰은 75%로 그 다음으로 낮았다.

‘진술과정을 영상물로 녹화’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25.5%)와 ‘매우 그렇다’(59.0%)를 합하여 8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4명 있었고, 성매매피해여성쉼터 2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와 Wee센터가 각각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59.0%)는 성문화센터가 81.3%로 가장 높았고, Wee센터가 39.3%로 가장 낮았다. 경찰은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43.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50%)보다 높은 56.3%였다.

‘조사횟수의 최소화’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9.9%)와 ‘매우 그렇다’(68.1%)를 합하여 8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2명 있었고,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각 1명씩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68.1%)는 성문화센터 87.5%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30.0%로 가장 낮았다. 경찰은(58.3%) 그 다음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유포 주의’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7.6%)와 ‘매우 그렇다’(89.2%)를 합하여 9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으며, ‘조금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1명 있었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89.2%)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70%로 가장 낮았으며, 경찰은 77.1%로 그 다음으로 낮았다.

‘성희롱 성추행 등의 주의’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8.4%)와 ‘매우 그렇다’(90.0%)를 합하여 9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와 ‘조금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례는 없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89.2%)는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성문화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79.2%로 가장 낮았다.

‘폭행, 폭언, 협박 주의’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9.2%)와 ‘매우 그렇다’(88.8%)를 합하여 9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와 ‘조금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례는 없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88.8%)는 성문화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72.9%로 가장 낮았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부모님 등에 대한 고지’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29.1%)와 ‘매우 그렇다’(54.2%)를 합하여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4명 있었고 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 성매매피해상담소 2명,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이었다. 이 경우 모두 여성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54.2%)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80%로 가장 높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가 39.3%로 가장 낮았다.

‘쉼터나 보호시설과의 연계’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21.1%)와 ‘매우 그렇다’(69.7%)를 합하여 9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으며, ‘조금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2명 있었고, 경찰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69.7%)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82.5%로 가장 높았고, 45.8%로 경찰이 가장 낮았다.

주목할 점은 ‘상담원 등과 같이 조사받음’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이다. '상담원 등과 같이 조사받음'에 대해서도 전체 8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경찰의 사례가 2명 있었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66.5%)에 있어서도 경찰이 29.2%로 가장 낮았다. 두 항목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 있어서 '쉼터나 보호시설과의 연계'의 부분은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82.5%로 가장 높았고, '상담원 등과 같이 조사받음'의 부분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지원에 있어서 쉼터나 보호시설에 있어서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상담소의 역할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의 답변이 '전혀 아니다'로 답변하거나 '매우 그렇다'고 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때 향후에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쉼터나 상담소로의 연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친절한 조사태도'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7.5%)와 '매우 그렇다'(77.7%)를 합하여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와 '조금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례는 없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77.7%)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96.4%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60.0%로 가장 낮았다. 경찰은 60.4%로 그 다음으로 낮았다.

'법률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0.8%)와 '매우 그렇다'(84.1%)를 합하여 9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1명 있었고, 성문화센터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84.1%)는 성문화센터 96.9%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64.6%로 가장 낮았다.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 연계'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0.8%)와 '매우 그렇다'(84.9%)를 합하여 9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1명 있었고, 성문화센터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84.9%)는 성매매피해상담소 96.4%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60.4%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부모님 등에 대한 고지'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필요성을 더 높게 응답하였다.

<표 III-70> 수시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 시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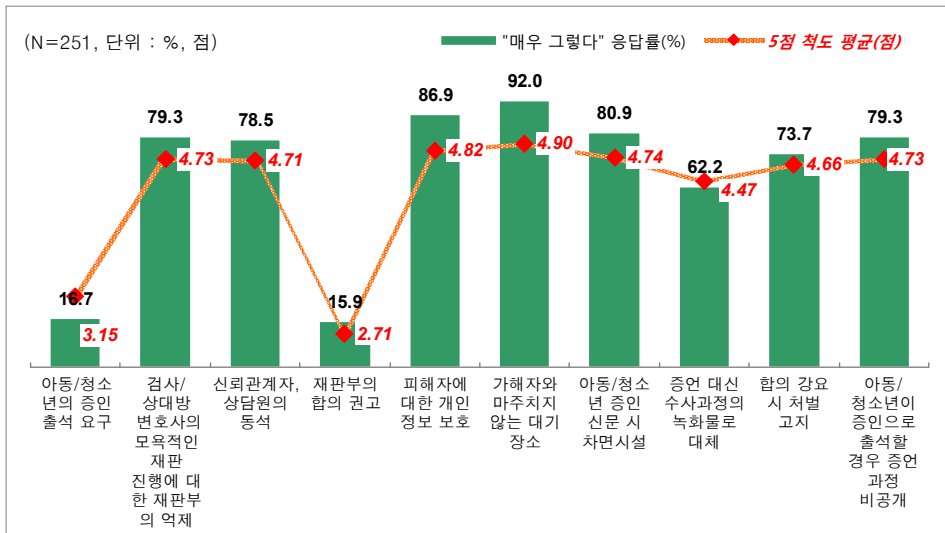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심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Wee센 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상담원 등과 같이 조사받음	4.48	4.63	4.86	5.00	4.50	4.57	4.75	3.75	4.20	3.95	4.65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조사	4.25	4.65	4.86	4.84	3.96	4.11	4.75	3.42	4.10	3.57	4.47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	4.92	4.93	5.00	5.00	4.93	4.86	5.00	4.83	4.90	4.87	4.94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 구비	4.87	4.93	5.00	5.00	4.93	4.82	4.97	4.69	4.50	4.75	4.91
진술과정을 영상물로 녹화	4.37	4.40	4.54	4.53	4.15	4.11	4.75	4.29	4.30	4.23	4.41
조사 횟수의 최소화	4.54	4.60	4.50	4.68	4.54	4.50	4.84	4.40	3.90	4.37	4.59
개인정보 유포 주의	4.86	4.80	4.96	5.00	4.91	4.93	4.94	4.71	4.50	4.77	4.88
성희롱, 성추행 등의 주의	4.88	4.88	5.00	4.95	4.87	4.89	5.00	4.77	4.70	4.80	4.91
폭행, 폭언, 협박 주의	4.87	4.90	4.96	4.89	4.89	4.89	5.00	4.69	4.70	4.73	4.91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부모님 등에 대한 고지	4.31	4.38	3.82	4.05	4.50	4.50	4.25	4.31	4.60	4.32	4.30
쉼터나 보호시설과의 연계	4.60	4.75	4.75	4.74	4.63	4.61	4.59	4.31	4.50	4.37	4.67
친절한 조사태도	4.73	4.73	4.96	4.95	4.78	4.64	4.84	4.50	4.40	4.55	4.79
법률지원	4.78	4.85	4.86	4.95	4.85	4.75	4.88	4.52	4.70	4.57	4.85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 연계	4.80	4.83	4.96	4.95	4.89	4.86	4.84	4.50	4.60	4.58	4.86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응답률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대기장소’가 92.0%(4.90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86.9%(4.82점), ‘아동·청소년 증인신문 시 차면 시설’ 80.9%(4.74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판부의 합의권고’ 15.9%(2.71점)과 ‘아동·청소년의 증인출석 요구’ 16.7%(3.15점)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이는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47> 아동·청소년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증인출석 요구’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11.2%), ‘조금 아니다’(18.3%), ‘보통이다’(31.5%), ‘조금 그렇다’(21.9%), ‘매우 그렇다’(16.7%),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그렇다’(21.9%)와 ‘매우 그렇다’(16.7%)를 합하여 38.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22.5%로 가장 높았고, Wee센터가 3.6%로 가장 낮았으나, 성문화센터(18.8%)를 제외한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박지원센터,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모두 10% 이하의 응답률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26.3%로 가장 높았고, 특이한 점은 경찰이 8.3%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검사 또는 상대방 변호사의 모욕적인 재판진행에 대한 재판부의 억제’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 ‘조금 아니다’(0.4%), ‘보통이다’(6.4%), ‘조금 그렇다’(13.1%), ‘매우 그렇다’(79.3%), ‘모름/무응답’(0.8%)이었다. ‘조금 그렇다’(13.1%)와 ‘매우 그렇다’(79.3%)를 합하여 92.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금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고,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30%로 가장 낮았다.

‘신뢰관계자, 상담원의 동석’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4%), ‘조

금 아니다'(0.8%), '보통이다'(4.8%), '조금 그렇다'(14.7%), '매우 그렇다'(78.5%), '모름/무응답'(0.8%)이었다. '조금 그렇다'(14.7%)와 '매우 그렇다'(78.5%)를 합하여 응답자의 9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명이었고,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50%로 가장 낮았다.

'재판부의 합의 권고'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26.7%), '조금 아니다'(20.7%), '보통이다'(22.7%), '조금 그렇다'(13.5%), '매우 그렇다'(15.9%),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그렇다'(13.5%)와 '매우 그렇다'(15.9%)를 합하여 29.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52.6%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0%로 가장 낮았다. 이 질문 항목에서 특이한 점은 '매우 그렇다'의 경우도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26.3%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고, 경찰이 4.2%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4%), '조금 아니다'(0.4%), '보통이다'(2.8%), '조금 그렇다'(9.2%), '매우 그렇다'(86.9%),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그렇다'(9.2%)와 '매우 그렇다'(86.9%)를 합하여 9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 1명이었고,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68.8%로 가장 낮았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대기장소'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 '조금 아니다'(0%), '보통이다'(2.8%), '조금 그렇다'(4.8%), '매우 그렇다'(92.0%),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그렇다'(4.8%)와 '매우 그렇다'(92.0%)를 합하여 9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문화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70.0%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 증인 신문 시 차면시설'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 '조금 아니다'(0.4%), '보통이다'(6.4%), '조금 그렇다'(12.0%), '매우 그렇다'(80.9%),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그렇다'(12.0%)와 '매우 그렇다'(80.9%)를 합하여 9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금 아니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60.0%로 가장 낮았으며, Wee센터가

67.9%로 경찰 72.9%보다 낮았다.

‘증언 대신 수사과정의 영상물 녹화로 대체’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4%), ‘조금 아니다’(0.8%), ‘보통이다’(12.4%), ‘조금 그렇다’(23.9%), ‘매우 그렇다’(62.2%),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그렇다’(23.9%)와 ‘매우 그렇다’(62.2%)를 합하여 8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89.5%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30%로 가장 낮았다.

‘합의 강요 시 처벌 고지’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4%), ‘조금 아니다’(0.8%), ‘보통이다’(4.8%), ‘조금 그렇다’(19.9%), ‘매우 그렇다’(73.7%),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그렇다’(19.9%)와 ‘매우 그렇다’(73.7%)를 합하여 9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문화센터가 96.9%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7.9%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언과정 비공개’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 ‘조금 아니다’(0.4%), ‘보통이다’(6.0%), ‘조금 그렇다’(13.9%), ‘매우 그렇다’(79.3%),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그렇다’(13.9%)와 ‘매우 그렇다’(79.3%)를 합하여 9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금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62.5%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가 ‘아동·청소년의 증인출석요구’에 대해 3.19점으로 여성(3.14점)에 비해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으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재판부의 합의 권고’에 대해서는 모두 2.71점으로 필요성이 가장 낮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71>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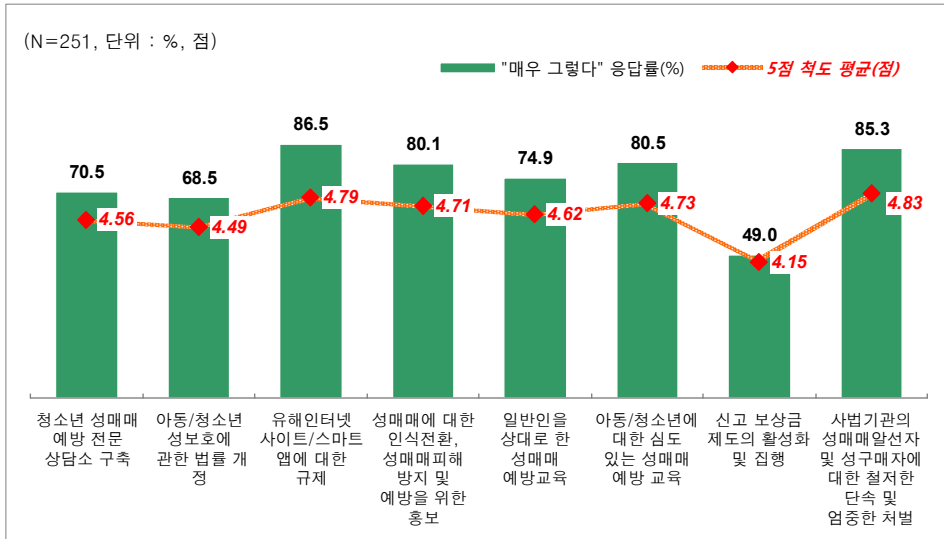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Wee센 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아동·청소년의 증인출석 요구	3.15	3.10	3.11	3.26	3.22	3.32	3.00	3.04	3.40	3.19	3.14
검사 또는 상대방 변호사의 모욕적인 재판진행에 대한 재 판부의 억제	4.73	4.82	4.89	5.00	4.74	4.64	4.91	4.53	3.90	4.53	4.79
신뢰관계자, 상담원의 동석	4.71	4.90	5.00	5.00	4.50	4.61	4.94	4.52	4.10	4.55	4.76
재판부의 합의 권고	2.71	2.55	2.21	2.42	3.20	2.93	2.69	2.55	3.30	2.71	2.71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4.82	4.93	4.82	5.00	4.89	4.82	4.97	4.62	4.30	4.68	4.87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대기 장소	4.90	4.95	5.00	5.00	4.96	4.89	5.00	4.70	4.50	4.75	4.94
아동·청소년 증인 신문 시 차 면시설	4.74	4.80	4.93	4.95	4.78	4.50	4.84	4.64	4.20	4.63	4.77
증언 대신 수사과정의 영상물 녹화로 대체	4.47	4.65	4.57	4.89	4.41	4.18	4.84	4.23	3.70	4.14	4.58
합의 강요 시 처벌고지	4.66	4.93	4.50	4.89	4.63	4.68	4.97	4.38	4.10	4.42	4.74
아동·청소년이 증인으로 출석 할 경우 증언과정 비공개	4.73	4.80	4.82	5.00	4.70	4.57	4.94	4.55	4.40	4.51	4.80

4)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매우 그렇다’ 응답률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폰앱에 대한 규제’가 86.5%(4.79점)로 가장 높고, 이어 ‘사법기관의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 85.3%(4.83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 80.5%(4.73점)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및 집행’은 49.0%(4.15점)로 가장 낮았다.

<그림 III-48>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차단을 위한 방안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 주변에 알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 전문상담소 구축’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1.2%), ‘조금 아니다’(2.0%), ‘보통이다’(6.8%), ‘조금 그렇다’(19.5%), ‘매우 그렇다’(70.5%)이었다. ‘조금 그렇다’(19.5%)와 ‘매우 그렇다’(70.5%)를 합하여 9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과 경찰 2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1.7%로 가장 낮았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1.6%), ‘조금 아니다’(3.6%), ‘보통이다’(7.6%), ‘조금 그렇다’(18.7%), ‘매우 그렇다’(68.5%)이었다. ‘조금 그렇다’(18.7%)와 ‘매우 그렇다’(68.5%)를 합하여 87.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찰이 4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25.0%로 가장 낮았다.

‘유해 인터넷 사이트/스마트폰 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8%), ‘조금 아니다’(0.4%), ‘보통이다’(4.4%), ‘조금 그렇다’(8.0%), ‘매우 그렇다’(86.5%)이었다. ‘조금 그렇다’(8.0%)와 ‘매우 그렇다’(86.5%)를 합하여 9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박지원센터가 76.1%로 가장 낮았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전환, 성매매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4%), ‘조금 아니다’(0.8%), ‘보통이다’(6.0%), ‘조금 그렇다’(12.7%), ‘매우 그렇다’(80.1%)이었다. ‘조금 그렇다’(12.7%)와 ‘매우 그렇다’(80.1%)를 합하여 92.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58.3%로 가장 낮았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예방교육’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4%), ‘조금 아니다’(2.0%), ‘보통이다’(8.0%), ‘조금 그렇다’(14.7%), ‘매우 그렇다’(74.9%)이었다. ‘조금 그렇다’(14.7%)와 ‘매우 그렇다’(74.9%)를 합하여 89.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문화센터가 96.9%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1.7%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도있는 성매매예방 교육’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4%), ‘조금 아니다’(0.8%), ‘보통이다’(4.4%), ‘조금 그렇다’(13.9%), ‘매우 그렇다’(80.5%)이었다. ‘조금 그렇다’(13.9%)와 ‘매우 그렇다’(80.5%)를 합하여 94.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58.3%로 가장 낮았다.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및 집행’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4.0%), ‘조금 아니다’(2.8%), ‘보통이다’(16.7%), ‘조금 그렇다’(27.5%), ‘매우 그렇다’(49.0%)이었다. ‘조금 그렇다’(27.5%)와 ‘매우 그렇다’(49.0%)를 합하여 7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0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65.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1.3%로 가장 낮았다.

‘사법기관의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 ‘조금 아니다’(0%), ‘보통이다’(2.4%), ‘조금 그렇다’(12.4%), ‘매우 그렇다’(85.3%)이었다. ‘조금 그렇다’(12.4%)와 ‘매우 그렇다’(85.3%)를 합하여 97.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문화센터가 각각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50.0%로 가장 낮았다.

소속기관별로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모든 차단 방안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경찰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에 대한 방안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경찰은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앱에 대한 규제’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는 ‘사법기관의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4.93%), 남성 응답자는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앱에 대한 규제’를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7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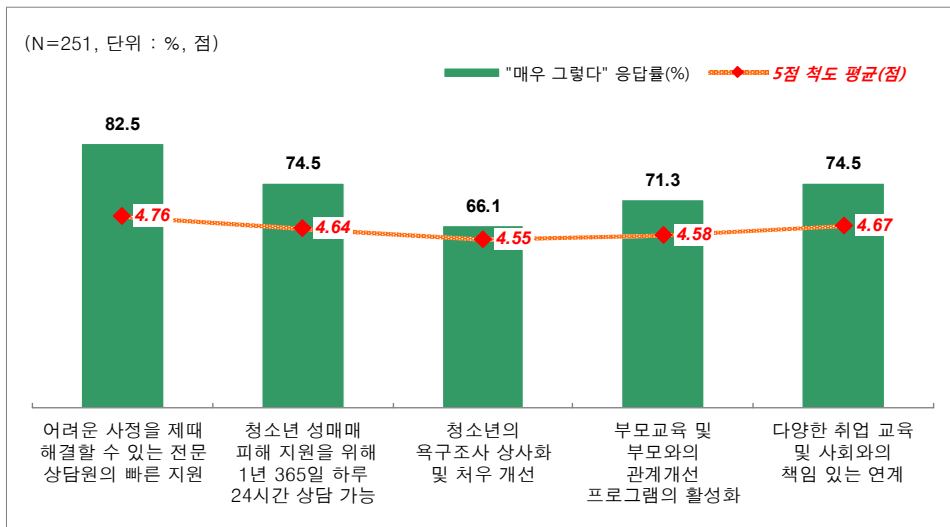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Wee센 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 주변에 알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성매매 예방 전문상담소 구축	4.56	4.68	4.64	5.00	4.57	4.61	4.81	4.06	4.50	4.22	4.67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4.49	4.88	4.82	5.00	4.54	4.61	4.91	3.44	4.20	3.72	4.73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앱에 대한 규제	4.79	4.83	4.96	5.00	4.70	4.68	4.97	4.63	4.70	4.60	4.85
성매매에 대한 인식전환, 성매매피해방지 및 예방 홍보	4.71	4.78	4.86	4.95	4.72	4.71	4.94	4.35	4.60	4.42	4.81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예방교육	4.62	4.83	4.89	4.95	4.54	4.64	4.97	4.00	4.50	4.17	4.76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성매매예방 교육	4.73	4.83	4.89	4.95	4.70	4.86	4.81	4.38	4.80	4.48	4.81
신고 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및 집행	4.15	4.38	4.36	4.47	4.22	4.00	4.19	3.73	4.00	3.75	4.27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	4.83	5.00	5.00	5.00	4.80	4.93	5.00	4.42	4.60	4.50	4.93

5)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원시설 및 사회단체의 업무 필요사항

지원시설 및 사회단체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매우 그렇다’ 응답률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어려운 사정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의 빠른 지원’이 82.5%(4.76점)로 가장 높고, 이어 ‘다양한 취업교육 및 사회와의 책임연계’와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을 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 가능’ 각각 74.5%(각각 4.67점, 4.64점), ‘부모 교육 및 관계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 71.3%(4.58점), ‘청소년 욕구 조사 상시화 및 처우 개선’ 66.1%(4.55점)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49> 지원시설 및 사회단체 업무에 필요한 사항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어려운 사정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의 빠른 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4%), ‘조금 아니다’(0.4%), ‘보통이다’(4.0%), ‘조금 그렇다’(12.7%), ‘매우 그렇다’(82.5%)이었다.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95.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Wee센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60.0%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을 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가능’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4%), ‘조금 아니다’(1.6%), ‘보통이다’(6.4%), ‘조금 그렇다’(17.1%), ‘매우 그렇다’(74.5%)이었다.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

하여 91.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Wee센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문화센터가 93.8%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50.0%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들의 욕구조사 상시화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8%), ‘조금 아니다’(0%), ‘보통이다’(8.8%), ‘조금 그렇다’(23.9%), ‘매우 그렇다’(66.1%),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9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Wee센터와 경찰이 각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87.5%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9.6%로 가장 낮았다.

‘부모교육 및 부모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4%), ‘조금 아니다’(1.6%), ‘보통이다’(9.2%), ‘조금 그렇다’(17.5%), ‘매우 그렇다’(71.3%)이었다.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88.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5.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5.8%로 가장 낮았다.

‘다양한 취업 교육 및 사회와의 책임있는 연계’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아니다’(0.8%), ‘조금 아니다’(0%), ‘보통이다’(5.2%), ‘조금 그렇다’(19.5%), ‘매우 그렇다’(74.5%)이었다.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94.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Wee센터와 경찰 각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5.8%로 가장 낮았다.

소속기관별로는 ‘어려운 사정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의 빠른 지원’과 ‘다양한 취업교육 및 사회와의 책임 있는 연계’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각각 5.00점과 4.95점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을 위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가능’은 성문화센터에서 4.91점, ‘청소년들의 욕구조사 상시화 및 처우개선’은 성매매피해여성쉼터에서 4.85점, ‘부모교육 및 부모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4.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모든 사항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며, 남성 응답자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을 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가능’을 여성 응답자는 ‘어려운 사정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의 빠른 지원’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73> 지원시설 및 사회단체 업무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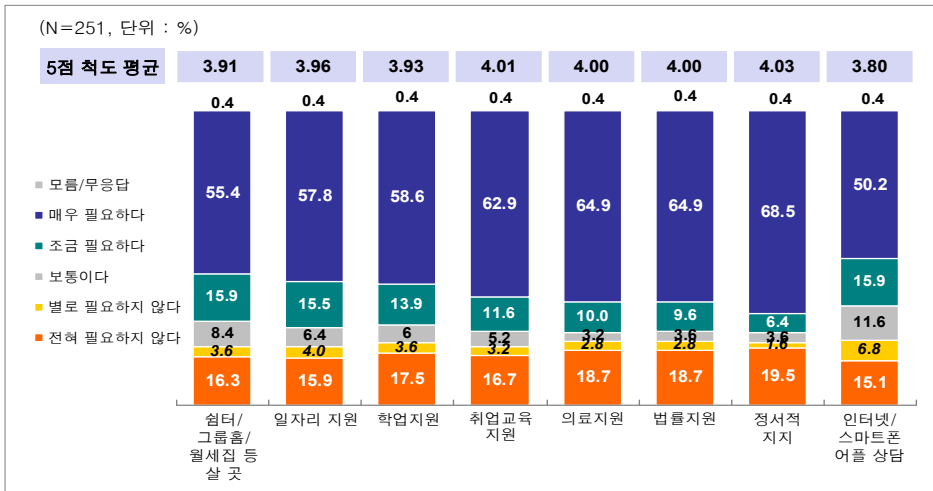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Wee센 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어려운 사정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의 빠른 지원	4.76	4.83	4.93	5.00	4.72	4.71	4.94	4.58	4.30	4.57	4.83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을 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가능 청소년들의 욕구조사 상시화 및 처우 개선	4.64	4.75	4.64	4.74	4.61	4.25	4.91	4.63	4.40	4.60	4.65
부모교육 및 부모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	4.58	4.58	4.82	4.79	4.54	4.61	4.78	4.29	4.30	4.35	4.65
다양한 취업 교육 및 사회와의 책임 있는 연계	4.67	4.85	4.89	4.95	4.52	4.68	4.94	4.31	4.30	4.35	4.77

6)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제도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가 4.03점으로 가장 높고, '취업교육지원' 4.01점,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각각 4.00점, '일자리 지원' 3.96점, '학업지원' 3.93점,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에 대한 지원은 3.91점,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 3.80점 순으로 답하였다.

<그림 III-50> 아동·청소년 성매매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쉼터, 그룹홈, 월세집 등 살 곳’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16.3%), ‘별로 필요하지 않다’(3.6%), ‘보통이다’(8.4%), ‘조금 필요하다’(15.9%), ‘매우 필요하다’(55.4%),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1명이었으며, 성문화센터가 28.1%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39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5.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0%로 가장 낮았다.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15.9%), ‘별로 필요하지 않다’(4.0%), ‘보통이다’(6.4%), ‘조금 필요하다’(15.5%), ‘매우 필요하다’(57.8%),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0명이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45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8.6%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30.0%로 가장 낮았다.

‘학업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17.5%), ‘별로 필요하지 않다’(3.6%), ‘보통이다’(6.0%), ‘조금 필요하다’(13.9%), ‘매우 필요하다’(58.6%),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4명이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47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8.6%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20.0%로 가장 낮았다.

‘취업교육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16.7%), ‘별로 필요하지 않다’(3.2%), ‘보통이다’(5.2%), ‘조금 필요하다’(11.6%), ‘매우 필요하다’(62.9%),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2명이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47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2.1%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낮았다.

‘의료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18.7%), ‘별로 필요하지 않다’(2.8%), ‘보통이다’(3.2%), ‘조금 필요하다’(10.0%), ‘매우 필요하다’(64.9%),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4.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7명이었으며, 성문화센터가 31.3%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63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5.7%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낮았다.

‘법률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18.7%), ‘별로 필요하지 않다’(2.8%), ‘보통이다’(3.6%), ‘조금 필요하다’(9.6%), ‘매우 필요하다’(64.9%),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7명이었으며, 성문화센터가 31.3%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63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8.6%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낮았다.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19.5%), ‘별로 필요하지 않다’(1.6%), ‘보통이다’(3.6%), ‘조금 필요하다’(6.4%), ‘매우 필요하다’(68.5%),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4.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9명이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72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92.9%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낮았다.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15.1%), ‘별로 필요하지 않다’(6.8%), ‘보통이다’(11.6%), ‘조금 필요하다’(15.9%), ‘매우 필요하다’(50.2%), ‘모름/무응답’(0.4%)이었다.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6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중 38명이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30.0%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26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5.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10.0%로 가장 낮았다.

소속기관별로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모든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성매매피해여성쉼터는 ‘의료지원’, ‘법률지원’, ‘정서적 지지’를 각각 4.23점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정서적지지’(4.71점), 상담복지 및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업지원’, ‘정서적 지지’(각각 3.76점), Wee센터는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과 ‘취업교육지원’(각각 4.29점), 성문화센터는 ‘취업교육지원’(3.91점), 경찰은 ‘취업교육지원’, ‘법률지원’, ‘정서적 지지’(각각 4.09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의료지원’, ‘법률지원’(각각 3.20점)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가 느끼는 필요성이 남성 응답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74>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Wee센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쉼터, 그룹홈, 월세집 등 살 곳	3.91	4.13	4.50	3.95	3.63	4.29	3.72	3.81	2.60	3.51	4.03
일자리지원	3.96	4.08	4.54	3.95	3.67	4.21	3.81	3.96	2.90	3.59	4.07
학업지원	3.93	4.13	4.57	3.79	3.76	4.04	3.75	3.89	2.80	3.53	4.05
취업교육지원	4.01	4.15	4.61	3.79	3.67	4.29	3.91	4.09	3.00	3.76	4.09
의료지원	4.00	4.23	4.64	3.95	3.72	4.11	3.69	4.04	3.20	3.69	4.09
법률지원	4.00	4.23	4.57	3.84	3.72	4.11	3.72	4.09	3.20	3.71	4.08
정서적 지지	4.03	4.23	4.71	3.95	3.76	4.18	3.72	4.09	3.10	3.73	4.13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	3.80	4.00	4.50	3.95	3.57	3.86	3.75	3.62	2.60	3.25	3.96

라.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 소결

1)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식 관련

- 업무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대해 1순위 응답률은 ‘가정불화’가 37.8%, ‘경제적 이유’ 23.9%, ‘성인들의 유도’ 18.7%,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14.7%, ‘또래 문화’ 2%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까지의 복수응답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이 ‘성인들의 유도’ 보다 조금 더 응답률이 높은 것 외에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이유’가 1, 2 순위를 차지하는 등 비슷하다.
- 소속기관별로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원인 중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보다 ‘성인들의 유도’에 더 비중을 두는데 반하여, ‘Wee센터’, ‘경찰’ 및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70%)을 원인으로 꼽는 비율은 매우 높다. 성별로는 남성은 ‘경제적 이유’가 35%로 여성(20.4%)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여성은 ‘성인들의 유도’가 22%로 남성(8.3%)에 비해 높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사회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으로 더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종류에 대한 응답률은 ‘조건 만남’이 8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에 대해 ‘스마트폰 채팅 앱’을 61.4%로, 위험(폭력/진상)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 역시 ‘스마트폰 채팅 앱’이 49.8%라고 응답하였다.
-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난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2.0%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와 Wee센터, 경찰의 경우 다른 기관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전혀 아니다’고 답한 남성이 35%, 여성이 60.7%였다. “성매매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후에 사랑을 주장해도 성매매는 문제 삼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2.8%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경찰은 22.9%로 기관별 응답률 중 가장 낮았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도 50%였다. 이 경우 남성은 35.0%, 여성은 79.1%로 성별 인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3.2%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6.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30.4%, Wee센터 28.6%로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찰은 2.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10.0%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경우 남성은 5명, 8.3%만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103명, 53.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가출은 성매매로 이어진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1.6%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57.9%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7.4%, Wee센터 17.9%, 경찰 18.8%로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경우 남성은 21.7%, 여성의 경우 39.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원하기 때문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7.6%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5.0%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21.7%, Wee센터 25.0%, 경찰 16.7%로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남성은 16.7%, 여성의 경우 47.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심각성 조사 결과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매우 많이 심각’ 응답률과 4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위험’ 80.1%(3.69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신적 피해’ 77.3%(3.63점),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할 위험’ 73.7%(3.62점), ‘성 매개 질환에 감염될 위험’ 71.3%(3.55점) 등의 순임. ‘빛을 강요당함’ 41.4%(2.9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찰이 다른 기관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심각성 점수가 현저히 낮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하였다”가 4.19점으로 가장 높으며, “친절하게 도와주려 하였다” 3.61점, “조사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였다” 3.43점,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에 대해서는 3.39점 순서로 나타났다.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2.28점으로 가장 낮았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이 출석할 때 비공개로 하였다”가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구매자나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시 차면시설을 갖추어 하였다” 3.39점, “아동·청소년에 대해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3.14점, “성구매자/성매매알선자 혹은 그 변호인이 재판과정 중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하였다” 3.00점, “성구매자/알선자 변호인의 합의를 이유로 한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2.86점,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인적사항 노출”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2.65점,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에 대해서는 2.60점의 순서로 대답하였다.
-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다’는 응답이 51.0%를 차지했으

며, ‘처벌이다’ 22.3%, ‘모르겠다’ 20.7% 등으로 조사되었다. ‘처벌이다’라는 응답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42.1%), 성매매 피해 상담소(39.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3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교육이다’는 응답은 Wee센터(64.3%), 경찰(62.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60%)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처벌이다’는 응답이 24.6%로 남성 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교육이다’라는 응답은 여성 47.1%, 남성 63.3%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40.2%로 ‘없다’는 의견 24.3% 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인 33.9%를 차지한다.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39.3%)와 성문화센터(34.4%)에서 높게 나타났다.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의 경우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50.0%를 차지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100% 효과가 ‘있다’고 하였지만, 경찰의 경우, 효과가 ‘있다’ 47.9%, ‘없다’ 22.9%, ‘모르겠다’ 29.2% 로 나타났다.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정책 관련

-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가 89.6%로 가장 높았고, ‘신속한 초동수사’ 80.5%, ‘조사 전 상담원과 필요적 연계’ 78.1%순이었다.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해야 함이 93.2%로 가장 높았고, ‘성희롱, 성추행 등의 주의’가 90.0%,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 구비’ 89.6%순이였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조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폰앱에 대한 규제’가 86.5%로 가장 높았고, ‘사법기관의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 85.3%,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 80.5%의 순으로 나타났고, ‘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및 집행’은 49.0%로 가장 낮았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지’가 4.03점으로 가장 높고, ‘취업교육지원’ 4.01점,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각각 4.00점, ‘일자리 지원’ 3.96점, ‘학업지원’ 3.93점,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에 대한 지원은 3.91점,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 3.80점 순으로 답하였다.

IV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심층면접조사 분석

1. 심층면접 개요
2. 피면접자의 일반적 특성
3. 심층면접 결과분석

1. 심층면접 개요

가. 청소년

1)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관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들 중 현장 실무자들의 소개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와의 일차적 접촉은 현장실무자들이 하였으며, 일정 및 장소 등은 주로 해당 상담소를 활용하여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2) 질문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심층면접 참여자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질문을 하거나 계획한 질문내용을 생략 혹은 보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구 분	질 문 내 용
성매매 노출 및 유입과정	1. 가출을 한 경우 어떻게 성매매를 하게 되었나요? 2. 가출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성매매를 하게 되었나요?
성매매 관련 사항	3. 경험한 성매매의 유형은 어떤 것이었나요? 4. 알선업자가 있었다면, 알선자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을 겪었나요?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5. 성매수자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을 겪었나요?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 재판과정 관련 사항	6.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어렵게 느껴졌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7.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어렵게 느껴졌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복지서비스, 쉼터 등 보호시설 관련 사항	8. 복지서비스, 쉼터 등 보호시설을 어떻게 이용하였고, 어렵거나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2차 피해 관련 사항	9. 2차 피해와 관련하여, 학교 또는 주변인, 언론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정책 관련 사항	10.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나. 업무담당자

1) 대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혹은 집단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시설이나 기관의 기관장, 상담원, 업무담당자, 전문강사 등 현장전문가 13명, 보호관찰소나 법무부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 5명, 아동·청소년성매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2명 등 총 20명이었다.

2) 질문구성

조사방법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원인,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정도, 보호처분에 대한 생각 및 개선방안, 현장에서 업무 수행시 어려운 점, 정책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였다. 전체 면접 참여자에 대한 공통질문과 참여자들의 소속과 업무영역에 따른 영역별 질문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면접 참여자가 진술하는 내용과 맥락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거나 준비된 질문을 생략하는 등 탄력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가) 공통질문

구 분	질 문 내 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 성별, 지역 - 소속 및 직급, 업무기간 -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가? -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동기) -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성매매 인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성매매의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호처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장에서의 딜레마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지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어려웠던 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 및 개선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성매매에 유입 또는 재유입 차단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적용 법률을 알고 있는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뀌어야 한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 분	질 문 내 용
	7.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 관련해서 업무처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주기는 어떠한가? 8. 업무처리 관련 매뉴얼이 있는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9.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 영역별 질문

구 분	질 문 내 용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아동·청소년 사이에 갈등사례가 있었는가? -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청소년성매매쉼터에 연계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입소자들의 학업이나 장래 취업 등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 프로그램이 있다면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 입소자들의 학업, 취업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쉼터로 오게 되는 주요 경로는 어떠한가? - 입소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수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해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단속하였는가?(방식) - 합정수사의 경우 아이들을 유인했는가 성구매자를 유인했는가? - 왜 성매매아동·청소년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신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 초동 수사시 상담원과 연결해서 상담 받게 한 적이 있는가? -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가) -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피의자로 조사한 적이 있는가? - 검찰이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검찰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 탈성매매 과정을 지켜본 적이나 지원을 한 적이 있는가? 보람이 있었는가?
기타 (1388, 학교박지원센터, 위센터, 보건교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일반 아동·청소년과 다르게 특별히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연계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성매매 아동·청소년 상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2. 피면접자의 일반적 특성

가. 청소년

심층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15명으로, 청소년 전문상담소와 청소년을 전담하는 상담팀이 존재하는 두 개 기관의 내담자 중 기관의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확정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생년 기준으로 1998년 6명, 1999년생 6명, 2000년생 3명 등 총 15명이 심층 면접에 참여 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해당 기관에 의뢰된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담자나 친구의 소개와 같은 사적 네트워크에 의해 해당 기관을 이용하게 된 경우는 총 3명이었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직접 발굴하여 지속상담으로 연계된 경우가 1명이었다. 또한 1388이나 경찰의 참고인 조사 후 위기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지속상담을 의뢰 한 경우가 3명이었다. 해바라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성매매와 관련한 이슈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경우는 2명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찰 동석상담 이후 지속상담으로 연결된 경우로 6명이었다.

구분	출생년도	성별	현 이용기관	의뢰경로
1	1999	여	A상담센터	내담자 소개
2	2000	여	A상담센터	1388
3	1999	여	A상담센터	경찰 명단
4	1998	여	A상담센터	사이버포래상담 발굴
5	1999	여	A상담센터	친구 소개
6	1998	여	A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7	1999	여	A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8	1999	여	B상담센터	경찰 동석상담
9	1999	여	B상담센터	경찰 동석상담
10	2000	여	B상담센터	경찰 동석상담
11	2000	여	B상담센터	경찰 동석상담
12	1998	여	B상담센터	내담자 소개
13	1998	여	B상담센터	경찰 동석상담
14	1998	여	B상담센터	경찰 의뢰
15	1998	여	B상담센터	경찰 동석상담

나. 업무담당자

심층면접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성매매 업무담당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나이	성별	근속연수	업무구분
A	20대	여	2년	현장전문가
B	30대	여	1년3개월	현장전문가
C	20대	여	2년	현장전문가
D	30대	여	6년	현장전문가
E	20대	여	약 1년	현장전문가
F	40대	여	10년 이상	현장전문가
G	30대	여	4년	현장전문가
H	40대	여	5년	현장전문가
I	20대	여	3년 6개월	현장전문가
J	30대	여	1년 4개월	현장전문가
K	50대	여	2년 9개월	현장전문가
L	50대	여	18년	현장전문가
M	50대	여	6년	현장전문가
N	30대	남	3년	보호관찰소
O	40대	남	15년	보호관찰소
P	50대	남	-	보호관찰소
Q	40대	여	-	보호관찰소
R	40대	여	12년	법무부
S	40대	남	-	경찰
T	30대	남	-	경찰

3. 심층면접 결과분석

가. 청소년

심층면접의 결과 분석은 설문문항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하위주제를 중심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청소년 성매매 관련 경험 주제분석 개요

구분	하위주제
가족경험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 대상/동네 북/언제라도 보내버릴 수 있는 곳/고아원과 다를 바 없는 가정/애정없는 잔소리/의미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꿈을 좌절시키는 가족/땃가를 바라는 가족/누가 해결해줄 수 없는 '가족의 문제'
시설경험	시설생활의 부정적 경험(부족한 없는 생활, 그러나 '고아원' 티내는 행사/감사함이라는 땃가를 바라는 곳)
가출인식	조금 긴 외출/영구적 일탈? 가벼운 일탈/자유로운 생활의 조건/물리적으로 잡아두거나 풀어주거나/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기대수준을 높이는 가출에 대한 가족의 대응
가출 후 생활 및 생활공간	가장 선호하는 술 마시고 놀기/미성년자 입실, 술집은 안 되고 모텔은 되고/
알선자	아는 오빠 등 사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알선자가 성행위 요구/또래 알선업자와 술마시고 하는 관계, 성폭력도 성매매도 아닌/알선조직간의 갈등으로 청소년들이 인질이나 미끼가 됨/알선자가 구매자와 이미 문자주고 받으며 조건타협 볼 때 무리한 조건을 수용하고 알려주지 않음/감금 폭행 무리한 성매매(하루 15회 이상)로 내몰림 당함/ATM기 취급당함/여자 아닌 걸레로 취급/몸을 돌볼 기회주지 않음/ 친구들과 갈등조장하고 고립시킴->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불쌍한 아이" 착취하기
10대의 성을 사는 사람들	청소년 성구매자 Pool이 형성되어 있어 관련 생태를 잘 알고 악용 하는 집단이 있음/지속 만남을 통해 나의 정보 알려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로 인식/알선업을 한다는 것을 경찰에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면 청소년을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접근/구매자의 성폭력 및 신체폭력, 더 심한 범죄피해 우려가 있었음/ 납치/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는데 구매남에게 구조요청 하였으나 못본 척 하는 '남자 사람' 과 '어른'에 대한 좌절감/가출중임을 알고 숙식제공 하겠다고 다른 지방에서까지 데리러 오는 적극성/미성년자이기에' 성을 사는 사람들/미성년임에도' 성을 사는 사람들/성관계 없는 만남을 조건으로 만났어도 약속어기고 성관계 요구하는 '어른들/“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봐도 다 똑같고 다 나한테 관심 있는 건 그냥 성관계. 나는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몸을 쥐라”/조건만남을 한다는 것이 알려질까봐(가족들과 어차피 단절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상성격자와의 범죄 피해도 신고하지 못함/

구분	하위주제
	구매자에 대한 가장 큰 거부감, 동의하지 않는 질내 사정
업소고용	키스방, 노래방 등 경험/성매매보다 더 어려운 노래방에서의 감정노동/손님도 알고 업주도 아는 미성년자 고용/모두에게 위험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누가 먼저 터트릴 것인가가 관건인 시한 폭탄
경찰조사경험	조사받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험은 없었음/잘해줘도 남자 경찰관은 결끄러움(여경 없이 조사하기도)/부당한 경험 유무와 상관없는 “너무 싫은”(주변의 시선, 자존심 상하는)경험/대부분 피해자로 조사 받음 그러나 피의자 보다는 피해자(동정 등)로 대하는 시선이 훨씬 부담스러움/참고인 조사 혹은 피해자 조사와 관련해서 동의 구해야 하나 구하지 않음/반협박성 조사 강조/말만 피해자, 피해자로 대우 받지 못함/조사 자체가 강요나 강제 되는 느낌/친절하나 꽃뱀으로 몰아가는 언사/합정 수사시 ‘미끼’로 동원되는 경우 /조사에 협조했으며 추후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데 알려준 적 없음/진술서 작성시 다른 사람의 것 샘플로 보여주는 데 실명, 세부내용이 다 노출되게 그대로 다 보여줌/다른 청소년 조사시 나의 이야기를 노출시킴/부모연락에 대한 부서별 업무지침 차이로 결국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짐/실적위주의 업무처리 방식/경찰이 합의 중용
법원/보호처분	분류심사원(더운 물 안나오고, 통방금지, 화장실내 CC TV 설치, 욕실)의 열악성, 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옹호하는 변호사/보호처분이 삶의 전환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임 : 휴대폰과 ‘친구’로부터 자유로운 시간, 자유는 없으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경험의 지속성을 위한 가족환경변화 위한 개입 부재/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대체로 긍정적 평가/ 상담소를 만난 나는 ‘행운아’/인프라보다 ‘사람’ 부정적 경험(쉼터의 막말하는 사회복지사/상담내용의 노출/지역사회에서 ‘시설 티’내는 활동과 서비스/서비스의 제한성과 낙인효과
위기청소년 캠프	생활리듬 회복의 효과 경험함/동병상련의 출발점/재미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경험: 엄청난 선물, 노는 그리고 무서운 언니들과의 밀착적 생활
정책제언	최우선적인 지원책, 자립지원으로서의 일자리! 일자리!(부모동의 필요 없는)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자리/ 부모동의 필요 없는 자유로운 일자리/만들어진 일자리(인턴십이나 작업장 등)가 아닌 ‘자유로운’ 일자리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경험

가) 성매매 노출 이전의 생활 상황

(1) 가족경험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가족경험은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운 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동네북”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거나 이혼 등 가족구조의 큰 변화와 관련해서도 “상의”를 하거나 충격을 고려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거나 부모 간 혹은 친인척 나아가 시설에 “언제라도 보내버릴 수 있는” 존재로 취급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엄마하고도 연락 거의 안 해요. 거리가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때 이후로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엄마가 너무 무뎠어요. 애정도 별로 없었고./ 어려움보다는 어릴 때 엄마랑 아빠랑 많이 싸웠어요. 저 엄마랑 아빠랑 칼들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 그것도 많이 봤어요./ (참여자 9)

아니. 화가 나죠. 왜 자기만 생각하지? 자기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돈이 전부 같으니까. 짜증나죠. /사회자 : 아빠가 그런 과정과 관련되어서 딸한테 한마디 언질을 주거나. /응답자1 : 저희한테 할 말이 없죠.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순전히 어른들끼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 트라우마는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한 게 더 커요. 엄마영향이 더 커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엄청 힘들어한 것 밖에 안 봐서. (참여자 11)

엄마랑 작년에 사이가 많이 틀어져가지고 엄마가 양육을 포기하겠다고 너 알아서 살아라 그래 가지고 힘든 건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다 힘들었는데 뭔가 옆에서 계속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엄마한테는 더 이상 그걸 기대하기가 힘들니까. 뭔가 엄마인생에서 내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무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참여자 2)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동이 없더라도 ‘애정 없는 잔소리’나 ‘의미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 꿈을 좌절시키는 가족 등에 의해서 ‘작은 트라우마’들이 쌓이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어느 정도 구조적 혹은 기능적 안정성이 확보된 가정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서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집안 일, 할머니가 있는데도 집안일을 해라. 하라고 하면 하는데 막 잔소리하면서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는 건 했는데도 하지 못했던 것도 막 시키고 그랬으니까. 그런 압박감이 저는 옛날 어려서부터 받아왔다 보니까 심터나 그런 데를 들어가는 게 솔직히 꺼려져요. (참여자 7)

맨날 엄마가 저한테 아무 의미 없이 뭐라고 하고 나가라 하고 그래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그래요. (참여자 3)

다른 애들은 막 아빠랑 막 안고 울고 막 아빠랑 웃으면서 막 아빠도 이렇게 손 잡고 애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못 그러겠어요. 아빠랑. 아빠랑 어색해요. 그냥 연락을 그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집 언제 들어오니. 그리고 나 돈 좀 보내줘. (참여자 8)

책도 사서 공부도 해야 되고 강의 같은 것도 듣고 싶고 그런데 안 되니까./ 그냥 검정고시 같은 거. 중2, 1학기 때 제가 안 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는 모르니까 강의 들으면서 막 그런 게 있어요.../ 너가 무슨 공부냐고./ 왜냐하면 계속 놀았으니까./ 갑자기 뜬금포로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안 믿고. (참여자 3)

가족 내 뿌리 깊은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내부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족의 문제’로서의 폐쇄성을 자인함으로써 가족문제로 인한 고통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족인식과 경험은 이후 더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외부의 도움 요청을 제한하거나 도움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문제라 하더라도 사회적 도움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냥 지금은 지금 가족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누군가 해결해주지 못할 일 이니까 ... (참여자 8)

(2) 시설 경험

가족경험과 함께 이미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양육시설을 경험하고 있는 면접 참여자도 있었다. 이들은 시설생활 경험에 대해 “(물질적으로)부족함 없는 생활, 그러나 ‘고아원’ 티내는 행사” 등으로 인해 스티그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나 도움의 손길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는 도덕적,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한번 고아원에 살았었으니까 고아원에 살았다 보니까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쉼터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었고. /억지로 뭐 고아원들끼리 해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보육시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행사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맞춰서 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그때까지 했던 연습이 뭐냐 하면 댄스. 한국무용 댄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못 한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혼나거든요/진짜 못해 줄만큼 해주고는 또 그만큼 대가를 많이 바라죠./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인데 압박감이 뭐냐 하면 고아원이랑 똑 같은 게 뭐였는데/ 해줄건 다 해줘놓고 바

라는 게 많았어요. (참여자 7)

나) 성매매 노출 및 유입과정

(1) 가출 관련 경험

면접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가출은 흔히 하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특히 사춘기를 “가출을 한창 할 때”라고 규정하는 등 가출에 대해 청소년기 발달과정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금 긴 외출”일 뿐이고 흔히 사회에서 바라보듯 영구적 일탈이나 치명적인 일탈이 아닌,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가벼운’, ‘거취의 변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가출은 “자유로운 생활”의 전제조건이므로 “놀고 싶은 마음에” 가출을 하고 더 놀고 싶은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경우 “더 긴 외출”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마음에 그냥 자유롭게 싶었고 학교 다니기 싫고. 그런 거죠. 놀고 싶어서. 더...
(참여자 4)

여성 3명에 남자 3명에. 그래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때 집에 있었다 보니까 외박이나 그게 안 됐어요. 늦게 들어가는 것도 안됐고 통금 시간도 있었고 해서. 집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게 발휘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러 놀러가는 @@@나 \$\$\$ 언니를 보면 너무 부럽다고 느꼈어요. (참여자 7)

저희는 가출이 길어봤자 일주일이었지? /아니 한달 넘었어 우리. 우리 진짜 오래 있었어. 계속. /저희는 그게 제일 길고 제일 마지막 가출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출이라기보다는 부모님한테 연락도 하면서 그냥 긴 외출이었어요. 무조건 그냥 나가있는 거.
(참여자 11)

가출과 관련하여 가족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가족이 구조적으로 해체되어 있는 경우는 아예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한번 가출한 이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더욱 잡아두려고” 하거나 “더 풀어주는” 방식으로 회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이후 마음을 다잡고 “조신한 생활”을 하는 경우 부모의 기대가 상승하면서 또다시 가출을 유발하고 있었다.

아예 제가 집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하루만 외박도 아니라 그냥 조금 늦게 들어간다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아빠가 너무 미워가지고 아빠한테 계속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아빠랑 싸우고 나서 아마 바로 나갔을 거예요. 아빠랑 싸우고

나서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빠 출근할 때 제가 짐 싸들고 나갔어요. (참여자 7)

딱 두 개예요. 더 잘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내치고, /오히려 잡아두려고 하거나. 이제 집 왔으니까 너 놀고 싶을 때 나가서 놀아라. 집만 잘 들어와라 하면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너 절대 못 나가게 감시할 거라고 아빠한테 전화할 거라고. /그런데 그러다가 더 잘하면 잘하면 또 더 많은 걸 바래요./ 그래 너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다음 것도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많은 걸 바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 나가고 싶네요. (참여자 11)

(2) 가출 후 생활공간 및 여가활동

가출이후 면접 참여자들의 주요 생활공간 및 여가활동은 노숙에서부터 친구의 집, 가출팸 등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후 노는 방법으로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것은 “술 마시며 놀기”였다. 그러나 노상이나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없는 미성년자로서의 면접 참여자들은 오히려 모텔이 술 마시고 놀기에 적당한 장소가 되고 있었다. 즉 술 마시기 위한 공간으로 “술집은 안되고 모텔은 되는” 역설적인 생활공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모텔에서의 음주는 성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물리적 공간이었다.

곧장? 집 나와서 곧장 침터로 가요? /아니요. 친구랑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가출을 했을 때는. / 혼자 해요, 주로 친구랑 같이 해요? / 거의 혼자 했었는데 친구가 같이 할 때는 친구랑 같이 해서 친구네 친할머니 집에서 자거나 저희집 아파트 옥상에서 자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자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야 버스가 다니잖아요. 서울은. 버스에서 자고 그러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참여자 14)

다) 성매매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1) 알선자

면접참여자들이 경험한 알선자들은 “아는 오빠”인 사적 네트워크에서부터 기업화된 알선업체까지 다양하였다. 특히 사적 네트워크와 결합되어 있는 알선자들은 “힘한 조건”에 대한 보호기능과 함께 사적 관계에 의한 감정으로 힘한 조건에 ‘의도적’, ‘보복적’으로 노출 시키는 양가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은 ‘사적 관계’를 빌미로 함께 술 마시고 노는 관계이기도 하고, 이를 계기로 성행위와 성폭력, 성매매의 경계에 걸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였다.

자기 **(지역)인데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인데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돈을 엄청 많이 준대요. 카페 아르바이트면 할 만하니까 그런데 우리 나이도 써 주냐고 했더니 써준대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 오라고. 면접을 보래요. 갔어요. 그런데 무슨 커피숍에 어떤 남자가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조건 같은 거라고, 그런데 한번 하면 막 15만원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해서 처음에 되게 망설였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15만원이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 벌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겠지 생각하고 한다고 그래서 ... 그런데 그리고 뭐가 있었지? 그 남자 있잖아요. 막 계속 하자고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모텔 가자고/자기가 그렇게 소개해주니까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참여자 10)

특히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든 하지 않고 있든, 가장 나쁜 상태는 알선조직 간의 갈등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인질'이나 '미끼'가 되기도 하여 범죄의 최전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또한 영리만을 목적으로, 알선자가 미리 문자로 주고받은 무리한 조건에 노출되어 '조건만남'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내건' 조건이 아닌, 알선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조건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하였다. 즉 '조건만남'에서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내건 '조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실장 오빠도 말을 하더라고요. 차 없는 사람이나 만약에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날 되게 약간 저랑 다투가지고 너 그냥 퇴근하라고 그랬는데 미안한 마음에 아니라고 그냥 한두개라도 하고 가겠다 그랬는데 그때 차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오빠가 그냥 저랑 싸웠던 것 때문에 그냥 저를 보낸거예요. (참여자 12)

저 봉고차 끌러갈 뻔했어요. 딱 그렇게 해가지고 또 너 나와 그래 가지고 나갔는데 봉고차에서 어떤 오빠가 와요. 오빠 두명이 와가지고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오빠가 딱 옆에를 봐서 옆에를 봤는데 원래 알던 오빠가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오빠가 있었는데 거기서 두명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엄청 쌓여있는 거예요. 재네 놓아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맞은 거예요. 그 오빠가. (참여자 11)

3일동안 계속 끌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조건 시키고 나머지 돈 받은 거 싹 다 자기네가 다 가지고 제가 그때 한 5~6만원 있었는데 제 돈까지 다 써버리고. /3일 동안 몇 번이나? / 한 두세번. 그러니까 얼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리 터지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맨 처음에만 무섭게 하고 중간부터는 저 때렸던 오빠가 약간 그냥 겁주는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때렸던 데 맞았던 데 괜찮아 그래 가지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밥 먹을래? 아니요. 잠 좀 자. 잠 안 즐려요 그러고. 솔직히 제 핸드폰이랑 지갑 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저는 신상 정보 거기 다 들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잠도 안 자고 3일 동안.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안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때 개네가 한번 당 20에서 25만원 가져갔어요. 개네가. 그리고 나서 다른 한 명 더 뒤에 쫓아오던 개가 밤에

는 저랑 같이 있었는데 강간하고 집에 일찍 보내줄게 그러고. 너 어차피 이거로 돈 버는 애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 비하하면서 (참여자 12)

알선자와 관련한 심각한 인권침해 경험으로는 기본적으로 병이 났을 때 몸을 돌볼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을 가보라고 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들은 병원출입을 꺼리고 있었다. 병원치료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귀찮다”거나 자신이 겪는 증상의 심각성에 대해 무심함도 있지만 가장 민감한 사적 정보(일반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특히 산부인과적 건강상태)를 노출해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활공간이나 활동의 불규칙성은 지속적인 질병관리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알선자들이 저한테 그 오빠들이 했던 행동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돈 필요 없어요. 돈 다 필요 없고 일단 몸 좀 생각을 해야 했었는데 저는 바보같이 제 몸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 오빠들은 제가 힘들더라도 억지로 시켰었고, 그거에 정신적이나 신체적도 많이 피해를 봤었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친구가 없었어요. 조건만남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적으로 되더라고요. 다 그걸 이용하더라고요 (참여자 7)

결과적으로 면접 참여자들은 사적 관계에서 출발한 알선자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 모두에게 자신들이 “여자가 아닌 걸레”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돈벌이 대상화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인, “ATM기 취급”을 당한다는 자조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한편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보호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알선자들이 지속적으로 친구관계에 대해 갈등을 조장하고 고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같이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또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쌍한 아이 착취하기”의 일환으로 서로가 감시자가 되기도 하고 유인책, 알선자로서의 “신분 향상시키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더욱 자유롭지 못한 족쇄가 되고 있었다.

개네들이 아가씨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를 계속 돌렸어요.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 □□보다 더 심하게 돌렸어요. 네. 진짜 하루에 6~7번을 나갔고 그 돈은 다 오빠들이 거의 가져갔고 진짜 어느 날은 제가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진짜 너무 몸이 힘들고 남자들을 계속 받아준다는 게 지쳐가지고 집 들어오자마자 정신 잃고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못 일어났고 일어나보니까 그때 아침에 들어 왔는데 벌써 또 아침이에요 그래서 그때 진짜 쓰러져가지고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아닌데 아닌데라고 하다가 또 며칠 일도 못 했어요 친구의 의미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을 아무리 조건 만남을 하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사람으

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짐승이죠 진짜. /네.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랑도 관계를 했었어요. ◻◻◻랑 관계 했었는데 ◻◻◻랑 하는 관계도 솔직히 거의 강제적이었어요. 술 먹고 나서 하는 관계도 많았고 진짜 제가 했던 제 옛날 그 과거 돌려다 생각을 하면은 진짜 내가 인간처럼 살지 못했구나. 인간 대우로 받고 살지는 못했구나. 짐승 취급에다 자기들이 돈 필요하면 거의 은행 같은 기계 뽑는 ATM 그런 수준이었고 한 사람의 여자로 보지를 않았고 그냥 조건만남을 하는 걸레로 봤었던 것도 많았고 그냥 그런 현실이 서러웠어요. 솔직히. 제가 벌여놓은 일인데도 그렇게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현실이 서러웠어요. (참여자 7)

진짜 이게 성매매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자기들이 돈이 안 되면은 진짜 알선자로 변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많죠. 솔직히. 여자애들 특히 미성년자 애들. 진짜 제 옆에서 봤던 **라는 애도 많이 불쌍했어요, 솔직히. (참여자 7)

(2) 10대의 성을 사는 사람들

면접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10대의 성을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가출증임을 알고도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몇 시간 거리를 데리러 오는지, 어떻게 성관계 없는 단순한 만남만을 조건으로 했는데 돌변하여 약속을 어기고 성관계를 요구하는지, 어떻게 내 앞에서 자신의 딸과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납치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으니 신고 해달라고 해도 외면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아빠뻘들이 다 교복을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그건 신기했어요. 딸 같은 애한테 이려고 싶을까? 어이가 없고 그냥 안쓰러워요. (참여자 7)

친구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 인간이. (참여자 3)

그냥 만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계속 했는데 술을 마셨었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힘도 별로 없었고 저항은 했는데 관계를 하게 됐어요. 하고 그냥 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참여자 6)

어린애들이라고 성을 매수하는 남자들은 정신을 진짜 차려야돼요. 애들이 어떤 상황인지 왜 돈이 필요한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의 짐승적인 거 심지어 가정이 있는데도 진짜 내가 이 나라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법이 있었으면 개네들 다 칼로 (참여자 2)

즉 면접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10대의 성을 사는 사람들’은 ‘미성년자임에도’ 성을 사는 사람들과 ‘미성년자이기에’ 성을 사는 사람들로 구분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저사람 다 만나 봐도 다 똑같고, 나한테 관심 있는 것은 그냥 성관계, 나는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몸을 줘라”로 귀결되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나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사람, 몸이 안 좋을 때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용돈을 주는 일부 “단골”이 있지만 이는 아주 예외적인 ‘안전한 관계’일 뿐이다.

물가는 아니고 원래 기본 그 업소 여자들은 한번 할 때 출장으로 15만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남자들이 업소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일단 제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저는 10만원 받고 13만원 받고 이런 것 같아요. (참여자 2)

원래는 둘 다 15만원인데 제가 더 달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애가 되게 어린데 당돌하고 귀엽다고 5만원 더 주셨어요. 그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소름 끼쳐요. 자기 딸 뺄한테 어디 딸 뺄한테. 자기 딸보다 어릴걸요. (참여자 3)

그렇게 해서 또 이를 지나고 또 만났어요. 10만원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간다고 했죠. 그리고 너가 관계 한 거 나는 신고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고해도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어차피 내가 아는 경찰 많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부남이고 애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참여자 6)

그러니까 저희한테 다 착하고 엄청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끊을 수 없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엄청 생각해주시고 그게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댜에는 배려라는 게, 배려? 매너가 있었어요. (참여자 11)

또한 면접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Pool 이 형성되어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한 생태를 잘 알고 이를 악용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개인적인 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가장 위험한 일”로 인식하고 있는 면접참여자와 여전히 지속만남을 통해 정서적 교류에 의미부여를 하는 면접참여자로 구분되고 있었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중간에 알선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경찰에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면 청소년을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구매자의 성폭력 및 신체 폭력 등 강력사건에 노출되고 있었다. 이로써 ‘돈’ 이상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기대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있었다.

성매매하는 여자들도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하는 여자들은 계속 하고 만났던 손님을 계속 만나고. 그리고 진짜 채팅어플이란 게 한 지역에서만 한다면은 그게 너무 작고 ... (참여자 7)

앱도 통하고 ○○○나 △△ 카페 같은 데 보면 부업 사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부업 사이트나 아르바이트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보통 이제 막 어디에서 살고 여자라고만 올려놓으면 다 연락이 와요. (참여자 5)

그거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무섭죠. 계속 문자로 임신해도 찾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전화 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연락하지 말라고 신고할 거라고. 신고해보라고 어차피 나 아는 사람 경찰이라고... (참여자 6)

저는 조건 만남을 계속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약점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이 제가 나이 몇 살이고 그 사람이 동영상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뭐가 약점인지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한 사람을 몇 번 이상 만난 적이 없었어요. (참여자 7)

돈 달라고. 폭력으로 나는 잠깐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런데 너네는 평생 살아보라고 한번 그러면서 오빠한테 돈을 요구한 거예요. 500만원 주면은 애를 보내겠다. 당신 돈 많이 벌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참여자 12)

꾸준히 계속 만나려고 해요. 만나자고 해요. 돈을 안 주고 그냥 만나려고 해요. 한번 만났으니까 괜찮다 이거지. 계속 돈 안 주고도 계속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자기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필요해서 안 만날래요. 뭐가 좋다고 만나요. 미쳤다고. (참여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참여자들은 조건만남을 한다는 것이 알려질까 봐(비록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상성격자”에 의한 범죄 피해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그러니까 어플 같은 거로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모델에 갔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막 술을 약간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막 대화 맨 처음에는 솔직히 사람을 못 믿으니까 돈을 먼저 달라 그랬더니 계속 막 말을 돌리다가 제가 계속 먼저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들어오자마자 창문이랑 문을 다 잠가 놔었어요. /그때 제가 생리중이라서 그냥 성관계는 안 갖고 그런 식만 하기로 했었어요. 미리 말을 해놓고 만난 거였는데 술 드셨잖아요. 맨 처음에는 술 먹은 걸 몰랐어요. 나중에 모텔 오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그러면은 돈 안 주시면 저는 그냥 가겠다고 서로 믿음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뭘 믿고 만나냐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때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맨 처음 에 왼쪽 뺨을 맞고 이렇게 숙이니까 반대쪽 뺨을 또 때리셨어요. 때리고 나서 제가 울면서 그냥 가겠다고 했더니 또 맞기 싫으면 앉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막 동영상 촬영 막 하라고 하고 찍으시면 저는 갈 거라고. 저는 옷 안 입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찍으시면 저 갈 거라고 그랬더니 안 찍겠다고. 내려놓고 또 찍고 내려놓고 또 찍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참여자 12)

그런데 어느 날은 손 한쪽을 안 묶고 나가서 손 한쪽 풀고 발 한쪽 풀어서 도망을 가고는 그 사람을 신고는 하지 못했어요....그렇게 알려지는데 싫었어요. (참여자 7)

그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그때 그렇게 그냥 막상 당하니까 그때 제일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들키면 엄마한테 죽어. 들키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섭고 엄마한테 가고 싶으니까 혼나도 엄마한테 일단 가고 싶으니까 나중에 가니까 신고 해달라고 그때 그 남자한테 부탁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3) 업소고용 경험

양적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고용 경험, 특히 집결지에서의 고용 경험이 있을 정도로 업소고용경험은 청소년의 성매매가 자발성에 기초한 자기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면접 참여자들도 키스방과 노래방 등에서 유사성매매 경험을 하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노래방에서의 도우미 역할을 “성매매 보다 더 어려움”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성매매는 짧은 시간 감정과 성행위를 분리하여 행위를 마치는 것이 가능하나 노래방에서의 노동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감정노동을 넘어서는 “마음과 몸으로 비위를 맞추는” 복합적인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성매매가 ‘탈출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노래방 도우미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손님도 알고 업주도 아는 사실이며, 비교적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으로 모두에게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누가 먼저 터트릴 것인가(신고)가 관건인 ‘시한폭탄’과 같은 시간으로 체험되고 있었다.

미성년자인 애들도 다고용을 하더라고요.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거긴 아주 개판이었어요. 미성년자인 애들은 자기가 미성년자인 애들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웃도 더 야하게 입고 그랬어요. 흑시라도 민증이 필요하잖아요. 민증 까보라고 하면은 저희 민증 깔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얻어온

민증이라든가 주워온 민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애들한테 사는 민증이라든가 그걸 하나씩 꼭 쥐고 있었어요. (참여자 7)

보도방이 여유로웠어요. 여유로웠고 압박감이 없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진짜 실장님들한테 아주 호되게 혼나고 일도 몇 배로 해야 했어요. (참여자 7)

얼굴이 그래 보이는 거죠. 저 21살이에요. 그런데 민증 까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그때 너무 철렁해가지고. 민증이요? 놓고 왔는데요. 땡 까지마 너 미성년자지? 너네실장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여자 7)

(4) 경찰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줘도” 남자 경찰관은 여전히 “결끄러운” 존재였다. 이는 여자경찰 없이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부당한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없이 조사과정은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너무 싫은”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처음에 그 경찰, 경찰서를 가서 이제 경찰관이 왔잖아요. 경찰서를 경찰차 타가지고 가서 진술서를 쓰는데 그때 거기가 **지구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찰관 남자들이 다 둘러싸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진술서 쓰는데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막 거기서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락해서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그 광경 보고 화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내 딸이 구경거리냐고 장난 하냐고 지금. (참여자 2)

남성분이시니까 뭔가 좀 되게 말은 해야 되는데 결끄러웠어요. (참여자 3)

또한 면접 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편이었으나 대개의 경우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보다 “동정”으로 해석되는 피해자로 대하는 시선이 훨씬 부담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의 다 제가 수사 과정을 피해자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님들이나 검사님들은 다 착하게 해주셔서 되게 다 좋았는데 그때 제가 가해자로 딱 한번 조사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시선이 진짜 따갑더라고요.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진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너 진짜 이려고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려고. /진짜 제가 느낀 건데 가해자들이 받는 시선이랑 피해자들이 받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받는 시선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안쓰럽다는 듯이 쳐다보면 그 시선을 받는 피해자들은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한번밖에 보지 못했던 경찰관님들이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낼마다 저는 솔직히 그거 듣기가 힘들어요. 너 얼마나 힘들었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수사관님들이 저는 싫었어요. (참여자 7)

피의자로 들어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너 큰일났다 그러면서 너 피해자면 괜찮은데 피의자면 너는 큰일 났다. (참여자 3)

한편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참고인 혹은 피해자 조사와 관련해서 동의를 구해야 하나 구하지 않았으며, “반 협박성” 조사를 받았고, “말만 피해자”이지 피해자로 대우 받지 못했다고 항변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사관의 “친절하지만 결과적으로 꽃땀으로 몰아가는” 언사, 함정 수사시 ‘미끼’로 동원되는 경우를 부당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 추후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데 해당 내용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을 부당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냥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 똑 같은 말 반복시켰어요. ... 그냥 몸으로 표현하라는데 그걸 왜 그렇게 못하냐고 계속 다시 하라고 다시 하라고 다시 하라고. 솔직히 그때 되게 힘든 게 그 상황에서 똑같이 재현해보라고 몸으로.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네. 그런데 사건이 다 됐는데 어떻게 된지를 몰라가지고 경찰서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여자 6)

저 조사에 참석 되게 잘했어요. 제가 미끼로 그 사람을 막 해가지고 제가 끌어들이가지고 경찰에서 잡았어요. (참여자 3)

진술하는 내내 다 힘들었어요. 입으로 어떻게 했냐고 어떤 자세로 했냐고 이걸 다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너무 내가 막 더럽게 느껴져 가지고 그만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이거 그만하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너가. 그래서 진짜 억지로 울면서 되게 했는데, 했어요. 일주일동안. 하루에 4~5시간씩 진술서만 쓰고... (참여자 2)

그런데 막 어떻다고 연락도 안주고 일하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참석해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됐는지는 궁금해요. 그런데 그걸 안 알려줘요. (참여자 3)

또한 불확실하고 의문스럽게 인식하고 있으나 진술서 작성시 다른 사람의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데, 그 내용 안에 당사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내용이 노출되는 것',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잘못하고 있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여 참고인이나 피해자 조사에 응했는데 부서별 업무지침의 차이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 가장 큰 배신감과 부당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은 "전반적인 경찰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저는 누가 저를 억지로 강제로 하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게 별로예요. /그때 조건 걸렸을 때 경찰이 그때 저한테 계속 부모님 모셔와야 된다고. 조건 걸러가지고 부모님 데려오라고 해서 제가 진짜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빨리 부모님 안 모셔오면 집에 못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참여자 9)

너네 거기서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너네 그냥 우범청소년 그거랑. 그런데 우범소년이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저희가 어리니까 너네는 모를 거다. 그냥 너희는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 하에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너네 무조건 보호 받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솔직히 그냥 넣어버리려고 한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부모님들한테 연락 안 가고. (참여자 11)

부모님한테 연락 갈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타라고 그래서 탔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많이 화가 나고. 그런데 막 계속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고.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하는데 계속 이제 피해자한테는 뭐 많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뭐 조사를 받으러 와서 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제가 원래 다음 날에 받는다고 했는데 무조건 오늘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받으면 부모한테 얘기를 안할 것이고 내일 받으면 부모한테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미성년자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그 사람이랑 합의를 보라는 등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 더 위하는 이제 그런 경찰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찰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계속 진술 받고 있는데 들어가서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고 계속 강조를 하시고. (참여자 14)

경찰이 보내주는 것 같던데. 우선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니까 합의를 시키는 게 낫잖아요. (참여자 12)

3) 보호·서비스 경험

가) 보호처분경험

성매매와 관련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면접 참여자들은 일차관문인 분

류심사원에 대해 아직 추운 계절에 “더운 물이 안 나오고, ‘통방’을 금지²⁹⁾하는 것, 화장실에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 분류심사원의 직원들이 욕을 섞어서 지도하는 것” 등을 부당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재판과정에서도 “의아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변호사가 변호를 한다고 하기에 “나를 옹호하기 위한 변호사”인줄 알았는데 판사의 “판결을 옹호하는 변호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거긴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다 씻잖아요. 씻는데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2월이면 좀 추워요. 그런데 따뜻한 물도 안 나오구요. 다 같이 샤워를 해요. /그런데 다 보고 있어요. 저희 씻는 걸. / 그리고 그냥 욕하고. /그냥 화장실에 CCTV있는 것도 그렇고. (참여자 8)

심사원에 갔다가 나갈 때 변호사 한 명씩을 다 해주세요. 그런데 국선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심사원에서 변호사 접견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갈 때쯤. 변호사는 저의 편을 들어 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랬어요. 변호사 접견할 때 아, 그러면은 변호사님이 잘 말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보자고 해가지고 저는 진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판사님이 6호... 시설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고. (참여자 8)

한편 시설보호처분을 받아 사회적으로 격리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했으나 이 시간이 삶의 전환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면접 참여자도 있었다. 즉 이 시간은 “휴대폰과 친구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며, “자유는 없으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확장이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필수조건인 가족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를 위한 개입이 부재하여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무효화 혹은 축소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제가 옛날처럼 안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놀고 그런 거 안 그럴 거라고 다 생각을 해놓고 다 정리하고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여태 6개월동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랬긴 했는데 만약에 흑시라도 제가 변한다면 아 빠 때문일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 때문에. (참여자 8)

저는 거기 있으면서 일단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자유시간이 있지만 핸드폰을 한다거나 친구들을 만나다거나 논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29) ‘이웃 감방의 수감자와 암호로 의사소통 한다’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면접 참여자들은 통방금지의 의미를 옆방 입소자들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성매매를 할 것 같고 설거지 아니면 성매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8)

나) 지역사회서비스

면접 참여자들이 경험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유형은 상담소와 쉼터 등이었다. 전반적으로 해당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특정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에 대해 스스로를 “행운아”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사회에 나쁜 것도 진짜 많은데 그래도 지켜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아놓아요. 모여서 이런 센터가 생기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애들이 여기가 더 커져서 애들이 더 많이 도움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2)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는 인프라의 중요성 보다는 미성년자임에도, 성매매라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존중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다양한 청소년들이 라포를 형성할 충분한 시간이나 점점 없이 쉼터를 드나들게 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경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 티내지 않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티내는” 서비스로 인해 서비스의 제한성과 낙인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건 아닌데 좀 중학교 때 제가 이런 상담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왜냐하면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좀 밖으로 많이 방황을 했어가지고 집안 사정도 어렵고 그런 거 때문에 학교 00에서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그 상담 내용이 어떻게 하다가 밖으로 노출이 된 거예요. (참여자 4)

시설 같은 거 해놓으면 좀 제도를 좀 강화시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사회복지사들도 보면은 요양원 같은 데 보거나 하면 막말 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걸 정부에서 자격증 따는 걸 진짜 변호사 시험 같은 것처럼 면접을 봐가지고 인격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격위주로 봤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5)

그냥 사회복지사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뽑잖아요. 채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이들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4)

그냥 되게 명령조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명령조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되게

명령조고 거기는 이제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화내고 막 그런 것도 심하고 되게 어떨 때 보면 제가 ○○○이랑 XX을 자주 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존나 짜증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일하게 되면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14)

남편은 있는데 못 사는 거일 수도 있고 다 상황이 다른데 미혼모 시설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람취급 안 하는 것 같은. (참여자 5)

운동을 시키고 청소도 적당한 건 좋은데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도 모든 사람이 생활하고... 쓰레기 그거 장난 아닌데 그거를 막달한테 다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정부에서 월급 받고 하면은 똑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막 미혼모 시설이고 해도 청소년이 많잖아요. 미혼모는. 그런데 말을 막 하고 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말할 때. 그런 것도 절제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신상을 이렇게 누설하지 않는다고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가거나 할 때 큰소리로 선생님 선생님 거리고 택시 안에서 타고 갈 때도 뭐 우리 시설 얘기하고 이런 거는 그냥 다 자기마음대로 떠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도 솔직히 미혼모 안 그래도 나이 어려보이는데 임신해서 더 그럴 텐데 대놓고 선생님 막 이렇게 부르고 저기 멀리서 이제 네 차례라고 빨리 오라고 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시설에서 온 거잖아요. (참여자 5)

또한 시설의 서비스에 대해 “감사함이라는 대가를 바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설경험이나 역기능적 가족구조 안에서의 경험을 동일시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이후의 쉼터 등 단기보호나 중장기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시설 운영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강조를 통해 도덕적 ‘교화’의 수단화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걸 떠나서 개네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고마워해야 나라에서도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회자 :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거는 생활이 유지되지 않은 거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참여자 8)

다) 위기청소년 캠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위기청소년 캠프는 보호처분에 의해 혹은 보호처분이 없더라도 경찰의 의뢰로 4박5일 간의 집중적인 숙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숙식을 같이 함으로써 생활리듬을 회복하는 효과를 경험하기도 하고 ‘동병상련’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괜찮은 선물은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 본 사람들과 단기간의 강도 높은 교류에 노출된다는 것은 상당한 정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캠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엄청난 선물과 무서운, 노는 언니”들과의 만남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일단은 좀 막 사회에서 엄청 바쁘게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가 5박 6일이라도 잠깐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왔거든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래서 그냥 그런 편했던 것 같고. (참여자 4)

동생들 상황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고 딱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캠프에서 선생님들한테, 동생들 진짜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 내가 안 좋은 일이 있고 했을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 힘으로 다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저런 어린 동생들한테는 동생들 옆에는 꼭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무슨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는 언니한테 연락 하라고 그랬거든요. (참여자 4)

좋았던 거는 그냥 비슷한 친구들하고 툭 까놓고 말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안 좋았던 거는 막 선생님들이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거나 할 때 너무 그거에 관해 가지고 말 하시는 거. 그러니까는 막 힘들었던 얘기하는 거는 성매매에 관한 얘기 말고 성매매 때문에 뭐가 힘들었고 이런 얘기는 4박 5일중에 한번 정도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참여자 5)

여기서 그러니까 캠프가 5일 정도인데 이제 4박5일, 아니, 5박 6일인가?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또 그 친구들은 다 약간 가출하고 그런 친구들이니 약간 솔직히 무서운데 그래도 일단 가긴 갔어요. 프로그램 많이 하길래. 선물도 준다고 하고. (참여자 1)

4) 정책제언

면접 참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정책적 지원책은 대부분 자립지원으로서의 ‘일자리’로 귀결되고 있었다. 특히 이 일자리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여야 하며, 누군가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자리, 인턴십이나 공동의 작업장처럼 개인의 의사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닌, 일반 시장경제하의 “자유로운” 일자리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자립지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거 하는 애들 공통적인 게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를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본인이 어떻게든 빨리 자립해서.. (참여자 5)

가출한 애들 개네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어떤 기관에서 막 만든 거 말고 자유롭게? 왜 애들 있으면 부모님 동의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막 좀 이렇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르바이트 하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돈은 벌어야겠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아르바이트 조금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3)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년이잖아요. 바우처 하나 받고 하는데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건 바우처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생계에 지장이 가는 상황이고, 부모님과도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출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도 안 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외를 만든다든지. (참여자 5)

피해자들이 하는 이유는 거의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그런 게 좀 많이 유연해졌으면 좋겠고 나이도 그렇게 많이 강화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급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급이 좀 짜요. 시급이 좀 짜서 그렇게 성매매 쪽으로 가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참여자 7)

나. 업무담당자

1) 업무담당자 FGI 분석결과 개요

업무담당자의 FGI 결과 분석은 설문문항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하위 주제를 중심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내용
성매매의 원인 인식	수요가 있기 때문/만연되어 있는 성매매 문화/어린여성 선호하는 남성 수요증가/가정폭력과 가족해체로 가출한 아동·청소년의 생존의 문제/건강하고 생계유지가 가능한 일자리의 부족/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물질만능주의/성매매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어플환경/가출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의 부재/아동·청소년의 인식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쉼터운영방식
성매매와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돈으로 성을 사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로 인식/성매매와 관련한 2차피해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강조/알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술하지 않는 청소년의 특성 및 착취구조의 폐해/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의 연락처를 SNS에 노출
보호처분에 대한 인식	보호보다 처벌로 인식/보호처분의 효과에 대해 일시적, 회의적으로 인식/격리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처분 Vs. 보호처분의 다양화 등 효율적 운영방안 제고/보호처분 그 자체보다 보호처분 중 보호관찰의 경우 그 이후 제재조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이를 보호가 아닌 처벌의 성격이 강화됨/
보호처분의 대안	보호처분 내에서의 인성교육 강화/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 확충/보호관찰업무담당자의 인식개선/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지역사회보호체계강화
애로사항	단속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부재(특히 신뢰관계형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시간과 인력부족/제한된 지원기간/실무자의 소진 및 이직으로 장기근속의 어려움/가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체계 미비/서비스시스템 안에서의 지지체계 부족/경찰은 단속의 어려움(단속반의 노출/단속에 대한 항의?)/
정책제언	법 개정(대상청소년->피해청소년)/단속이나 지원관련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마련/어플에 대한 대응책/가정폭력 이유와 연계한 홍보 및 유기적인 대책 마련/청소년의 노동보호

2)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원인에 대해서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였다. 우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남성들의 수요가 있고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문화가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성매매로 빠지게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수요증가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성매매의 원인 중 하나는 청소년의 가출이라고 생각해요. 가출 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가출청소년의 경우 자신도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다른 주변의 학생들을 끌어들이어 포주가 되어 성매매를 시키기도 하죠. 어른들처럼 포주 노릇을 하며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책감 없이 성매매를 하면서 시키기도 해요. (참여자 R)

근본적 원인으로는 가정해체와 부모가 될 자격이 안 될 정도로 잘못된 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가정에 있을 수 없거나 가족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문제, 심리·정서적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덕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사회의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K)

일단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십대에서 이십대 초반 여성, 그들 입장에서 ‘가치’가 어린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필요로 하고. 그리고 십대가 아르바이트 할 때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탈가정한 경우에는 보호자, 친권자 동의서를 받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있고 최저임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위기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반 아르바이트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여자 E)

성매매의 원인은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 문화이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서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소비자로서 내몰린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에 쉽게 빠져들게 되죠. (참여자 J, I)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원인 중의 또 하나는 남성들의 성욕구라 생각해요.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성을 사려고 하는 남성들이 원인이지요. 십대들과의 성관계를 희망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참여자 R)

이거는 공급보다 수요적인 차원이 큰 것이구요. 우리나라에서 십대 여성을 보는 시각이 하나는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십대 여성, 그리고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 외의 규정에 대해서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참여자 E)

사회구조 보장제도가 특히 청소년에게 취약하다라는 사회적 원인이랑, 가정환경에서 본인을 사랑할 수 없고 자존감을 키울 수 없는 개인적 환경이 원인이지요. (참여자 A)

편부 편모 가정 같은 게 원인이에요, 부모님의 무관심이 탈선으로 이어지고 또래 집단과 술 담배를 하고, 유흥비가 필요해지고, 그러다보니 보수가 보통 성매매의 경우 시간

당 7-8만원으로 크기 때문에 일반 알바보다 많이 벌고 또 아동·청소년 애들이 더 많이 받더라구요. 성매수자들이 어린 애들을 선호하는 인식 때문에. (참여자 S)

또한 가정폭력,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은 거주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아동·청소년들을 노동인구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위한 건강한 아르바이트는 없다. 아르바이트 얻기도 힘든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성매매의 위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성매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이 노동인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여성폭력의 사회적 인식, 특히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남성들의 인식이 폭력적이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B)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는 없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연령이면서 학력을 무시하면서 이들을 노동인 것처럼 하는 것은 결국 성산업밖에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십대가 아니라 2-30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거죠. 단시간에 굉장히 쉽게, 사실은 쉬운게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여러 위험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현상이 일어나는거죠.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들리는 것은 한 시간이면 얼마 벌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해주지 위험을 얘기해 주는 존재는 없잖아요. (참여자 F)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죠. 과거에는 그래도 몇 가지 일거리가 있었어요. PC방,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자리들이 다 실직된 조기퇴직한 분들에게 다 점령당해서 십대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는 하나도 없죠. 근데 이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인간이니까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매매를 제외하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참여자 E)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물질만능주의 즉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어른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에게도 퍼져있어서 당장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그리고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성매매로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성매매로 금전이익 그런 경험이 문제이고, 고아인데 피씨게임에 빠진 남자아이는 시설에서 학교가라는 차비만 주니까 어른남성 대상으로 성매매하고 게임비용 마련하려고.

(참여자 M)

돈 때문에, 돈을 벌려고, 가출하고 자금 조달하려고 하죠. 갈 곳 마땅치 않고, 또 타고난 천성, 기질, 모험시도 같은 것도 영향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해보는 성격이죠. 휴대폰 필요한데 돈 번다는데 해볼까 이런 호기심을 행동으로 한 거지. 10대 청소년들이 성적욕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없고,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이 옷 물건 사고 싶은 거죠. (참여자 N)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성구매자가 성을 사려고 하는 시장이 넓고 성매매가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여자 H)

이런 건 특수하지만 남자아이들도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40대 여성, 10대 청소년은 가려져 있죠. 언론은 10대 여성만 성을 판다고 나오고 여자아이들이 다수지만. (참여자 N)

반대로 애들 입장에서는 돈을 크게 버는 것이 문제이고, 이렇게 돈을 벌다가 유흥업소로 빠지고 그런 세계에 정착하는 문제가 있죠. (참여자 T)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물질만능 주의적 사고와 젊고 어린 아동·청소년이 쾌락의 대상으로 선호되는 잘못된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미성숙한 인격체의 부모들이 만들어낸 가정의 지지체계의 허술함과 가족자원결핍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상황으로 내몰고 있어요. (참여자 M)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또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해요. (참여자 R)

성매매는 일단 가장 우선되는게 돈 때문에 하는거죠. 저는 진짜 성형 중독에 걸려가지고 성매매를 13살때부터 한 아이를 제가 겪어봤어요. 얼굴을 세 번 네 번을 뜯어고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 두시간을 본대요. (신체변형장애처럼) 자기는 고칠 것이 너무도 많다는거야. 성형 때문에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참여자 P)

아이들은 돈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가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명이 만나면 제일 큰 언니가 시킨다든가 또래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이 강제로 시킨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자 P)

성매매 업무담당자들은 최근 아동·청소년들을 성매매로 연결하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이용이 용이한 아동·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더욱 쉽게 성매매로 연결되곤 한다고 보고 있다.

원인은 가정 내에 일어나는 폭력(성폭력, 학대, 방임 등)에 의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것이 원인지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성관계에서 오는 대처방안을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요. (참여자 L)

스마트폰 활성화로 방식이 다양화되었지요, 아프리카 방송 같은 개인방송에서 10대 성관계 방영하고 별풍선 받아 아이디 삭제되어도 다시 하고, 이런건 개인방송이 아니고 이미 조직화되어 있어요. 일대일이 아니고 조직화 알선자들이 있으니까, 속식제공 명목으로 결국 보도방 하고 동일한 방식이에요. (참여자 C)

유입되기 쉬운 경로가 있으니까요, 대부분 스마트폰 있고, 돈이 없어 전화가 끊겨도 와이파이 연결은 무료로 되니까, 그날 잘 곳이 필요하고 본인도. (참여자 D)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긴급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들을 위한 쉼터는 아동·청소년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어서 쉼터가 이들을 위한 시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가출한 당일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성매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쉼터에 가는 것을 정말 꺼려해요. 쉼터마다 다르겠지만 핸드폰 사용, 귀가시간, 흡연, 음주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 안에서 텃세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탈가정을 한 이유에는 그 집이 너무 답답해서 뛰쳐나왔는데 또다른 부모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그 쉼터에 가겠냐는거죠. 당연히 아는 오빠가 재워준대 어떤 아저씨가 뭐 사준대 이렇게 되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참여자 E)

현재 쉼터라는 체계가 있긴 있지만 쉼터가 운영되는 방식도 사실 지금 청소년의 욕구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구요. 다자녀세대에는 한 방에 여러 형제자매가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기술을 배우는데 지금은 한두 자녀죠. 사실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사회수준이 높아지니까 그에 대한욕구는 주제파악을 못하는 욕구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욕구인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데 쉼터가 운영되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시대에 머물러있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변화하는 청소년의 욕구나 문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체계로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거리에 나온 십대 여성들이 쉼터 가기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벌어졌구요. (참여자 F)

제대로 학교나 가정에서 성과 관련된 교육을 못받은거죠. 그런데 매체나 이런 부분은 애들이 빨리 노출이 되고 아무래도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런가보다 하고 애들이 경험을 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Q)

소년들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마다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소년들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들이 많은거예요. 열명의 성매매를 하는 소년들이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경제적인 문제, 그게 아니라는거죠. 가정환경의 문제도 있을거고 학교나 또래관계 문제도 있을거고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 변인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현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를 딱 이거 하나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Q)

3) 성매매의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점심층면접자 대부분은 돈으로 성을 사는 성매매 자체가 인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현장전문가들의 경우 성매매 자체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아동·청소년에게 벌어지는 경찰에게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애들이 성매매시 남성이 괴롭히지 않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발언 자체가 문제죠, 본인의 성을 팔아야 먹고 사는 자체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런 인식조차 못한 아이들 자체가 인권 침해 그 자체고, 국가의 인권침해죠, 성매수 남성만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A)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현장에 나가게 된 자체가 인권침해인거죠. (참여자 B)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있어서 인권이란 아예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대체적으로 구매자가 성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더욱 그러하며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K)

성매매 자체가 인권침해이므로 인권침해의 심각성 정도를 말할 필요가 없죠. (참여자 H)

성매매 상황보다 그 이후의 상황이 더 끔찍해요, 내가 스스로 한 짓이라는 죄의식도 있어서 아이들이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좋은 어른을 만나는 게 어렵다 보니, 애들을 선입견으로 보고 다시 이용하고, 심지어 담당수사관이 나랑도 하자, 1년 동안 수차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애는 자기가 한 조건만남 사실 알릴까봐 응해줬구요. 이런 게 인권 침해죠. (참여자 D)

성매수자들의 보편적인 인식 속에는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의 경제적 필요와 쾌락을 위해서 성매매에 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이들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

는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산 성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성매매 여성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만들고 사회적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M)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좋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들은 오랫동안 남게 돼요. 성매매를 할 때 남성들은 돈을 지불하거나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고 욕구를 채우지 못하거나 청소년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해요. 청소년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요구든 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잘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R)

인권침해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성을 산다는 자체가 인권침해이므로, 성매매현장에 머물렀던 아동·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심해요. (참여자 L)

알선, 관리 삼촌으로부터 폭력을 당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또 삼촌들이 기동서방 역할을 하기도하고 진짜 그것도 성매매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참여자 F)

또한 업무담당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채팅 등을 통한 1:1만남을 하는 뒤에는 알선 구매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은 누가 시켜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로 인한 착취구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상으로 성매매 구매자가 아동·청소년들의 연락처 등을 올려버리는 등 인권침해는 다양각색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1 조건만남의 경우 겉으로 보면 1:1인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은 친구들이 있죠. 조사 받을 때는 내가 1:1로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오빠들이 구해놓고 너 어디 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아서 겉으로 볼 때 1:1처럼 보이는거죠. 정작 성구매하고 채팅한 건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친구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십대 여성들을 데리고 관리하면서 채팅만 하는 사람이 이번에 너 어디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친구가 다행히 누가 시켜서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말을 안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친구만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잘못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업소에서는 삼촌들, 카맨들이 손님들의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1:1로 하면 보호막이 없어서 더 불리한가? 오히려 착취구조는 덜 한거죠. (참여자 F)

후기사이트 본 적 없으시죠? 성구매 남성들이 올린 후기사이트를 보면 정말 천태만상

이예요.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떻게 만났고 연락처는 뭐고 이 아이의 테크닉은 뭐고 어떻게 하면 돈을 깎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당사자는 올라간 줄도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거기다 후기사이트에서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이 사진을 올리는거예요. 동영상이나. 본인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요. 만나자고. 그런 게 후기사이트에 올라가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어디서 자기의 신상이 털리고 있는 지 알 수가 없어요. 구매한 남성이 연락처를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몰래 사진까지 찍고. 당사자는 모르고 있는거예요. (참여자 F)

제시했던 조건으로만 하는 남성도 있겠지만, 밀폐된 공간에 둘만 있는데 때린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매매 했던 친구들 보면 처음에는 구매 남성과 1:1로 만났다가 어느순간 2:1로 만나는 시점이 와요. 성인 남성들이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고 나서 들어가서 씻으라고 해놓고 그 지갑을 훔쳐서 와버린다든가 돈을 다시 뺏아서 온다든가 하니까 친구들이 대비를 하려고 안전하게 2:1로 덜 맞든지 한명이 맞아도 한명이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텔이 무서우니까 노래방에서 하는 친구, 차에서 하는 친구, 어떤 친구는 그룹으로 가서 입구에서 돈 받아서 친구에게 넘기고 몸만 들어가는 친구 지금 이런 패턴들은 과거 있었던 위험들에 대해서 나름 방어하면서 일종의 터득한 기술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상으로만 보면 요새 십대들이 어른 뺨치는 범죄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살려고 다 모색을 한 거죠. (참여자 F)

경계성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안타까워요. 장애등급은 없는데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 경찰에서 보면 딱 상습으로 보기 좋거든요. 너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했네 하고 니가 문제이네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도 착취당하기 가장 쉽죠. 우리 사귀는거다 이렇게 해서 잘해주고, 돈도 안주고. 뭐 예를 들어서 너랑 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없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아이가 내가 가서 벌어들게 이렇게 하면 또 자발성인것처럼 또 보여지고. 그걸 끊임없이 유도해 내잖아요. 경찰 조사갔을 땐 오빠가 안시켰어요 내가 좋아서 했어요 이렇게 되는거고. 그니까 취약한 친구들이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번엔 아니겠거니 하지만 똑같죠. (참여자 F)

경찰분이 성매매 십대여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예전에 긴급구조 했을 때 주로 이용했던 경찰서가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의뢰했을 때는 대부분 성매매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이가 가장 편한 시간, 다른 수사와 중복되지 않게 독립해서 조사를 받았었구요. 조사할 때도 시계를 가리키면서 예를 들면 50분 하면 십분 쉴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시고 아이들이 담배 피는거 다 인정을 해주시구요. 아이들이 차비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오면 교통비 주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시고 그랬던 경찰 분들도 정말 지극히 드물긴하지만 계시고, 그 외에 분들은 (범죄자 취급을 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다못해 어떤 분들은 상담원 선생님께 ‘선생님이 속으시

는거예요 재네들이 얼마나 나쁜데..'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할 때는 벌써 달라요. 성매매 자체를 아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분들은 아이들이 왜 성매매를 하게 되는지 과정에 더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하고 그걸 어디다 돈을 쓰고 이렇게 집중이 되어있어요. (참여자 F)

우리가 갖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친구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아쉬워서 온 주제에 이러면서 모를 수 있어요. (참여자 F)

지적 경계선에 있고 지체장애 진단받지는 않는 아이들이 문제예요, 만약에 진단 받으면 상대방 남성이 장애인 성폭력으로 더 불리할 텐데, 경계선이 문제죠. 이런 부분 인권침해가 문제예요. (참여자 N)

아이들이 강제로 그렇게 또래 관계에 의해가지고 폭력을 당한다던가 강제로 하는 경우는 그동안 말았던 아이들에게서 봤지만 어른들한테 뭐 강제로 납치를 당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같이 가출해가지고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 중에 여자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강제로 그렇게 하고. 돈을 있으면 또 쓰다가 돈 떨어지게 되면 또 시키고 이런 식으로.. (참여자 P)

같이 가출해서 가는 무리들 중에 뭐 남자, 나이 많은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주동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남자애들은 그게 직업인거 같기는 해요. 소년 남자 아이들 중에 본인이 가출한 여자애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그 무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판을 만드는 아이들은 사실 ..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휩쓸리면 강요나 감금이나.. (참여자 Q)

4) 보호처분

보호처분을 처벌이라고 보는 면에서는 응답자 모두 대체로 동의하였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현장전문가들은 그 때의 일시적인 효과이고 특히 격리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처분이라고 생각한 반면,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처분이 일률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보호처분의 다양화 등으로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가)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대한 효과여부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보거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의견이 나누인다. 현장전문가들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이들이 갇힌 기간만큼만 억제될 뿐이에요. 사람들은 애들이 겁을 먹어서라도 다시 안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소년원에서 나오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다시 간다고 해도 떨지 않고 역효과가 나고. 전혀 도움 안돼요. (참여자 A)

오히려 분류심사원에서 언니들 만나고 재밌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분류심사원 나오고 1주일후면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는 거죠, 경찰이랑 보호처분이 불필요하다고 싸운 적도 있었는데, 경찰이 말하길 “6호 처분하니 아이들이 변하고 좋다”는 판사의 강의 때문에 자신이 보호처분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판사는 아이들이 안에 갇혀 있을 때만 보고 보호처분 후의 모습은 보지 않는다는게 한계죠. 아이들이 나가기 위해 안에서만 승복하는 거죠. 한 예로 상담원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전화를 걸어 아이가 “왜 나만 끌려가요 저 때린 나쁜 아빠는 왜 안끌려가요?”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원인은 가정폭력인데 아이들만 변해라고 요구하는 상황인거죠 청소년기의 감수성을 이해 못하고. (참여자 B)

보호관찰소 다니고 있어도 1주일에 한 번 출석할 뿐이고 전화로도 밤에 집에 있는지 확인할 뿐 네네 하고 끝 그 시간만 지키는 거니까 효과가 없죠. (참여자 C)

억제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매자가 있고 특히 십대 이십대 초반 여성을 선호하고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죠. 그랬을 때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야하는 게 정확한 것 같고, 아무리 위험하다 다른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성이 없죠. (참여자 E)

실질적으로 보호처분이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호처분은 처음에는 아! 하고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조사받는 과정도 처음이고. 근데 보호처분 받고나서 이 아이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재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친구들은 분명히 처벌로 느끼고 있는 것이구요. 왜냐면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따르니까요. 그니까 그건 처벌의 성격이 강한거죠. 말만 조금 변형 시킨거죠. 보호처분을 받고 들어와 있는 아이들 교육을 해 봐도, 물론 사회통합을 위해서 거기서 검정고시도 하고 제과제 빵도 하고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좋긴 하지만 정말 내가 이 공간에 왜 왔는지를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여기서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라 하고 그것도 미래지향적이니까 좋지만, 근본적인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년원의 시스템이 미래를 준비하게는 하지만 나의 과거 행동이 왜 일어났으며 그거에 대한 반성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하는 과정은 생략됐다라고 느꼈어요. (참여자 F)

보호처분은 성매매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죠. 이는 보호받아야 할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자로 보고 처벌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H)

청소년들이 보호처분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때 시설에서 받게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성, 인권...), 생활하는 동안 가정에서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모든 청소년들이 같지는 않지만 여러 이유에서 성매매 예방이나 억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K)

일부 현장전문가나 경찰, 보호관찰소 등의 업무담당자 등은 보호처분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부분에서는 보호처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호처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성매매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일부 아동·청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참여자 G)

순응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짓기 힘들죠. 이런 질문은 징역형이 효과있느냐,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보호처분의 효과는 담당자 역량에 달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학생에게 맞는 처우를 하기가 힘들어요. 보호관찰관 개인이 학교나 가정 도움 없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정 쪽에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아이 지적수준 낮을수록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참여자 N)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성매매 행위자 쌍방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보호처분'이기에 그 자체는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범죄로 규정된 성매매 행동에 대한 대가로 행위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규제를 행위당사자에게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참여자 M)

경찰서나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의 일부는 보호처분이 성매매예방이나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화가 되기도 하고 보호관찰소에 있는 기간 동안은 성매매를 못하므로 이것 자체가 성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면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경우에는 상담을 받게 한다든가 심리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다른 기관에 맡겨보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보호관찰을 안받고 다른데 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여자 P)

절대로 다시 안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믿는거죠. 보호관찰을 받으면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봐요. 다양하게 면담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주고 다른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하죠. (참여자 P)

범죄라는게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하든 절도를 하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선택하는 유형은 다르겠지만 보호관찰이라는게 전반적으로 학교든 가정이든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보는거잖아요. 그니까 이 사람의 생활환경같은 것들이 잘 자리를 잡으면 아무래도 그런 위험한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사실은 하는 거고, 성매매가 워낙 소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성매매 대상자들을 어떻게 해야된다 라든가 그런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보호관찰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Q)

보호관찰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대체로 가정에서도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교 밖에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잡아줄만한 보호자가 마땅히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호관찰이라는 그 기간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와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참여자 Q)

보호처분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 일시적으로 수용되어 있을 때는 성매매를 하지 않으니 억제하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요. 그러나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또 다시 하게 되므로 문제예요. (참여자 R)

나) 보호처분이 교육인가 또는 처벌인가

보호처분을 교육이라고 보는가 처벌이라고 보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어졌다. 현장전문가 대부분은 처벌이라고 보았다.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을 처벌할 필요가 없죠. (참여자 A, B)

보호처분 자체를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호처분을 받은 후 그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R)

애들을 미성년자이니 보호해주어야 하지 대상청소년이나 피해청소년이나 같은 아이들 이죠. 다 피해자이죠. 보호처분은 절도한 경우나 사람 때리고 돈 뺏는 거와 동일한거죠, 잘못된거네라고 보는건데, 처분은 같으니까 처벌이죠. (참여자 C)

10대에는 부모님께도 도움받고 학교다니는 거지 인지능력 떨어지는데 이걸 처벌이죠.

처벌로 볼 수 밖에 없고. 보호처분 자체는 교육이 아니니까. (참여자 D)

보호처분은 처벌이지요. 아동·청소년에게 전혀 일정기간동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등 아무효과가 없는 처벌입니다. (참여자 I)

보호처분은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처벌은 범죄자이기에 처벌하는 것이에요.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폭력에서 무방비로 폭력을 당한 아동·청소년들이 어떻게 범죄자가 되나요? 범죄자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했거나 위압을 가했을 때만이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인 경우 어떤 폭력을 가했는가? 단, 처벌하기 이전에 적극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자 L)

어쨌든 강제성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처벌이라고 느끼죠. 형사처벌 받아보면 보호처분이 낫다라고 말하거든요, 법률적 관점에서는 처벌이 아니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강제성 때문에 처벌이죠. (참여자 N)

보호처분을 교육이라고 말하기는 힘드나 일정한 부분에서는 단순히 처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있었다. 또한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보호처분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다가 더 나쁜 짓을 한 경우 그 후의 제재 조치를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보호처분을 교육이나 처벌이라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 생각해요. 법적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단순히 교육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 개념으로 처벌이라고만 하기에는 무겁기 때문이죠. (참여자 K)

아동·청소년들은 보호관찰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른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그 제재조치를 무서워하는 거죠.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 자기들도 뭐 와서 면담하고 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하고 웃고 가는데 내가 만약에 보호관찰 받다가 만에 하나 가출을 한다면 뭐가 잘못됐을 때 그 이후의 제재 조치가 무섭다는거지 보호관찰 자체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참여자 P)

다) 보호처분의 필요성

현장전문가들은 보호처분은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격리시키는 것이므로 분명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격리는 불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사회경험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죠. 상담선생님들 누구도 격리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아이들은 격리를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A)

피해자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드는 고민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왜 같이 분류심사원에 가야 하는가예요. 소년원에 갔다 와서도 조건만남 다시 한다는 것은 보호처분이 효과 없다는 반증안인가요? 아이들을 가두어 놓는 게 해결 아니고, 공권력 행사를 왜 피해자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격리하면 딱 그 시기만큼 조용히는 살지만,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해요. 아이가 위험한게 아니라 사회가 위험한 거죠. 좋은 어른을 만나게 하여 신뢰감을 갖게 해주어야 하죠. (참여자 B)

보호처분같은 격리의 필요가 성매매 단절이라는 주장 하는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걸 끊어주어야죠. 생존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이를 이용하는 사회가 문제이지 집을 나온 건 오히려 용기일 때도 있어요. (참여자 C)

현재 상황으로는 대상청소년으로 보는 법적인 체계 안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함께 분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도 해요. 법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것에 수긍해오기는 하였지만, 대상아동·청소년은 맞지가 않아요. 법적인 처분(대상아동·청소년)에 따라 감호위탁 동안 여러 가지 인성교육과 진로적성 그리고 치료상담을 하기는 하죠. 꼭 필요한 것은 피해아동·청소년일 경우에도 법적인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긴 해요. 단,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치료차원의 보호처분이 필요하지요. (참여자 L)

보호시설에서 6호 처분을 받아 입소를 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가정적이고 따뜻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담당 선생님의 질적인 상담과 치료 및 진로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인성이 필요해요. (참여자 L)

보호관찰소나 경찰서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호처분기간 동안은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보호처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등 보호처분답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필요하지요.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관 개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필요하면 변경도 가능한데 형사 처벌은 개입이 불가능하고, 또 기록으로 안남으니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아 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뭔가 느끼면 다행이고, 물론 만능은 아니죠. (참여자 N)

성매매 매수자와 제공자 양자 모두 바른 도덕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고 자신과

타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부재에서 오는 인식 부족으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과 보호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의 '보호처분'이라는 수단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은 있으나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성매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할 때 재 유입되는 등 성매매를 반복하게 될 수 있지만 보호처분과 구분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M)

보호처분이란게 취지는 전과를 만들지 않고 향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형사처벌 우회하는건데,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보호처분답게 만들어야 하죠. 밖에 두면 계속 직업적으로 할 것이니 반복되면 수용해야죠. (참여자 O)

보호처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자체가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자 R)

보호처분조차 없다면 더 탈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애들이 한계가 없이 더 나아갈 수도 있고, 전혀 처벌되지 않는다면 자포자기 할 수도 있으니까요 보호처분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는 안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참여자 S)

아동·청소년이 먼저 처벌 안되는 걸 알고 접근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처분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T)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나 주변 환경이 변화에 도움을 주는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K)

라) 보호처분의 대안이나 개선방안

현장전문가 대부분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처벌이라고 보고 있으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담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이들에게 심리상담, 의료상담 등 전문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업무담당자들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며 역량강화사회보호 및 예방적 목적이 잘 부각되도록 보호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간과 비용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대안이 가능해요. 강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안 해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변하게 되고, 우리 상담센터는 약속 어겨도 늘 기다려주는데,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믿어주는 것을 알아요. 이게 우리 업무의 신념과 가치관이지

요. (참여자 A)

전국에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성매매 아이들을 불편해 하고 까다롭게 판단하고, 일반 센터에서도 아이들의 인적사항 확인 후 거부하기도 해요. 우리 기관의 업무성격상 연계 해주고 싶어도 전화를 하면 성매매 관련성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연계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청소년 기관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조직이 있고, 전국에 성문화센터가 54개 이상 있지만 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 안하고 기존기관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한계가 있어요. 또 청소년의 특성상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이로 연계하면 관계가 악화되는 문제도 있어요. 애들을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청소년으로 봐주어야 하고 이런 건 기관종사자들도 훈련시켜야 할 듯 해요. (참여자 B)

상담소 연계가 필요한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문제해결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여가부 지원 받는 제도권내에서는 실무자가 피해자에 비해 너무 부족해요. 피해자는 많은데. 교육과 상담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참여자 D)

청소년의 경우마다 다르지만 보호처분의 기간이 짧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해당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담당관의 역량에 따라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에 보호관찰소의 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는 개인별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요. (참여자 K)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가하는 보호처분은 처벌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구체화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사회보호 및 예방적 목적이 잘 부각되도록 보호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M)

보호처분의 대안은 전문상담기관으로의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연계하는 것이죠. 전문상담기관의 심리, 의료 상담 등을 통해 성매매를 예방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자 G)

어떤 처분을 한다는 것이 아이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예방만 보는 것은 아니고, 일반예방기능도 있는 거니까요. 사회안전을 위해 격리할 것인가는, 같이 고려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철도 들고 선생님 잘 만나서 감화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 보호처분이 다양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청주 안양 소년원 두 곳보다 시설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처분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인력 예산 확충해서, 성매매 아이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의학적 치료 등으로 열어주어야죠. (참여자 O)

5)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고소하지 않는 이유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하여 처벌받을까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크며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인식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에 가서 성폭행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고 경찰에서의 수사과정을 오롯이 아동·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아직은 편협적이고 폐쇄적이지요. 피해자의 인권이나 개인이 안고 가는 상처, 트라우마보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가족의 무지와 무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성구매자보다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또는 여러 이유의 유해환경에 노출된 여자청소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큼을 아직도 주변에서 많이 봐요. (참여자 K)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잘못도 크다'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소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성폭행을 입증하는 과정이 힘들고 수치스럽다는 이유가 작용하기도 해요. (참여자 M)

같이 처벌 받을까봐 신고하지 못하죠. (참여자 S)

일반인 입장에서는 단속 신고 자체가 무서울 수 있죠. (참여자 T)

통계를 내본 적이 없어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후 바로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고 처벌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섭고 귀찮아서 고소를 하지 않는 학생이 있기도 하지요. (참여자 R)

6)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업무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성매매 업무를 하기에 시간과 인력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사실 아동·청소년들과 신뢰관계를 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무 행정일이 많아서 이들과 이야기하고 신뢰관계를 쌓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기간도 짧아 업무담당자의 장기근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업무가 힘들다고 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게 제일 속상해요. 애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또 정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정서적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인력문제가 커

요. 제가 동시에 10케이스 보는데,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만날 수 없어요. (참여자 A)

제도 보완이 우리 힘으로 안되는 거. 토론회 가서 좌절하는게 힘들어요. (참여자 B)

근무과중 어려움이 제일 크죠. 재범 친구들 전화 면담 와중에 서류작성하고, 외부 프로그램하면 외근 나가고 출장 나가고, 구인장 걸린 친구 잡히면 다 나가야 되고, 전국 평균 1인당 70명 정도를 동시 관리 하니,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여자 N)

일 강도 같은게 어려움이죠. 어려운 점은 친구들에게 대면 상담시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마음을 열게해야 하니, 아이들은 선생님이 바뀌면 다시 신뢰를 가지고 다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장기근속이 힘들어요. (참여자 C)

아이들 지원기간 3년 한정이 문제예요. 예산문제와 구조지원비 1인당 한정비용 사용같은 행정적인 문제, 중복지원 문제, 이런게 어려워요. (참여자 D)

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용자들끼리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맥락이 있는거죠. 이전에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팸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성매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권 감수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방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고. (참여자 F)

지금 인턴십 과정에 있는 어떤 친구는 예전에 일하던 상황을 그리워하기도 하더라구요. 약간 경계성 장애가 있는 친구여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게 조금 어색하고 그런데 성매매를 할 때는 아저씨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물론 진상도 있지만 안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말 잘 들어준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 이 친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고. 그리고 주변에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성매매하는 언니들, 혹은 친구들 나이트 클럽 호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또 다른 세상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F)

경제적 지원과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R)

현장에서 법률 지원하는 것이 힘들고 경찰서에 가서 인식 없는 경찰이 성매매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를 하는 것에 대처하고 이를 참는 것이 매우 힘들죠. (참여자 H)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케어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로 입소하는 청소년들이 정신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각 대상자에 맞는 전문케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두 부류의 대상자와 일반적인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 진행프로그램의 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애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애정결핍 청소년이 거의 대다수이기에 정서적 안정을 느끼도록 치중되지 않는 관심을 주는 것과 복합적인 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입소인과의 관계나 사건사고 예방차원에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기에 돌봄에 어려움이 많아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청소년들의 경우 성매매에 유입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기관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K)

부모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만남 등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분들은 당신 집 근처에도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해요. 그러기에 가능한 한 몰래 시설에 입소하여 마무리하기를 원해요..부모와 함께 진료와 인성에 대해 논해야 되는데 시설에 맡긴 후에는 찾아오지도, 전화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참여자 L)

성은 물건처럼 거래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수용해야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상담을 하지만 대상 청소년들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하다가도 일정한 고비를 넘지 못하고 시설을 이탈하여 재유입의 유혹에 스스로 빠져 자기포기상황으로 자신을 내몰 때는 실무자들은 대안부재의 상황에 놓여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안은 인간의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다시 시도하며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참여자 M)

아동·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단속의 어려움을 얘기했다. 단속반이 노출되어 단속이 어렵고 단속에 대한 민원과 항의로 이어져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소 등에서도 시간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럴만한 시간도 경제적인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단속의 어려움이 있죠, 단속반도 노출이 되어 쉽지 않고, 망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단속을 하여도, 단속한 경찰을 못 믿겠다고 하고, 신분증 보여줘도 자기가 납치된다며 오히려 112에 신고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계속 항의하고 민원 넣고, 이러면 경찰의 사기처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시달리면 이런 경험으로 단속이 소극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여자 T)

소년원에서 성과 관련된 비행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면서 가장 어려웠

던 점은 개개인 한명 한명에게 맞춰서 또는 그룹별로 교육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지요. 교육을 해야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개개인에 맞춰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어려웠던 점은 숨겨진 비행 중에서 성매매 한 학생들을 찾아 내기가 어려웠다는 점이지요.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참여자 R)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 교육 업무처리 교육 시행여부와 효과

아동·청소년기관에서는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경찰 등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성매매교육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지원기관들은 성격상 교육을 계속 받아요. 그런데 경찰을 보면, 내부에서 교육을 해주면 좋겠어요. 굳이 성매매를 인권침해라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교육을 받으면 애들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성매매 지원 관련 교육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참여자 R)

성매매 방지 상담원 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지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에서 매일 적용 중에 있어요. (참여자 M)

나) 업무처리 관련 매뉴얼 여부와 개선점

현장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업무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이나 보호관찰소 같은 곳에는 특별히 업무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업무매뉴얼이 없는 경우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업무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매뉴얼 같은걸 경찰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D)

성매매와 관련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참여자 Q)

자체 업무처리 관련 매뉴얼이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한 멘토멘티제나 사후관리 등을 활용하기도 해요. (참여자 R)

업무처리 관련 매뉴얼이 있고, 비교적 합리적인 절차로 되어 있어 매뉴얼의 개선점은 특별히 없어요. (참여자 M)

7) 아동·청소년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개선방안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자립지원서비스 확충

아동·청소년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매매 아동·청소년들과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거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긍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장시간의 플랜을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립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인식개선 필요. 공익방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성과 성매매의 유해함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참여자 K)

우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긍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주거지원이 필요해요. (참여자 L)

성매매는 가족단위에서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임 전에 가족 내 가정폭력이나 학대 같은 것들이 있고,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를 위한 교육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우리한테도 사후적으로 교육은 시키는데, 그 전에 사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세대들은 오히려 애들보다 교육이 덜 되고 있어요. (참여자 N)

최근 성매매에 이용당하는 십대청소년 중 상당한 수가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지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자신의 몸에 대한 소중함을 건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당장에 필요한 돈 몇 푼에 쉽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적장애로 분류하기 애매한 경계의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필요로 해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M)

일단 학교를 다녀야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뭐 원인들이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하나씩 면담하는 과정이라든가 주변의 또래관계라든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잘 안되죠. 전문가에게 보내서 애들 상담도 받게 해본다든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본다든가 다양한 방법은 써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는 또다시 하고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애들이 이것을 또하게되면 시설에 들어간다는가 이런 압박감도 있고 하다 보면 조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참여자 P)

센터 프로그램에 연결시켜주고, 본인들이 헤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의

식의 변환, 직업이든 학업이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거죠. (참여자 Q)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번이라도 하다가 걸렸을 경우에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매매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봐야 해요. (참여자 R)

자립을 하기 위해 달세방을 구할 때 등 정부차원의 주거지원을 해주는 것과 일자리를 위한 <노동부와 함께 하는 청소년인턴십센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참여자 L)

효과차원을 고려하면 성을 사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거죠. 성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데 팔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열악한 시점에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지만 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의 취약성 때문에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가 작용하면 안될 것 같구요. 거기엔 자원이 투입되는거죠. 이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한 집단인지 처벌이 필요한 집단이 아닌거죠. 근데 취약성과 무관하게 자기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타인의 성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구매자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쉽지는 않죠. 가장 효과적인 거라면 그거예요. 인식 바꾸는거. 우리나라가 인식이 잘 안바뀔 것 같지만, 지금 윤방법이 사라지고 성매매 할 때 그 때 홍보를 그렇게 했잖아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이 아주 나쁜 것으로 국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중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건 나쁜지만 성인은 괜찮은가? 라고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자리 잡은 인식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 때 국가가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금연문화도 공익광고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가 투자하니까 인식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매매에 투자를 잘 안하죠. (참여자 F)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법 개정

현장전문가들은 먼저 법에서 피해자로 규정되어야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들을 대상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처분 삭제하고 아청법에 피해자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해요. (참여자 A)

법이 개정되어야 피해자로 보호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단서 없애고 폭력 피해자를 등급 나누기 문제로 보지 말고, 피해자는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들을 명확한

피해자로 안 봐서 지원이 미약한 거거든요. 지원이 아동·청소년 전담으로 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피해자 지원센터가 가능해요. (참여자 B)

대상청소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쁜 표현인거죠. 왜냐면 아동법상에 피해자라 함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성매매 피해여성을 다 빼놨잖아요. 밑에 성매매 별도로 해놓고 대상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뒀잖아요. 그거는 곧 성매매 피해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서 그거는 반드시 없어야 되는 개념이구요. 성착취 피해여성이라고 해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피해자라 함은 그 조항에 그냥 같이 들어가 있어야죠.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대상청소년 이라는 개념은 없어야 되는게 맞고 피해자랑 꼭 그 개념을 피해자에 넣지 않고 구분하고 싶다면 상업적 성착취 피해자로 해야 되는 것이구요. (참여자 F)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잘못은 사회 모든 어른들이 제공한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러한 견지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간주하고 이에 적합한 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해요. (참여자 M)

다) 최근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대책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이어지므로 어플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어플개발자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플을 개발시 가입연령 등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와 어플개발자들에 대한 인식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어플 이용 많이 하고, 졸푼 랜덤채팅방이 가장 접근하기 쉬워요, 이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할 텐데 그럼 또 자율성을 제한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참여자 N)

스마트폰이라는 시대적인 문명의 이기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혁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나 사회관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스마트한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기기에 의존하여 마비시키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살아내라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아요. 이러한 문명의 패러다임 속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인간에게 이기로 잘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플 개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어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세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십대 청소년들의 인식개선과 정보를 선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교육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봐요. (참여자 M)

어플을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죠. 섣다운제 하는 것처럼.. (참여자 Q)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할 경우 가입연령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쉽게 채팅앱이나 성매매관련 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 생각해요. (참여자 R)

피의자들을 법적으로 강력대처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불러 모았다면, '유인한 자'로 대등하여, 몰수 추징까지 필요하다고 봐요. 매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지요. 여성가족부는 너무 약해요. 처벌과 단속은 경찰인데 그 경찰을 움직이는 곳은 어딜까요? (참여자 L)

제일 심각한 어플 문제를 기관들이 토론회에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는데, 진짜 기술적으로 안 될까? 해결의지가 없는 듯해요. 오히려 나쁜 짓은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런 걸 막아야 해요. (참여자 A)

성매매 플랫폼 채팅사이트일 뿐이라고 하고, 양쪽 성매매 유입 자료만 파악해도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의지가 없는 듯해요. (참여자 B)

일반 남성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이트가 제일 문제예요. 온라인이라 비밀리에 가능하고 그래서 서비스업자 단속이 필요하고, 사이버범죄 수사대에서 이런 사이버 범죄를 집중단속 처벌 강화해야죠, 성매매로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업주들보다 서비스업자예요. 오히려 업자들은 서비스업자한테 온라인 광고비용, 용품비용, 월세 중개수수료 지불하고,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서비스업자들은 업자들보다 이익이 더 많아요. (참여자 S)

라)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로 연계방지 방안 마련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은 잠자리 등이 필요해 가출한 후 성매매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가정폭력을 막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성매매 방지 홍보 등 캠페인 등이 대대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살기 위해 가출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이 가출하여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가출하여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성매매를 안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R)

정책적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대책마련과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성매매방지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해요. (참여자 K)

가족복지적 접근이 필요해요. 부모교육과 가족캠프 등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와 가족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적 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참여자 M)

마)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및 놀이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근로환경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놀이문화가 노래방 등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지적하였다.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인턴십센터'만들기가 필요해요. 각 도시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L)

인턴십이나 재활사업할 때 현재 물가를 반영한 생활임금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임금으로 살 수 없어요. 최저 저는 월 150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이외에 성매매 여성들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의 생활에 맞는 것을 제공해야 하고. 사실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안정적인 주거가 이거는 성매매 당사자랑 연구자랑 법원 관계자랑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우리가 몇 년동안 주거를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게 조금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같은 여성들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 월급 이상이 되면 지원을 못받잖아요. 그런데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게 되니까 이 박탈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현실적이 부분 해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이자 대출, 여성안심대출. 성매매 여성들이 신용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제2, 제3 금융권 같은 경우에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신용이 확 떨어져서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랬을 때 여성재단이나 이런 데서 여성들을 위한 안심 대출, 저이자 대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금전적인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E)

재활 과정이랑 인턴십 과정도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주로 제과제빵이나 요리나 이미용이나 카페 바리스타 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IT 계열도 있고 교육계열도 있고 뭐 판매계열도 있고 정말 많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는거죠. (참여자 E)

일자리도 있어야죠. 그리고 일자리도 다양할 필요가 있죠. 몇 시간 일하고 당일 돈을 받는, 혹은 일주일 단위, 월 단위. 왜냐면 처음부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데가 없는데 일자리만 있으면 뭐하냐구요. 쉼터 초기 입소하자마자 알바 못하거든요 적응 못한다고. 내가 좋은 일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먹고 잘 데가 없어요. 당장 성매매 하지 않으면 달방도 못얻어요. 그럼 쉼터밖에 없어요. 근데 입소하자마자 일자리 알바 못하게 해요. 이거 문제가 있는거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체계로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건강권 자리도 있어야 되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 F)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서 학업에 대한 욕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정고시 지원을 해 보면 18~19세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성인이니까 위기의식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저연령대는 아직 몇 년 더 있어야 돼서, 저연령대 청소년들은 우리가 그냥 잘 놀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뭔가를 따라 하지 말고 그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서 필요할 때까지 관계를 깨지 않고 잘 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F)

근본적으로는 돈이 필요한 거니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해요. 소년원에서 기술교육 미용자격증 같은 걸 따도 실제로 그 업종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건 환상이에요. 자격증이 있어도 일 할 수가 없죠. 노동환경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나오고 가정환경 안 좋고 소년원 출신이면 다 안 좋아해요. 여기에 어린 나이니까 당연히 의지력이 약한 것까지, 그래서 적응 못하고 힘들면 나오고, 나가면 젊고 어리니까 쉽게 버는 돈을 아니까 다시. 쉽게 유입되고 또 지켜주는 가족 유대감도 없죠, 이렇게 노동조건 취약하고, 시급도 너무 낮은 게 해결되어야 해요. 시간당 알바가 1시간마다 1만원 받으면 누가 손가락질 당할 이런 걸 하겠어요. (참여자 N)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도덕관념이 없죠. 근데 돈이 필요해요. 노는데 돈이 필요하고 놀이문화가 유흥밖에 몰라요. 어릴 때부터 공부로만 나누어진 세상에서 여가는 노래방같은 것들이어서 돈을 쓰지 않고는 놀 수가 없어요. 놀이문화가 건전해질 필요가 있어요. (참여자 O)

V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정책방안

1.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정책 제언
3.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4. 법제 관련 정책 제언

1.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아동·청소년 교육문제

본 아동·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고등학교 중퇴’의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중퇴’ 26.8%, ‘고졸 검정고시’ 14.6%, ‘중졸 검정고시’와 ‘중학교 졸업’이 각각 7.3%이었다.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 41명의 아동·청소년 중 중학교 중퇴 또는 고등학교 중퇴가 70.9%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두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중퇴 통계를 보았을 때 26.8%나 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 제도하에서 학생이 학교를 불출석할 경우, 학교에서는 가정방문 등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를 중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른 학교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에서 확인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탈성매매 후에도 다시 학교와 사회에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교 보호 시스템과 연동하여 아동·청소년의 학력 취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출이나 성매매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주위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생기는 선입견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러한 환경 때문에 다시 방향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력 중단이 없도록 하는 대안학교가 의미가 있으며, 본 설문조사에서도 대안학교 재학이 19.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가출 및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단기형 자립학교’인 ‘늘푸른 자립학교’를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에게 기초학습, 경제교육, 성교육, 인턴십 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단기형 대안학교이다.³⁰⁾

이처럼 대안학교가 아동·청소년에게 최소한의 학력의 확보와 함께 종국적으로는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³¹⁾

30) 서울시 보도자료(2009. 9. 2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31) 대안학교는 정규학력이 인정이 안 되어 다시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만큼, 정규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아동·청소년 노동인권문제

1) 아동·청소년 근로실태

본 설문조사에서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잘 곳이 없어서’ 35.0%,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31.1%,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 30.1%,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26.2%, ‘배가 고파서’ 25.2% 등의 응답이 있었다. 가출상태의 절박성이 이유이건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이건,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에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근로를 통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15세~18세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비율이 18.5%로 전체 평균(15.8%)보다 높고, 학교 재학 청소년의 경우(19.8%) 이보다 높으며,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가장 높은 비율(26.3%)을 보여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³²⁾

또한 청소년들이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시기는 대다수(60.5%)가 15세~18세 사이에 첫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평균 15.8세이며, 14세 이하에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비율(10.9%)도 적지 않았다. 또한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일 경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과 편의점, 전단배포,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패스트푸드점이지만,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공사현장이나 일반주점, 주유세차, 제도가공업체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³³⁾

청소년들의 경험율이 높은 부당행위 또는 부당처우의 항목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요일이나 시간에 초과근무를 요구 받았다’의 경우, 여자 청소년(36.8%), 학교밖 청소년(44.0%), 대학 비진학 청소년(42.0%)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다’의 경우, 15~18세의 경험율이 34.8%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42.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저연령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비준수 사업장의 주요 피해자이며,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밝혀졌다. ‘일을 하면서 쉬는

32) 김지경, 박창남 (2014),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101면.

33) 김지경, 박창남 (2014), 위의 글(주 32), 80-81면.

휴게시간이 없었다'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경험율(30.8%)과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율(42.0%)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⁴⁾

본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담당자들의 의견들이 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이 가출한 후에 주거비, 생활비 등의 돈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들이 돈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위한 건강한 아르바이트가 없고 자리 얻기도 힘든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성매매의 위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성매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과거에 PC방,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자리들이 실직된 조기퇴직한 분들에게 다 점령당해서 십대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는 하나도 없다, 이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매매를 제외하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근본적으로는 돈이 필요한 것이니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 노동환경이 어려우니까 자격증이 있어도 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노동조건 취약하고, 시급도 너무 낮은 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업무담당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처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확장·발달, 그리고 업·직종의 분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성인들의 진입으로 더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로 청소년들이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2) 가출청소년의 노동문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가출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가출 청소년의 환경을 악용한 업주의 부당행위 경험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출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³⁵⁾

또한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2014년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34) 김지경, 이상준(2014),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49-51면.

35) 육혜련(2014), “가출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참고.

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 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³⁶⁾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하반기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안심알바신고센터 거점학교'를 지정, 적극적인 구제 활동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다.³⁷⁾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많은 경우 가출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출 아동·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출 아동·청소년의 근로 형태와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별도의 실태 파악과 접근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정책제언

가) 아동·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동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내실 있는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³⁸⁾

그러나 그 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현황을 보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5%로

36) 고용노동부, <http://news.molab.go.kr/newshome/> (검색일: 2016. 10. 20.),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2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관계부처(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및 해당 지방기관(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지자체), 노·사 및 공인노무사회 등의 민간단체, 취업알선기관(알바천국, 알바몬, 알바인), 프랜차이즈 협의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①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②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③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3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72711290436520&outlink=1> (검색일: 2016. 10. 20.), 이에 따르면 거점학교는 자치구 노동센터로부터 노동인권교육,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지자체 연계형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최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편리하게 상담 및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9월부터 서울시내 5개 내외 학교(특성화고)를 안심알바신고센터 거점학교로 지정하는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 사업을 추진한다.

3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0. 3. 9.),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

파악되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알바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해, 청소년의 대부분이 알바신고센터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알바신고센터가 대부분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및 특목고·자율고와 특성화고 학생사이에 응답 비율의 차이가 없었다. 그에 비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알바신고센터 제도에 대해 2배가량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을 도와주는 신고전화는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4%, 모른다는 응답은 66.6%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신고전화설치·운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에 달한 반면, 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응답은 30.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근로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동인권교육이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⁹⁾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쉽게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 한 예로 서울시는 2015년도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발간하여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읽어보고, 일하는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수첩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⁴⁰⁾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쉽게 노동 인권을 인식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학교 밖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에 상응하는 실태파악과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접촉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자립생활관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등 상대적으로 자신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학교 밖 가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앞서 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출 연령이 낮음을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

39)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서(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고.

40)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archives/57159>, (최종검색일: 2016. 10. 27.)

들에 대한 위의 ‘노동 인권 교육’이나 홍보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학교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안전한 구직 경로 확보

근로청소년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구직할 때 활용했던 주된 구직경로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전문 소개사이트로, 2명 중 1명(50.3%)이 이용하였고, 이 경로가 아닐 경우 ‘먼저 일하고 있는 친구 또는 아는 선후배’(23.9%)를 통해 일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⁴¹⁾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대부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아동·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인들과 동일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인터넷 구직사이트 중 직업소개 업체인지 직업정보제공 업체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안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 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 강화

1) 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 강화

가) 청소년지원시설, 일시쉼터, 드롭인센터 등의 다양화 및 청소년지원시설의 필요한 지역에 증설 필요

본 설문조사의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만족도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에 대한 응답 결과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자리’(3.86점)가 가장 필요 정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교육’(3.84점), ‘의료지원’(3.82점), ‘학업’(3.81점), ‘정서적 지지’(3.80점)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현행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제2호는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취학·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아동·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중장기 청소년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일시쉼터, 드롭인센터, 노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밤시간 운영시설 등 다양

41) 김지경, 박창남(2014), 위의 글(주 32), 92면.

한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지역별 현황('16.1. 기준)을 보면, 청소년지원시설은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단위 지역을 포함하여 더 많은 지역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소의 필요

현행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전문상담소가 아니라 성인들과 함께 상담을 받는 상담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소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원의 빠른 지원과 함께 365일 24시간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 원가족 복귀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확립

본 설문조사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후 아동·청소년이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쉼터'가 3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쉼터 34명과 아동복지시설 4명을 합한 38명(36.9%)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원가족 복귀가 가능하지 않아 쉼터나 아동복지시설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에서 쉼터 등 생활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친구들', '혼자', '남자친구'가 각각 3.9%로 혼자 혹은 남자친구나 친구들과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생활시설 외의 다양한 주거지원의 가능성, 생활시설만이 아닌 이용시설을 통한 지속적 보호, 지원 등 여러 다른 지원체계가 보충되어야 한다.

라) 쉼터 생활에서의 자유롭고 공식적인 의견개진, 의견수렴의 통로 필요

쉼터 입소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쉼터 입소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없었다'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치 않는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33.8%, '직원들이 수치심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29.4%,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가 각각

2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유 없이 입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17.6%, ‘입소 후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20.6%, ‘입소생활과 관련한 나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 20.6%,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19.1%, ‘부당한 이유로 퇴소당했다’ 13.2% 로, 쉼터 서비스 이용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 개선 통로나 의견의 수렴, 충분히 공유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지원으로 캠프 등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처벌로써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치유, 치료, 인권, 인식전환,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지원으로써의 교육, 부모교육 및 부모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부모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 주민센터 등에서 찾아 가는 부모교육이나 취업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부모를 위한 야간교육, 주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에게 알리는 문제, 후견인 문제의 해결, 의료, 법률, 정서적지지, 학업지원, 살 곳, 다양한 취업교육과 연계가 종합적으로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인권가이드 마련의 촉구

업무담당자들은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난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68.5%, ‘조금 아니다’ 23.5%, ‘그렇다’ 5.6%, ‘조금 그렇다’ 2.4%, ‘매우 그렇다’ 0%로, ‘전혀 아니다’ 68.5%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31.5%가(‘조금 아니다’ 23.5%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와 Wee센터, 경찰의 경우 다른 기관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다.

업무담당자들은 “성매매는 필요악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54.6%, ‘조금 아니다’ 15.5%, ‘그렇다’ 7.2%, ‘조금 그렇다’ 7.6%, ‘매우 그렇다’ 15.1%로, ‘전혀 아니다’ 54.6%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45.4%가(‘조금 아니다’ 15.5%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도 15.1%, 38명이나 된다.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는 ‘전혀 아니다’ 37.0%를 제외하면 6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Wee센터는 ‘전혀 아니다’ 46.4%를 제외하면 53.6%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경찰의 경우는 ‘전혀 아니다’ 25.0%를 제외하면 75%가 그

렇다고 답변하였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도 ‘전혀 아니다’ 40.0%를 제외하면 60%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업무담당자의 경우,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아동·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는데 반해, 아동·청소년의 탓이라고 보거나 피해자로 보는 의식이 낮아, 인식의 혼란이나 모순적인 인식이 보이고, 업무담당자에 의한 2차 피해가 예상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의 책임임을 명백히 하고 아동·청소년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는 시각 교육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시각차가 큰 그룹들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인권관련 업무 지침 등 전체적 매뉴얼과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Wee센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문화센터의 경우 기관내부 의견의 편차가 많이 보여 내부의견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되어 인권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1) 가정폭력과 가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처음 가출한 이유 중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 때문에’가 58.6%였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폭행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 ‘친구, 선후배’가 65.0%로 가장 높았고, ‘친아빠’ 32.5%, ‘모르는 사람’ 27.5%, ‘친엄마’ 20.0% ‘애인’과 ‘가출팸’이 각각 12.5% 등의 순서였다. 이처럼 ‘친아빠’, ‘친엄마’, ‘새엄마’, ‘새아빠’, ‘형제자매’, ‘친척’, 기타 3명 중 2명이 ‘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 응답으로 보아 원가족으로부터 당하는 폭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응답 중 친아빠에 의한 성폭력도 2명이나 응답하고 있고, 1명이 새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최근 2년간의 폭행 경험이 원가족이라는 점은 가출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매매가 가출 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절반 이상인 6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자들 중 과반수인 54.0%가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성매매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25.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가출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를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 전문가들에게 물은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관련되지 않음이 7.9%, 가정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10.3%, 성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13.9%,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 성매매와 관련됨이 67.3%로 나타났다.⁴²⁾

2) 정책제언

가) 가정내 폭력에 대한 적극적 처벌

2014년 현재 가정폭력 사범은 4만 7549명으로 최근 5년간 6.5배로 증가해 하루에 130명 정도가 가정폭력사범으로 검거되고 있다. 가정폭력사범으로 검거되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실제 가정폭력발생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적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범죄이고 사회폭력으로 연결되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가출을 하고 이것이 바로 성매매로 연결되므로 가정폭력예방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현재 아동의 복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사건은 범죄의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결국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입법이 이루어졌다.⁴³⁾

이처럼 관련법들은 제정 정비되고 있으나,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2010년의 경우 9,199건, 2011년의 경우 10,146건, 2012년의 경우 10,943건 그리고 2013년의 경우 13,076건, 2014년에는 17,782건까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더불어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

42) 이유진 외(2013), 위의 글(주 19), 168면.

43) 아동의 복지뿐만 아니라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는 성인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2014년 1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44) 보건복지부(2015),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50면.

식을 가지고 신체적 폭력 및 언어적 폭력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 내지 전문가의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을 조기발견하고 전문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개선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나) 실무자에 대한 통합 교육

가정폭력과 (친족)성폭력, 그리고 성매매의 연관성이 확인된 바, 각 피해에 대한 지원기관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하는 업무 담당자들에게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수사기관이 초동수사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게 반드시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이 존재하는지 물어보고, 수사하도록 실무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 부모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1) 부모교육의 강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발생 후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전적 교육 및 예방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설문조사 결과 가출경험이 전체 103명 중 87명으로 84.5%이고, 처음 가출 나이가 평균 14.4세이며, 만 13세 이하도 22명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하는 실태가 확인되며 가출이 저연령화 되어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출과 가정 내 폭력(성폭력)의 연관성이 확인된 결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선책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가정 내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본 설문조사에서 업무담당자들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많은 경우 이미 가족단위의 문제가 발단이 되고, 사회적 책임 이전에 가족 내 폭력이나 학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사후적으로 부모교육을 시키는데, 부모교육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부모세대들은 오히려 애들보다 교육이 덜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적들을 요약할 수 있다. 가정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아이들을 더 위기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부모교육을 통한 자녀

와의 관계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과 연계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지역 네트워크 구축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이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구청, 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예방, 감시, 보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6기 1,000명을 모집하였는데 이 ‘불법성산업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으로, 인터넷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거리에 살포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신고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12년 9월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물 규제처리를 협조하는 Hot-line을 구축한 바 있다.⁴⁵⁾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이 2016년 구별 1개소씩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4년도에는 19곳을 운영했는데, 이 중 관악구, 중랑구 2개 지역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이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여성 안전마을로 구성·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랑구에서는 다가구 주택 등 거주 지역 주변에 게임방, 주점 등 유흥업소가 많지만 상담소가 부재하다는 점을 감안, 지역 주민들을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한다. 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함이다.⁴⁶⁾

2013년에도 전국 최초로 ‘주민 힘으로 지키는 여성안전마을’ 14곳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중랑구는 ‘초록상상’사업을 통해 다가구 주택 등 거주 지역 주변에 게임방, 주점 등 유흥업소가 많아 10대 가출 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45) 서울시 보도자료(2016. 1. 20. 석간용),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시’ 거주자 또는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상에 있는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40,436건을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하고 신고하여 규제 처리된 불법·유해 정보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3년 53.5%, 2014년 74.6%, 2015년 79.6%로 시민 감시단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지난해 참여기업을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해 성산업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왔다. 2016년에는 작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성매매 광고물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 이용해지 활동을 안정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 알선과 광고에 명백히 이용되는 카카오톡 아이디 신고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상 게시물도 감시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46) 서울시 보도자료(2015. 5. 28. 조간용),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안전하지 않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구청·복지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강동구 ‘소나의 집’에서는 성매매 집결지와 유흥업소들이 유치원, 도서관 등 아동들의 통학로에 인접해 있어 아동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역적 특색에 맞춰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여성폭력 예방인형극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였다.⁴⁷⁾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에서 자신의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게 아동·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네트워크 구축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구성원들이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을 범죄피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인 지방자치단체, 경찰, 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모두가 지역사회의 치안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사이버 성매매 환경 대응방안

이번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한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 만남’이 88.3%로 다른 성매매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 또한 ‘스마트폰 채팅 앱’이 6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고, 그 뒤를 이어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다.

업무담당자들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에 대해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61.4%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채팅/카페’ 23.5%였다. 가장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아는 언니, 오빠 소개’ 15.5%, ‘인터넷 채팅/카페’ 14.3%, ‘성매매 알선자’ 13.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폰앱에 대한 규제’가 86.5%로 가장 높았다.

2015. 3.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인 남성에게 목이 졸려 살해된 만14세의

47)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oman.seoul.go.kr/archives/16299>

여중생도, 2016. 4. 여섯 명의 성인 남성들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만 13세의 지적장애 아동도, 모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에 유인되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데에 있어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인터넷 카페/채팅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 수단 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IT 환경의 빠른 변화는 성매매 유인 환경을 인터넷 채팅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놓았으며, 최근에는 소통형 영상 채팅, 개인방송 형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령은 음란사이트나 음란물을 모니터링 또는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음란물로 판정이 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신고를 각하시키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음란물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구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경찰과 연계하여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알선자나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사이트가 폐쇄된다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는 IP 주소만 옮기면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알선자나 구매자는 어떠한 흠결도 없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니 방통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정될 법률은 우선 채팅 사이트나 채팅(영상) 어플리케이션, 개인 방송 등의 운영자가 성매매 정보의 알선과 성매매 조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알선세력이라는 전제가 분명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사이트, 어플, 방송 등 사이버 성매매 환경의 폐쇄와 동시에 반드시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 성구매자, 알선업자에 이르기까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상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향후 사이버상 성매매 시장은 현실세계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그 대상은 사이버 환경에 쉽게 부응하는 아동·청소년이 될 수 있어 그 폐해는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IT 기술적

진보와 함께 사이버상에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 가능한 전문 영역을 포함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영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는 좋은 실례로 볼 수 있다.

셋째,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 발전시켜야 한다. 단기간의 사업적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기구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령과 제재수단이 병행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그루밍법’과 네덜란드의 ‘10살 가상소녀 스위트’ 프로젝트는 시사점이 크다.⁴⁸⁾ 또한 신고의무자를 채팅 사이트나 앱 운영자까지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제공이 발견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방송통신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KT나 SK 등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성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성구매자와 알선 조직의 엄격한 단속과 처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은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들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와 착취를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최대 ‘1회’ 34명(33.0%), ‘2회’ 33명(32.0%), ‘3회’ 14명(13.6%), ‘4~9회’ 15명(14.6%), ‘10회 이상’ 4명(3.9%)이 성매매에 이용됐고,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이용은 2.7회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횟수는 만 13~14세가 3.2회, 만 17~18세 3.0회, 만 15~16세 2.2회의 순이었다. 안전한 가정에서 따뜻하고 충분한 지지와 배려

48) 그루밍법은 영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가 그루밍(grooming)을 신종 사이버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서 명칭을 따온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성인이 채팅을 통해 만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목적으로 만나거나, 설사 만나지 않았더라도 유인, 제안하는 행위 등 만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네덜란드에 소개하고 있는 국제아동후원기구인 ‘테르 데 줌프’에서는 빈국 아동들을 상대로 부국 남성들의 웹캠 섹스를 막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실물과 흡사한 ‘스위티’(10세의 필리핀 소녀)라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냈다. ‘스위티’로 화상채팅 서비스를 했더니 10주 동안 71개국, 2만여 명이 웹 카메라를 통해 ‘스위티’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단체는 이 중 천명의 신상정보를 인터폴로 넘겨 각국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실제 소녀가 아닌 가상 인물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실제 범법자들을 검거하였는데, 이 캠페인은 아동·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를 받고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 최대 3명의 성구매자와 성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역으로 하루 평균 최대 3명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이라고 답변한 아동·청소년은 4명으로, 그중에 만 13~14세 1명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구매자들은 흔히들 화장을 하고 옷을 성인처럼 입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들 한다. 그러나 만 13~14세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성인 흉내를 낸다고 하여도 그 연령대를 성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3~14세 밖에 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1명에 대해 하루 최대 10명 이상의 성구매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 이상이다. 또한 모르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돈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하루에 1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이며 성착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인 성매매를 위축시키기는 커녕 점점 확장시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성매매 상대방(성매수자) 부당경험이 알선자 부당경험보다 약 34% 높다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에서 성매수자의 인권침해가 알선자의 인권침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점인데,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알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매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알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이라고 보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리하여 보호처분하고 있어 성구매자에게 흔히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과 아동·청소년들이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형태의 법률로 개정되어야 하며, 처벌 또한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구속이 무서워서라도 범의를 상실시키게 하는 처벌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도 현행과 같이 만 13세 이하로 두지 말고 피해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행해져야 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경우 일벌백계의 의미에서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

지난 2016년 4월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매수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던 2016년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판결을 뒤집

고, 10월 28일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성매수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 피해아동·청소년은 만 13세를 갓 2개월 지났고, 특히 경계성 지적 장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성매수자는 너무나 미미한 처벌로 끝내 아동·청소년 이용 성매매에 대한 큰 죄의식을 주지 않았다. 그러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는 절대 근절,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므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니며, 따라서 손해배상이 필요 없다는 취지는 매우 부당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피해책임을 물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고 적절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나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오히려 철저히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성매매범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점점 더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하루 성매매 횟수가 많다는 것은 조건만남의 형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알선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건만남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으나 사실상 알선조직에 의한 성매매의 방식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 업무담당자 인식 제고 및 처리 단계별 개선방안

1) 수사단계의 개선방안

가) 수사기관의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시스템의 작동 및 홍보

본 설문조사 결과, 아동·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모 또는 주변의 신고'(39.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단속' 30.2%, '자수' 24.5%,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 13.2%, '구매자신고' 9.4%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하는 구조요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거나 신고하였을 때 보호받을 수 없고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시스템의 작동 및 긴급구조시스템의 홍보가 필요하다.

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함정수사의 금지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 실제 단속시기는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 4명(57.1%),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2명(28.6%), 모름/무응답 1명(14.3%)로 답변하였으며,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었다는 응답이 2명(28.6%), 없었다는 응답이 4명(57.1%), 모름/무응답이 1명(14.3%)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단속된 경우에 대해 2명이나 대답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구매자로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수사기관에서는 함정수사의 대상을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로 해야 한다. 만약 함정수사의 대상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으로 할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당한 피해에 대해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며, 움츠러든 상황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의 방향의 탓으로 돌리고 성매매알선자나 성구매자의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 없게 하는 근본이유가 되며, 위 실태조사에서 나온대로 경찰관들의 범죄양성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 제고 및 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 엄정처벌을 위한 교육 강화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 중에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취급을 한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13.2%, ‘조금 그렇다’ 28.3% 등 ‘그렇다’는 응답이 41.5%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20.8%, ‘조금 아니다’ 13.2% 등 ‘아니다’는 응답은 34.0%로 조사되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4.5%였으며 5점 척도 평균 점수로는 3.00점이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3.2%, ‘조금 그렇다’ 13.2%, ‘그렇다’ 26.4%, ‘조금 아니다’ 11.3%, ‘전혀 아니다’ 32.1%로 조사되었으며 5점 척도 평균은 2.63점이었다.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시하는 태도’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죄자 취급’이 34.0%,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와 ‘가해자와의 합의유도’가 각각 13.2%, ‘개인정보유출’과 ‘집으로 갑자기 찾아옴’이 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5.8%는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와 ‘사적 만남 요구’가 각각 1명씩(1.9%) 답변을 한 점이다. 기타 답변으로 ‘감금’ 1명(1.9%), ‘신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1명(1.9%)도 있었다.

위와 같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수사기관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3명당 1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쉼터나 보호시설을 전혀 연결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32.1%로 나타난 것을 보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에도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가해자와 합의유도도 13.2%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자나 성구매자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사건무마를 위해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제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대상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라) 수사기관의 신뢰관계인 동석의 의무화의 현행법 준수 필요성

수사기관에서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2.6%, ‘조금 그렇다’ 9.4%, ‘그렇다’ 34%, ‘조금 아니다’ 11.3%, ‘전혀 아니다’ 30.2%로 조사되었으며 5점 척도 평균은 2.83점이었다.

‘성매매처벌법’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항에서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전혀 아니다’가 30%이상이 된다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진술의 구체화를 위해 위 규정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마)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매뉴얼 제작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초동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 영상녹화 조사, 변호사 선임 고지,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 등 피해자에 합당한 모든 조치를 받게 하는 내부 매뉴얼 제작,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 재판단계의 개선방안

가)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법원에서 재판과정 중에 범죄자 취급을 한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10.0%, ‘조금 그렇다’ 30.0% 등 ‘그렇다’는 응답이 40.0%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20.0%, ‘조금 아니다’ 10.0% 등 ‘아니다’는 응답은 30.0%로 조사되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0.0%였으며 5점 척도 평균 점수로는 3.00점이었다. 법원에서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판사를 비롯한 법원관계자들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나) 모든 법원에 사건판결을 위한 매뉴얼 제작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더라도 ‘성매매에 알선·유인된 청소년’의 경우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보지 않는 판결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모두 피해자로 인지, 증인 출석 최소화, 차면시설, 성범죄 피해

자와 동일한 증인 보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체 법원에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가. 기본정책 - 피해 청소년으로 인식 전환

현재 아동·청소년정책 업무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관련 정책은 청소년보호업무가 아니라 성매매정책업무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성매매 피해지원 목적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적부터 성인 성매매 여성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집결지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시작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알맞지 않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⁴⁹⁾

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정비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가출,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등 광범위한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청소년자립지원과와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권익증진국에서도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 등에 대한 관리는 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지원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⁵⁰⁾ 사실상 청소년성매매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익증진국의 성매매 정책은 성인 성매매 피해

49) 이유진 외(2013), 위의 글(주 19), 27-48면.

5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를 중심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성매매지원시설을 제외한 청소년 지원에 관한 모든 체계는 사실상 청소년 가족정책실에 있으므로 청소년성매매 피해에 대해서는 권익증진국에서도 청소년 가족정책실에서도 모두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없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성매매 문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내 독립적인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전경·검 전담부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문제는 대상과 주제에 따라, 성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여가부의 권익증진국, 성매매피해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문제는 청소년가족정책실로 나뉘어져 있어, 사실상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지원 문제는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부재할 뿐 아니라 분산되어 있어 장기적 전망과 계획,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질서과에서는 업소 단속 중심의 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피해자들은 강력계나 형사과, 지능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착취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과 실질적인 지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자들의 제대로된 수사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내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담부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관련 지원시설 - 전담 지원시설 확충⁵¹⁾

아동·청소년성매매는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은 다른 위기 청소년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특수하다. 위기청소년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은 양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질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

51) 본 장은 2016. 7. 21. 열렸던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워크숍에서 김고연주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모델(가)”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글에서 요약하였다.

한 전문성을 지니지 못하면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의 성격 상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기 쉽지가 않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도 또다시 배제되고 주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매매’라는 이유로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함께 다루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해당하는 법도 다를 뿐 아니라 성인과 십대의 특성도 매우 다르다. 큰 차이점은 첫째, 십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성인 성매매는 주로 업소형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주로 개인형이라는 점이다. 셋째, 십대들은 성장 시기에 따른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각각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리된 영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명의 활동가가 성격이 매우 다른 두 영역의 전문성을 모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의 특수성을 인지하여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시설과 단체가 매우 소수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직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발견, 주거, 교육, 의료, 법률, 상담, 자활’이라는 일련의 과정(continuum of care)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1) 발견

무엇보다 성매매에 유입될 위험에 처해 있는, 또는 유입된 십대 여성들을 발견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발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매매의 특성을 반영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아웃리치를 통해, 온라인에서는 사이버 상담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전문성을 지닌 활동가들이 아웃리치에 함께 해야 하며, 아웃리치 활동가들은 모두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이버 상담 또한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에 ‘사이버포래상담실’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이버 상담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성매매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포래 상담원들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거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는 2014년 현재 전국에 15개소로 서울 5개소, 부산·대구·경남 2개소, 광주·대전·전남·경북 1개소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쉼터가 매우 적으며 그마저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질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십대 여성들이 머물고 싶은 쉼터 곧 자유롭고 편하고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쉼터 입소를 꺼려하는 십대 여성들을 위해 드롭인센터나 일시 쉼터 등이 필요하다.

3) 자활(일자리)

십대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자리 자체도 구하기 어렵거니와 일이 힘들고 돈이 적다는 점, 당장 돈이 필요한데 월급을 받으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새날에 오면’에서는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와 같은 다양한 임금 제도, 유연한 노동시간, 일을 배울 수 있는 노동, 인턴십 나아가 직장으로의 연계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 교육

가)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지향한다. 현재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10개의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성장캠프는 활동가들과 십대 여성들이 40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양질의 시간을 갖는다. 무엇보다 활동가 선생님들과의 라포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계가 가능하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대상청소년’ 개념이 삭제되면 강제적인 교육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고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십대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들에게 탈성매매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센터의 명칭도 변경 가능할 것이다.

나) 자립학교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은 대부분 가출 상태여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에서의 낙인 등으로 학교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서울에서는 노원과 마포 자립학교가 운영 중이다. 검정고시, 인턴십, 경제 교육, 진로탐색, 직업체험, 심리 및 정서적 자립 프로그램, 성매매 재유입 방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업 능력도 천차만별이어서 이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수업이 거의 1:1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력 취득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자립학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5) 의료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은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하고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하면서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어리다는 이유로 막연히 건강을 자신하곤 한다. 설사 건강에 이상을 느끼더라도 건강 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병원 진료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서울에 있는 '나는 봄'이 유일한 십대 여성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이다.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을 이해하는 의료진들로 구성된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6) 법률

‘대상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삭제되면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매우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다른 범죄 행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또래 포주들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성매매가 아닌 업소형 성매매에 유입된 피해 여성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 법률단이 꾸려질 필요가 있다.

7) 상담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 채널이 필요하다. 상담소를 중심으로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상담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소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 단계에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수적이다.

8) 긴급 구조

성매매 과정 어디에서나 십대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 구조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를 성착취, 성폭력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9) 활동가 교육

아동·청소년 성매매 전문 활동가들을 양성해야 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립학교 교사, 의료진, 법률단, 자원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10) 수요 차단

성구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병행해야 한다. 사실 수요가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에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법률단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이고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거리, 학교, 직장에서의 성매매 방지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법제 관련 정책 제언

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1)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불합리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대상이 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 의견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검사에게 송치하고(제38조제2항), 검사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법원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결국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 죄를 범한 소년처럼 취급되어 국선변호사 선임지원에서 배제되며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하려던 것이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의 성격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이 연구의 성매매 아동·청소년대상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보호처분을 ‘처벌’로 생각하는 것이 46.6%였고, ‘교육’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14.4%에 불과하였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위탁 외에 소년원 송치까지 있어서 성인 성매매자에 대한 보호처분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성인 성매매자 보호처분의 경우는 일정 장소나 지역에서의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보호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 성매매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청법 제38조제1항), 이러한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해당 아동·청소년이 협박당하는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매매처벌법’을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어 있고, 어떤 제제도 받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아청법에 의해 피해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모순이며,⁵²⁾ “대상” 개념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52) 강지명(2013), 위의 글(주 14), 175면 참조.

구분	처벌 및 보호처분		
아 청 법	<p>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 (제13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아동·청소년 성매매(제13조제1항) 상대방</p> <table border="1" data-bbox="444 446 1190 785"> <tr> <td data-bbox="444 446 808 785"> <p>보호처분(제40조) 검사는 보호처분을 위해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법원은 보호처분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p> </td> <td data-bbox="808 446 1190 785"> <p>*소년법의 보호처분(제32조제1항) 1. 보호자 등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 병원 등 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내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p> </td> </tr> </table>	<p>보호처분(제40조) 검사는 보호처분을 위해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법원은 보호처분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p>	<p>*소년법의 보호처분(제32조제1항) 1. 보호자 등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 병원 등 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내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p>
	<p>보호처분(제40조) 검사는 보호처분을 위해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법원은 보호처분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p>	<p>*소년법의 보호처분(제32조제1항) 1. 보호자 등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 병원 등 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내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p>	
<p>아동대상성범죄 중 대상아동·청소년 제외</p> <p>“피해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제41조)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 접촉 금지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p>			
성 매 매 처 벌 법	<p>성인대상 성매매 처벌 (제21조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p> <p>보호사건 (제12조제1항):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음</p> <p>보호처분의 종류(제14조제1항) 일정 장소나 지역에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감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p>		
	<p>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제6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p> <p>“성매매 피해자”(제2조제1항 제4호) 위계,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p>		

2)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합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아동·청소년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일반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고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연구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정과 학교의 부적응 요소, 환경적인 열악한 요소, 성인 성구매자에 의한 폭행·협박 혹은 소위 ‘진상’들에 의한 시달림과 같은 인권침해적 요소는 심각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성매매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자발·비자발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 성인 성매매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성매매단속과정에서 미성년판매자가 인지될 경우 성인 성매매정책에서처럼 자발·비자발에 초점을 두어 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보아 보통 보호처분을 받도록 법원송치의견을 낸다고 한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피해자로 볼 수 있음에도 ‘아청법’에 의해 불합리하게 처리 되는 것이다.⁵³⁾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대상/피해 혹은 자발/비자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법제도적·사회환경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염두에 두면 적절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⁵⁴⁾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보호·지원에 중점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에서 피해자 중심 대책에 상응하며, 피해자 개념과 피해자

53) 강지명(2013), 위의 글(주 14), 175면.

54) 남인숙의원이 2016. 8. 8.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의하였다.

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은 제재의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보호받을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종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지원 기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고 처벌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성인 성구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시설의 입소나 시설에서의 수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인권피해자가 될 수 있다.⁵⁵⁾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일부에서는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아동·청소년을 훈육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외부에 알려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는 첩경이라고 보았다. 미국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가 다른 일반 청소년 쉼터보다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관련 실무자들에게 법적으로 성매매 유입경로 및 발달 민감성 특성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룰 때 절대 “작은 매춘부”로 여성 아동·청소년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것도 피해자 중심적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과 관련이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보호처분 부분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보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성매매 피해자가 받고 있는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55) 강지명(2013), 위의 글(주 14), 168면.

나. 성착취 개념 정의

‘매매’의 법률적 의미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63조). 그런데 이러한 ‘매매’의 당사자인 ‘매도인’ 개념에 아동·청소년이 해당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건과 같은 재화의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5조). 그런데 심지어 그보다 더한 가치를 가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처분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매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용어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매매’라는 단어는 아동·청소년이 성인을 성매매로 유인했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내포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에 캐나다에서는 최근 20여 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새로운 법률 조항들이 만들어지면서, 먼저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매춘”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에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⁵⁶⁾

이처럼 우리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문제는 ‘성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의 인식전환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56) 이유정의(2013), 위의 글(주 19), 136면.

다. 성구매자 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량은 2000년 법제정시보다 매우 강화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특별형법의 엄벌주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서의 문제점은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성매매의 단속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단속이 되어 성인 성구매자가 범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형에 비하여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데 있다. 낮은 수위의 처벌로 인하여 성인 성구매자들이 성매매의 단속 및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엄격한 처벌규정 자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한을 상승시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의 관대한 처분으로 끝나지 않게 하자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의 의미를 가지므로 입법론적으로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성인 성매매는 비범죄화로 가는 추세가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느 나라이든 허용되지 않으며, 주요 범죄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며, 성장 시기에 따른 특수성 속에서 성매매는 인격침해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구매자, 알선업자들은 평균 만 14.7세의 중학생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관련 범죄자 검거인원은 줄어들고 있고 2014년 성매수로 처벌된 건수는 385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로는 당국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표 V-1> 범죄별 검거건수

구분	검거인원	범죄 별					
		성매매처벌법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행위	매매	성매수	알선영업	기타
2011년	3,315	45	171	54	1,608	153	1,284
2012년	2,753	65	233	36	751	102	1,566
2013년	2,201	20	176	20	573	86	1,326
2014년	1,247	13	169	14	397	222	432

출처: 경찰청 통계

<표 V-2> 범죄별 전과자 수

구분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성매수등)
2006년	621		
2007년	682		
2008년	614		
2009년	750		
2010년	293		
2011년	59		
2012년		3,248	
2013년		3,286	
2014년			385

출처: 경찰청 통계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 법률 개정안 제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	(현행과 같음)

현행법	개정안
<p>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p> <p>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p> <p>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p>	
<p>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p>	(현행과 같음)
<p>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p>	<p>4.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자"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 한 자를 말한다.</p>
<p>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p>	5. (현행과 같음)
<p>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	<p>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
<p>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p>	<삭제>
<p>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p>	<p>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등)</p>

현행법	개정안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p> <p>2. 선불금(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p> <p>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p> <p>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u>성매수</u>의 피해자가 되게 한 자</p> <p>2. 선불금(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u>성매수</u>의 피해자가 되게 한 자</p> <p>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u>성매수</u>의 피해자가 되게 한 자</p> <p>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u>성매수</u>의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아동·청소년 <u>성매수</u>의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1.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p> <p>2.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p> <p>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p> <p>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제15조(알선영업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1.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u>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p> <p>2.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u>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p> <p>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p> <p>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u>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현행법	개정안
<p>에 처한다.</p> <p>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p> <p>2.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의 장소를 제공한 자</p> <p>3.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p> <p>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p> <p>③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설></p>	<p>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u>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p> <p>2.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u>의 장소를 제공한 자</p> <p>3.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u>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p> <p>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p> <p>③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u>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u>성매수</u>를 게시 또는 공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제31조(비밀누설 금지)</p> <p>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u>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u>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누구든지 <u>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31조(비밀누설 금지)</p> <p>①.....<u>피해·아동·청소년의</u></p> <p>③.....<u>피해·아동·청소년의</u></p>
<p>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p> <p>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p> <p>① 「<u>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u>」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p>	<p>제4장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등</p> <p><삭제></p>

현행법	개정안
<p>② 사법경찰관은 <u>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u></p> <p>③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④ <u>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u></p>	
<p>제39조(소년부 송치)</p> <p>① <u>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u></p> <p>② <u>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삭제></p>
<p>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p> <p>① <u>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u></p> <p>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p> <p>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p> <p>② <u>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u></p>	<p><삭제></p>

현행법	개정안
<p>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45조(보호시설)</p> <p>「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u>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u> 3. 장기치료가 필요한 <u>대상아동·청소년의</u>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p>제45조(보호시설)</p> <p>「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u> ... 3. 장기치료가 필요한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u>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p>제46조(상담시설)</p> <p>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u>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u> 3. <u>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u> 	<p>제46조(상담시설)</p> <p>① <삭제></p>
<p>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업무 	<p>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현행법	개정안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3.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신 설>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프로그램의 운영
<신 설>	6.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의 교육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7.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9.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신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이하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법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른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하는 업무 6.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7. 아동·청소년성매매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홍보를 포함한다)와 교육 8.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p> <p>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p><삭제></p>

현행법	개정안
<p>5.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p> <p>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신설></p>	<p>제47조3(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p> <p>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제48조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프로그램 등의 참여

참고문헌

- 강경래(2013), “인터넷과 아동매춘 : 일본의 아동매춘관련 유해정보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 장지명(2013),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7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 국가인권위원회(2002),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_____ (2013),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아시아 소수아동·청소년 인권 토론회 결과보고서 : 소수 아동·청소년의 삶과 인권」,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김고연주(2011),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인권 침해 사례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1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 _____ (2016),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모델(가)”,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워크숍(2016. 7. 21.)
- 김미옥 외(2011),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18호, 한국재활심리학회
- 김연주(2014),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쉼터의 역할과 위치 모색”, 「한국여성학」 제30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 _____ (2015), “청소년 성매매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평론」 제64호, 진보평론
- _____ (2015), “성매매 피해 청소년 실태와 지원사업 개선방안”, 「청소년 날 다시일으키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김영지(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한(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 정책리포트」 vol. 4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은정(2013), “저소득층 십대 여성의 성매매 유입/재유입을 통한 사회화 과정 분석”, 「사회와 이론」 제22호, 한국이론사회학회
- 김종세(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법학연구」 제31호, 한국법학회
- 김지경, 박창남(2014),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지경, 이상준(2014),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 김지선(2001),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학태(2008),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 연구』 2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 김혜원(2011),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청소년학회
- 남미애(2001), “청소년의 매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 민가영(2009),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자발성’과 그 맥락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한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제20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박성수(2005),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7호, 한국경찰학회
- 박영미(2008), “복지국가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 박지현(2006),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사회복지적 대안”, 「교정복지연구」 제3호, 한국교정복지학회
- 박찬걸(2013), “해외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초아, 이가운(2016),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4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변미혜(2012),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2012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보건복지부(2015),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부정주(2010),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과 성구매자 처벌의 현실”, 『여성과 인권』 제3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성윤숙 외(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윤숙 외(2014),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윤숙(2010),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여성과 인권』 제3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신옥주(2013), “성매매 규율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 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십대여성인권센터(2015),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토론회 자료집
-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사(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0),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정 연구」
- 원혜욱(2005),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와 한국의 실천”, 『국제인권법』 제8호, 국제인권법학회
- 육혜련 (2014), “가출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윤덕경 외(2010),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 평가·정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선미, 이나영(2012), 청소년의 가출후 경험연구, 「한국여성학」 제28권 제4호, 한국여성학회
- 윤옥경, 이유진(2014),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 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 윤혜린 외(2015), 「가출 여자청소년 공간이용 및 폭력피해 실태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 이미정 외(2015)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2015)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유진 외(20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유진(2014),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 정책리포트」 vol. 5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춘화 외(2007),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익중, 김세원(2011), “아동·청소년발달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잠재적 유형 간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현미(2010), 「형법에서의 여성인권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_____ (2013), “성매매방지정책의 검토와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_____ (2013), 「성매매처벌법 시행경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 정혜원 외(2011a),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_____ (2011b),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I)」, 한국여

성인권진흥원

정혜원(2011),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여성과 인권」 제6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혜원, 박윤환(2012),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조진경(2015), “사례로 본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의 문제점”, 「청소년성매매문
제 같이 얘기 해 봅시다」 토론회 자료집, 십대여성인권센터

_____(2016),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가?”, 「국회 토론회」, 국회 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_____(2016), “십대 성매매의 최근 인권실태 및 대안에 관하여”, 2016 한국
폭력예방상담학회 제4회 심포지엄

_____(2014),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는 사회”, 「청소년
성매매 근절 및 대책 마련 드림포럼」, 인천지방법원

_____(2014), “사이버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현장의 활동: 사이버포대상담을
중심으로”, 「여성과 인권」 12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최영신(2006), “여자 비행청소년의 범죄피해 경험과 처우”, 「교정연구」 제31
권, 한국교정학회

최해연 외(2015), “청소년 성매매피해의 심리사회적 결정요인”, 「재활심리연
구」 제22호, 한국재활심리학회

한상철(2010), “청소년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의 완충
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제7권 제1호, 미래청소년학
회

홍봉선 외(2007),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사업 효과성 검증 및 성과분석”,
여성가족부

홍봉선, 남미애(2010), 「청소년 성문화 의식조사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Capaldi, Mark ed.(2013), “Examining Neglected Elements in Combating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ECPAT International Journal, Journal Series no. 7.

- Demuth, S., and Brown, S. L.(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 Greenbaum, Jordan(2015), “Child Sex Trafficking and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Health Care Needs of Victim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vol. 135, issue 3.
- Kidd, S., & Shahar, G.(2008), Resilience in Homeless Youth: The Key Role of Self- Estee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78(2).
- Ostrowsky, M. K. & Messner, S. F.(2005), “Explaining crime for a young adult population: An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 463-476.
- Whitbeck, L., Hoyt, D., Johnson, K., & Chen, X.(2007), “Victimiz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22.
- Williams, L. M.(2010), “Harm and Resilience among Prostituted Teens: Broadening our Understanding of Victimization and Survival”, *Social Policy & Society*, 9(2).
- Wilson, H. W. & Widom, C. S.(2010), "The Role of Youth Problem Behaviors in the Path From Child Abuse and Neglect to Prostitution: A Prospective Examina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

*

부록

1. 아동·청소년용 설문지
2. 업무담당자용 설문지

1. 아동·청소년용

이 조사에서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ID					
----	--	--	--	--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에 관한 통계마련과 법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에만 이용될 것이며, 설문 대상자의 답변은 익명으로 분석·처리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p style="text-align: center;">☎ 02)3277-2764/ E-mail: egenderlaw@ewha.ac.kr</p>		
조사기관	조사자	조사장소	조사일시
	연락처		

※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거나 답을 직접 써 주세요.

Section 1

기본사항

1. 귀하는 몇 년생인가요? () 년생

2. 귀하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① 예 → 2-1번으로

② 아니오 → 2-2번으로

2-1.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안학교

⑤ 기타 ()

2-2. 학생이 아닌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초등학교 중퇴

③ 중학교 졸업

④ 중학교 중퇴

⑤ 중졸 검정고시

⑥ 고등학교 졸업

⑦ 고등학교 중퇴

⑧ 고졸 검정고시

⑨ 기타 ()

3.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친엄마

② 친아빠

③ 새엄마

④ 새아빠

⑤ 할아버지

⑥ 할머니

⑦ 형제자매

⑧ 친척

⑨ 아동복지시설

⑩ 쉼터

⑪ 친구들

⑫ 혼자

⑬ 남자친구

⑭ 기타 ()

Section 2

생활 관련 사항

4. 귀하는 가출 경험이 있나요?

① 예 → 4-1번으로

② 아니오 → 8번으로

4-1. 귀하가 가출을 처음 했을 때 몇 살이었나요? () 살

5. 귀하가 처음으로 가출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 때문에 ②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 ③ 친구나 선후배와 놀고 싶어서 ④ 공부하기 싫어서
- 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서 ⑥ 주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서
- ⑦ 성정체성(동성애) 고민 때문에 ⑧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 ⑨ 기타 (_____)

6. 귀하가 가출 한 후 지금까지 지냈던 곳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친구·선후배 집 ② 애인 집 ③ 친척 집 ④ 여관·모텔·여인숙 등 숙박시설
- ⑤ 찜질방 ⑥ 월세방 ⑦ 고시원 ⑧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
- ⑨ 노숙 ⑩ 기타 (_____)

7. 귀하가 최근 2년간 주로 놀았던 곳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노래방 ② 멀티방/DVD방 ③ 친구·선후배집 ④ 애인집
- ⑤ PC방 ⑥ 찜질방 ⑦ 길거리·놀이터·공원 ⑧ 카페
- ⑨ 술집 ⑩ 모텔 ⑪ 기타 (_____)

8. 귀하는 최근 2년간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맞은(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놀림 당하거나 심한 욕을 먹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그룹채팅이나 인터넷에서 악플이나 집단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성폭력 또는 집단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1. 맞았다면 폭행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친엄마 ② 친아빠 ③ 새엄마 ④ 새아빠
- ⑤ 형제자매 ⑥ 친구, 선후배 ⑦ 애인 ⑧ 친척
- ⑨ 고용주(사장) ⑩ 조폭, 깡패 ⑪ 가출팸 ⑫ 모르는 사람
- ⑬ 기타 (_____)

8-2. 성폭력을 당했다면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친엄마 ② 친아빠 ③ 새엄마 ④ 새아빠
- ⑤ 형제자매 ⑥ 친구, 선후배 ⑦ 애인 ⑧ 친척
- ⑨ 고용주(사장) ⑩ 조폭, 깡패 ⑪ 가출팸 ⑫ 모르는 사람
- ⑬ 기타 (_____)

Section 3

성매매에 관한 사항

※ 성매매는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손가락·도구 삽입, 항문성교 등)를 목적으로 돈, 물건, 옷, 음식, 지낼 곳 등 물질적인 대가를 성매수자(성을 사는 사람)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귀하는 몇 살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했나요? (_____) 살

10. 귀하가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배가 고파서 ② 잘 곳이 없어서 ③ 강요에 의해서
- ④ 화장품/옷구입을 위해 ⑤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⑥ 호기심에
- ⑦ 친구의 권유 ⑧ 성형비 마련 ⑨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서
- ⑩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⑪ 술에 취해서 ⑫ 유흥비가 필요해서
- ⑬ 성폭행 후 자포자기해서 ⑭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 ⑮ 빛이 있어서(일주, 도박, 사채) ⑯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
- ⑰ 기타 (_____)

14. 귀하는 하루 최대 몇 번까지 성매매(성행위)를 했나요? () 번

15. 귀하는 1회당 성매매 후 얼마를 받았나요?

최대 () 원

최소 () 원

16. 다음의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과 관련된 경험 유무 및 각 내용이 얼마나 나쁘다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칸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경험유무		얼마나 나쁜가? (인권침해의 심각성)				
	예	아니오	나쁘지 않다	나쁘다	조금 나쁘다	많이 나쁘다	매우 많이 나쁘다
1) 선불금을 주지 않았다.	①	②	0	1	2	3	4
2) 약속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았다.	①	②	0	1	2	3	4
3) 성매매 전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①	②	0	1	2	3	4
4) 성매매 질환(성병 등)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 (ex. 성기가 가렵거나 따갑다, 소변을 볼 때 아프다)	①	②	0	1	2	3	4
5)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①	②	0	1	2	3	4
6)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가 있다.	①	②	0	1	2	3	4
7) 낙태를 강요하였다.	①	②	0	1	2	3	4
8)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	①	②	0	1	2	3	4
9)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	①	②	0	1	2	3	4
10) 강간을 하였다.	①	②	0	1	2	3	4
11)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①	②	0	1	2	3	4
12) 스토킹을 하였다.	①	②	0	1	2	3	4
13) 돈(금품)을 빼앗았다.	①	②	0	1	2	3	4
14)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①	②	0	1	2	3	4

17. 다음의 성매매 알선자와 관련한 경험 유무 및 각 내용이 **얼마나 나쁘다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칸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경험유무		얼마나 나쁘는가? (인권침해의 심각성)				
	예	아니오	나쁘지 않다	나쁘다	조금 나쁘다	많이 나쁘다	매우 많이 나쁘다
1) 약속한 대로 돈을 배분해주지 않았다.	①	②	0	1	2	3	4
2) 과도한 벌금을 물렸다.	①	②	0	1	2	3	4
3) 빚을 강요하였다.	①	②	0	1	2	3	4
4) 생리 중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①	②	0	1	2	3	4
5)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①	②	0	1	2	3	4
6) 콘돔 사용을 못하게 하였다.	①	②	0	1	2	3	4
7) 퇴폐쇼를 강요하였다.	①	②	0	1	2	3	4
8) 쉬고 싶을 때나 아플 때 자유롭게 쉬 수 없었다.	①	②	0	1	2	3	4
9) 무리한 다이어트를 요구하였다.	①	②	0	1	2	3	4
10) 성형을 강요하였다.	①	②	0	1	2	3	4
11) 욕설, 폭행, 협박을 하였다.	①	②	0	1	2	3	4
12) 외출을 못하게 감시나 감금을 하였다.	①	②	0	1	2	3	4
13) 강간을 하였다.	①	②	0	1	2	3	4
14)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①	②	0	1	2	3	4
15) 나이를 속이도록 강요하였다.	①	②	0	1	2	3	4
16)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	①	②	0	1	2	3	4

18. 귀하는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해 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돈이 필요하면 노예, 속옷팔이, 영상팔이 정도는 해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성매매는 돈을 벌기 위한 편한 수단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성을 파는 것은 자유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귀하는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나요?

- ① 피해자 ② 참고인 ③ 피의자 ④ 모른다.

2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중에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아니다. ② 조금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귀하가 가해자(성매매알선업자, 성구매자)와 같이 조사를 받을 때 분리(다른 방 등)하여 조사를 받았나요?

- ① 분리하여 받았다. ② 분리하여 받지 않았다.
③ 기타 (_____)

25. 귀하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무시하는 태도
② 범죄자 취급
③ 가해자와 대질조사
④ 성희롱/성추행
⑤ 성폭력
⑥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
⑦ 사적 만남 요구
⑧ 개인정보 유포
⑨ 가해자와의 합의유도
⑩ 집으로 갑자기 찾아옴
⑪ 기타 (_____)

26.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조사를 마친 뒤 앞으로의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침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 법원의 재판과정

27. 귀하는 성매매 관련하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 → 28번으로 ② 없다. → 30번으로

28. 법원에 갔을 때,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아니다. ② 조금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9. 귀하는 법원에서 보호처분(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거나 쉼터에 감호 위탁, 소년원입소 등)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 → 29-1번, 29-2번으로 ② 없다. → 30번으로

29-1. 귀하는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나요?

- ①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② 감호위탁
③ 수강명령 ④ 사회봉사
⑤ 소년원 입소 ⑥ 기타 (_____)

29-2.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 귀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①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②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_____)

30. 귀하는 보호처분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①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②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_____)

Section 5

쉼터 등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1. 귀하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해당하는 칸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문항	활용경험		매우 불만이다	조금 불만이다	보통이다	조금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예	아니오					
1) 일상생활상담	①	②	1	2	3	4	5
2) 진로상담	①	②	1	2	3	4	5
3) 가족상담/가족치료	①	②	1	2	3	4	5
4) 학업지원(일반학교,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	①	②	1	2	3	4	5
5) 아르바이트/취업알선	①	②	1	2	3	4	5
6) 정신건강상담/치료	①	②	1	2	3	4	5
7) 신체건강검진/치료	①	②	1	2	3	4	5
8) 일시쉼터지원	①	②	1	2	3	4	5
9) 장기쉼터/주거지원	①	②	1	2	3	4	5
10) 경찰, 검찰 조사시 상담원 동석	①	②	1	2	3	4	5

32. 쉼터 입소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해 주세요.

귀하가 쉼터 입소 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해당하는 칸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1) 이유 없이 입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입소 후 생활에 필요한 사항(시설이용방법, 생활규칙, 서비스 내용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①	②
3) 통신수단(전화 및 편지)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	①	②
4)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없었다.	①	②
5) 원치 않는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①	②
6) 입소생활과 관련한 나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가 없다.	①	②
7) 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다.	①	②
8)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①	②
9) 직원들이 수치심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①	②
10)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①	②
11)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다.	①	②
12) 입소자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을 알고도 내버려 둔다.	①	②
13) 부당한 이유로 퇴소 당했다.	①	②

33. 귀하가 언론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동의 없이 보도함
- ② 취재시 사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음
- ③ 신상공개
- ④ 선정적이고 자세한 범죄행위 묘사
- ⑤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불이익이 초래됨
- ⑥ 성매매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림
- ⑦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강화시키는 성구매자의 변명 부각

34. 귀하는 미래와 관련된 다음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워합니까?

문항	전혀 두렵지 않다	별로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두렵다	매우 두렵다
1) 성매매를 하는 생활이 다시 반복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주변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앞으로 생계에 대한 걱정	①	②	③	④	⑤
6) 성매매 알선자 등이 다시 접근해 오는 것	①	②	③	④	⑤

35. 현재 귀하가 필요로 하는 도움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칸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	①	②	③	④	⑤
2) 일자리	①	②	③	④	⑤
3) 학업	①	②	③	④	⑤
4) 취업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의료지원	①	②	③	④	⑤
6) 법률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정서적 지지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_____)					

감사합니다.

2. 업무담당자용 설문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에 관한 통계마련과 법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에만 이용될 것이며, 설문 대상자의 답변은 익명으로 분석·처리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의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문의: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02)3277-2764/ E-mail: egenderlaw@ewha.ac.kr		
조사기관	조사자	조사장소	조사일시
	연락처		

Section 1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 인식 관련

1. 귀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를 써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경제적 이유 ② 가정불화 ③ 또래 문화
- ④ 자발적 의지 ⑤ 성인들의 유도 ⑥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 ⑦ 기타 ()

2. 귀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관련 종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를 써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조건만남 ② 단란주점·룸싸롱 ③ 성매매집결지 ④ 티켓다방
- ⑤ 키스방 ⑥ 안마시술소 ⑦ 노래방 ⑧ 보도방
- ⑨ 변화가, 해변 등 거리에서 제안 받음(헌팅)/번개 ⑩ 대딸방
- ⑪ 애인대행 ⑫ 노예 ⑬ 영상팔이 ⑭ 속옷팔이
- ⑮ 기타 ()

3.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처음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2. 가장 위험(폭력/진상)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인터넷 채팅/카페 ② 친구 ③ 스마트폰 채팅 앱
 - ④ 성매매 알선자(삼촌/이모) ⑤ 알바사이트 ⑥ 아는 언니·오빠 소개
 - ⑦ 광고(온라인) ⑧ 기타 ()

4. 귀하가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성매매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성매매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원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후에 사랑을 주장해도 성매매는 문제 삼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아동·청소년의 가출은 성매매로 이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인권침해의 심각성				
	심각 하지 않다	심각	조금 심각	많이 심각	매우 많이 심각
1) 빚을 강요당함	0	1	2	3	4
2) 성 매개 질환에 감염될 위험	0	1	2	3	4
3)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위험	0	1	2	3	4
4) 신체적 건강상태의 악화	0	1	2	3	4
5) 폭행·협박을 당할 위험	0	1	2	3	4
6)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할 위험	0	1	2	3	4
7) 성매매 알선자로부터 감시나 감금	0	1	2	3	4
8) 동영상 촬영과 유포의 위험	0	1	2	3	4
9) 성구매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할 위험	0	1	2	3	4
10) 변태성행위의 희생자	0	1	2	3	4
11) 성인들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	0	1	2	3	4
12) 사회적 낙인의 위험	0	1	2	3	4
13) 정신적 피해	0	1	2	3	4
14) 다른 범죄로 유입될 위험	0	1	2	3	4

Section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 재판과정 관련

6. 귀하가 경험한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이 없으면 7번으로)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가 경험한 법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이 없으면 8번으로)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 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청소년이 출석할 때 비공개로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성구매자나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시 차면시설을 갖추어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청소년에 대해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성구매자/성매매알선자 혹은 그 변호인이 재판과정 중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6)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인적사항 노출	①	②	③	④	⑤
7) 성구매자/알선자 변호인의 합의를 이유로 한 재판지연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중요하 지 않다	별로 중요하 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3) 물적 증거확보 노력	①	②	③	④	⑤
4) 조사 전 상담원과 필요적 연계	①	②	③	④	⑤
5) 아동·청소년에 대한 야간수사 금지	①	②	③	④	⑤
6)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_____)					

11. 귀하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 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상담원 등과 같이 조사받음	①	②	③	④	⑤
2)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조사	①	②	③	④	⑤
3)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	①	②	③	④	⑤
4)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 구비	①	②	③	④	⑤
5) 진술과정을 영상물로 녹화	①	②	③	④	⑤
6) 조사 횟수의 최소화	①	②	③	④	⑤
7) 개인정보 유포 주의	①	②	③	④	⑤
8) 성희롱, 성추행 등의 주의	①	②	③	④	⑤
9) 폭행, 폭언, 협박 주의	①	②	③	④	⑤
10)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부모님 등에 대한 고지	①	②	③	④	⑤
11) 쉽거나 보호시설과의 연계	①	②	③	④	⑤
12) 친절한 조사태도	①	②	③	④	⑤
13) 법률지원	①	②	③	④	⑤
14)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 연계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 (_____)					

12. 귀하는 아동·청소년 재판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 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청소년의 증인출석 요구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검사 또는 상대방 변호사의 모욕적인 재판진행에 대한 재판부의 억제	①	②	③	④	⑤
3) 신뢰관계자, 상담원의 동석	①	②	③	④	⑤
4) 재판부의 합의 권고	①	②	③	④	⑤
5)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①	②	③	④	⑤
6)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대기장소	①	②	③	④	⑤
7) 아동·청소년 증인신문시 차면시설	①	②	③	④	⑤
8) 증언 대신 수사과정의 영상물 녹화로 대체	①	②	③	④	⑤
9) 합의 강요시 처벌고지	①	②	③	④	⑤
10) 아동·청소년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언과정 비공개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_____)					

13.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또는 재유입)을 차단할 위한 다음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 주변에게 알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 전문상담소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동은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①	②	③	④	⑤
3)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앱에 대한 규제	①	②	③	④	⑤
4) 성매매에 대한 인식전환, 성매매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	①	②	③	④	⑤
5)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성매매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신고 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및 집행	①	②	③	④	⑤
8) 사법기관의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_____)					

14. 귀하가 상담소, 쉼터 등 지원시설 및 사회단체의 업무에 관련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려운 사정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의 빠른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을 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가능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들의 욕구 조사 상시화 및 처우 개선	①	②	③	④	⑤
4) 부모교육 및 부모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취업 교육 및 사회와의 책임 있는 연계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_____)					

15.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	①	②	③	④	⑤
2) 일자리지원	①	②	③	④	⑤
3) 학업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취업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의료지원	①	②	③	④	⑤
6) 법률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정서적 지지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_____)					

Section 4

응답자 기본사항 관련

1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17. 귀하가 일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 ① 일반 청소년 생활시설(쉼터 등)
- ② 일반 청소년 이용시설
- ③ 청소년성매매 생활시설
- ④ 청소년 성매매 이용시설
- ⑤ 수사기관
- ⑥ 법무부 집행기관
- ⑦ 학교
- ⑧ 기타 (_____)

18. 귀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18-1번으로
- ② 없다.

18-1.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 ① 1주일 미만
- ② 1주일
- ③ 2주일
- ④ 3주일
- ⑤ 1개월
- ⑥ 기타 (_____)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 인쇄일 | 2016년 10월 25일
| 발행일 | 2016년 10월 26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아동청소년인권팀 02)2125-9644
| F A X | 02)2125-9718
| 제 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代)

ISBN: 978-89-6114-514-5 93330 비매품

